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서울중재부

2015서울조정 4·5, 144~163	(각 정정·손배청구) ○○○○요양병원 외 1인 對 민중언론 참세상 ^(4·5) , 연합뉴스 ^(144·145) , 뉴데일리경제 ^(146·147) , 인터넷 서울신문 ^(148·149) , 인터넷 미디어오늘 ^(150·151) , 비마이너 ^(152·153) , 아시아투데이닷컴 ^(154·155) , 헬스코리아뉴스 ^(156·157) , 인권오름 ^(158·159) , 데일리한국 ^(160·161) , 인터넷 주간동아 ^(162·163)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중언론 참세상 : 『에이즈, 그리고 건강할 권리』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3일자 오피니언면) 외 1건 • 연합뉴스 : 『시민단체 “에이즈 환자 위한 국립 요양병원 건립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사회면) 외 4건 • 뉴데일리경제 : 『에이즈 환자,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절규』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산업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에이즈 감염자 1000명 넘었는데 전문 요양병원 ‘0’』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5일자 뉴스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에이즈 환자, 병원 치료도 차별 받는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4일자 사회면) • 비마이너 :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 입원 거부는 장차법상 차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뉴스면) 외 2건 • 아시아투데이닷컴 : 『“정부, 에이즈 환자 위한 국립 요양병원 건립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사건사고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간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적절한 치료로 에이즈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뉴데일리경제,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미디어오늘, 비마이너, 아시아투데이닷컴, 인터넷 주간동아/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민중언론 참세상, 인권오름) • 취하 (헬스코리아뉴스/사유 : 반론보도) • 취하 (데일리한국/사유 : 정정보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6일자 사회면) • 뉴데일리경제 :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산업면) • 인터넷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시 에이즈 장기요양시설 S병원’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6일자 사회면)

※ 대량신청 사건은 목록에서 제외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6일자 미디어면) • 비마이너 :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사회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시 S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주간동아 :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사회면)
--------------	--

2015서울조정 6~9	(각 정정·손배청구) 손○○ 외 92인 對 매경닷컴 ^(6·7) , 채널A ^(8·9)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경닷컴 : 『몸져누운 환자 지갑 털어가는 범 죄... 천태만상 의약품 리베이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2일자 뉴스면)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약값 거품 논란... 불법 리베이트 탓』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건네는 리베이트가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10·11	(정정·손배청구) 임○○ 對 엔디엔뉴스
조정 대상	『경기교육청 공문도 무시하는 ○○고등학교 골프과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2일자 종합교육면)
신청인 주장	모 고교 골프부장인 신청인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학 중 해외 전지훈련을 유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12	(정정청구) 진○○ 對 인터넷 아주경제
조 정 대 상	『○○고 학부모들 교육감면담 및 감사원 진상 재조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30일자 지방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학교장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해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고 학부모들 교육감 면담 및 감사원 진상 재조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13, 141	(각 손배청구) 박○○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1) 황금펀치 프로그램 『‘현상금 1억’ 유대균 ‘미녀 보디가드’ 박○○ 정체는?』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4일자) (2) 황금펀치 프로그램 『유대균, ‘미녀 보디가드’와 도피 중… 결혼 관계는?』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과 연인사이라고 허위보도하고, 이혼 소송 관련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137~140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연합뉴스 ^(137·138) , 인터넷 연합뉴스TV ^(139·14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102억원 추가 ‘동결’』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속보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유병언 일가 재산 1백억원 추가 보전명령 청구』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준 비자금으로 상가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신엄매(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142	(손배청구) 강○○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주말뉴스토일 프로그램 『[이슈추적] 이○○, 열애설 인정 이후 ‘두문불출’... 외부 노출 꺼려』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유명 연예인이 거주하는 빌라 경비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5서울조정 143	(정정청구) 정○○ 對 메디칼타임즈
조 정 대 상	『국내 한의사 학위, 러시아서 ‘의사’와 동등한 지위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의사·개원면)
신청인 주장	국내에서 한의사 학위를 받으면 추가 과정 없이 러시아에서 의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164~169, 185·186, 1226~1235, 1472·1473	(각 정정·손배청구) ○○○ ○○ 의료원 對 헬스코리아뉴스^(164·165), 오마이뉴스^(166·167), 닥터스뉴스^(168·169), 씨앤비뉴스^(185·186, 1232·1233), 쿠키뉴스^(1226·1227, 1472·1473), 메디포뉴스^(1228·1229), 연합뉴스^(1230·1231), 인터넷 청년의사^(1234·123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코리아뉴스 : 『[성명] 위증죄로 고발된 박○○ ○○의료원장의 1억 손해 배상청구소송 규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9일자 뉴스면) • 오마이뉴스 : 『○○ 시민단체들, 박○○ ○○의료원장 사퇴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0일자 강원제주면) • 닥터스뉴스 : 『○○의료원장, 노조 상대 소송… “적반하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9일자 뉴스면) • 씨앤비뉴스 : (1) 『보건의료 강원본부, 박○○ ○○의료원장 퇴진 촉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전국면) (2) 『○○의료원 박○○ 원장 23일 검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전국면)

<p>조정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키뉴스 : 『○○의료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연쇄 면담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뉴스면) • 메디포뉴스 : 『보건노조, 강원도지사·강원대총장 만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뉴스면) • 연합뉴스 : 『○○의료원 이사회, 노조 저지로 무산』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뉴스면) • 인터넷 청년의사 : 『강원도, 보건의료노조 면담 요청에 ‘NO’』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8일자 의료면)
<p>신청인 주장</p>	<p>○○ 의료원장이 노조파괴공작을 했고,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헬스코리아뉴스, 오마이뉴스, 닥터스뉴스, 씨앤비뉴스, 쿠키뉴스, 메디포뉴스, 인터넷 청년의사/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연합뉴스/사유 : 자진취하)
<p>이행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코리아뉴스 : 『「[생명] 위증죄로 고발된 박○○ ○○의료원장의 1억 손해 배상청구소송 규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알림면) • 오마이뉴스 : 『○○의료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강원제주면) • 닥터스뉴스 : 『○○의료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의원병원면) • 씨앤비뉴스 : 『○○의료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강원도 ○○의료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뉴스면) • 메디포뉴스 : 『강원도 ○○의료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기관/단체면) • 인터넷 청년의사 : 『강원도, 보건의료노조 면담 요청에 ‘NO’』 제하의 기사 중 반론 삽입 (2015년 2월 11일자 의료면)
<p>2015서울조정 170</p>	<p>(정정청구) 이○○ 對 미디어스</p>
<p>조정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리랑TV 사장 ‘내정설’ 돌았던 박○○ 씨 포함 14명 지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4일자 미디어뉴스면) (2) 『아리랑TV, 사장 최종 후보 방석호·이○○·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일자 미디어뉴스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KBS 재직시 2012년 ‘MB라디오 주례연설 100회 특집’ 편성을 주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리결과</p>	<p>조정불성립결정</p>

2015서울조정 171~174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1TV ^(171·172) , KBS미디어 ^(173·174)
조 정 대 상	취재파일K 프로그램 『금괴를 찾아라』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월 4일자, KBS미디어 1월 4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금괴브로커 감금 및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175, 176	(각 정정청구) (주)○○○○엔터테인먼트 對 YTN ⁽¹⁷⁵⁾ , 인터넷 YTN ⁽¹⁷⁶⁾
조 정 대 상	뉴스출발 2부 프로그램 『영화 ‘기술자들’ 흥행 뒤 ‘을의 눈물’』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1월 8일자, 인터넷 YTN 1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영화 제작사인 신청인 회사가 영화촬영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기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술자들 제작사 “부당한 대처 일관은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177·178, 189·190	(각 정정·손배청구) ○○시 ○○○매매사업조합 ○○지부 對 MBC-TV ^(177·178) , NSP통신 ^(189·19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시사매거진 프로그램 『중고차의 거짓말』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30일자) • NSP통신 : 『나상희 의원, ○○구 ○○○과 공무원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8일자 경제·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인과 짜고 ‘자동차성능점검’ 내용을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179	(손배청구) 최○○ 對 맘&양팡
조 정 대 상	『오물오물 음식을 물고만 있어요』 제하의 사진 (2015년 1월 1일자 58면)
신청인 주장	유아인 신청인의 사진을 부정적 이미지로 편집·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타)

2015서울조정 180~183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스포츠동아 ^(180·180) , 인터넷 스포츠동아 ^(182·183)
조 정 대 상	(1) 『‘해체 위기’ ○○○ 사장 공금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 (스포츠동아 2015년 1월 1일자 11면, 인터넷 스포츠동아 1월 1일자 스포츠면) (2) 『경남체육회는 왜 ○○○ 선수통장에 돈을 부쳤나?』 제하의 기사 (스포츠동아 2015년 1월 9일자 11면, 인터넷 스포츠동아 1월 9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모 핸드볼팀을 소유한 신청인이 공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사장 공금유용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스포츠동아 2015년 1월 28일자 10면, 인터넷 스포츠동아 1월 28일자 스포츠면)

2015서울조정 184	(정정청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긴박한 경영상 이유’ 등 모호한 표현 대신 해고 요건 명시적으로 적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8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문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매경이 만난 사람들] 노동시장 대타협 배수진 친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7일자 24면)

2015서울조정 187, 188	(각 정정청구) 대한○○○○○○○○학회 ⁽¹⁸⁷⁾ , 대한○○○○○○○○○○학회 ⁽¹⁸⁸⁾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거울방학 맞아 너도나도 성형수술… 피해 급증』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안면윤곽수술이 치과전문의의 진료과목이 아닌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PR보도)
이 행 결 과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턱 때문에 접었던 꿈 의료봉사로 ‘활짝’』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19일자)
2015서울조정 357	(정정청구) 김○○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새누리당 “세금도둑” 자료 ‘도둑 배포’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자료발송자 명의를 특별준비위라고 사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새누리당 “세금도둑” 자료 ‘도둑 배포’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1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58	(정정청구) 이○○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1) 『어린이집 2살 아기 학대 논란, 두손 놓은 경찰 “증거없어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8일자 뉴스면) (2) 『어린이집 영아 학대 유일한 해결책 ‘CCTV’ 현명한 사용법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동 어린이집 “아기 학대 사실 없다”고 밝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사건면)

2015서울조정 359·360	(반론·손배청구) 최○○ 對 MBC-TV
조정대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뉴스플러스] 서울시 곳곳 낙하산 인사 논란… 어디에 누구 있나?』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모 정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신청인이 박원순 후보와의 단일화 대가로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562~569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인터넷 한국일보 ^(562·563) , SBS 콘텐츠허브 ^(564·565) , 인터넷 국민일보 ^(566·567) , 온라인 중앙일보 ^(568·569)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일보 : (1) 『[단독] 제자·동료 가리지 않고… 사립여대 교수, 성희롱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사회면) (2) 『[단독] 성희롱 교수 처벌, 졸업생들까지 나섰지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조교·여교수 안 가리고… 또 ‘성희롱 교수’ 추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1) 『“야동보다 하는 게 더 좋다” 서울 유명 여대 교수의 막장 성희롱』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시사면) (2) 『또 성희롱 교수, 팬티 차림에 조교 부르고 제자·동료 교수 가리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시사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서울 사립여대 교수 학생 등 성희롱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자 및 동료 등을 성희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SBS 콘텐츠허브/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한국일보)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반론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콘텐츠허브 : 『‘서울 유명 여대 여교수 성희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서울 유명 여대 여교수 성희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시사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서울 유명 여대 교수 성희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570~573	(각 정정·손배청구) (주)전자신문사 對 미디어오늘 ^(570·571) , 인터넷 미디어오늘 ^(572·573)
조 정 대 상	『삼성 오보 인정한 전자신문, 자존심도 열정도 잃었다』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5년 1월 7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1월 8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삼성전자 비판기사에 대해 오보를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삼성 오보 인정한 전자신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5년 3월 18일자 종합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3월 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574	(정정청구) 김○○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사설] 세월호 조사위에 흙탕물 끼얹는 ‘검은 손’』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 조사를 방해할 의도로 괴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반론보도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606~609	(각 정정·반론청구) 홍문종 對 한국일보 ^(606·607) , 인터넷 한국일보 ^(608·609)
조 정 대 상	『홍문종 의원, 본인 소유 박물관에 ○○대 교직원 동원 의혹』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12월 18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 운영에 모 대학 교직원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2월 23일자 14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610	(손배청구) 우○○ 對 소년조선일보
조 정 대 상	『피자·치킨 가라! 뱃살도 가라! 우리는 지금 살과의 전쟁 중』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683, 755, 756	(각 정정청구) (주)○○케어 對 연합뉴스 ⁽⁶⁸³⁾ , 인터넷 헤럴드경제 ⁽⁷⁵⁵⁾ , 에너지경제 ⁽⁷⁵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뉴스섹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영국,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사회면) • 에너지경제 :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부작용 증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독점 수입 판매하는 렌즈에 문제가 있어 외국에서 피해보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인터넷 헤럴드경제, 에너지경제/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알림』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5년 2월 4일자 뉴스섹션면)

2015서울조정 684	(정정청구) 전라북도관광협회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전북관광협회, 관광홍보는 뒷전 눈먼 예산 펄펄 전북도는 관리감독에 뒷짐, 방만운영 부추겨』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7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진행하는 '테마형 수학여행 유치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685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김○○ 딸 이○○, 엄마 김○○ 향해 “창녀인지 여배우인지…” 충격발언 ‘혁’』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문화·Life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딸로부터 “창녀인지 여배우인지”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686, 687	(각 정정청구) 전국○○공제조합 ○○지부 ⁽⁶⁸⁶⁾ , (사)○○시○○운송사업조합 ⁽⁶⁸⁷⁾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택기기사 위해 예산 줬더니… 술 값으로 “핑핑”』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사회면) (2) 『이번엔 택시사업조합 택시기사 보험료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운전자 보험 지원금 예산 일부를 유흥에 사용했으며,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택시공제조합 및 택시사업조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688~693	(각 정정·추후·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MBN ^(688~690) , 인터넷 MBN ^(691~693)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대학서 남학생 3명 집단 성추행』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10월 6일자, 인터넷 MBN 10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친구들이 집단 성추행 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 취하)

2015서울조정 694	(정정청구) 이○○ 외 3인 對 리폼드뉴스
조 정 대 상	『분쟁교회를 가다(5) “○○○○교회”』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8일자 교회면)
신청인 주장	모 목사가 ○○○○교회 임시당회장이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교회 장로 4인에 대한 시무투표 효력, 반론제기』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교회면)

2015서울조정 695~698	(각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조선일보 ^(695·696) , 조선닷컴 ^(697·69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1) 『지상파, 헐값에 외주사 저작권 독식』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1면) (2) 『지상파, 외주사가 받은 협찬금 때 가고 과태료 떠 넘기기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10면) 조선닷컴 : (1) 『[자구 노력없이 安住하는 지상파] 지상파, 외주사가 받은 협찬금 때가고 과태료 떠넘기기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연예면) (2) 『[자구 노력없이 安住하는 지상파] 지상파, 헐값에 외주사 저작권 獨食』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KBS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비를 10년 전과 똑같이 주거나 절반만 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2월 7일자 A8면, 조선닷컴 2월 4일자 연예면)

2015서울조정 751	(반론청구) 박○○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이단 박○○ 씨 재판부 전원교체... ‘불공정한 재판 우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단이고 사기사건에 연루된 업체의 고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5서울조정 752	(정정청구) (유)○○○○여행사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관광협회, 관광 홍보는 뒷전 ‘눈 먼 예산 평평’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7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여행사가 ○○관광협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관광협회, 관광 홍보는 뒷전 ‘눈 먼 예산 평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754	(손배청구) 임○○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동료 눈치… 고과 불이익… 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제하의 사진 (2015년 1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유감표명,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기타 - 동의 후 금액 지급)
2015서울조정 757, 758, 1239, 1240	(각 손배청구) 최○○ 對 문화일보 ⁽⁷⁵⁷⁾ , 인터넷 문화일보 ⁽⁷⁵⁸⁾ (각 정정청구) 문화일보 ⁽¹²³⁹⁾ , 인터넷 문화일보 ⁽¹²⁴⁰⁾
조 정 대 상	『세월호 영웅 최○○·박○○ 희생정신 세계의 귀감』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1월 22일자 29면, 인터넷 문화일보 1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참사에서 인명을 구하고 사망한 승무원에 대해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70만원, 부제소 - 동의 후 금액 지급)
2015서울조정 1076	(정정청구) ○○○KOREA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귀신분장’ 자전거 동호회원들 서울도심 심야 떼주행』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진행한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 취하)

2015서울조정 1115~1120	(각 정정·손배청구) 허○○ 對 한국기독일보 ^(1115·1116)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1117·1118)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1119·1120)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독일보 : 『‘문중재산 찾아주겠다’ ‘공짜 아파트 준다’고 속여 갈취한 목사의 사기행각 충격』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5일자 뉴스면)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교에게서 기독교 재산 되찾겠다며 사기』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5일자 교계교단면)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협회 허모 목사 사기행각 경계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5일자 주요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독일보 : 『○○교회 허○○ 목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9일자 교단교회면)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교회 허○○ 목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교계교단면)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교회 허○○ 목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6일자 주요뉴스면)
2015서울조정 1121	(손배청구) 안○○ 對 데일리환경
조정대상	『성형 시술 중 연이은 사망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2일자 환경신문고면)
신청인 주장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사고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상호를 밝혀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행결과	『성형 시술 중 연이은 사망 왜?』 제하의 기사 중 상호명 삭제 (2015년 2월 9일자 환경신문고면)
2015서울조정 1236~1238	(정정·반론·손배청구) 진○○ 對 티브로드-TV
조정대상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통행로 갈등… 결국 이웃 간 소송_티브로드서울』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통행로 관련 이웃과 분쟁중인 신청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행결과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도봉구 통행로 분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5일자)

2015서울조정 1241~1248, 1853·1854, 2254·2255 (각 반론·손배청구) 김○○ 對 이데일리^(1241·1242), 인터넷 스포츠조선^(1243·1244), 데일리게임^(1245·1246), 인터넷 일간스포츠^(1247·1248), 스포츠서울닷컴^(1853·1854), 온라인 중앙일보^(2254·2255)

조정 대상

- 이데일리 : 『○○위 내부 갈등, 성희롱 폭로전으로 비화』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게임면)
- 인터넷 스포츠조선 : 『또 다시 도마에 오른 ○○위. 성희롱인가, 내부 갈등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데일리게임 : 『[기획] 추문에 흔들리는 ○○위 알력 싸움에 업계 피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체 역할 못하고 내부 갈등만... ○○위 폐지 추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스포츠서울닷컴 : 『석연치 못한 성희롱 추문 ○○위, 내부 갈등의 산물?』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경제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위 내부 갈등, ‘성희롱 폭로전으로 비화’』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계약직 직원인 신청인이 재계약을 앞두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간부의 성희롱을 진정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데일리, 인터넷 스포츠조선, 인터넷 일간스포츠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데일리게임, 스포츠서울닷컴/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 조정액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온라인 중앙일보/내용 : 정정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은데 대해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1355~1367 (각 손배청구) 박○○ 對 MBN^(1355,1356), 인터넷 MBN^(1357,1358), TV조선^(1359~1361), 인터넷 TV조선^(1362,1363), 연합뉴스TV⁽¹³⁶⁴⁾, 인터넷 연합뉴스TV⁽¹³⁶⁵⁾, 채널A⁽¹³⁶⁶⁾, 인터넷 채널A⁽¹³⁶⁷⁾

조정 대상

- MBN : 뉴스8 프로그램 『양○○ 데려간 사람들은 누구?』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일자, 인터넷 MBN 8월 1일자 다시보기면)
- TV조선 : (1)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 『양○○ 3차 검찰 조사』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31일자, 인터넷 TV조선 7월 31일자 사회면)
(2) 황금펀치 프로그램 『양○○ ‘수상한 김새’... 무언가 숨기고 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1일자 사회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 : 뉴스1번지 프로그램 『유병언 미스터리... 양○○ “유병언 최후 몰라”』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31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7월 31일자 뉴스면) • 채널A : 이동관의 노크 프로그램 『양○○ ‘금수원 은신’ 놓고 구원파 내부 갈등』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31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31일자 뉴스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운전기사의 자수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기각 (사유 : 공익적인 보도)

2015서울조정 1368·1369	(정정·손배청구) 신○○ 對 동아닷컴
조정대상	『신엄마 딸 박○○, 유대균 호위무사 노릇... 얼굴 곳곳이 들고』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지시로 신청인의 딸이 유대균의 도피를 도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1370~1372	(손배, 정정·손배청구) 박○○ 對 동아닷컴 ^(1370, 1371·1372)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찰, 유대균-박○○ 은신처 추적 함께 검거』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6일자 사회면) (2) 『유대균 박○○ 검거, 신엄마 딸 박○○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대균의 수행원인 신청인의 검거사실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하고, 둘의 관계가 조력자 이상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배청구/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 동의 후 금액 지급)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이행결과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0일자 사회면)

제 5 부

2015서울조정 1474, 1475	(각 정정청구) (사)○○○○○○○○협회○○시지회 對 매일일보 ⁽¹⁴⁷⁴⁾ , 인터넷 매일일보 ⁽¹⁴⁷⁵⁾
조 정 대 상	『김포 ○○항 어촌계 상인들 ‘뽕’났다』 제하의 기사 (매일일보 2015년 1월 28일자 15면, 인터넷 매일일보 1월 27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회장이 항구 어판장에 불법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1476~1479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SBS-TV ^(1476·1477) , SBS 콘텐츠허브 ^(1478·1479)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땅콩회항』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1월 10일자, SBS 콘텐츠허브 1월 10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승무원인 신청인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모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허위사실을 보도한 적이 없으므로 정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1480~1539	(각 손배청구) 유○○ ^(1480~1509) 對 연합뉴스 TV ^(1480~1487) , 인터넷 연합뉴스 TV ^(1488~1496) , YTN ⁽¹⁴⁹⁷⁾ , 인터넷 YTN ^(1498, 1499) , SBS-TV ⁽¹⁵⁰⁰⁾ , SBS 콘텐츠허브 ⁽¹⁵⁰¹⁾ , KBS-1,2TV ⁽¹⁵⁰²⁾ , KBS 미디어 ^(1503, 1504) , JTBC ^(1505, 1506) , 인터넷 JTBC ^(1507~1509) 이○○ ^(1510~1539) 對 연합뉴스 TV ^(1510~1517) , 인터넷 연합뉴스 TV ^(1518~1526) , YTN ⁽¹⁵²⁷⁾ , 인터넷 YTN ^(1528, 1529) , SBS-TV ⁽¹⁵³⁰⁾ , SBS 콘텐츠허브 ⁽¹⁵³¹⁾ , KBS-1,2TV ⁽¹⁵³²⁾ , KBS 미디어 ^(1533, 1534) , JTBC ^(1535, 1536) , 인터넷 JTBC ^(1537~153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TV : 투나잇23 프로그램 『김엄마·양○○ ‘키맨’ 지목... ‘모르쇠’ 일관』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9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7월 29일자 사회면) 외 7건 • YTN : 뉴스24 프로그램 『“돈은 2번·6번 가방에서 발견”』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1일자, 인터넷 YTN 8월 11일자 사회면) 외 5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유병연 ‘권총 5정+15억’ 발견』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1일자, SBS 콘텐츠허브 8월 11일자 사회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뉴스토크 프로그램 『검찰 ‘유병언 도피 지휘부’ 찾기 수사 주력』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1일자, KBS 미디어 8월 11일자 사회면) 외 1건 • JTBC : 4시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오늘 오전 10시부터 양○○ 재조사』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30일자, 인터넷 JTBC 7월 30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측근에 대한 검찰조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기각 (사유 : 공익적인 보도)

2015서울조정 1662	(반론청구) ○○○○○학회 對 MBC-TV
조정대상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겨울방학 맞아 ‘성형 열풍’… 피해 사례도 급증』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성형외과 전문의사가 아닌 일반의가 성형시장에 뛰어들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일반 의사 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5년 3월 4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1663~1696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스타투데이 ^(1663·1664) , 이뉴스투데이 ^(1665·1666) , wow한국경제TV ^(1667·1668) , 한경닷컴 ^(1669·1670)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671·1672) , 오에스이엔 ^(1673·1674) , 티브이데일리 ^(1675·1676) , 인터넷 일간스포츠 ^(1677·1678) , 이투데이 ^(1679·1680) , 데일리안 ^(1681·1682) , SSTV ^(1683·1684) , 조선비즈닷컴 ^(1685·1686) , 인터넷 일요신문 ^(1687·1688) , e머니워크 ^(1689·1690)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1691·1692) , 온라인 중앙일보 ^(1693·1694) , 인터넷 헤럴드경제 ^(1695·1696)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투데이 : 『‘그것이’ 대한항공 여승무원, 소름돋는 미소의 의미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뉴스면) 외 1건 • 이뉴스투데이 :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교수직 제안에 묘한 미소?... 박○○ 사무장과 다른 행보에 ‘눈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 wow한국경제TV : 『‘대한항공 박○○ 사무장의 침통한 표정 VS 땅콩 여승무원의 환한 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뉴스면) 외 1건 • 한경닷컴 : 『‘대한항공 여승무원, 검찰 조사 당시 웃으며... 이유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대한항공 측 거래 받아 들였나?’ 충격적 행보』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 오에스이엔 :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미소 지은 이유… 교수직 제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라이프면) • 티브이데일리 :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박○○ 사무장과 다른 행보 ‘모습보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방송면) 외 10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모 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1697~1730	<p>(각 손배청구) 신○○ 對 TV조선⁽¹⁶⁹⁷⁾, 인터넷 TV조선⁽¹⁷⁰⁰⁾, MBN⁽¹⁷⁰¹⁾, 인터넷 MBN⁽¹⁷⁰²⁾, 채널A⁽¹⁷⁰⁵⁾, 인터넷 채널A⁽¹⁷⁰⁶⁾, JTBC⁽¹⁷⁰⁹⁾, 인터넷 JTBC⁽¹⁷¹⁰⁾, YTN⁽¹⁷¹³⁾, 인터넷 YTN⁽¹⁷¹⁴⁾, KBS-1TV⁽¹⁷¹⁷⁾, KBS 미디어⁽¹⁷¹⁸⁾, MBC-TV⁽¹⁷²¹⁾, iMBC⁽¹⁷²²⁾</p> <p>(각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TV조선^(1698·1699), 인터넷 MBN^(1703·1704), 인터넷 채널A^(1707·1708), 인터넷 JTBC^(1711·1712), 인터넷 YTN^(1715·1716), KBS미디어^(1719·1720), 조선닷컴^(1723·1724), 인터넷 연합뉴스TV^(1725·1726), 연합뉴스^(1727·1728), SBS 콘텐츠허브^(1729·1730)</p>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유병언 조력자들 “유병언 혼자 희생해야 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8일자, 인터넷 TV조선 7월 28일자 뉴스면) 외 25건 • MBN : 시선집중 프로그램 『구원파, 유병언 도피 조직적 지원』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2일자, 인터넷 MBN 8월 12일자 뉴스면) 외 6건 • 채널A : 뉴스특보 프로그램 『‘꽃꽃’ 미녀 호위무사 박○○ 신앙의 힘?』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7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27일자 사회면) 외 9건 • JTBC : 뉴스9 프로그램 『‘유대균 조력자’ 박○○, 검거 뒤 시종일관 ‘꽃꽃’ 눈길』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7일자, 인터넷 JTBC 7월 27일자 사회면) 외 1건 • YTN : 정오뉴스 프로그램 『조력자들은 자수했지만… 해외에 자녀들이 남았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9일자, 인터넷 JTBC 7월 29일자 사회면) 외 14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지시로 신청인의 딸이 유대균의 도피를 도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KBS-1TV, KBS미디어, SBS 콘텐츠허브/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채널A, 인터넷 채널A, MBC-TV, iMBC) • 각 취하 (MBN, 인터넷 MBN, JTBC, 인터넷 JTBC, YTN, 인터넷 YTN, 인터넷 연합뉴스TV/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 각 취하 (조선닷컴, 연합뉴스/사유 : 기사수정)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미디어 : 『‘신엄매(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신엄매(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JTBC : 『‘신엄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신엄매(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7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유병언 동생 유경희, 구원파 신도 집단폭행... 신도들 내동댕이치는 영상 입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5월 13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신엄매(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유병언 장남 유대균·신엄매 딸 박○○ 검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4월 15일자 사회면) 외 2건
2015서울조정 1731~1774, 1858~1861, 2123, 2124	<p>(각 손배청구) 박○○ 對 TV조선⁽¹⁷³¹⁾, 인터넷 TV조선⁽¹⁷³⁴⁾, MBN⁽¹⁷³⁵⁾, 인터넷 MBN⁽¹⁷³⁸⁾, 채널A⁽¹⁷³⁹⁾, 인터넷 채널A⁽¹⁷⁴²⁾, JTBC⁽¹⁷⁴³⁾, 인터넷 JTBC⁽¹⁷⁴⁴⁾, YTN⁽¹⁷⁴⁷⁾, 인터넷 YTN⁽¹⁷⁵⁰⁾, KBS-1TV⁽¹⁷⁵¹⁾, KBS 미디어⁽¹⁷⁵²⁾, MBC-TV⁽¹⁷⁵⁵⁾, iMBC⁽¹⁷⁵⁶⁾, SBS-TV⁽¹⁷⁵⁹⁾, SBS 콘텐츠허브⁽¹⁷⁶⁰⁾, 노컷뉴스⁽¹⁷⁶³⁾, 이투데이⁽¹⁷⁶⁴⁾, 조선닷컴⁽¹⁷⁶⁷⁾, 온라인 중앙일보⁽¹⁷⁷⁰⁾, 인터넷 주간경향⁽²¹²³⁾, 인터넷 시사저널⁽²¹²⁴⁾</p> <p>(각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TV조선^(1732·1733), 인터넷 MBN^(1736·1737), 인터넷 채널A^(1740·1741), 인터넷 JTBC^(1745·1746), 인터넷 YTN^(1748·1749), KBS미디어^(1753·1754), iMBC^(1757·1758), SBS 콘텐츠허브^(1761·1762), 인터넷 연합뉴스TV^(1765·1766), 조선닷컴^(1768·1769), 온라인 중앙일보^(1771·1772), 연합뉴스^(1773·1774), 인터넷 일요시사^(1858·1859), 인터넷 일요신문^(1860·1861)</p>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박○○, 두 아들 버려두고 유대균 위해 호텔 물색”』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6일자, 인터넷 TV조선 7월 26일자 사회면) 외 110건 • MBN : 뉴스8 프로그램 『격파왕 박○○, 팬클럽까지 등장... ‘미화’ 안돼』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8일자, 인터넷 MBN 7월 28일자 사회면) 외 179건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박○○, 두 아들 버려두고 유대균 위해 호텔 물색”』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6일자, 인터넷 TV조선 7월 26일자 사회면) 외 110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뉴스8 프로그램 『격파왕 박○○, 팬클럽까지 등장… ‘미화’ 안돼』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8일자, 인터넷 MBN 7월 28일자 사회면) 외 179건 • 채널A : 뉴스특보 프로그램 『여신도 도움받은 유병언 부자… 도피도 부전자전?』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6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26일자 사회면) 외 69건 • JTBC : 뉴스9 프로그램 『모습 드러낸 유대균과 ‘신엄마’ 딸 박○○』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8일자, 인터넷 JTBC 7월 28일자 사회면) 외 31건 • YTN : 정오뉴스 프로그램 『경찰, 유병언 아들 유대균 검거』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5일자, 인터넷 YTN 7월 25일자 사회면) 외 119건 • KBS-1TV 외 25개 매체
신청인 주장	<p>신청인이 유대균의 도피를 도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MBN⁽¹⁷³⁶⁾, 인터넷 채널A⁽¹⁷⁴⁰⁾, 인터넷 JTBC⁽¹⁷⁴⁵⁾, KBS 미디어⁽¹⁷⁵³⁾, MBC-TV, iMBC, 인터넷 연합뉴스TV⁽¹⁷⁶⁵⁾, 온라인 중앙일보⁽¹⁷⁷¹⁾, 연합뉴스⁽¹⁷³⁴⁾, 인터넷 일요시사⁽¹⁸⁵⁸⁾, 인터넷 일요신문⁽¹⁸⁶⁰⁾/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MBC-TV, iMBC))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MBN, 인터넷 MBN⁽¹⁷³⁷⁻¹⁷³⁸⁾, 채널A, 인터넷 채널 A⁽¹⁷⁴¹⁻¹⁷⁴²⁾, JTBC, 인터넷 JTBC⁽¹⁷⁴⁴⁻¹⁷⁴⁶⁾, YTN, 인터넷 YTN, KBS-1TV, KBS 미디어⁽¹⁷⁵²⁻¹⁷⁵⁴⁾, 인터넷 연합뉴스TV⁽¹⁷⁶⁶⁾, 조선닷컴⁽¹⁷⁶⁷⁻¹⁷⁶⁹⁾, 온라인 중앙일보⁽¹⁷⁷⁰⁻¹⁷⁷²⁾, 연합뉴스⁽¹⁷⁷⁴⁾, 인터넷 일요신문⁽¹⁸⁶¹⁾/내용 : 손해배상-MBN 및 인터넷 MBN 3백만원, 채널A 및 인터넷 채널A 250만원, JTBC 및 인터넷 JTBC 50만원, YTN 및 인터넷 YTN 3백만원, KBS 및 KBS 미디어 2백만원, 인터넷 연합뉴스TV 1백만원, 조선닷컴 5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1백만원, 연합뉴스 1백만원, 인터넷 일요신문 50만원 - 동의 후 금액 지급) • 각 조정불성립결정 (TV조선, 인터넷 TV조선, SBS-TV, SBS 콘텐츠허브) • 각 취하 (이투데이, 조선닷컴⁽¹⁷⁶⁸⁾, 인터넷 주간경향, 인터넷 시사저널/사유 : 정정보도) • 취하 (노컷뉴스/사유 : 손해배상) • 기각 (인터넷 일요시사⁽¹⁸⁵⁹⁾/사유 : 진실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미디어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4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JTBC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7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0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0일자 뉴스홈면)

2015서울조정 1851·1852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성형수술 부작용 눈코 절반 이상 차지』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할 경우 부작용이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1855~1857	(정정청구) 이○○ 對 동아닷컴 ⁽¹⁸⁵⁵⁾ (정정·손배청구) 채널A ^(1856·185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닷컴 : 『[단독]막말 변호사, ○○변호사회 감사 후보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5일자 사회면)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막말 혐의’ 변호사, ○○변회 감사 출마 논란』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모 단체 감사 후보로 출마한 신청인이 노인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간주

2015서울조정 1862·1863	(정정·손배청구) 신○○ 對 예정뉴스
조 정 대 상	『영신속보(3) 학생회장 김○○ 외 2인 입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일자 신학교/대학교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교수와 학생을 이간할 목적으로 학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영신속보(3) 학생회장 김○○ 외 2인 입원』 제하의 기사 중 반론보도 삽입 (2015년 3월 4일자 신학교/대학교면)

2015서울조정 2097	(정정청구) 최경환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자원펀드’ 강권 공문 발신자는 최경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1면) (2) 『책임없었던 최경환, 하베스트 현지조사 직보 받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3면,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수출입은행에 ‘해외자원개발펀드’ 참여를 강권했고,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부실업체 인수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125	(정정청구) 강○○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신해철 사망 미스터리,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과거 가수 신해철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담낭제거 수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2012년 신해철 담낭제거 수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콘텐츠허브 2015년 3월 12일자 다시보기면)
2015서울조정 2126	(정정청구) 식품의약품안전처 對 MBC-TV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식약처, 재검사는 없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식약처가 중국에서 수입된 닭꼬치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검사성적서를 조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PD수첩 프로그램 『식약처, 재검사 없다’ 방송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4월 7일자, iMBC 4월 13일자 다시보기면)

2015서울조정 2193·2194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팝콘뉴스
조정대상	『○○○ 침대, 美재판에서 펼쳐진 오너일가 추한 싸움… 내막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오너 일가가 불륜과 횡령 등의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행결과	『○○○ 침대 오너일가 美재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7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195, 2196	(각 정정청구) 육군본부 對 KBS-1TV ⁽²¹⁹⁵⁾ , KBS 미디어 ⁽²¹⁹⁶⁾
조정대상	시사기획창 프로그램 『식물인간 이등병… “사실대로 말해줘”』 제하의 보도 (KBS-1TV 2014년 11월 11일자, KBS 미디어 11월 11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식물인간이 된 이등병 사건과 관련해 헌병 수사가 부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197, 2198	(각 정정청구) (주)○○○ 對 스포츠서울 인터넷 ⁽²¹⁹⁷⁾ , 인터넷 일간스포츠 ⁽²¹⁹⁸⁾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서울 인터넷 :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체결 북미 시장 진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라이프면) 인터넷 일간스포츠 : 『○○○, 글로벌 No.1 골프아카데미 ‘○○○’과 MOU 체결』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3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모업체가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유일하게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참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서울 인터넷 :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체결 북미 시장 진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3월 25일자 라이프면) 인터넷 일간스포츠 : 『○○○, 글로벌 No.1 골프아카데미 ‘○○○’과 MOU 체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3월 26일자 스포츠면)

2015서울조정 2199·2200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에이블뉴스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 ○○학교, 식당운영 놓고 갈등』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오피니언면) (2) 『장애인거주시설 ○○○의 세습과 족벌화』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오피니언면) (3) 『장애학생 부모들, ○○○ 권익위에 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오피니언면) (4) 『○○○ 거주인들은 불모이자 인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오피니언면) (5) 『○○○ 공화국 어버이수령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7일자 오피니언면) (6) 『순탄치 않은 광주시의 ○○○ 관련 합의 이행』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회복지법인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시설 운영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201, 2202	(각 손해청구) 신○○ 對 채널A ⁽²²⁰¹⁾ , 인터넷 채널A ⁽²²⁰²⁾
조 정 대 상	직언직설 프로그램 『김○○ 동양화 작가 모욕... 명예훼손한 혐의』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1월 30일자, 인터넷 채널A 1월 30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모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화가의 작품을 신청인의 작품이라고 소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신○○ 작가 관련 양해 말씀』 제하의 기사 (인터넷 채널A 2015년 3월 4일자 메인화면)
2015서울조정 2203~2206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일요시사 ^(2203·2204) , 동아닷컴 ^(2205·220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일요시사 : 『‘클라라 스캔들’ ○○그룹 회장의 두얼굴 추적』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6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차세대전투기-잠수함 사업참여... 비리의혹 끊이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연예인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청인이 방산비리에 관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인터넷 일요시사/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동아닷컴/내용 : 기사삭제)
이행 결과	인터넷 일요시사 : 『[바로잡습니다] 이○○ ○○그룹 회장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7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07, 2208	(각 정정청구) 이○○ 對 이슈타임 ⁽²²⁰⁷⁾ , 인사이트 ⁽²²⁰⁸⁾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타임 : 『체험 허브농장 대표, 성범죄 전과 숨긴 채 버젓이 농원운영』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생활문화이슈면) • 인사이트 : 『유명 체험농장 대표, 성범죄 전과 숨긴 채 농원 운영』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성범죄 전과사실이 있는 신청인이 체험 허브농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209·2210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주간동아
조정 대상	『‘유병언 죽음 미스터리’ 풀 수 없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구원파 호위무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5서울조정 2211~2213	(손배청구) 신○○ 對 인터넷 주간동아 ⁽²²¹¹⁾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일요신문 ^(2212·2213)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주간동아 : 『‘유병언 죽음 미스터리’ 풀 수 없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신문 : 『유병언 도피 컨트롤타워 총력추적』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 도피 컨트롤타워라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5서울조정 2214·2215	(정정·손배청구) 태백시 對 e시사코리아저널
조 정 대 상	『김연식 태백시장 특정업체와 결탁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태백시장과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결탁하여 부당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연식 태백시장 특정업체와 결탁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4일자 기획면)
2015서울조정 2216, 2217	(각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이데일리 ⁽²²¹⁶⁾ , 인터넷 이데일리 ⁽²²¹⁷⁾
조 정 대 상	『걱정되는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 제하의 기사 (이데일리 2015년 2월 9일자 2면, 인터넷 이데일리 2월 9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모 언론사 소속 기자가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언론사 외압 관련 발언을 녹음해 야당의원에게 녹취록을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걱정되는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이데일리 2015년 3월 6일자 2면, 인터넷 이데일리 3월 6일자 사설면)
2015서울조정 2218	(정정청구) 대한○○○○협회 對 아주뉴스
조 정 대 상	『치과의사, 돈 아끼려고 치위생 무자격자 활용 합법화 추진? “꼼수”가 눈에 보여』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저렴한 조무사를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 관련 법률 시행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치과의사, 돈 아끼려고 치위생 무자격자 활용 합법화 추진? ‘꼼수’가 눈에 보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19·2220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월간중앙
조 정 대 상	『“무면허 제조, 원료 밀수의혹 방사청·경찰청은 모르쇠?”』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호 148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면허도 없이 최루탄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최루탄 제작업체 D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7일자 28면)

2015서울조정 2221	(정정청구) 이○○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사립대 교수, 제자 논문 상습적으로 가로채』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가로채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5서울조정 2222, 2223	(각 손배청구) 박○○ 對 뉴시스 ⁽²²²²⁾ , 인터넷 시민일보 ⁽²²²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1) 『검찰, 유병언 공소권없음 처분·유대균 구속기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2일자 사회면) (2) 『검, ‘세월호 재판’ 10명 징역형·3명 집행유예 구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시민일보 : 『유병언 공소권 없음… 장남 구속기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대균의 도피를 돕다 체포된 신청인의 개인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각 (뉴시스/사유 : 공적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인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224	(정정청구) ○○중학교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집단폭행하고 남친들은 협박, 학교는 ‘쉬쉬’』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중학교가 학내 집단폭행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집단폭행하고 남친들은 협박, 학교는 ‘쉬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25~2231, 2241, 2258~2260	(각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서울신문 ⁽²²²⁵⁾ , 종교신문 ⁽²²²⁶⁾ , 매경닷컴 ⁽²²²⁷⁾ , 인터넷 국민일보 ⁽²²²⁸⁾ , 노컷뉴스 ⁽²²²⁹⁾ , 이헬스통신 ⁽²²³⁰⁾ , 헤럴드TV ⁽²²³¹⁾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²²⁴¹⁾ , KBS미디어 ⁽²²⁵⁸⁾ , 세계닷컴 ⁽²²⁵⁹⁾ , 월드투데이 ⁽²²⁶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신문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사회면) • 종교신문 : 『영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뉴스면) • 매경닷컴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뉴스면) • 인터넷 국민일보 : 『英 인공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 독일산 렌즈 안전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시사면) • 노컷뉴스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뉴스면) 외 6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독점 수입 판매하는 인공렌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232, 2233	(각 정정청구) ○○○○(주) 對 YTN ⁽²²³²⁾ , 인터넷 YTN ⁽²²³³⁾
조 정 대 상	뉴스출발 프로그램 『12시간 밤샘 근무... 길 위의 노동자』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1월 16일자, 인터넷 YTN 1월 1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청소 대행업체인 신청인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12시간 밤샘 근무... ‘길 위의 노동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5년 3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34~2236	(각 손해청구) 윤○○ 對 인터넷 연합뉴스TV ⁽²²³⁴⁾ , 인터넷 채널A ⁽²²³⁵⁾ , 인터넷 JTBC ⁽²²³⁶⁾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연합뉴스TV : 『유대균·전양자·박○○... ‘눈물바다’ 법정』 제하의 사진 (2014년 10월 8일자 뉴스면) 인터넷 채널A : 『희생자 위해 재산 반환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제하의 사진 (2014년 10월 8일자 뉴스면) 외 3건 인터넷 JTBC : 『김○○ 조사 아틀째, 혐의 부인... 유대균 징역4년 구형』 제하의 사진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기각 (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2015서울조정 2237, 2238	(각 손해청구) 박○○ 對 JTBC ⁽²²³⁷⁾ , 인터넷 JTBC ⁽²²³⁸⁾
조정대상	8시 뉴스 프로그램 『제조에 25만원 ‘가짜 실리콘 손가락’ 직접 만들어보니...』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JTBC 2월 11일자 9시 뉴스 및 8시 뉴스 프로그램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들이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허위 초과근무 시간을 등록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초상, 음성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2239, 2240	(각 반론청구) ○○유치원 對 SBS 콘텐츠허브 ⁽²²³⁹⁾ , SBS-TV ⁽²²⁴⁰⁾
조정대상	취재파일 프로그램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1월 26일자, SBS 콘텐츠허브 1월 2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유치원이 부모로부터 원아의 건강상태를 사전 확인하고도 부주의로 사망케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5살 아이 혼수상태 유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5년 3월 11일자 사회면)

<p>2015서울조정 2242~2245, 2256·2257, 2299·2300, 2487~2490, 2497·2498, 2502·2503, 2507·2508</p>	<p>(각 정정·손배청구) ○○○ ○○의료원 對 인터넷 매일노동뉴스^(2242~2245, 2256·2257, 2502·2503), 연합뉴스^(2299·2300), 인터넷 청년의사^(2487·2488), 메디컬투데이^(2489·2490), 아웃소싱타임즈^(2497·2498), 닥터스뉴스^(2507·2508)</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 (1) 『○○의료원이 해야 할 것은 반론보도가 아니라 협상』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3일자 칼럼면) (2) 『강원도 경영개선대책 이유로 지방의료원 버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6일자 기획연재면) (3) 『○○의료원 지부장 단식농성 돌입』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3일자 노동뉴스면) • 연합뉴스 : 『보건노조 ○○의료원 지부장 단식농성 돌입』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3일자 전국면) • 인터넷 청년의사 : 『중노위, ○○의료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기관/단체면) • 메디컬투데이 : 『보건의료노조 “박○○ ○○의료원장, 부당행위 명백... 스스로 용퇴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1일자 의료면) 외 3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의료원장이 노사교섭을 회피하고 있으며, 공공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공공의료를 후퇴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인터넷 매일노동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연합뉴스/사유 : 자진취하) • 각 취하 (인터넷 청년의사, 메디컬투데이, 아웃소싱타임즈, 인터넷 매일노동뉴스^(2502·2503), 닥터스뉴스/사유 : 반론보도)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 『강원도 ○○의료원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7일자 노사이슈면) • 인터넷 청년의사 : 『중노위, ○○의료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9일자 기관/단체면) • 메디컬투데이 : 『보건의료노조 “박○○ ○○의료원장, 부당행위 명백... 스스로 용퇴해야”』 제하의 기사 중 반론보도 삽입 (2015년 3월 20일자 의료면) • 아웃소싱타임즈 : 『중앙노동위원회, ○○의료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제하의 기사 중 반론보도 삽입 (2015년 3월 18일자 인적자원면) • 닥터스뉴스 : 『○○○○병원 등 6곳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제하의 기사 중 반론보도 삽입 (2015년 3월 18일자 보험/제도면)

2015서울조정 2246·2247	(정정·손배청구) 이○○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뒷돈’ 등장에 ○○농협 상임이사 선거 ‘파장’』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처남이 모농협 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농협 상임이사직에 출마한 신청인의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248	(정정청구) ○○○○○○○공사 노동조합 외 1인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인천 이관’ 조직적 반대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환경부와 연대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인천 이관을 반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인천 이관’ 조직적 반대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49	(정정청구) 양천구청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프로그램 (1) 『못 믿을 중고차』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30일자) (2) 『인허가는 나의 힘』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양천구청 공무원이 중고자동차매매센터와 유착하여 불법사항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TV속의 TV 프로그램 『중고차 매매센터 관련 양천구청 반론』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7일자)

2015서울조정 2250~2253	(각 정정·반론청구) 백○○ 對 인터넷 연합뉴스TV ^(2250·2251) , SBS 콘텐츠허브 ^(2252·225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연합뉴스TV : 『초등생 식칼 들고 등교 강제전학 요구에 고심 外』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뉴스면) • SBS 콘텐츠허브 : 『식칼 들고 등교한 초등학생!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모닝와이드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생인 신청인이 다수의 학생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등교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261	(정정청구) (재)○○○○○연구원 對 JTBC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감쪽같이 사라진 희귀 유물…』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연구원이 ○○○○랜드 개발현장에서 발굴된 비파형동검의 출토 사실을 숨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랜드 출토 비파형동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5년 3월 17일자 뉴스홈면)
2015서울조정 2262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JTBC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돈 값아라” 무허가 대부업자, 방망이 테러… 경찰 출동』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8일자 사회면) (2) 『“돈 값아라” 불법 대부업자, 야구 방망이 휘두르며 위협』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무허가 불법 대부업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돈 값아라” 불법 대부업자, 야구 방망이 휘두르며 위협』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7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63~2266, 2396~2399	(각 정정·손배청구) (주)○○○코퍼레이션 對 TV조선 ^(2263·2264, 2396~2399) , 인터넷 TV조선 ^(2265·2266)
조정대상	(1)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공영-기무사·방사청 유착 의혹』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5년 2월 12일자) (2) 뉴스쇼판 프로그램 『[TV조선 단독] 군피아, ○○공영에 대거 취업… 고문에 대표까지』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TV조선 2월 12일자 다시보기면) (3) 뉴스쇼판 프로그램 『○○공영, 인건비 부풀려 단가 뺏기기 의혹』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5년 2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전직 군 출신 고위인사 채용이 군 비리와 연결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267~2298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뉴스1코리아 ^(2267·2268) , 인터넷 서울신문 ^(2269·2270) , 인터넷 서울경제 ^(2271·2272) , 엑스포츠뉴스 ^(2273·2274) , 인터넷 스포츠경향 ^(2275·2276) , 인터넷 스포츠동아 ^(2277·2278) ,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2279·2280)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2281·2282) , 인터넷 헤럴드경제 ^(2283·2284) , e머니투데이 ^(2285·2286) , 뉴스핌 ^(2287·2288) , 조선닷컴 ^(2289·2290) , 아시아경제닷컴 ^(2291·2292) , 한강타임즈 ^(2293·2294) , CBC뉴스 ^(2295·2296) , 세계닷컴 ^(2297·2298)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대한항공 여승무원의 웃음, 사무장의 눈물… ‘그것이 알고 싶다’ 파장』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교수 제안에 검찰 조사서 입장 바꿔』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뉴스면) 외 1건 • 인터넷 서울경제 : 『대한항공, 박○○ 사무장 내쫓으려 짜라시 작업? 동료 여승무원 섬뜩한 미소 ‘경악’』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 엑스포츠뉴스 : 『‘그것이’ 대한항공 승무원, 미소에 누리꾼 ‘악마의 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뉴스면) • 인터넷 스포츠경향 : 『박○○ 사무장 ‘뒷통수’ 친 대한항공 女승무원의 ‘소름 돋는 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포츠동아 : 『대한항공 여승무원 교수직 제안에 양심 팔았나 ‘뜻 모를 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 『대한항공 여승무원 교수 제안 ‘의미심장 미소’… 그것이 알고 싶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뉴스면) 외 9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301	(정정청구) (사)○○○○○협회 對 인터넷 청년의사
조 정 대 상	『○○협 김○○ 회장, 한방병원 아닌 대학병원 응급실 갔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의료면)
신청인 주장	한 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단식하던 신청인 협회장이 악화되자 양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 회장 단식』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1일자 의료면)
2015서울조정 2304	(손배청구) 정○○ 對 MBN
조 정 대 상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육아업체 대표 잠적?』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육아앨범 제작 환불 관련 분쟁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상호를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모자이크 등 주의의무 이행)
2015서울조정 2305, 2306	(각 반론청구) 국립경찰병원 對 KBS-1TV ⁽²³⁰⁵⁾ , 헬스코리아뉴스 ⁽²³⁰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소아환자 안돼요!” 응급환자 가려받는 경찰 병원』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26일자) (2) 뉴스9 프로그램 『“경찰병원서 응급환자 이송 후 사망”... 누구 책임?』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30일자) • 헬스코리아뉴스 : 『경찰병원, 총체적 난국... 응급실 찾은 환자 진료거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의사면)
신청인 주장	경찰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 소아환자의 진료를 거부했고, 응급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하다 숨지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KBS-1TV/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헬스코리아뉴스/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경찰병원 응급환자 진료 거부’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5년 4월 13일자)

2015서울조정 2307~2319	(각 손배청구) 권 ○ 對 JTBC ⁽²³⁰⁷⁾ , 인터넷 JTBC ⁽²³⁰⁸⁾ , 인터넷 MBN ⁽²³⁰⁹⁾ , 인터넷 TV조선 ⁽²³¹⁰⁾ , MBN ⁽²³¹¹⁾ , TV조선 ⁽²³¹²⁾ , 연합뉴스TV ^(2313·2314) , 인터넷 연합뉴스TV ^(2315·2316) , 채널A ⁽²³¹⁷⁾ , 인터넷 채널A ⁽²³¹⁸⁾ , 더팩트 ⁽²³¹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뉴스현장 프로그램 『유대균 “계열사 돈, 구원파 자금으로 써”… 일부 혐의 부인』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JTBC 8월 27일자 뉴스홈면) 외 3건 • MBN : 뉴스8 프로그램 『유대균 첫 재판… 73억 횡령 일부 부인』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MBN 8월 27일자 뉴스면) 외 1건 • TV조선 : 뉴스1 프로그램 『유대균 등 ‘일시 석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8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28일자 다시보기면) 외 6건 • 연합뉴스TV : 뉴스와이 프로그램 『‘꽃꽃’ 박○○ 재판 내내 ‘한숨’만… 유대균 ‘긴장’』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8월 27일자 다시보기면) 외 10건 • 채널A : 뉴스특보 프로그램 『‘거구’ 유대균 초취… ‘꽃꽃 무사’ 박○○ 체념』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채널A 8월 27일자 다시보기면) 외 2건 • 더팩트 : 『‘서둘러 법원 빠져나가는 오○○ 전 대사’』 제하의 사진 (2014년 8월 27일자 TF포토면)
신청인 주장	유대균의 공판을 참관한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기각 (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2015서울조정 2320, 2321	(각 정정청구) 세종특별자치시 對 동아일보 ⁽²³²⁰⁾ , 동아닷컴 ⁽²³²¹⁾
조정대상	『도넛은 선거공신 헹가기』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2월 16일자 18면, 동아닷컴 2월 16일자 지방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가 세종축제 운영업체로 지방선거당시 이춘희 시장 캠프와 관련되었던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타)

2015서울조정 2322	(추후청구) 송○○ 외 5인 對 KBS-1TV
조정 대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투자금 돌려달라… 조폭 동원 감금』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행 결과	『‘조폭 동원해 투자자 감금 협박’ 송모 씨 등 5명 무혐의』 제하의 기사 (KBS 미디어 2015년 3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323~2330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공항공사 對 한국일보 ^(2323·2324) , 인터넷 한국일보 ^(2325·2326) , 더스쿠프 ^(2327·2328) , 인터넷 더스쿠프 ^(2329·2330)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김포공항 아울렛 상인들 생존권을 보장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9일자 사회면) • 더스쿠프 : 『김포공항 아울렛 상인들의 눈물, 희망은 사라지고 빛만 남았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26~27면, 인터넷 더스쿠프 2월 12일자 Current Economy면)
신청인 주장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입점 대형마트 상인들과 운영업체 사이에 발생한 판매 대금 관련 분쟁에 책임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 • 각 취하 (더스쿠프, 인터넷 더스쿠프/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331	(손배청구) 김○○ 對 KBS-1TV
조정 대상	뉴스9 프로그램 『황사 막는 이색 상품 ‘인기’』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황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자녀와 함께 외출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5서울조정 2332~2337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문화방송 對 한겨레21 ⁽²³³²⁾ , 인터넷 한겨레21 ⁽²³³³⁾ (각 정정·반론청구) 한겨레21 ^(2334·2335) , 인터넷 한겨레21 ^(2336·2337)
조정대상	(1) 『치밀하고 교묘한 MBC '해고 프로젝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4년 12월 2일자 14면~18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2일자 표지이야기면) (2) 『MBC 인사평가, 상호성과 공정성 대신 일방성만 강화』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4년 12월 8일자 26면~28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MBC가 경영진이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사원에게는 낮은 등급을 부여하는 등 인사평가에 객관성이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2338, 2339	(각 정정청구) 인○○ 對 불교닷컴 ⁽²³³⁸⁾ , 인터넷 불교신문 ⁽²³³⁹⁾
조정대상	• 불교닷컴 : 『인○○ 목사 사육에 국립공원 훼손』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3일자 불교뉴스면) • 인터넷 불교신문 : 『“인○○ 목사 사육으로 지리산 일대 훼손”』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근대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 취하 (불교닷컴/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인터넷 불교신문/사유 : 자진취하)
이행결과	『“인○○ 목사 사육에 국립공원 훼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불교닷컴 2015년 3월 16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340·2341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정대상	『“KBS에 이완구 보도 막는 세력 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KBS 내부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를 막는 세력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5서울조정 2346~2359</p>	<p>(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매경닷컴^(2346·2347), e머니투데이^(2348·2349), 뉴시스^(2350·2351), 시사포커스신문^(2352·2353), 인터넷 시민일보^(2354·2355), SSTV^(2356·2357), 인터넷 일요서울^(2358·2359)</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경닷컴 : 『[속보] 검찰 “신엄마 지시로 구원파 신도 박모 씨가 보관”』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 ‘1번’ 띠지·만년필 수십개 발견』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뉴시스 : 『[종합]檢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 ‘1번 가방’ 포함』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시사포커스신문 : 『[속보] 검찰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현금無, 만년필 30여 개 등 발견”』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시민일보 : 『검찰, 유병언 가방 ‘1번’ 포함 3개 또 찾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SSTV : 『유병언 가방 추가 발견, 현금은 없었다… 의혹단서는 확보 못 해』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서울 : 『검찰, 유병언 가방 또 발견… 도피자금·정관계 로비장 부는 없어』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구원파 신도에게 유병언의 도피용 가방을 보관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e머니투데이, 시사포커스신문, 인터넷 시민일보, 인터넷 일요서울/ 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매경닷컴, 뉴시스, SSTV/사유 : 기사삭제)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머니투데이 :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 ‘1번’ 띠지·만년필 수십 개 발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5월 18일자 사회면) • 시사포커스신문 :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현금無, 만년필 30여개 등 발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5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시민일보 : 『검찰, 유병언 가방 ‘1번’ 포함 3개 또 찾아』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5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서울 : 『검찰, 유병언 가방 또 발견… 도피자금·정관계 로비장 부는 없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5월 13일자 사회면)

<p>2015서울조정 2360~2395, 2400, 2611~2616, 2750~2759</p>	<p>(각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TV조선^(2360~2366), 인터넷 채널A^(2367~2371), 인터넷 YTN^(2372~2374), 뉴스1코리아^(2375~2377, 2611, 2616), 연합뉴스^(2378, 2379), 인터넷 연합 뉴스TV^(2380~2382, 2400), 인터넷 서울신문^(2383, 2384), KBS미디어^(2385, 2386, 2750~2752), 인터넷 이데일리⁽²³⁸⁷⁾, 아시아투데이닷컴^(2388, 2613, 2757), e머니투데이^(2389, 2612, 2753, 2754), 뉴스천지⁽²³⁹⁰⁾, 데일리한국⁽²³⁹¹⁾, SBS 콘텐츠허브⁽²³⁹²⁾, 인터넷 JTBC⁽²³⁹³⁾, 매경닷컴⁽²³⁹⁴⁾, 온라인 중앙일보⁽²³⁹⁵⁾, 아시아경제닷컴⁽²⁶¹⁴⁾, 노컷뉴스⁽²⁶¹⁵⁾, 인터넷 메트로⁽²⁷⁵⁵⁾, 쿠키뉴스⁽²⁷⁵⁶⁾, 뉴스1코리아⁽²⁷⁵⁸⁾, wow한국경제TV⁽²⁷⁵⁹⁾</p>
<p>조정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TV조선 : 『유대균, 일부 혐의 부인... 박○○, 혐의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뉴스면) 외 6건 • 인터넷 채널A : 『유대균 첫 재판서 ‘횡령 부인’... 형집행정지 신청』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외 4건 • 인터넷 YTN : 『유대균 일부 혐의 부인... 박○○ 모두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외 2건 • 뉴스1코리아 : 『“유대균 호위무사” 박○○ 씨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외 22건 • 연합뉴스 : 『유대균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박○○은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유대균 “회삿돈 개인적으로 안 써... 구원파 자금”』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외 2건 • 인터넷 서울신문 : 『박○○, 체포 당시의 꺾꺾한 모습 어디로 가고...』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8일자 사회면) 외 14매체
<p>신청인 주장</p>	<p>유대균의 도피를 돕다 체포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TV조선, SBS 콘텐츠허브)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인터넷 채널A^(1739병합) 250만원, 인터넷 YTN^(1747병합) 300만원, 연합뉴스^(1774병합) 100만원, 인터넷 연합뉴스TV^(1766병합) 100만원, KBS미디어^(1751병합) 200만원, 인터넷 JTBC^(1743병합) 5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1770병합) 100만원 - 동의 후 지급) • 각 기각 (뉴스1코리아,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이데일리, 아시아투데이닷컴, e머니투데이, 뉴스천지, 데일리한국, 매경닷컴,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메트로, 쿠키뉴스, 뉴스1코리아, wow한국경제TV/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인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이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이익보다 우선) • 취하 (노컷뉴스^(1763병합)/사유 -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2015서울조정 2401·2402, 2404·2405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시사위크 ^(2401·2402) , 노컷뉴스 ^(2404·240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위크 : 『[방산비리] 이○○ ○○그룹 회장 정조준… ‘비리화수분’ 주목』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7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공영 담당 기무사 요원 부인 ○○계열사 취업』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방산비리의 핵심인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간주

2015서울조정 2403	(정정청구)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사이버 성폭력, 그 후』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5서울조정 2406~2419, 2620~2623	(각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스타엔 ⁽²⁴⁰⁶⁾ , 업다운뉴스 ⁽²⁴⁰⁷⁾ , 이투데이 ⁽²⁴⁰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²⁴⁰⁹⁾ , 인터넷 YTN ⁽²⁴¹⁰⁾ , 인터넷 문화일보 ⁽²⁴¹¹⁾ , 민중의소리 ⁽²⁴¹²⁾ , 인터넷 서울경제 ⁽²⁴¹³⁾ , 인터넷 서울신문 ⁽²⁴¹⁴⁾ , 티비리포트 ⁽²⁴¹⁵⁾ , 국제뉴스 ⁽²⁴¹⁶⁾ , 뉴스천지 ⁽²⁴¹⁷⁾ , 뉴스캔 ⁽²⁴¹⁸⁾ , 뉴시스 ⁽²⁴¹⁹⁾ , 인터넷 스포츠조선 ⁽²⁶²⁰⁾ , 스타뉴스 ⁽²⁶²¹⁾ , 연합뉴스 ⁽²⁶²²⁾ ,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²⁶²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엔 : 『하강레포츠 타던 어린이 추락사… 원인은 안전수칙 위반? ‘안전 불감증 증폭』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e토픽면) · 업다운뉴스 : 『○○○ 사고, 에이 잘 좀 하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뉴스면) 외 1건 · 이투데이 : 『하강레포츠 기구 타던 어린이 추락사』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화제면) 외 1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하강레포츠 타던 어린이 추락사, 24m 추락 후 과다출혈로 사망… 사건 당시 관계자 달랑 1명』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놀이시설 타던 12세 어린이 20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뉴스면) · 인터넷 문화일보 : 『보은 놀이공원서 기구타던 12세 어린이 추락해 숨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 : 『12세 어린이 놀이기구 타다 추락해 숨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사회면) 외 7개 매체
신청인 주장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의 원인이 된 놀이기구를 신청인 회사가 설치·운영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스타엔, 이투데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민중의소리, 인터넷 서울경제, 인터넷 서울신문, 티비리포트, 국제뉴스, 뉴스천지, 뉴스캐, 뉴시스, 연합뉴스/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업다운뉴스, 인터넷 문화일보, 인터넷 스포츠조선, 스타뉴스, 인터넷 코리아데일리/사유 : 기사삭제) • 취하 (인터넷 YTN/사유 : 보도약속)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엔 : 『하강레포츠 타던 어린이 추락사… 원인은 안전수칙 위반? ‘안전불감증 증폭’』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10일자 e토픽면) • 이투데이 : 『하강레포츠 기구 타던 어린이 추락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6일자 화제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하강레포츠 타던 어린이 추락사, 24m 추락 후 과다 출혈로 사망… 사건 당시 관계자 달랑 1명?』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6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 : 『12세 어린이 놀이기구 타다 추락해 숨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보은 놀이공원서 기구타던 12세 어린이 추락해 숨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6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2015서울조정 2420	(정정청구) 국가인권위원회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경 인권침해” 지난해 1538건 진정… 인권위, 8건만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4일자 6면) (2) 『긴급구제 결정, 법령·정책권고 등 모두 감소… ‘거꾸로 인권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4일자 6면)
신청인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구제 실적을 축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2일자 알림면)

2015서울조정 2421·2422	(정정·손배청구) ○○○○지주(주)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부산 ○○○○지주, 소액주주운동 억압 ‘원성’』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액주주의 경영권 참여를 억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부산 ○○○○지주, 소액주주운동 억압 ‘원성’』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10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2423	(손배청구) 양○○ 외 1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동거녀 살해사건』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살인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을 촬영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4백만원 지급)

2015서울조정 2424~2427	(각 정정청구) ○○○ 사태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외 1인 對 미디어펜 ⁽²⁴²⁴⁾ , 인터넷 시사뉴스 ⁽²⁴²⁵⁾ (정정·손배청구) 김○○ 對 미디어펜 ^(2426·242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펜 : 『조억동 경기광주시장 전교조에 백기 들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시사뉴스 : 『조억동 광주시장, 전교조에 ‘무조건 굴복’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교조와 연관되었고, 사학죽이기에 앞장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미디어펜^(2424, 2426), 인터넷 시사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미디어펜⁽²⁴²⁷⁾/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펜 : 『경기광주시장 전교조에 백기 들었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시사뉴스 : 『‘조억동 광주시장, 전교조에 굴복’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428, 2429, 2499, 2500	(각 손배청구) 정○○ 對 YTN ^(2428, 2499) , 인터넷 YTN ^(2429, 2500)
조 정 대 상	뉴스Q 프로그램 『취객 매달고 경찰차 30미터 ‘아찔 운행’』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3월 7일자, 인터넷 YTN 3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이 취객을 매달고 운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보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YTN⁽²⁴²⁸⁾, 인터넷 YTN⁽²⁴²⁹⁾/사유 : 자진취하)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YTN⁽²⁴⁹⁹⁾, 인터넷 YTN⁽²⁵⁰⁰⁾/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금액지급)

2015서울조정 2430~2435	(각 정정·손배청구) 강○○ 對 한겨레21 ^(2430·2431) , 인터넷 한겨레 ^(2432·2433) , 인터넷 한겨레21 ^(2434·2435)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겨레21 : 『‘중편이 낳은 괴물’들 막장 배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9일자 20면~27면, 인터넷 한겨레21 3월 4일자 뉴스섹션면) 인터넷 한겨레 : 『‘중편이 낳은 괴물’들의 거친 입·독한 입·쏟린 입』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정치, 사회분야에 대해 발언할 만한 전문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결과	『‘중편이 낳은 괴물’들 막장 배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인터넷 한겨레21 2015년 3월 27일자 뉴스섹션면)

2015서울조정 2436~2445	(각 추후청구) 장○○ 對 KBS-1TV ⁽²⁴³⁶⁾ , KBS-2TV ⁽²⁴³⁷⁾ , MBC-TV ⁽²⁴³⁸⁾ , MBN ⁽²⁴³⁹⁾ , SBS-TV ⁽²⁴⁴⁰⁾ , YTN ⁽²⁴⁴¹⁾ , 연합뉴스 TV ⁽²⁴⁴²⁾ , e머니투데이 ⁽²⁴⁴³⁾ , 온라인 중앙일보 ⁽²⁴⁴⁴⁾ , 인터넷 한겨레 ⁽²⁴⁴⁵⁾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문화재 지킴이가 도굴… 보물급도 손대』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일자) KBS-2TV :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 『도굴 문화재 은닉 적발… 사립 박물관』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1일자) MBC-TV : 정오뉴스 프로그램 『문화재 지킴이가 ‘도굴’… “문화재 2백33점 훔쳐”』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일자) MBN : 뉴스8 프로그램 『문화재 지킴이가 문화재 2백여 점 도굴』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일자) SBS-TV : 뉴스8 프로그램 『‘고양이에게 생선을?’… 문화재 지킴이가 도굴』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일자) YTN : 뉴스Q 프로그램 『‘문화 지킴이’가 문화재 도굴』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일자)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문화재를 도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기각 (사유 : 범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

2015서울조정 2446~2449	(각 정정·손배청구) (주)○○○산후조리원 對 JTBC ^(2446·2447) , 인터넷 JTBC ^(2448·2449)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아기·산모에게 병 주는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 급증』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12월 4일자, 인터넷 JTBC 12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산후조리원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450~2452	(각 정정청구) 구립○○노인요양센터 對 MBC-TV ⁽²⁴⁵⁰⁾ , SBS-TV ⁽²⁴⁵¹⁾ , JTBC ⁽²⁴⁵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수포라고 하더니 다리절단까지?!』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7일자) • SBS-TV : 8뉴스 프로그램 『아픈 노인 방치·폭행... 못 믿을 요양병원·시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7일자)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멀쩡하던 다리, 절단 수술까지...” 노인잡는 요양 시설』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센터의 과실로 입소 노인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453, 2454	(각 정정청구) 강남구청 對 머니투데이 ⁽²⁴⁵³⁾ , e머니투데이 ⁽²⁴⁵⁴⁾
조 정 대 상	『구룡마을 개발안 또 퇴짜... 주민들 한숨』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24면, e머니투데이 3월 6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청과 SH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업무 관련 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455	(손배청구) 정○○ 對 인사이트
조 정 대 상	『‘○○○○○○’의 불량 핸드백 A/S 대응법』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8일자 Consumer면)
신청인 주장	제조업체 과장인 신청인이 제품하자 관련 언론의 질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456·2457, 2468~2473, 2519·2520	(각 정정·손배청구) (사)○○○○○연합 對 노컷뉴스 ^(2456·2457) , 인터넷 국민일보 ^(2468·2469) , 뉴스파워 ^(2470·2471) , 인터넷 CTS기독교TV ^(2472·2473) , 경제투데이 ^(2519·2520)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신학기 이단 포교활동 주의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종교면) • 인터넷 국민일보 : 『○○○○○협의회 대학가에 이단 경계주의보 발령』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5일자 시사면) 외 1건 • 뉴스파워 : 『월간 〈현대종교〉 대학별 이단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교계뉴스면) • 인터넷 CTS기독교TV : 『주간 교계 기자수첩』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뉴스면) • 경제투데이 : 『“○○○ 조심하세요” 3월 신입생들 “주의해야”… “일대일로 친해진 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7일자 종합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이단 사이버 종교단체이고, 포교활동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뉴스파워/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노컷뉴스, 인터넷 국민일보, 인터넷 CTS기독교TV) • 취하 (경제투데이/사유 : 반론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파워 : 『○○○(○○○○○연합)이단 포교 활동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7일자 교계뉴스면) • 경제투데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일자 종합면)
2015서울조정 2458~2467	(각 추후청구) 문○○ 對 온라인 중앙일보 ⁽²⁴⁵⁸⁾ , SBS 콘텐츠허브 ⁽²⁴⁵⁹⁾ , 아시아경제닷컴 ⁽²⁴⁶⁰⁾ , e머니투데이 ⁽²⁴⁶¹⁾ , 뉴스1코리아 ⁽²⁴⁶²⁾ , 연합뉴스 ⁽²⁴⁶³⁾ , 인터넷 MBN ⁽²⁴⁶⁴⁾ , 매경닷컴 ⁽²⁴⁶⁵⁾ , 줌 ⁽²⁴⁶⁶⁾ , 노컷뉴스 ⁽²⁴⁶⁷⁾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중앙일보 : 『대한○○연맹 회장,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사회면) 외 2건 • SBS 콘텐츠허브 : 『‘정치권 친분’ 사기행각 대한○○연맹 회장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억대 사기’ 대한○○연맹 회장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대한○○연맹 문○○ 회장, 사기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사회면) 외 1건 • 뉴스1코리아 : 『대한○○연맹 문○○ 회장, 사기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8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정치권 친분’ 사기행각 대한○○연맹 회장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스포츠연맹 회장인 신청인이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474	(정정청구) 보건복지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9일자 8면) (2)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10면) (3) 『국내업체, 항암제 사업 손잡았다 올 초 ‘중단’』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맞춰 발표한 의약품 수출계약 등의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2015서울조정 2475	(정정청구) 유○○ 對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마약 했다가 징역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마약 투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마약 했다가 징역형』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기사 수정 (2015년 3월 2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476·2477	(정정·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학원 對 내외통신뉴스
조 정 대 상	『제천 모 사회복지법인 ‘인권유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이 기부금 횡령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478~2486	(각 손배청구) 추○○ 對 인터넷 TV조선 ^(2478, 2479) , 인터넷 채널A ^(2480, 2481) , 인터넷 JTBC ⁽²⁴⁸²⁾ , 인터넷 MBN ⁽²⁴⁸³⁾ , 인터넷 연합뉴스TV ⁽²⁴⁸⁴⁾ , KBS미디어 ⁽²⁴⁸⁵⁾ , iMBC ⁽²⁴⁸⁶⁾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TV조선 : 『[주말뉴스 일] ‘유병언 측근’ 텔런트 전양자 내일 첫 재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4일자 사회면) 외 16건 • 인터넷 채널A : 『텔런트 전양자,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자 사회면) 외 14건 • 인터넷 JTBC : 『‘유병언 측근’ 전양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자 사회면) 외 3건 • 인터넷 MBN : 『전양자, 초체한 모습으로 재판 출석』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자 다시보기면) 4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유병언 측근 텔런트 전양자, 내일 첫 재판』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외 6건 • KBS미디어 외 1개 매체
신청인 주장	유병언의 측근인 모 텔런트의 공판에 동행한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기각 (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2015서울조정 2491~2496	(각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JTBC ⁽²⁴⁹¹⁾ , iMBC ⁽²⁴⁹²⁾ , 인터넷 MBN ⁽²⁴⁹³⁾ , 인터넷 TV조선 ⁽²⁴⁹⁴⁾ , 인터넷 연합뉴스TV ⁽²⁴⁹⁵⁾ , 인터넷 채널A ⁽²⁴⁹⁶⁾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JTBC : 『‘유병언 측근’ 전양자 “모든 혐의 인정”… 선처 호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6일자 사회면) 외 3건 • iMBC : 『[연예 투데이] 유병언 측근 배우 전양자,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6일자 다시보기면) • 인터넷 MBN : 『금수원 대표 전양자 “법 몰랐다” 선처 호소』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일자 다시보기면) • 인터넷 TV조선 : 『직업 뭘죠?... 텔런트 전양자 “노른자 쇼핑 대표”』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6일자 사회면) 외 5건 • 인터넷 연합뉴스TV : 『텔런트 전양자 2차 공판 출석, 혐의 재차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사회면) 외 5건 • 인터넷 채널A : 『檢, 유대균에 징역 4년- 전양자 징역 1년 구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7건
신청인 주장	유병언의 측근인 모 텔런트의 공판에 동행한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기각 (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2015서울조정 2501	(손배청구) 시○○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황혼의 스캔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사적 내밀 영역을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3백만원 지급)
2015서울조정 2504	(정정청구) (사)○○○○○○연합 對 프라임경제
조 정 대 상	『“경찰보다 무서운 ○○연” 공갈협박 시달리는 특선판매업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5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합이 특선판매 상공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505·2506	(정정·손배청구) (주)엠비씨경남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MBC 주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뽕튀기 정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 공동 개최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의 시설비가 수익원 부풀려져 정산보고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MBC경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509·2510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불교닷컴
조 정 대 상	『○○대 이사장 소송비는 누구 돈일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불교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교 사무처 직원인 신청인들이 직원 사이에서 평판도 안 좋고, 진급도 못하던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5서울조정 2511, 2512	(각 정정청구) 한국석유공사 對 The Korea Times ⁽²⁵¹¹⁾ , 인터넷 The Korea Times ⁽²⁵¹²⁾
조정대상	『\$31.4 mil. missing from HSBC』 제하의 기사 (The Korea Times 2015년 3월 5일자 1면, 인터넷 The Korea Times 3월 4일자 National면)
신청인 주장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 자치정부에게 자원개발 취득 대가로 송금한 서명보너스가 뇌물일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행결과	『Regarding the article entitled, ‘\$31.4 mil. missing from HSBC’』 제하의 기사 (인터넷 The Korea Times 2015년 3월 31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2513~2518	(각 정정청구) ○○○○○○ 인권연대 ○○○ 외 1인 對 닥터스뉴스 ⁽²⁵¹³⁾ , 인터넷 병원신문 ⁽²⁵¹⁴⁾ , 메디칼타임즈 ⁽²⁵¹⁵⁾ , 인터넷 메디칼업저버 ⁽²⁵¹⁶⁾ , 인터넷 의학신문 ⁽²⁵¹⁷⁾ , 인터넷 후생신보 ⁽²⁵¹⁸⁾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닥터스뉴스 : 『허위사실 주장 에이즈 환자에 피해주는 것』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의원·병원면) • 인터넷 병원신문 : 『○○○○요양병원,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에이즈 감염인 단체측 일방 주장에 해명자료 배포』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뉴스/병원면) • 메디칼타임즈 : 『에이즈 환자에게 명예훼손 당했다는 요양병원,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의사·개원면) 외 1건 • 인터넷 메디칼업저버 : 『에이즈 환자 방치 VS 국립에이즈요양병원 건립 위한 포석』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4일자 병의원면) • 인터넷 의학신문 : 『○○○○요양병원, ‘KBS 추적60분’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의원·병원면) • 인터넷 후생신보 : 『“병원 부주의로 환자 사망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병의원면)
신청인 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모 요양병원의 에이즈 환자 사망 및 차별행위 안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병원신문, 메디칼타임즈, 인터넷 의학신문, 인터넷 후생신보/내용 : 반론보도) • 취하 (인터넷 의학신문/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인터넷 메디칼업저버/사유 : 자진취하)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닥터스뉴스 : 『‘에이즈 단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5일자 의원·병원면) • 인터넷 병원신문 : 『‘에이즈 감염인 단체 국립요양병원 설립 요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뉴스/병원면) • 메디칼타임즈 : 『‘에이즈 감염인 및 동성애 단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6일자 의사·개원면) • 인터넷 의학신문 : 『‘에이즈 감염인 단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의원·병원면) • 인터넷 후생신보 : 『‘○○○○요양병원, 환자 인권침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병의원면)
--------------	--

2015서울조정 2521	(정정청구) 대한민국○○○○○ 對 JTBC
조정 대상	뉴스룸 프로그램 『사고·먹튀 까지... ‘부실’ ○○대장정 추적』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6일자)
신청인 주장	○○대장정을 주최하는 신청인 단체가 정식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국세청 고유 번호도 가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결과	『부실 ○○대장정 단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5년 4월 20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522·2523	(정정·손배청구) (주)○○○○그룹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정 대상	『○○○피자에서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피자 가맹점주들이 매달 지급하는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피자에서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4월 3일자 기업면)

<p>2015서울조정 2524~2573, 3617~3666</p>	<p>(각 반론·손배청구) 이○○ 對 채널A^(2524·2525), TV조선^(2526·2527), 문화일보^(2528·2529), 인터넷 문화일보^(2530·2531), 연합뉴스 TV^(2532·2533), 연합뉴스^(2534·2535), KBS-1TV^(2536·2537), KBS미디어^(2538·2539), SBS-TV^(2540·2541), SBS 콘텐츠허브^(2542·2543), 노컷뉴스^(2544·2545), 뉴시스^(2546·2547), 데일리인^(2548·2549), e머니투데이^(2550·2551), 미디어펜^(2552·2553), 세계닷컴^(2554·2555), 인터넷 여성신문^(2556·2557), 쿠키뉴스^(2558·2559), 인터넷 한겨레^(2560·2561), 인터넷 TBS^(2562·2563), 네이버^(2564·2565), 다음^(2566·2567), 네이트^(2568·2569), 구글^(2570·2571), 줌^(2572·2573)</p> <p>(각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경향신문^(3617·3618), 노컷뉴스^(3619·3620), e머니투데이^(3621·3622), 인터넷 메트로^(3623·3624), 세계닷컴^(3625·3626), 인터넷 스포츠경향^(3627·3628), 아시아투데이닷컴^(3629·3630), 인터넷 일요신문^(3631·3632), 인터넷 뉴스신문고^(3633·3634), 조선닷컴^(3635·3636), 인터넷 헤럴드경제^(3637·3638), 연합뉴스^(3639·3640), 뉴시스^(3641·3642), 뉴스1코리아^(3643·3644), KBS미디어^(3645·3646), iMBC^(3647·3648), SBS 콘텐츠허브^(3649·3650), MBN^(3651·3652), 인터넷 MBN^(3653·3654), 현대HCN관악방송^(3655·3656), 네이버^(3657·3658), 다음^(3659·3660), 네이트^(3661·3662), 구글^(3663·3664), 줌^(3665·3666)</p>
<p>조정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대 교직원의 막말』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2일자) • TV조선 :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대 성희롱 교직원, 행정소송 패소』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3일자) • 문화일보 : 『이번엔 교직원야... 성추문 '점입가경' ○○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인터넷 문화일보 2월 12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 뉴스워치 프로그램 『“성관계로 유혹” 성희롱·막말 일삼은 ○○대 교직원』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2일자) • 연합뉴스 : 『“성관계로 유혹” 성희롱·막말 일삼은 ○○대 교직원』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성희롱·막말 일삼은 ○○대 교직원 징계는 정당』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2일자, KBS미디어 2월 12일자 사회면) • SBS-TV : 저녁8시뉴스 프로그램 『성희롱·막말 일삼은 ○○대 교직원 징계는 정당』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2일자, SBS콘텐츠허브 2월 12일자 사회면) 외 40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모대학 조교와 학생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검찰조사에서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p>
<p>처리 결과</p>	<p>각 기각 (사유 : 조정대상보도가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것인데다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p>

2015서울조정 2574·2575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60분 프로그램 『당신의 열정을 헐값에 삽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게가 없다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8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2576	(정정청구) 인천광역시청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유정복 시장, 조카·처남 3명 상습 채용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7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인천광역시가 유정복 시장 조카를 시장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577, 2578	(각 손해청구) 한○○ 對 MBN ⁽²⁵⁷⁷⁾ , 인터넷 MBN ⁽²⁵⁷⁸⁾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4살 어린이의 호기심일까? 성추행일까?』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3월 19일자, 인터넷 MBN 3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아인 신청인이 같은 어린이집 남자 아동들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특정될 수 있게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579·2580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포천뉴스
조 정 대 상	『○○농협 조합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581~2589	(각 정정청구) (사)○○○○협회 對 조선일보 ⁽²⁵⁸¹⁾ , 조선닷컴 ⁽²⁵⁸²⁾ , 동아일보 ⁽²⁵⁸³⁾ , 동아닷컴 ⁽²⁵⁸⁴⁾ , 세계일보 ⁽²⁵⁸⁵⁾ , 세계닷컴 ⁽²⁵⁸⁶⁾ , 중앙일보 ⁽²⁵⁸⁷⁾ , 온라인 중앙일보 ⁽²⁵⁸⁸⁾ , 조선비즈닷컴 ⁽²⁵⁸⁹⁾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방통위, 비지상파 피해 알고도 광고총량제 강행』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1일자 2면) 외 3건 조선닷컴 : 『방통위 ‘광고 총량제’ 강행, 朴 정부 논문 지상파만』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오피니언면) 동아일보 : 『방통위는 지상파 특혜 주는 광고총량제에서 손떼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31면, 동아닷컴 3월 4일자 오피니언면) 세계일보 : 『신문協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특혜 정책”』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10면, 세계닷컴 3월 2일자 뉴스면) 중앙일보 : 『광고총량제 저지 위해 행동 나설 것』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3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2일자 뉴스면) 조선비즈닷컴 : 『[오늘의 세상] 방통위, 非지상파 被害 알고도 광고총량제 강행』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1일자 뉴스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한 연구소의 조사에서 광고주의 81.7%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광고를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취하 (조선일보, 조선닷컴, 세계일보, 세계닷컴,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선비즈닷컴/사유 : 정정보도) 각 기각 (동아일보, 동아닷컴/사유 : 당사자 부적격)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1월 31일자 A2면 ‘방통위, 비지상파 피해 알고도 광고총량제 강행’ 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2면, 조선닷컴, 조선비즈닷컴 4월 18일자 사회면) 세계일보 : 『[바로잡습니다] 3월 3일자 10면 ‘신문協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특혜 정책” 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1일자 2면, 세계닷컴 4월 21일자 사회면)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3월 2일자 3면 ‘광고총량제 저지 위해 행동 나설 것’ 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4일자 16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24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590~2593	(각 정정·손배청구) 영화진흥위원회 對 에너지경제 ^(2590·2591) , 인터넷 에너지경제 ^(2592·2593)
조정 대상	『누가 탄파를 투사로 만드는가』 제하의 기사 (에너지경제 2015년 3월 5일자 19면, 인터넷 에너지경제 3월 5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분류 규정을 개정하여 특정 영화의 상영을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p>2015서울조정 2594~2602</p>	<p>(각 손해청구) 김○○ 對 인터넷 JTBC⁽²⁵⁹⁴⁾, KBS-1TV⁽²⁵⁹⁵⁾, KBS미디어⁽²⁵⁹⁶⁾, 세계닷컴⁽²⁵⁹⁷⁾, 인터넷 스포셜경제⁽²⁵⁹⁸⁾, 게임플⁽²⁵⁹⁹⁾, 인터넷 일요서울⁽²⁶⁰⁰⁾, 스포츠서울⁽²⁶⁰¹⁾, 이타임즈⁽²⁶⁰²⁾</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JTBC : 『제 역할 못하고 내부 갈등만... ○○위 폐지 추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문화면)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성추행·복무 태만... ○○위 ‘총체적 문제’』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7일자, KBS미디어 11월 17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추문에 흔들리는 ○○위... 알력 싸움에 업계 피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포셜경제 : 『게임물관리위원회 설치한 號, ‘존폐’ 갈림길 내몰린 까닭』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자 사회면) • 게임플 : 『○○위, 존폐 위기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뉴스면) 외 3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모 기관의 계약직 여성노조대의원인 신청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성희롱 사건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문제 제기가 사측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p>
<p>2015서울조정 2603~2606</p>	<p>(각 정정·반론청구) ○○○○○대학교 對 인터넷 한국일보^(2603·2604), 한국일보^(2605·2606)</p>
<p>조 정 대 상</p>	<p>『기성회비 반환 다가오자 ○○○○대, 교직원들에 평평』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3월 5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5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모 대학이 기성회비 제도 폐지를 앞두고 회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고, 교과부의 기성회비 관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p>
<p>이 행 결 과</p>	<p>『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4월 14일자 사회면)</p>
<p>2015서울조정 2607</p>	<p>(손배청구) 이○○ 對 SBS-TV</p>
<p>조 정 대 상</p>	<p>8시뉴스 프로그램 『쌍둥이 낳는 달 있다 황당 한의사 자격정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1일자)</p>
<p>신청인 주장</p>	<p>자격 정지를 받은 한의사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한의사인 신청인의 초상을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p>

2015서울조정 2608~2610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KT, 건물 옥상에 420톤 구조물… 입주민 불안』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아관련 서비스 업체가 입주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2015서울조정 2617, 2618	(각 정정청구) 영화진흥위원회 對 경향신문 ⁽²⁶¹⁷⁾ , 인터넷 경향신문 ⁽²⁶¹⁸⁾
조 정 대 상	『부산국제영화제 흔드는 손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3월 18일자 영화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18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영화진흥위원회가 등급제 개정을 추진했고, 영화제 출품작들에 대한 사전검열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영화진흥위원회 사전검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4월 17일자 24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16일자 문화면)
2015서울조정 2619	(정정청구) 농업회사법인(주)○○○○○ 對 푸드투데이
조 정 대 상	『[단독]해썬 인증 업체 불법 지하수로 도축… 위생 상태는?』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건설사에 지하수시설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624~262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산업(주) 외 1인 對 업코리아 ^(2624~2626) , 뉴스 뷰 ^(2627~262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코리아 : 『○○시청 ○○○○과, ‘불법 종합선물세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6일자 지역면) 뉴스뷰 : 『○○시청 ○○○○과, ‘불법 종합선물세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시청 공무원이 시청 외주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630·2631	(정정·손배청구) ○○○○요양병원 외 1인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한국, “반기문 자랑스럽다” 말할 자격 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병원이 에이즈환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질병관리본부와의 위탁사업이 해지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6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632	(정정청구) ○○캐피탈(주) 對 시사H
조 정 대 상	『○○과 호텔 사이 무슨 일 있었기에』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8일자 36면~4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소기업인에게 거액을 대출해 주고 조직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방해하여 중소기업 소유의 호텔을 강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633	(반론청구) (사)○○○○○○○○기관협회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노예같은 삶… 최저임금 받는 ‘요양보호사’』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의 회원 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634~2636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선데이뉴스쇼 프로그램 『“쌍욕대응 vs 기획 고소” 흥가혜 논란, 쟁점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합의금 목적 고소남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인터넷 채널A 2015년 5월 7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637·2638	(정정·손배청구) (사)○○○○○○연합 외 2인 對 프라임경제
조 정 대 상	『“경찰보다 무서운 한노연” 공갈협박 시달리는 특선판매업체』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5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특선판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2639, 2640	(각 반론청구) 국립경찰병원 對 MBN ⁽²⁶³⁹⁾ , 인터넷 MBN ⁽²⁶⁴⁰⁾
조 정 대 상	굿모닝 MBN 프로그램 『경찰병원에서 성추행...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2월 9일자, 인터넷 MBN 2월 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국립경찰병원이 소속 고위 공무원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찰병원 성추행 조직적 은폐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5년 4월 1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641	(정정청구) 성남시청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이번엔 ‘공짜 산후조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5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성남시의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연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고)

2015서울조정 2642, 2643, 2680, 2746, 2861~2863	(각 반론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기독교일보⁽²⁶⁴²⁾,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²⁶⁴³⁾, 뉴스미션⁽²⁶⁸⁰⁾, 기독교인뉴스⁽²⁷⁴⁶⁾ (정정·반론·손배청구) 노컷뉴스^(2861~286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독교일보 : 『뉴욕교협 이단대책협 “31일부터 여는 구원파 맨하탄 세미나 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8일자 교단/단체면)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뉴욕교협 이단대책협 “31일부터 여는 구원파 맨하탄 세미나 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선교면) • 뉴스미션 : 『한교연, ‘박○○ 씨’ 관련 피해방지 대책 세워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0일자 교계면) • 기독교인뉴스 : 『한교연, ‘박○○ 씨’ 관련 피해방지 대책 세워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6일자 교단면) • 노컷뉴스 : 『‘수백억대 주식 사기’ 박○○ 씨 첫 공판서 모두 부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구원파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 대표 목사가 주식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제목을 뽑아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인터넷 기독교일보,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뉴스미션, 기독교인뉴스/사유 : 반론보도) • 조정성립 (노컷뉴스/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독교일보 : 『‘구원파 맨하탄 세미나 주의’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4일자 교단/단체면)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구원파 맨하탄 세미나 주의’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6일자 선교면) • 뉴스미션 : 『[한교연, ‘박○○ 씨’ 관련 피해방지 대책 세워달라]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교계면) • 기독교인뉴스 : 『한교연 ○○○○선교회 박○○ 불법성 폭로 기자회견 가져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1일자 교단면) • 노컷뉴스 : 『‘수백억대 주식 사기’ 혐의 박○○ 씨 첫 공판서 모두 부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644~2664, 2668~2670	(각 반론·손배청구) 최○○ 對 채널A ^(2644·2645) , 동아일보 ^(2646·2647) , wow 한국경제TV ^(2648·2649) , YTN ^(2650·2651) , 이투데이 ^(2652·2653) , TV조선 ^(2654·2655, 2662~2664) , 인터넷 헤럴드경제 ^(2656·2657) , 아주뉴스 ^(2658·2659) , 뉴데일리 ^(2660·2661) , 조선닷컴 ^(2668~2670)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시사인사이드 프로그램 『홍가혜 측 변호인, 악플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보니...』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7일자) • 동아일보 : 『홍가혜 측 변호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사회면) • wow 한국경제TV : 『비방댓글 고소 홍가혜 변호사, 피고소인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0일자 뉴스면) • YTN : 이슈오늘 프로그램 『홍가혜 측 변호사 “합의가 장난이야?” 논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7일자) • 이투데이 : 『홍가혜 변호사, 2분 만에 문자 5통 “싫으면 합의하세요”』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사회면) 외 5개 매체
신청인 주장	홍가혜 변호인인 신청인이 피소된 네티즌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YTN/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채널A, 동아일보, TV조선/사유 : 자진취하) • 각 취하 (이투데이,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선닷컴/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wow한국경제TV, 아주뉴스, 뉴데일리/사유 : 반론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이슈오늘 프로그램 『「홍가혜 측 변호사 “합의가 장난이야?”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2일자) • wow 한국경제TV : 『비방댓글 고소 홍가혜 변호사와 피고소인 문자 내용에 누리꾼 관심 폭발』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최신뉴스면) • 아주뉴스 : 『[반론보도문] 홍가혜 측 변호사가 “1년 죽어라 일하면 1000만원 못 버냐” 고 말한 경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0일자 사회면) • 뉴데일리 : 『[반론보도문] 홍가혜 측 변호사가 피고소인에게 “노가다를 하든 알아서 돈 만들어라” 하고 말한 이유』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5일자 사회면)

<p>2015서울조정 2665~2667</p>	<p>(각 정정청구) 신○○ 對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p>
<p>조 정 대 상</p>	<p>(1) 『MBC 나온 그 ○○○구 신○○ 산부인과 ‘과실치사 검찰조사만 3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커뮤니티면) (2) 『신○○ 산부인과 ‘산모사망 보도 기자 고소’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커뮤니티면) (3) 『신○○ 산부인과 ‘의료사고 검찰수사 기사 내려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커뮤니티면)</p>
<p>신청인 주장</p>	<p>산부인과 의사인 신청인이 의료사고로 전과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MBC 나온 그 ○○○구 신○○ 산부인과 ‘과실치사 검찰조사만 3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사진 삭제 (2015년 4월 27일자 커뮤니티면)</p>
<p>2015서울조정 2671~2676</p>	<p>(각 손해청구) 김○○ 對 KBS-1TV⁽²⁶⁷¹⁾, KBS미디어⁽²⁶⁷²⁾, MBN⁽²⁶⁷³⁾, 인터넷 MBN⁽²⁶⁷⁴⁾, TV조선⁽²⁶⁷⁵⁾, 인터넷 TV조선⁽²⁶⁷⁶⁾</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뉴스7 프로그램 『김해서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7명 수배』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KBS미디어 2월 11일자 사회면 외 2건) • MBN : 뉴스8 프로그램 『캄보디아인 수십 명 패싸움... ‘정글도’까지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MBN 2월 11일자 사회면) • TV조선 : 뉴스판 프로그램 『“우리 애를 때려?”... 집단 패싸움 벌인 캄보디아인』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TV조선 2월 11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집단난투극을 보도 하면서 식당 상호를 무단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PR, 후속보도, 손해배상 2백만원 지급)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MBN, 인터넷 MBN/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 각 취하 (KBS-1TV, KBS 미디어/사유 : 관할합의)
<p>2015서울조정 2677</p>	<p>(정정청구) ○○○○ (주) 對 MBC-TV</p>
<p>조 정 대 상</p>	<p>(1)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알고계십니까, 산분해간장편』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5일자) (2) 경제매거진 M 프로그램 『Y리포트 산분해간장편』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7일자) (3) 기분좋은 날 프로그램 『한국인의 힘! 고추장, 된장, 간장 - 우리 장의 모든 것』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1일자)</p>

신청인 주장	산분해간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행 결과	TV속의 TV 프로그램 『〈산분해간장의 유해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6일자)

2015서울조정 2678·2679	(정정·손배청구) 윤○○ 對 서울일보
조정 대상	『○○시 공보관은 언론간의 분열과 불화 조성』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일자 19면)
신청인 주장	공보담당 공무원인 신청인이 시청 출입기자간 불화를 조성하고 예산을 사채처럼 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시 공보담당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오피니언면, 인터넷 서울일보 4월 30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2681~2745	(각 정정청구) 윤○○ 對 인터넷 의정부신문 ⁽²⁶⁸¹⁾ , 인터넷 이데일리 ⁽²⁶⁸²⁾ , 온라인 중앙일보 ⁽²⁶⁸³⁾ , 쿠키뉴스 ⁽²⁶⁸⁴⁾ , 사람일보 ⁽²⁶⁸⁵⁾ , 투데이코리아 ⁽²⁶⁸⁶⁾ , 인터넷 더데일리 포커스 ⁽²⁶⁸⁷⁾ , 인터넷 무예신문 ⁽²⁶⁸⁸⁾ , 폴리뉴스 ⁽²⁶⁸⁹⁾ , 디지털 함께걸음 ⁽²⁶⁹⁰⁾ , 인터넷 헤럴드경제 ⁽²⁶⁹¹⁾ ,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²⁶⁹²⁾ , e머니투데이 ⁽²⁶⁹³⁾ , 연합뉴스 ⁽²⁶⁹⁴⁾ , 줌 ⁽²⁶⁹⁵⁾ , 에이블뉴스 ^(2696, 2706) , 오마이뉴스 ⁽²⁶⁹⁷⁾ , 인터넷 한겨레 ⁽²⁶⁹⁸⁾ , 디지털 포천신문 ⁽²⁶⁹⁹⁾ , 프레시안 ⁽²⁷⁰⁰⁾ , 가자아이뉴스 ⁽²⁷⁰¹⁾ , 스카이데일리 ⁽²⁷⁰²⁾ , 조선닷컴 ⁽²⁷⁰³⁾ , 인터넷 한겨레21 ⁽²⁷⁰⁴⁾ , 인터넷 포천뉴스 ⁽²⁷⁰⁵⁾ , 인터넷 미디어오늘 ⁽²⁷⁰⁷⁾ , 동아닷컴 ⁽²⁷⁰⁸⁾ , 인터넷 경향신문 ⁽²⁷⁰⁹⁾ , 인터넷 내일신문 ⁽²⁷¹⁰⁾ , 노컷뉴스 ⁽²⁷¹¹⁾ , 뉴민주신문 ⁽²⁷¹²⁾ , 뉴스1코리아 ⁽²⁷¹³⁾ , 뉴스캔 ⁽²⁷¹⁴⁾ , 뉴스천지 ⁽²⁷¹⁵⁾ , 뉴스토마토 ⁽²⁷¹⁶⁾ , 인터넷 데일리경제 ⁽²⁷¹⁷⁾ , 마로니에방송 ⁽²⁷¹⁸⁾ , 인터넷 매일일보 ⁽²⁷¹⁹⁾ , 인터넷 문화일보 ⁽²⁷²⁰⁾ , 문화저널 21 ⁽²⁷²¹⁾ , 민중의소리 ⁽²⁷²²⁾ , 브레이크뉴스 ⁽²⁷²³⁾ , 비마이너 ⁽²⁷²⁴⁾ , 인터넷 서울경제 ⁽²⁷²⁵⁾ , 인터넷 서울신문 ⁽²⁷²⁶⁾ ,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²⁷²⁷⁾ , 세계닷컴 ⁽²⁷²⁸⁾ , 인터넷 스포츠한국미디어 ⁽²⁷²⁹⁾ , 인터넷 시민일보 ⁽²⁷³⁰⁾ , 시사N Live ⁽²⁷³¹⁾ , 시사포커스신문 ⁽²⁷³²⁾ , 아시아경제닷컴 ⁽²⁷³³⁾ , 아이뉴스24 ⁽²⁷³⁴⁾ , 의약뉴스 ⁽²⁷³⁵⁾ , KBS미디어 ⁽²⁷³⁶⁾ , 싸앤비뉴스 ⁽²⁷³⁷⁾ , 칸투데이 ⁽²⁷³⁸⁾ , iMBC ⁽²⁷³⁹⁾ , 인터넷 평화방송 ⁽²⁷⁴⁰⁾ , SBS 콘텐트허브 ⁽²⁷⁴¹⁾ , 인터넷 서울신문STV ⁽²⁷⁴²⁾ , 더팩트 ⁽²⁷⁴³⁾ , 위키트리 ⁽²⁷⁴⁴⁾ , 인터넷 YTN ⁽²⁷⁴⁵⁾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의정부신문 : 『포천 김○○ 의원 “○○○ 체육회 옥매트 사건” 연루 되었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8일자 사회면) 인터넷 이데일리 : 『여야, ‘도가니’ 국정조사 추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정치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중앙일보 : 『옥매트 차떼기 사건 논란, 장병원 “윤○○ 회장, 본인 지역구에 선심썼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뉴스면) 외 2건 • 쿠키뉴스 : 『새누리당, 치열한 경쟁속 전통 텃밭에만 우르르 ‘외화내빈’』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정치면) 외 1건 • 사람일보 : 『한나라당 수석원대 ‘옥매트 횡령 사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8일자 정치·경제면) • 투데이코리아 : 『[기자수첩] 정부 여당, 당신들 입부터 조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정치면) 외 1건 • 인터넷 더데일리포커스 : 『새마을금고 여직원 16억 횡령 外』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사회면) 외 57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체육회장 재직시 횡령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인터넷 의정부신문, 온라인 중앙일보, 쿠키뉴스,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가자아이뉴스, 스카이데일리, 뉴민주신문, 인터넷 데일리경제, 브레이크뉴스, 세계닷컴/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투데이코리아, 조선닷컴, 인터넷 포천뉴스, 동아닷컴,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내일신문, 노컷뉴스, 문화저널21, 인터넷 서울신문, 아이뉴스24, 씨앤비뉴스, 더팩트, 위키트리/사유 :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 각 취하 (인터넷 이데일리, 사람일보, 인터넷 더데일리포커스, 인터넷 무예신문, 폴리뉴스, 디지털 함께걸음, e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줌, 에이블뉴스, 오마이뉴스, 인터넷 한겨레, 디지털 포천신문, 인터넷 한겨레21, 인터넷 미디어오늘, 뉴스1코리아, 뉴스캔, 뉴스천지, 뉴스토마토, 마로니에방송, 인터넷 문화일보, 민중의소리, 비마이너, 인터넷 서울경제, 민중의소리 서울의소리, 인터넷 스포츠한국미디어, 인터넷 시민일보, 시사N Live, 시사포커스신문, 아시아경제닷컴, KBS미디어, 칸투데이, iMBC, 인터넷 평화방송, SBS 콘텐츠허브, 인터넷 서울신문STV, 인터넷 YTN/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747	(손배청구) 이○○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KBS 일베 기자 사태에 고발뉴스 이상호 씨 “곧 나찌 기자도 입성할 듯”』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악플러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748, 2749	(각 정정청구) 국○○ 對 TV조선 ⁽²⁷⁴⁸⁾ , MBN ⁽²⁷⁴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구청 공무원이 대포차 부추겨』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30일자) • MBN : 뉴스8 프로그램 『세금·과태료 등 4억 원 사라져』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대포차 관련 제보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TV조선/사유 : 손해배상 150만원 지급) • 취하간주 (MBN) ※ 손해배상 50만원 지급
2015서울조정 2760~2763	(각 정정·손배청구) 서울○○○○○ 외 1인 對 가스신문 ^(2760·2761) , 인터넷 가스신문 ^(2762·2763)
조정대상	『가스저장탱크 명판 위조한 김○○ 구속 「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 제하의 기사 (가스신문 2015년 3월 11일자 7면, 인터넷 가스신문 3월 3일자 LPG·고압가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초저온 저장탱크를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행결과	『‘서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LPG·고압가스면, 인터넷 가스신문 4월 30일자 LPG·고압가스면면)
2015서울조정 2764	(손배청구) 임○○ 對 KBS-2TV
조정대상	생생정보 프로그램 『비밀은 없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기 정량을 속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765~2768	(각 정정·반론청구) 이○○ 對 한국경제 ^(2765·2766) , 한경닷컴 ^(2767·2768)
조정 대상	『서울의 마지막 시골 ‘○○○’ 힐링타운으로 변신』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5년 3월 27일자 31면, 한경닷컴 3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소유 부지에 추진중인 도봉구의 생태치유공원 조성계획을 서울시가 찬성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도봉구 ‘○○○’과 관련해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5년 4월 29일자 33면, 한경닷컴 4월 28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769~2772	(각 정정·손배청구) 강○○ 對 한국일보 ^(2769·2770) , 인터넷 한국일보 ^(2771·2772)
조정 대상	『사재기 논란 ○○과 ○○ 이번엔 갑질』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3월 27일자 22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7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직원 채용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업무와 무관한 일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773	(정정청구) (사)○○○○○○지도사회 對 경향신문
조정 대상	(1) 『노조파괴 컨설팅 ‘심종두 부활법’ 작년 국회 통과』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1면) (2) 『‘깜깜이’ 본회의 통과 ‘상식 파괴’』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관련법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의 업무영역이 공인노무사의 업무까지 확대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774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정대상	『세월호 소식, MBC 뉴스데스크에 없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3일자 미디어오늘)
신청인 주장	MBC가 세월호 관련 보도에 소홀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 세월호 소식, MBC 뉴스데스크에 없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1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775·2776	(정정·손배청구) 전국○○총연합 對 MBC-TV
조정대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모르면 바가지... 아무도 모르는 '반값 진료비' 제도』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대리진료 제도에 대해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행결과	『“모르면 바가지... 아무도 모르는 '반값 진료비' 제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5년 5월 20일자)

2015서울조정 2777~2780	(각 반론·손배청구) 이○○ 對 아시아경제닷컴 ^(2777·2778) , 동아닷컴 ^(2779·2780)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경제닷컴 : (1) 『檢 “합의금 목적 다수인 고소, 공갈죄 검토”』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2일자 사회면) (2) 『“제 2의 흥가혜” 막는다... 모욕 혐의 고소 남발하면 고소인 처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2일자 사회면) 동아닷컴 : 『악성댓글 ‘고소 남발’ 논란... 檢, ‘흥가혜 사례’ 방지대책 발표』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경제닷컴 : 『[반론보도문]합의금 목적 고소남발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사회면) 동아닷컴 : 『“합의금 목적 고소남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781~279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對 아시아투데이 ^(2781~2783) , 아시아투데이닷컴 ^(2784~2786) , 네이버 ^(2787~2789) , 네이트 ^(2790~2792) , 다음 ^(2793~279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 :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의 경력 악용』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23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기자의눈] 최창식 구청장님! 서울시 예산은 1000만 시민의 것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사회면, 네이버·네이트·다음 4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구청장이 서울시 고위관리직 경력을 이용하여 타 자치구보다 많이 예산을 가져 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닷컴/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버, 네이트, 다음/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796	(손배청구) 고○○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시험없이 대학갈 수 있어요?』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직장인 재교육 관련 계약학과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면서 교직원인 신청인과의 대화내용을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험없이 대학갈 수 있어요?』 제하의 보도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수정 (2015년 5월 8일자)

2015서울조정 2797~2800	(각 반론·손배청구) ○○교장로회 ○○○○○교회 외 1인 對 SBS-TV ^(2797·2798) , SBS 콘텐츠허브 ^(2799·2800)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Y 프로그램 『기적을 파는 교회 목사에게 헌금이란 무엇인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병든 신도들에게 치료를 빙자하여 헌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01, 2802	(각 반론청구) 신○○ 외 1인 對 메트로 ⁽²⁸⁰¹⁾ , 인터넷 메트로 ⁽²⁸⁰²⁾
조정대상	(1) 『警, 특수강도 용의자 조사도 않고 풀어줘』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4월 9일자 23면, 인터넷 메트로 4월 9일자 사회면) (2) 『신세계의 메트로 강탈, 경찰이 하수인 노릇』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4월 9일자 23면, 인터넷 메트로 4월 9일자 사회면) (3) 『특수강도 신세계 직원 풀어준 경찰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4월 9일자 23면, 인터넷 메트로 4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파출소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특수강도 용의자를 관내 대기업 직원이란 이유로 조사 없이 풀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경찰, 특수강도 용의자 조사도 않고 풀어줘” 관련』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5월 23일자 23면, 인터넷 메트로 5월 2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03·2804	(정정·손배청구) 동○○ 외 1인 對 MBN
조정대상	언니들의 선택 프로그램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들이 남자의 학벌과 경제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처럼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언니들의 선택 프로그램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 자료화면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일자)

2015서울조정 2805~2808	(각 정정·손배청구) (사)○○○○○○연합 외 1인 對 시사매거진 ^(2805·2806) , 인터넷 시사매거진 ^(2807·2808)
조정대상	『도를 넘어선 금품갈취, 공갈협박, 뿌리 뽑을 것』 제하의 기사 (시사매거진 2015년 4월 2일자 86~87면, 인터넷 시사매거진 4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특선판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사)○○○○○○연합과 특선판매업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매거진 2015년 5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시사매거진 4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08·2809	(정정·손배청구) 최경환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자원외교’ 감사원 자료 내밀어도 최경환 “책임없다” 발뺌』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5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식경제부 장관 재직시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하베스트의 부실자산인 정유부문 매수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11	(반론청구) ○○○○○○인권연대 ○○○ 외 1인 對 인터넷 메디컬업저버
조 정 대 상	『“에이즈환자 눈물” 방송, 요양병원 “사실보도 눈물로 호소”』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6일자 병의원면)
신청인 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모 요양병원의 에이즈 환자 사망 및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요양병원 인권침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7일자 병의원면)

2015서울조정 2812, 2813	(각 정정청구) 임○○ 對 세계닷컴 ⁽²⁸¹²⁾ , 온라인 중앙일보 ⁽²⁸¹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닷컴 : 『만취 상태에서 쇠파이프로 백구 폭행… 네티즌 ‘격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쇠파이프로 진돗개 폭행한 남성… “괴롭히겠다” 협박까지 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쇠파이프에 맞아 위중한 진돗개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기사수정) • 취하 (세계닷컴/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쇠파이프로 진돗개 폭행한 남성… “괴롭히겠다” 협박까지 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온라인 중앙일보 2015년 4월 28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814, 2815	(각 정정청구) 최○○ 對 MBN ⁽²⁸¹⁴⁾ , 인터넷 MBN ⁽²⁸¹⁵⁾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설선물 참치 세트 뺏긴 미화원들』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3월 9일자, 인터넷 MBN 3월 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노조 조합장 재직시 환경미화원에게 돌아가야 할 명절 참치세트를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16	(정정청구) (사)○○○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 『〈도가니〉… 그 끝나지 않은 악몽, ○○○』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5일자 사회면) (2) 『“하루빨리 나가고 싶다” 외친 장애인시설, 어쩔건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6일자 사회면) (3) 『광주 ○○○, 제2의 형제복지원 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5일자 사회면) (4) 『절차 강조하던 ○○○, 특별회계감사 거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1일자 사회면) (5) 『“○○○ 문제 호락호락하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7일자 사회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1) 『『광주 ○○○, 제2의 형제복지원 될 수 있다』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5월 6일자 사회면) (2) 『『“○○○ 문제 호락호락하지 않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5월 6일자 사회면) (3) 『『○○○ 사태에 교사들도… “우린 자존감없는 교사였다”』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5월 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17	(손배청구) 최○○ 對 소상공인신문
조 정 대 상	(1) 『양측, 선거 앞두고 내분 치달다 “대총돌 우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1면) (2) 『최○○ 회장, 정부기관 향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4면) (3) 『최 회장, 수적 우위 앞세워 온갖 무리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5면) (4) 『2013년의 소상공인업계 분열 과정 새 사실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소기업청을 협박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하면서 악의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18	(정정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성완중 전 회장 의원 시절 보좌관, 6·4 선거 때 유정복 캠프에서 일해』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 성완중 회장의 암묵적인 지시로 6·4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성완중 전 회장 의원 시절 보좌관, 6·4 선거 때 유정복 캠프에서 일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5년 4월 23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2819·2820	(정정·손배청구) (주)천지일보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이만희, 천지일보 신천지 신문 취지 발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21	(정정청구) (유)○○해운 ○○지점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장관 탈 때만’ 시늉뿐인 안전… 우리 안의 세월호』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1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여객선 탑승시 승객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차량을 고정시키는 고박을 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822	(정정청구) 이○○ 對 시크뉴스
조 정 대 상	『벤츠 ‘○○○○’ vs 애플 ‘○○’ 본사 이름 먹칠하는 ‘공식’ 서비스센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인 모 외제차 멀티미디어 공식서비스센터가 사후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823~2826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법인 ○○대학교 對 불교닷컴
조정대상	(1) 『“○○ 이사장 선출 적법”… 녹취록 다시 봤더니』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4일자 종합면) (2) 『“○○ 스님 이사장 출근은 범법행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1일자 종합면) (3) 『불량 장정 넷과 출근한 ○○ 이사의 말 말 말』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종합면) (4) 『“○○ 스님 실망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종합면) (5) 『□□·△△스님, ○○스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종합면) 외 14건
신청인 주장	모 대학교의 신임 이사장 선임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27~2829	(정정·반론·손배청구) 최○○ 對 연합뉴스
조정대상	『국정원 직원이 北협조자에 기밀누설… 법원 “해임정당”』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뉴스홈면)
신청인 주장	전 국정원 직원인 신청인이 제기한 징계부당 소송 관련 2심 판결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30, 2832, 2833	(각 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경향신문 ⁽²⁸³⁰⁾ , The Korea Times ⁽²⁸³²⁾ , 인터넷 The Korea Times ⁽²⁸³³⁾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향신문 : 『이슈 세월호 1년 ‘세월호 영웅’ 최○○·박○○ 씨 미국서 추모메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사회면) The Korea Times : 『US charity honors Sewol heroines』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National면, 인터넷 The Korea Times 3월 9일자 National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다 숨진 단원교 교사 관련 보도에서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각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블로그에 남아 있는 기사에 대한 책임까지 질 의무는 없음)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The Korea Times, 인터넷 The Korea Times/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부채소 - 동의 후 금액지급)

2015서울조정 2831	(손배청구) 이○○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MBN, 기자 사칭한 이완구 측근 ‘단독’ 인터뷰… ‘방어’ 나서나?』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고 성완중 경남기업 회장 관련 인터뷰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명을 밝혀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MBN, 기자 사칭한 이완구 측근 ‘단독’ 인터뷰… ‘방어’ 나서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이름 익명 처리 (2015년 6월 5일자 미디어뉴스면)
2015서울조정 2834, 2840	(정정청구) 주승용 對 중앙일보⁽²⁸³⁴⁾, 온라인 중앙일보⁽²⁸⁴⁰⁾
조 정 대 상	『“내가 280억 도로 유치”… 그 길 옆엔 의원 땅 있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4월 6일자 1면 및 3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유 토지의 보상을 위해 지역구의 도로 확장 예산을 유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5월 28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28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2835	(정정청구)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가스총 제조업체, 총탄 2백만 발 ‘무면허’ 불법 제조』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총탄 200만발을 불법 제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36~2838	(각 정정청구) ○○캐피탈(주) 對 인터넷 뉴스신문고 ⁽²⁸³⁶⁾ ,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²⁸³⁷⁾ , 금융소비자뉴스 ⁽²⁸³⁸⁾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뉴스신문고 : 『“○○” 수상한 소송… 600억 원 호텔 약탈?』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1일자 초기화면) •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 (1) 『MB사둔 ○○ 조○○, “○○○○○○호텔 강탈의혹 사건 내막』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초기화면) (2) 『○○○○○○ 벤처회사 ‘○○○○그룹’ 대표, ○○캐피탈 호텔 약탈 의혹 대출 관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6일자 초기화면) • 금융소비자뉴스 : (1) 『○○ 3남 조○○ 부사장 ‘강남호텔 강탈’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9일자 뉴스면) (2) 『○○캐피탈, 소송 상대자 1년 동안 ‘불법 사찰’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기업 소유의 호텔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한 뒤 대출금 상환을 방해하여 호텔을 강탈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인터넷 뉴스신문고/사유 : 정정보도) • 각 조정불성립결정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금융소비자뉴스)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뉴스신문고 : 『[정정보도문] “○○’ 수상한 소송… 600억원 호텔 약탈?”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9일자 초기화면)
2015서울조정 2839	(정정청구) 복○○ 對 조선닷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300만원 투자해 100억 벌었다’는 투자자문사 대표,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2) 『회원수 1000명의 ‘복○○ 손실 모임 카페’ 실종 사건… 그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허위 경력을 광고하여 투자자문 회사 회원을 모집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300만원 투자해 100억 벌었다’는 투자자문사 대표, 알고보니…]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닷컴 2015년 5월 1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41, 2842	(각 반론청구) ○○○○○전국연합 對 MBC-TV ⁽²⁸⁴¹⁾ , iMBC ⁽²⁸⁴²⁾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강남 대로변 노점 철거에 불만… 화단에 ‘황김 방화’』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16일자, iMBC 4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청의 노점 철거에 불만을 품고 대로변 화단에 불을 낸 사람이 신청인 연합의 간부이고, 철거된 지역 노점상들이 여러개의 노점을 소유한 기업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43·2844	(정정·손배청구) 한국○○○○연구원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60분 프로그램 『대형참사, 왜 반복되나?』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대형화재의 원인인 샌드위치패널 관련 화재실험이 신청인 연구원의 주관하에 실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EX패널 관련 한국○○○○연구원』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5년 5월 26일자 추적60분 홈페이지 게시판)

2015서울조정 2845, 2846	(각 반론청구) 한국○○총연맹 對 인터넷 일요서울 ⁽²⁸⁴⁵⁾ , 브레이크뉴스 ⁽²⁸⁴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일요서울 : 『제4 이동사업 누리통신 컨소시엄 투자자 “양심선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사회면) 브레이크뉴스 : 『우○○ ○○총연 사무총장 해임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맹 회장이 사무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전임에서 실시한 사업 피해 투자자에게 문제제기하도록 유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성립 (인터넷 일요신문/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취하 (브레이크뉴스/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일요서울 : 『“○○총연맹 현 회장에게 농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3일자 사회면) 브레이크뉴스 : 『“우○○ ○○총연 사무총장 해임 뒷말 무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9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47~2852	(각 정정·손배청구) 양○○ 對 한국일보 ^(2847·2848) , 인터넷 한국일보 ^(2849·2850) , 인터넷 일요신문 ^(2851·2852)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일보 : (1) 『부하에 폭언, 술값 대납시킨 청와대 경비 전경대장 솜방망이 징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9일자 사회면) (2) 『청장車 검문했다고 24시간 당직 후에 또 교육…』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일자 사회면) 인터넷 일요신문 : 『청와대 외곽 ‘○○○ 경비단’ 파행운영 추적』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청와대 재직시 의경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소대장들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정정보도, 반론 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조정성립 (인터넷 일요신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인터넷 일요신문 : 『“청와대 외곽 ‘○○○ 경비단’ 양 아무개 경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53, 2854	(각 정정청구) 류지영 對 조선일보 ⁽²⁸⁵³⁾ , 조선닷컴 ⁽²⁸⁵⁴⁾
조정대상	『비례의원이 주요 창구… 보좌관도 ‘숨은 甲’』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4월 28일자 3면, 조선닷컴 4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어린이집 CCTV 설치법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서울조정 2855, 2856	(각 반론청구) ○○○○협회 對 YTN ⁽²⁸⁵⁵⁾ , 인터넷 YTN ⁽²⁸⁵⁶⁾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출발 프로그램 『○○○협회 편 가르기… 황포 논란』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4월 13일자, 인터넷 YTN 4월 13일자 사회면) 이슈오늘 프로그램 『비회원사 일감 주지 마… ○○○협회 황포』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4월 13일자, 인터넷 YTN 4월 13일자 사회면) 뉴스출발 2부 프로그램 『○○○협회 편 가르기… 황포 논란』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4월 13일자, 인터넷 YTN 4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간부들에게 일감을 먼저 주고, 차량대수를 늘린 일부 회원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행결과	『○○○협회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5년 5월 1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57, 2858	(각 정정청구) 전국○○노동조합 ○○자동차지부판매위원회 對 매일경제 ⁽²⁸⁵⁷⁾ , 매경닷컴 ⁽²⁸⁵⁸⁾
조정 대상	『○○○○차 인방시장 점유율 계속 추락 왜?』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5년 4월 10일자 17면, 매경닷컴 4월 9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모 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조합원인 영업직원들 간 경쟁마인드 부족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59·2860	(정정·손배청구) (주)○○○ 對 채널A
조정 대상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 『정육식당의 꿈수』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16일자 및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운영하는 정육식당이 용량, 부위, 등급 등을 속여서 영업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기타)
2015서울조정 2864~2867	(각 정정청구) (주)○○○○ 對 MBC-TV ⁽²⁸⁶⁴⁾ , SBS 콘텐츠허브 ⁽²⁸⁶⁵⁾ , 연합뉴스 ⁽²⁸⁶⁶⁾ , 헬스코리아뉴스 ⁽²⁸⁶⁷⁾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정오뉴스 프로그램 『일본뇌염 벡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에 부모들 분통』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6일자) • SBS 콘텐츠허브 : 『일본뇌염 벡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6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일본뇌염 벡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에 부모들 분통』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6일자 사회면) • 헬스코리아뉴스 : 『일본뇌염 벡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에 부모들 분통』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계보건기구(WHO)가 일본뇌염예방백신으로 벡세포 배양 사백신으로 전환을 권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MBC-TV/사유 : 반론보도) • 각 취하 (SBS 콘텐츠허브, 연합뉴스, 헬스코리아뉴스/사유 : 정정보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정오뉴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WHO “생백신 안전성 신뢰할 만한 수준”』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14일자)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콘텐츠허브 : 『“일본뇌염 벼로사포사백신 무료화 지연”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5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일본뇌염 벼로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0일자 사회면) • 헬스코리아뉴스 : 『“일본뇌염 벼로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0일자 알림면)
--------------	---

2015서울조정 2868·2869	(정정·손배청구) 홍문중 對 한국일보
조정 대상	(1) 『成 리스트 홍문중 수상한 재산 증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7일자 1면) (2) 『100억 빚더미 속 예금은 늘어... 건물 매각 13억도 안개속』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7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2012년, 2013년 재산 증가분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행 결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일보 2015년 5월 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70	(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SBS-TV
조정 대상	궁금한 이야기Y 프로그램 『포천 농약 연쇄 살인사건』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지인이 연루된 살인사건 관련 방송을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신청인들의 초상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2871	(반론청구) 윤○○ 對 SBS-TV
조정 대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7일자)
신청인 주장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존재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허황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72, 2873	(각 정정청구) 김○○ 對 경향신문 ⁽²⁸⁷²⁾ , 인터넷 경향신문 ⁽²⁸⁷³⁾
조 정 대 상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4월 6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고교 교감인 신청인이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밥먹지 말라고 망신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74	(정정청구) ○○○○○(주)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매일 타는 지하철, 차량 수명이 없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지하철 차량 안전검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875·2876	(정정·손배청구) 박○○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프로그램 『본드로 이어붙인 나무 도마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생산하는 미국제 도마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2월 6일 방송된 <○○○ 나무도마> 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5년 5월 26일자 프로그램 소개면)

2015서울조정 2877~2882	(각 정정·반론청구) ○○○(주) 對 문화일보 ^(2877·2878) , 인터넷 문화일보 ^(2879·2880) (각 정정청구) 채널A ⁽²⁸⁸¹⁾ , 인터넷 채널A ⁽²⁸⁸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 (1) 『‘장비 도입’ 민간업체에 휘둘리는 기상청』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1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8일자 사회면) 외 2건 (2) 『라이다 탐지거리 규격 15km →10km 돌연 낮춰… ‘수상한 입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8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9일자 사회면) (3) 『기상청, 케이웨더 장비 도입 때 성능문제 제기하면 해임·좌천』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1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13일자 사회면) 외 1건 (4) 『성능미달 라이다 납품에 적합판정… 감사원, 기상진흥원 2명 정직 요구』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4일자 12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14일자 12면) 외

2015서울조정 2877~2882	(각 정정·반론청구) ○○○○(주) 對 문화일보 ^(2877·2878) , 인터넷 문화일보 ^(2879·2880) (각 정정청구) 채널A ⁽²⁸⁸¹⁾ , 인터넷 채널A ⁽²⁸⁸²⁾
조 정 대 상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성능 미달” 인정하고도 ‘배짱 소송’ 佛 업체』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8일자, 인터넷 채널A 4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설치한 공항 돌풍감지장치의 성능이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며, 기상장비 입찰과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83·2884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아침& 프로그램 『저가 전자담배 충전 실험해보니... 불과 8분 만에 ‘핑’』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중국산 저가 전자담배의 폭발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 담배 상표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2885·2886	(반론·손배청구) 광주문화방송(주)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1) 『광주MBC, 수상쩍은 건설사 협찬금 2억원』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9 일자 미디어면) (2) 『검찰, 광주MBC 건설사 협찬금 수사 진행 중』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0일자 미디어면) (3) 『광주MBC, 건설사 협찬금, 공무원이 자문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5일자 미디어면) (4) 『광주MBC 협찬금, 삼각 카르텔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광주MBC 사장과 보도국장이 모 건설사에 협찬을 강요하고 협찬금 일부를 착 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광주MBC 협찬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6년 6 월 3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5월 29일자 미디어면)

2015서울조정 2887, 2888	(각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한국일보 ⁽²⁸⁸⁷⁾ , 연합뉴스 ⁽²⁸⁸⁸⁾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일보 : 『천안시의회 택시 콜비 보조금 폐지 주장 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천안시의회 콜비 보조금 폐지 주장에 시민 반발』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지자체에 콜택시 콜비 보조금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889~2892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북경기신문 ^(2889·2890) , 인터넷 북경기신문 ^(2891·2892)
조정 대상	『○○ 농협 ‘돈이 줄줄이 새고 있다’』 제하의 기사 (북경기신문 2015년 2월 12일자 1면, 인터넷 북경기신문 2월 16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모 농협 상임이사인 신청인이 신청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에 불법적인 대출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93~2896	(각 정정·손배청구) 하○○ 對 채널A ^(2893·2894) , 인터넷 채널A ^(2895·2896)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뉴스특보 프로그램 『구원파, ‘호위무사’ 박○○을 지켜라... 왜』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11월 13일자, 인터넷 채널A 11월 13일자 사회면) (2) 뉴스특보 프로그램 『‘과차량’ 고속도로서 막무가내 박○○ 보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11월 13일자, 인터넷 채널A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박○○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취재를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97, 2898	(각 손해청구) 김○○ 對 채널A ⁽²⁸⁹⁷⁾ , 인터넷 채널A ⁽²⁸⁹⁸⁾
조정대상	뉴스특보 프로그램 『구원파, ‘호위무사’ 박○○을 지켜라… 왜』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3일자, 인터넷 채널A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박○○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취재를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50만원, 부제소 - 동의 후 지급)
2015서울조정 2899·2890	(정정·손배청구) 이○○ 외 3인 對 한국무예신문
조정대상	『“공수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국가대표감독 아들 경기에 심판은 감독 가족』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5일자 격투기면)
신청인 주장	모 체육 연맹 사무국장과 심판인 신청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편파판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대한○○○연맹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9일자 격투기면)
2015서울조정 2901, 2902	(각 정정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뉴스토마토 ⁽²⁹⁰¹⁾ , 뉴스토마토 인터넷 ⁽²⁹⁰²⁾
조정대상	『공공기관 평가 ‘유명무실’… 부정시험에 혈세 ‘핑핑’』 제하의 기사 (뉴스토마토 2015년 5월 11일자 34면 및 35면, 뉴스토마토 인터넷 5월 10일자 정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정부경영평가 평가위원에게 로비 목적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공공기관 평가 ‘유명무실’… 부정시험에 혈세 ‘핑핑」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뉴스토마토 2015년 6월 17일자 6면, 뉴스토마토 인터넷 6월 10일자 정책면)

2015서울조정 2903~2906	(각 정정청구) ○○시립○○○○요양원 對 채널A ^(2903,2905) , 인터넷 채널A ^(2904,2906)
조 정 대 상	(1) 종합뉴스 프로그램 『시립요양원 직원, 기초수급 노인 폭행』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5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5일자 사회면) (2) 굿모닝A 프로그램 『시립이라 믿었는데… 치매 할머니 폭행』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5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5일자 사회면) (3) 종합뉴스 프로그램 『치매노인 학대 요양원, 내부고발자 증징계』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6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원이 요양사의 치매노인 폭행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07~2910, 2929~2932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JTBC ^(2907·2908, 2929·2930) , 인터넷 JTBC ^(2909·2910, 2931·2932)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몇 천원 짜리가 23만원으로… 황당 ‘가짜 산삼주’』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5월 14일자, 인터넷 JTBC 5월 14일자 사회면) (2) 뉴스룸 프로그램 『‘가짜 산삼주’ 제조과정 추적… 경찰도 본격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5월 20일자, 인터넷 JTBC 5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산삼주가 가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진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2015서울조정 2911	(반론청구) 전국○○노동조합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금속노조와 ‘5년 전쟁’ 뚫고… ○○○, 도요타 수출 길 열다』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1면 및 2면)
신청인 주장	자동차 부품업체 ○○○○○○○○○코리아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한 이후 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수출 기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2면)

2015서울조정 2912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에너지경제
조정대상	(1) 『도시가스 배관 밸브 시험 성적서 위조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0일자 에너지면) (2) 『가스밸브 불합격품이 1등급 둔갑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0일자 에너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도시가스 배관 밸브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불합격 제품을 가스 회사에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결정 내용 일부는 수용 가능하나 전부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2913, 2914	(각 정정청구) 인천중부경찰서 對 서울매일 ⁽²⁹¹³⁾ , 인터넷 서울매일 ⁽²⁹¹⁴⁾
조정대상	『인천 동구, 수상한 컨테이너 도둑』 제하의 기사 (서울매일 2015년 4월 27일자 15면, 인터넷 서울매일 4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컨테이너 절도사건 관련 담당 형사를 이유 없이 교체하는 등 사건 처리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행결과	『“인천 동구, 수상한 컨테이너 도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매일 2015년 6월 8일자 15면, 인터넷 서울매일 6월 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915, 2916	(각 정정청구) 이미경 외 10인 對 채널A ⁽²⁹¹⁵⁾ , 인터넷 채널A ⁽²⁹¹⁶⁾
조정대상	종합뉴스 프로그램 『이희호 여사 “정치인과 식사 않겠다” 격노, 왜?』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18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이희호 여사가 신청인들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격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17	(손배청구) 박○○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중부 오늘도 낮까지 강풍』 제하의 사진 (2015년 5월 13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강풍에 치마를 붙잡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918	(정정청구) ○○○○○○○○관리단 對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조 정 대 상	『[단독] ○○○시티 관리인 부정선거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모 건물 관리인이 부정선거 및 집합건물법 위반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시티 관리인 선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2919	(정정청구) ○○○○대학교 對 예장뉴스
조 정 대 상	(1) 『○○사태, 결국 학교 손을 떠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5일자 신학교/대학교면) (2) 『○○학원 사태로 본 신학대학교 이사회 문제』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신학교/대학교면) (3) 『○○학생들 또 총회 방문 선처 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신학교/대학교면) (4) 『총회 결정 항명하는 자들 강한 징계조치 있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5일자 신학교/대학교면) (5) 『○○○○대학교 학내 사태에 대한 성명서』 제하의 기사 (2015년 4 2일자 신학교/대학교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목사에게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고, 이사회가 멋대로 정관을 개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학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신학교/대학교면)

2015서울조정 2920·2921	(정정·손배청구) 흥○○ 對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조 정 대 상	(1) 『광명시내 학교계약부서 ‘지역경제, 지역서점 살리기’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6일자 뉴스면) (2) 『광명시 일부 학교들 페이퍼 컴퍼니 싸고돌아 유명서점 활개쳐…』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서점이 사업자등록만 한 유명서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컴퍼니 ○○교재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5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922	(반론청구) 손○○ 對 KBS-1TV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대형화물차 아찔한 보복운전』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19일자) (2) 뉴스광장 프로그램 『대형화물차 아찔한 보복운전』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대형화물차 운전자인 신청인이 위험운전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923~2926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중앙일보 ^(2923·2924) , 온라인 중앙일보 ^(2925·2926)
조 정 대 상	『금융 문맹 탈북자들, 투자 사기에 운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4월 21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27, 2928	(각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중앙일보 ⁽²⁹²⁷⁾ , 온라인 중앙일보 ⁽²⁹²⁸⁾
조 정 대 상	『콘텐츠 가격 담합하는 지상파 3사』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5월 18일자 33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18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MBC가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콘텐츠 가격을 타 지상파 방송과 담합하여 인상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6월 19일자 오피니언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18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2933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조 정 대 상	『[이덕환의 과학세상](509) 전문기관의 홍보』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0일자 생활과학면)
신청인 주장	MBC가 수입닭꼬치 업체와 식약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의 사실관계를 왜곡해 영터리로 보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전문기관의 홍보’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6일자 생활과학면)
2015서울조정 2934~2937	(각 정정·반론청구) 국토교통부 對 경향신문 ^(2934·2935) , 인터넷 경향신문 ^(2936·2937)
조 정 대 상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5월 26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26일자 과학·환경면)
신청인 주장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이용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6월 27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6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2938~2941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치과의사신문 ^(2938·2939) , 인터넷 치과의사신문 ^(2940·2941)
조정대상	(1) 『예전 최○○ 치과 전화번호와 ○플란트 전화번호가 같다?』 제하의 기사 (치과의사신문 2015년 4월 20일자 1면, 인터넷 치과의사신문 4월 16일자 뉴스면) (2) 『최○○ 치과 자리에 ○플란트가 문을 연다』 제하의 기사 (치과의사신문 2015년 4월 20일자 3면, 인터넷 치과의사신문 4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협회 회장인 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가 네트워크치과에 인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2942~2945	(각 정정·반론청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對 파이낸셜뉴스 ^(2942·2943)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944·2945)
조정대상	『세금구멍 소진공, 2조 운용 자격 있다』 제하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015년 4월 29일자 20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4월 28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 내부감사에서 상생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세금구멍 소진공 2兆운영 자격 있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015년 6월 12일자 18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6월 11일자 중소기업면)

2015서울조정 2946, 2947	(각 정정청구) ○○○○마을회 對 내외일보 ⁽²⁹⁴⁶⁾ , 인터넷 내외일보 ⁽²⁹⁴⁷⁾
조정대상	『민의 행정에 중심 못잡는 농어촌공사』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5년 5월 15일자 7면, 인터넷 내외일보 5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마을회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포천 산정호수 공유수면 임대운영권 계약이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산정호수 공유수면 운영계약’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5년 6월 18일자 6면)

2015서울조정 2948	(손배청구) 이○○ 對 조갑제닷컴
조 정 대 상	『박원순 시장은 이것을 원하나?』 제하의 사진 (2015년 5월 28일자 포토면)
신청인 주장	귀어축제에 참석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5서울조정 2949	(정정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이슈인사이드 프로그램 『가짜 백수오 파동... 어디까지?』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허위 과장광고로 입건된 한의사 관련 보도에서 한의사인 신청인이 출연한 홈쇼핑 광고를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5서울조정 2950·2951	(정정·손배청구) 이○○ 對 연합통신넷
조 정 대 상	『부노회장 인준 불발로 바라 본 ○○ 노회』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4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모 교회 목사인 신청인이 부노회장으로 선출된 모 목사를 음해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결정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2952~2961	(각 추후청구) 문○○ 對 뉴스1코리아 ⁽²⁹⁵²⁾ , 연합뉴스 ⁽²⁹⁵³⁾ , 온라인 중앙일보 ⁽²⁹⁵⁴⁾ , 아시아경제닷컴 ⁽²⁹⁵⁵⁾ , e머니투데이 ⁽²⁹⁵⁶⁾ , 노컷뉴스 ⁽²⁹⁵⁷⁾ , 줌 ⁽²⁹⁵⁸⁾ , 매경닷컴 ⁽²⁹⁵⁹⁾ , 인터넷 MBN ⁽²⁹⁶⁰⁾ , SBS 콘텐츠허브 ⁽²⁹⁶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대한○○연맹 문○○ 회장, 사기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정치권 친분” 사기행각 대한○○연맹 회장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속보면) • 온라인 중앙일보 : 『대한○○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사회면) 외 2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경제닷컴 : 『‘억대 사기’ 대한○○연맹 회장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사회면) e머니투데이 : 『대한○○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재판에』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사회면) 외 1건 노컷뉴스 : 『대한○○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체육연맹 회장인 신청인이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닷컴, e머니투데이, 노컷뉴스, 줌, 매경닷컴, 인터넷 MBN, SBS 콘텐츠허브/사유 : 추후보도)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기사삭제)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1코리아 : 『[추후보도문] 대한○○연맹 회장, ‘정치권 친분’ 사기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5일자 법원검찰면) 연합뉴스 : 『대한○○연맹 회장, 사기혐의 무죄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4일자 사회면) 아시아경제닷컴 : 『대한○○연맹 회장, ‘정치권 친분’ 억대 사기 혐의 무죄로 결론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4일자 정치/사회면) e머니투데이 : 『대한○○연맹 회장 사기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사회면) 노컷뉴스 : 『추후보도문] 대한○○연맹 회장 ‘정치권 친분’ 사기행각 혐의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2015서울조정 2962·2963, 2965·2966	(각 정정·손배청구) ○○○○○조직위원회 對 인터넷 국민일보 ^(2962·2963) , 국민일보 ^(2965·2966)
조정대상	『귀어문화 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5월 28일자 29면, 인터넷 국민일보 5월 27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주최하는 동성애자 축제에서 에이즈가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64	(손배청구) 이○○ 對 JTBC
조정대상	뉴스룸 프로그램 『‘도를 아십니까?’ 따라 가보니...』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사이비종교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5서울조정 2967~2970	(각 반론·손배청구) 김○○ ^(2967·2968) , 김△△ ^(2969·2970)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단독] ‘논문대필’ 벌금형 축구감독 직위 유지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 축구부 감독이 대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코치는 축구부원들에게 반찬을 남기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971, 2972	(각 정정청구) (사)한국○○○○회 對 대한변협신문 ⁽²⁹⁷¹⁾ ,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²⁹⁷²⁾
조 정 대 상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제하의 만평 (대한변협신문 2015년 5월 11일자 3면,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5월 1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와 연루되어 불법 수수료를 받는다는 만평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대한변협신문 2015년 7월 6일자 3면,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7월 6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973, 2988, 2989, 2992, 2993	(각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²⁹⁷³⁾ , (주)에스비에스 ^(2988, 2989) , 한국방송공사 ^(2992, 2993) 對 동아일보 ^(2973, 2988, 2992) , 동아닷컴 ^(2989, 2993)
조 정 대 상	『방통위는 지상파 특혜 주는 광고총량제에서 손 떼라』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3월 4일자 31면, 동아닷컴 3월 4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광고주의 81.7%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광고를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광고총량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7월 9일자 2면)

2015서울조정 2974~2977	(각 정정·손배청구) ○○○○○회 對 유교신문 ^(2974·2975) , 인터넷 유교신문 ^(2976·2977)
조 정 대 상	『○○○○○○총본부 유교총연합으로 새출발』 제하의 기사 (유교신문 2015년 4월 1일자 3면, 인터넷 유교신문 3월 2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단법인이 유교총연합으로 새출발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78·2979	(반론·손배청구) 임○○ 對 장로신문
조 정 대 상	『○○교회 담임목사 위임해제와 1년 정직』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1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목사직 정직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80	(정정청구) 한국○○○○협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동물병원 약값 부르는게 값? 처방전 발급 안돼』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동물병원이 동물 진료비를 부당하게 과잉 청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5년 7월 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981·3052	(정정·손배청구) 이연주 對 인터넷 아시아일보
조 정 대 상	『새정권 이연주 국회의원 막말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료 국회의원과 광명시 의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연주 의원 막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5년 6월 15일자 2면, 인터넷 아시아일보 6월 15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2982·2983	(정정·손배청구) (주)메트로신문사 對 반론보도닷컴
조 정 대 상	『무가지 메트로 억지주장 하다 망신살』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2일자 이슈 &트렌드면)
신청인 주장	메트로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반론보도를 게재한 것이 원 기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84·2985	(정정·손배청구)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對 인터넷 소상공인신문
조 정 대 상	『네이버 ‘희망재단’, 소상공인 ‘절망재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포커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 이사진의 구성이 중소기업인의 이익대변과는 무관하게 구성되었으며, 집행부에게 비판적인 단체를 차별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네이버 ‘희망재단’, 소상공인 ‘절망재단’인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기획특집면)
2015서울조정 2986, 2987	(각 반론청구) 한○○ 對 채널A⁽²⁹⁸⁶⁾, 인터넷 채널A⁽²⁹⁸⁷⁾
조 정 대 상	(1) 종합뉴스 프로그램 『흥기 난동 신고하자… 칼 찔리면 그 때 신고』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27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27일자 사회면) (2) 굿모닝A 프로그램 『흥기 난동 신고하자… 칼 찔리면 그 때 신고』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28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마트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이 흥기로 여직원을 위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 ‘흥기 난동’ 표현을 ‘흥기 위협’으로 수정

2015서울조정 2990, 2991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메트로 ⁽²⁹⁹⁰⁾ , 인터넷 메트로 ⁽²⁹⁹¹⁾
조 정 대 상	『박원순 서울시장 하루 평균 공식 ‘밥값’ 117만원』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5월 8일자 23면, 인터넷 메트로 5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시장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접대하는 식사비로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박원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6월 19일자 4면, 인터넷 메트로 6월 19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994·2995	(정정·손배청구) (재)○○○ 외 1인 對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1) 『“사회통합 책임자 의문”… 종교편향 불씨 여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8일자 정치면) (2) 『황교안, ○○교도소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모 교도소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주도로 설립됐고, 황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재직시 정부보조금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황교안 ○○교도소 설립 주도 및 특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3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2996·2997	(정정·손배청구) (주)○○○○○○○이송단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메르스 확진 환자인 줄 모르고… 구급차 무방비 이송』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메르스 확진 환자를 이송한 민간이송업체의 미흡한 방역 조치를 보도하면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구급차 모습을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메르스 확진 환자인 줄 모르고… 구급차 무방비 이송』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4일자)

<p>2015서울조정 2998~3005, 3008~3035</p>	<p>(각 정정·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조선일보^(2998·2999), 조선닷컴^(3000·3001), KBS-1TV^(3002·3003), TV조선^(3004·3005), MBC-TV^(3008·3009), SBS-TV^(3010·3011), JTBC^(3012·3013), MBN^(3014·3015), 채널A^(3016·3017), YTN^(3018·3019), 온라인 중앙일보^(3020·3021), 연합뉴스^(3022·3023), 인터넷 국민일보^(3024·3025), 세계닷컴^(3026·3027), 아시아투데이닷컴^(3028·3029), 인터넷 아주경제^(3030·3031), 뉴스핌^(3032·3033), 고발뉴스닷컴^(3034·3035)</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3인조 食파라치 사기단’ 수도권 마트 습격사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3월 4일자 12면, 조선닷컴 3월 4일자 사회면)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포상금 노린 3인조 식파라치』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외 3건 • TV조선 : 김광일의 신통방통 프로그램 『3인조 식파라치 사기단 수도권 마트 습격 사건』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외 1건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제품으로 바꿔치기? 수상한 3인조 식파라치』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외 1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대형 마트에만 나타나... 수상쩍은 식파라치』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외 3건 • JTBC 외 11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 몰래 반입해 매장제품인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 사기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조선일보, 조선닷컴, KBS-1TV, MBC-TV, SBS-TV, YTN) • 각 조정성립 (TV조선, JTBC, 온라인 중앙일보/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MBN/내용 : 추후보도, 손해배상 2백만원,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채널A/내용 : 추후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세계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인터넷 아주경제, 뉴스핌/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고발뉴스닷컴/사유 : 추후보도)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TV조선 : 『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혹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JTBC : 『하남 3인조 식파라치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정정보도문] ‘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혹’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4일자 사회면) • 인터넷 채널A : 프로그램 『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혹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7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심사건 무혐의 결론』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8일자 사회면) 외 2건

2015서울조정 3006	(손배청구) 박○○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 사고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2015서울조정 3007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 유독 ‘특레입학’부터 본 MBC』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7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MBC가 세월호피해구제법과 관련,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유가족들을 교묘하게 매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반론보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036·3037, 3087·3088	(정정·손배청구) (주)○○○ 對 브레이크뉴스 ^(3036·3037) (반론·손배청구) 뉴데일리경제 ^(3087·308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이크뉴스 : 『○○○, 전 점주에 갑질 횡포... “연 점포 인수해 무기한 50%할인 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5일자 경제면) • 뉴데일리경제 : (1) 『○○○서 옆에 매장 내고 협박 문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경제면) (2) 『“○○킹과 거래 끊어라” ○○○, 납품업체에 ‘슈퍼 갑질’』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경제면) (3) 『“갑질” ○○○, 어설픈 변명 일관... 가맹점 피해 생각은 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전 가맹업주에게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브레이크뉴스/사유 : 반론보도) • 취하 (뉴데일리경제/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전 점주에 갑질 횡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브레이크뉴스 2015년 6월 23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3038·3039	(정정·손배청구) ○○○○서포터즈 ○○○○ 對 풋볼리스트
조 정 대 상	『‘욕설 난무’ 축구장, 팬이 팬을 쫓아낸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4일자 국 내기사면)
신청인 주장	프로축구팀 서포터즈인 신청인이 경기장에서 상대팀 선수와 심판진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서포터즈 욕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국 내기사면)
2015서울조정 3040	(정정청구) 유의동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팩트체크』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메르스 자가격리대상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유의동 의원 메르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5년 7월 2일자 뉴스룸면)
2015서울조정 3041	(정정청구) 유○○ 對 서울뉴스통신
조 정 대 상	『경찰수사관이 피의자로부터 신변 위협받았다고…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불법유치권 행사 사건 관련 유치권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신변 위협 받은 경찰수사관’ 관련 반론보도문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5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3042, 3043	(각 정정청구) ○○종합건설(주) 외 1인 對 한겨레 ⁽³⁰⁴²⁾ , 인터넷 한겨레 ⁽³⁰⁴³⁾
조정대상	『검찰, ‘포스코 비자금 의혹’ 배○○ 회장 본격 수사』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6월 3일자 10면, 인터넷 한겨레 6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모 기업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간주

2015서울조정 3044, 3045	(각 정정청구) 시립○○○어린이집 對 한국일보 ⁽³⁰⁴⁴⁾ , 인터넷 한국일보 ⁽³⁰⁴⁵⁾
조정대상	(1) 『시립 어린이집마저... “폭행에 썩은 과일 급식까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4월 7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4월 7일자 사회면) (2) 『수원 시립 어린이집 학대 증거 입수』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4월 8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4월 8일자 사회면) (3) 『수원 시립 어린이집 학대... 경찰 조사서 사실로 확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6월 1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6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046~3049	(각 정정청구) 장하나 對 동아일보 ⁽³⁰⁴⁶⁾ , 동아닷컴 ⁽³⁰⁴⁷⁾ , 중앙일보 ⁽³⁰⁴⁸⁾ , 온라인 중앙일보 ⁽³⁰⁴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일보 : 『“한 건” 의식해 졸속입법... 위헌 논란 - 무용지물法 쏟아내』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2일자 정치면, 동아닷컴 5월 12일자 정치면) 중앙일보 : 『야당의 품격, 국가의 걱정거리』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2일자 31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12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가의 원수(怨讐)라고 비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기사중 ‘怨讐’ 한자병기 삭제

2015서울조정 3050·3051	(정정·손배청구) (주)문화방송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한미FTA 보도 제대로 했다” MBC 소송자료에서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9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MBC가 2012년 파업 관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053·3054	(정정·손배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현직 경찰과 일반 시민들 사비불어 ‘업무방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술집에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를 입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055~3057	(정정·반론·손배청구) (사)○○○○선교회 외 1인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수백억 대 주식사기’ 박○○ 씨 첫 공판서 모두 부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타)
2015서울조정 3058~3060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지상의 스투어디스’ 꿈꿨던 KTX 여승무원들의 11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7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철도공사 사장 재직시 KTX 여승무원 280여명을 정리하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KTX 승무원 보도 관련 이 ○ 전 사장의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061	(손배청구) 강○○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남편이...』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이혼소송 중인 신청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062~3064	(각 손배청구) 권○○ 對 연합뉴스 ⁽³⁰⁶²⁾ , 연합뉴스TV ⁽³⁰⁶³⁾ , 인터넷 연합뉴스TV ⁽³⁰⁶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최신영상』 제하의 사진 (2015년 6월 12일자 최신영상면) • 연합뉴스TV : 뉴스다이제스트 프로그램 『유병언 부인 권윤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6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의 부인인 권윤자의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연합뉴스TV/내용 : 기사수정보도,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인터넷 연합뉴스TV/내용 : 기사수정보도, 부제소) ※ 보도 영상 중 신청인 초상 삭제
2015서울조정 3065, 3072	(각 손배청구) 신○○ 對 채널A ⁽³⁰⁶⁵⁾ , YTN ⁽³⁰⁷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1) 종합뉴스 프로그램 『박원순, 가든파이브 방문... 상인들 “쇼하냐” 항의』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 (2) 박정훈의 뉴스TOP10 프로그램 『박원순, 가든파이브 방문... “힘내라” vs “쇼한다”』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 YTN : (1) 뉴스통 프로그램 『서울시, 메르스 격리 입원자 생계비 40만 9천 원 지원』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5일자) • (2) 뉴스Q 프로그램 『서울시, 메르스 격리 입원자 생계비 40만 9천원 지원』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5일자) 외 2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시장의 가든파이브 방문 당시 항의하던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채널A - 손해배상 90만원, YTN - 손해배상 50만원)

2015서울조정 3066	(정정청구) (주)○○○○○아카데미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컴퓨터 아트 학원 본사 이○○ 부장』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컴퓨터아트 학원을 운영하는 신청인 회사의 경쟁업체에 대해 사실과 다른 과장 홍보성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피플] ○○컴퓨터 아트 학원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067·3068	(정정·손배청구) (주)○○코리아 對 인터넷 에너지경제
조 정 대 상	『전자 담배 전파인증받고 폭발방지 광고』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일자 산업/기업면)
신청인 주장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전기안전인증을 받았다고 허위 광고하고 있고, 전자담배 폭발이 이슈가 되기 전에 생산된 제품에 보호 회로가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069~3071	(정정·반론·손배청구) ○○○○○교회 對 CBS-TV
조 정 대 상	관찰보고서 프로그램 『○○○에 빠진 사람들 1부~8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6일, 17일, 23일, 24일, 30일, 31일, 4월 6일,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073·3074	(정정·손배청구)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외 1인 對 포천일보
조 정 대 상	『토지매입 안한 주택조합 과대광고 ‘주민피해 우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과장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075, 3076, 3080, 3081, 3106, 3107	(각 정정청구) 박○○ 對 중앙일보 ⁽³⁰⁷⁵⁾ , 온라인 중앙일보 ⁽³⁰⁷⁶⁾ , JTBC ⁽³⁰⁸⁰⁾ , 시사포커스신문 ⁽³⁰⁸¹⁾ , 투데이코리아 ⁽³¹⁰⁶⁾ , 아시아경제닷컴 ⁽³¹⁰⁷⁾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처음처럼 vs 침대는 과학』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8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17일자 사회면) • JTBC : 5시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광고계 “미다스 손” 영입… 홍보강화 빛 발할까』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7일자) • 시사포커스신문 :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에 ‘처음처럼’ 브랜드 만든 손해원 영입』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정치면) • 투데이코리아 : 『새정치연합, ‘처음처럼’ 손해원 홍보위원장 임명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정치면) • 아시아경제닷컴 : 『‘침대는 과학’에 놀란 새정치연합… ‘처음처럼’ 맞불 놓는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안한 광고 카피를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JTBC/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각 취하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시사포커스신문, 투데이코리아, 아시아경제닷컴/사유 : 정정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1일자 사회면) • JTBC : 5시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8일자 뉴스면) • 시사포커스신문 :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에 ‘처음처럼’ 브랜드 만든 손해원 영입』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삭제 (2015년 6월 26일자 정치면) • 투데이코리아 : 『새정치연합, ‘처음처럼’ 손해원 홍보위원장 임명한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삭제 (2015년 7월 1일자 정치면) • 아시아경제닷컴 : 『‘침대는 과학’에 놀란 새정치연합… ‘처음처럼’ 맞불 놓는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077~3079	(각 정정청구) 김경협 對 채널A ⁽³⁰⁷⁷⁾ , MBN ⁽³⁰⁷⁸⁾ , KBS-1TV ⁽³⁰⁷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친노’ 김경협 “비노는 당원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 MBN : 뉴스8 프로그램 『‘친노’ 김경협, SNS서 작심 비판… 비노 ‘부글부글’』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3일자)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새정치연합 혁신위 본격 활동… ‘비노’ 발언 논란』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비노는 당원이 아니다란 글의 취지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2015서울조정 3082·3083	(정정·손배청구) (주)메트로신문사 對 반론보도닷컴
조 정 대 상	『언중위, 메트로 정상적 저널리즘으로 보기 어려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5일자 이슈&트렌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불성립결정을 내린 이유가 신청인의 주장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084	(정정청구) (사)○○○○협회 對 닥터스뉴스
조 정 대 상	『한의협, 의협 임원들 고소...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6일자 의사·협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모 협회 임원들을 고소한 것이 메르스 퇴치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한의협, 의협 임원들 고소... 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6월 30일자 의사·협회면)
2015서울조정 3085·3086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환경스포츠타신문
조 정 대 상	『아직도 끝나지 않은 관리비 전쟁 수원 ○○○프라자 관리비 전쟁』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모 건물 관리회사인 신청인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089~3092	(각 정정청구) 성남시 對 문화일보^(3089,3091), 인터넷 문화일보^(3090,3092)
조 정 대 상	(1) 『메르스 정보공개, 정부 ‘뒷북’ vs 지자체는 ‘오버’』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6월 8일자 8면, 인터넷 문화일보 6월 8일자 사회면) (2) 『창원시의 무분별한 정보 공개... 환자 가족들 욕설전화 시달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6월 12일자 4면, 인터넷 문화일보 6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개하지 않은 메르스 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행 결과	『[바로잡음] 메르스 정보공개, 정부 ‘뒷북’ vs 지자체는 ‘오버’』 제하의 기사 (인터넷 문화일보 2015년 7월 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093·3094	(정정·손배청구)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對 소상공인신문
조정 대상	『“네이버 ‘희망재단’, 소상공인 ‘절망재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 이사진이 중소기업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집행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차별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 결과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1일자 4면)

2015서울조정 3095~3102	(각 정정·손배청구) 김OO 對 노컷뉴스 ^(3095·3096) , 더팩트 ^(3097·3098) , KBS-1TV ^(3099·3100) , KBS미디어 ^(3101·3102)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컷뉴스 : 『[영상] 잠자는 권리금법, 빈손으로 밀려나는 사장님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4일자 사회면) 더팩트 : 『강제퇴거 둘러싼 ‘건물주 vs세입자’ 갈등 증폭』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8일자 경제면) KBS-1TV : 취재파일K 프로그램 『그냥 장사하게 해 주세요』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6일자, KBS미디어 4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상가건물주인 신청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가게를 비우라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취하 (노컷뉴스, 더팩트/사유 : 기사삭제) 각 취하 (KBS-1TV, KBS미디어/사유 : 기사수정)
이행 결과	『그냥 장사하게 해주세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삭제 (KBS 미디어 2015년 7월 1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103·3104	(정정·손배청구) 함○○ 對 여성조선
조 정 대 상	『강용석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 비방·편가르기·소송… 알고 보면 ‘안 력셔리’한 력셔리 블로거들의 삶』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2일자 134~13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강모 변호사와 여성 블로거와의 스캔들을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133면)

2015서울조정 3105	(정정청구) (사)○○○○○협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상처 연고·한약이 금지 약물?... 스포츠계 ‘비상』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여자 프로배구선수가 식욕억제제가 포함된 한약 때문에 도핑에 적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이미 정정보도했으므로 신청인의 신청 목적 달성)

2015서울조정 3108·3109	(정정·손배청구) (주)○○○○○시스템 외 1인 對 불만닷컴
조 정 대 상	(1) 『정비업계 vs 손보사, 이권 다툼에 자동차 수리비·보험료 ↑... “소비자가 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자동차면) (2) 『[단독] 자동차 정비공장에 따라 정비요금 “천차만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자동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수리비 견적프로그램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AOS 견적프로그램보다 수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나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자동차수리비 견적프로그램 ‘○○’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자동차면)

2015서울조정 3110	(정정청구) ○○○엔터프라이즈 對 씨씨티비뉴스
조 정 대 상	(1) 『○○○ 숯불 김밥 갑질 논란, 조작된 진실로 선량한 기업에 피해 우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8일자 엔터테인먼트면) (2) 『허위사실에 피해입는 선량한 기업, ○○○ 숯불 김밥 본격 해명 나서』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엔터테인먼트면) (3) 『○○○ 갑질, 알고 보니 과장된 언론의 황포?』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엔터테인먼트면) (4) 『○○○ 갑질 논란, ○○킹 ○○점 전 남편 ‘○○○ 레시피 베꼈다’ 핵심 증언 제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엔터테인먼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체와 경쟁업체 사이에 있던 분쟁을 편향되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숯불 김밥 ‘갑질 논란’ 기사에 대한 ○○킹의 정정·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5일자 엔터테인먼트면)

2015서울조정 3111	(정정청구) (사)○○○○○협회 對 닥터스뉴스
조 정 대 상	『보험·제도 “약침술, 자보수가 청구 문제 많아”』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보험·제도면)
신청인 주장	약침 및 약침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112	(반론청구) 김○○ 외 1인 對 주간침례신문
조 정 대 상	『제 104차 총회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일자 6~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국내선교회 기금 횡령관련 조사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제 104차 총회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5일자 3면)

2015서울조정 3115·3116	(정정·손배청구) (주)○○○○컴퍼니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직언직설 프로그램 『알바비로 십원 짜리 만개 고약한 업주』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브랜드를 관련 없는 보도에서 비판적인 내용과 함께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서울조정 3117·3118	(추후·손배청구) 이○○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뒷돈’ 등장에 ○○농협 상임이사 선거 ‘파장’』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모 농협 상임이사 후보자인 신청인이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119·3120	(정정·손배청구) 홍문종 對 JTBC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 새누리 조직본부 소속… 홍문종 관여』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일자) (2) 아침& 프로그램 『○○○, 새누리 조직본부 소속… 홍문종 관여』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18대 대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의 조직과 업무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121~3123	(각 반론청구) (주)메트로신문사 對 조선일보 ⁽³¹²¹⁾ , 조선비즈닷컴 ⁽³¹²²⁾ , 온라인 중앙일보 ⁽³¹²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대기업 87% “사이비 언론 피해 입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일자 6면, 조선비즈닷컴 7월 2일자 뉴스면) 온라인 중앙일보 :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에 메트로신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한국광고주협회 실태조사 결과, 신청인 언론사가 유사언론 1위 매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124·3125	(정정·반론청구) 최원석 對 채널A
조 정 대 상	뉴스스테이션 프로그램 『‘비운의 기업’ 사하라 기적 동아그룹』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전 동아그룹 회장인 신청인이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따르지 않았고 신청인의 법정구속으로 동아그룹이 해체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스테이션 프로그램 『‘비운의 기업’ 사하라 기적 동아그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5일자)

2015서울조정 3126	(정정청구) 유기준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1) 『“정치인 출신 장관 부재중” 한 달에 서너 번 세종 근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9일자 산업면) (2) 『정치인 출신 장관 ‘입맛 따라’ 현장 방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산업면) (3) 『벌써 총선 행보?... 장관 스펙 쌓은 유기준 해수, 부산만 찾고 또 찾고』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해양수산부 장관인 신청인이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만 세종청사에서 업무를 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1일자 경제면)

<p>2015서울조정 3127~3166</p>	<p>(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스포츠경향^(3127·3128), 조선닷컴^(3129·3130), 인터넷 연합뉴스TV^(3131·3132), 인터넷 서울경제^(3133·3134), 인터넷 국민일보^(3135·3136), 인터넷 MBN^(3137·3138), 연합뉴스^(3139·3140), 인터넷 한국일보^(3141·3142), 아주뉴스^(3143·3144), 인터넷 문화일보^(3145·3146), 인터넷 이코노믹리뷰^(3147·3148), 세계닷컴^(3149~3152), 쿠키뉴스^(3153·3154), 인터넷 헤럴드경제^(3155·3156), 컨슈머타임스^(3157·3158) (각 손배청구) 인터넷 TV조선⁽³¹⁵⁹⁾, 뉴스1코리아⁽³¹⁶⁰⁾, 이투데이⁽³¹⁶¹⁾, 데일리안⁽³¹⁶²⁾, 인터넷 에너지경제⁽³¹⁶³⁾, 시사위크⁽³¹⁶⁴⁾, 뉴시스⁽³¹⁶⁵⁾, 미디어펜⁽³¹⁶⁶⁾</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스포츠경향 : 『한국부터 독일까지 8500km 쫓아다닌 스톡 “자매님을 볼 때마다 열정이 샘솟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생활문화면) • 조선닷컴 : 『한국서 독일까지 비행기로 쫓아가며 3년간 스톡킹한 30대 남성 징역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유학하며 만난 여성 3년간 스톡킹… 법원 유죄 선고』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독일까지 세 차례나 쫓아간 스톡커… 결국 실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스톡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시사면) • 인터넷 MBN : 『스케일이 다른 스톡킹, 첫 눈에 반한 여성 따라 독일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한국서 독일까지 8천500km 날아간 ‘독한’ 스톡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외 16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교제를 요구한 여성의 뒤를 몰래 밟는 등 광기어린 스톡킹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스포츠경향, 아주뉴스, 인터넷 이코노믹리뷰, 세계닷컴, 쿠키뉴스, 인터넷 헤럴드경제, 컨슈머타임스, 이투데이, 데일리안, 시사위크, 미디어펜/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선닷컴,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서울경제, 인터넷 국민일보, 연합뉴스, 인터넷 한국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뉴스1코리아, 뉴시스/내용 : 기사수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MBN, 인터넷 TV조선)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닷컴 : 『한국서 독일까지 비행기로 쫓아가며 3년간 스톡킹한 30대 남성 징역형』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7월 3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독일까지 세 차례나 쫓아간 스톡커… 결국 실형』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7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스톡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6일자 시사면) • 연합뉴스 : 『한국서 독일까지 8천500km 날아간 ‘독한’ 스톡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구매 거절당하자… 8500km 거리 쫓아온 스톡킹』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12일자 사회면) 외 3개 매체

2015서울조정 3167	(정정청구) 해양수산부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해수부, 장관 지역구에 씨푸드밸리?... 사실상 부산 낙점, 특혜 논란일 듯』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해양수산부가 추진 예정인 동북아 수산식품 클러스터(씨푸드밸리) 사업지로 부산시가 사실상 낙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해양수산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1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3168	(정정청구) ○○○의사회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강남의사들의 위험한 비밀클럽』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강남 의사들이 성매매 브로커 소개 받고 성관계를 맺어온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협박을 받은 사람은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3169~3188, 3294	(각 정정청구) 박○○ 對 MBN ⁽³¹⁶⁹⁾ , 인터넷 MBN ⁽³¹⁷⁰⁾ (각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경향신문 ^(3171·3172) , 뉴스1코리아 ^(3173·3174) , 뉴시스 ^(3175·3176) , 동아닷컴 ^(3177·3178) , e머니투데이 ^(3179·3180) , 인터넷 메트로 ^(3181·3182) , 아시아경제닷컴 ^(3183·3184) , 아시아투데이닷컴 ^(3185·3186) , 조선닷컴 ^(3187·3188) (손배청구) 온라인 중앙일보 ⁽³²⁹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뉴스8 프로그램 『파혼 당하고도 SNS서 부부 행세한 여성 CEO 집행유예』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7일자, 인터넷 MBN 7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30대 유명 여성 CEO 파혼당하자 ‘두 얼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파혼남의 집에 ‘낙서 협박’한 여성 CEO... 집행유예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사회면) • 뉴시스 : 『대법 “파혼 남성 협박... 30대 여성 CEO 점유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수십억 자산가 30대女 CEO, 파혼남 협박 혐의 집행유예 2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파혼 당하자 수시로 협박’ 유명 여성 CEO, 점유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사회면) 외 5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MBN, 인터넷 MBN, 인터넷 경향신문, 뉴시스, 동아닷컴, 아시아경제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조선닷컴,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기사삭제) • 각 조정불성립결정 (뉴스1코리아, e머니투데이, 인터넷 메트로)

2015서울조정 3189	(정정청구) ㈜문화방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박근혜는 가리고 노무현은 키운 MBC의 ‘성완종 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비자금 관련 보도를 하면서 수사 대상을 야권으로 넓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190	(정정청구) 유기준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IMO총장 당선 “모두 내 덕” 낮 뜨거운 공치사 난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두고 해수부 장관인 신청인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부처간 협업과 외교력의 승리라고 포장해 눈총을 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191·3192	(정정·손배청구) (주)○○○ 對 서울일보닷컴
조 정 대 상	(1) 『○○○○촌 수탁업체 특감결과 비공개 고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6일자 사회면) (2) 『남은 기간 좀 빼먹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6일자 사회면) (3) 『겨울에도 푸르지 못하다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한번도 하지 않은 강통회사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193~3196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파이낸셜뉴스 ^(3193·3194)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195·3196)
조정대상	『지상파 VOD 가격 협의, 담합 여부 논란』 제하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015년 7월 3일자 18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7월 3일자 경제/IT면)
신청인 주장	지상파 3사의 합작회사인 신청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관련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결과	『“○○○○○○○○○ 설립”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18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7월 24일자 경제/IT면)

2015서울조정 3197·3198	(정정·손배청구) 한○○ 對 노컷뉴스
조정대상	(1) 『여주시, “뉴욕 페스티벌” 홍보 대사 신천지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일자 종교면) (2) 『여주시, “뉴욕 페스티벌” 6만 명 관람 폐막 홍보대사… 신천지 논란 오점』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작가이자 모 지자체 전 홍보대사인 신청인이 신천지 신도이며 수상한 이력의 소유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결과	『[여주시 홍보대사 신천지 신도 의혹]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종교면)

2015서울조정 3199·3200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조정대상	『○○시의원 아파트 배관공사 시공사 선정 외압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5일자 수도권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시의원인 신청인이 아파트 배관공사 시공사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시의원 아파트 배관공사 시공사 선정 외압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수도권면)

2015서울조정 3201·3202	(정정·손배청구) (사)한국○○○○○○○협회 對 인터넷 신동아
조 정 대 상	『“경복궁 교태전은 왕비가 교태 부리는 곳”』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호 206면~21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 관광통역 안내사 대부분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해설을 하고 폭리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내용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 양성하는 전○○ 한국○○○○○○○협회장』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7일자 68면)
2015서울조정 3203	(반론청구) 해양수산부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GKL “더 이상 크루즈 검토 안한다”… 해수부, 외국합작으로 선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크루즈산업 활성화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204, 3205	(각 손배청구) 허○○ 對 TV조선 ⁽³²⁰⁴⁾ , 인터넷 TV조선 ⁽³²⁰⁵⁾
조 정 대 상	이슈해결사 박대장 프로그램 『부인에 흥기 휘두른 무자비한 남편』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5년 7월 10일자, 인터넷 TV조선 7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부싸움 관련 내용을 동의 없이 과장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206·3207	(정정·반론청구) ○○○골프앤리조트○○○○○ (주)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단독] 부산도공과 ○○○골프앤리조트의 수상한 거래』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한국자산신탁과 자금관리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탁사의 자금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부산도공과 ○○○골프앤리조트의 ‘수상한 거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210	(정정청구) 동해시 對 YTN
조 정 대 상	뉴스&이슈 프로그램 『지자체의 두 얼굴… 바가지 요금 부채질』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동해시가 위탁 운영하는 리조트의 휴가철 숙박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요금’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5년 8월 12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3211, 3212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국민일보 ⁽³²¹¹⁾ , 인터넷 국민일보 ⁽³²¹²⁾
조 정 대 상	(1) 『박원순 시장 “동성애자 권리 찬성”』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6월 2일자 29면~30면, 인터넷 국민일보 6월 2일자 미션라이프면) (2) 『박원순 시장 ‘친동성애 정책’에 혈세 2억원』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6월 4일자 29면~30면, 인터넷 국민일보 6월 4일자 미션라이프면) (3) 『동성애 단체, 지방선거 때 박원순 시장 지지』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6월 5일자 29면~30면, 인터넷 국민일보 6월 5일자 미션라이프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성애 관련 발언과 서울시의 인권관련 정책을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9월 3일자 28면, 인터넷 국민일보 9월 2일자 미션라이프면)

2015서울조정 3213	(정정청구) 최민희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朴대통령 놓고 민병주-진선미 두 女의원 격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정치면)

<p>2015서울조정 3214, 3215</p>	<p>(각 정정청구) (사)○○보호시민단체 ○○ 對 씨앤비뉴스⁽³²¹⁴⁾, 아주뉴스⁽³²¹⁵⁾</p>
<p>조정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앤비뉴스 : 『법원 “테마동물원 ○○의 동물학대 ○○ 주장은 허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2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 : 『“테마동물원 ○○에 대한 동물보호단체 ○○의 주장 허위사실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전국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단체가 모 테마동물원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리결과</p>	<p>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p>
<p>이행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앤비뉴스 : 『[반론보도] “테마동물원 ○○의 동물학대 ○○ 주장은 허위”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0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 : 『[반론보도] “테마동물원 ○○의 동물학대 ○○ 주장은 허위”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5일자 전국면)

<p>2015서울조정 3216·3217, 3239~3256, 3261·3262</p>	<p>(추후·손배청구) 남○○ 對 MBN^(3216·3217) (각 추후·손배청구) 뉴스1코리아^(3239·3240), 조선닷컴^(3241·3242), 이슈타임^(3243·3244), 인터넷 뉴스신문고^(3245·3246), 더팩트^(3247·3248), 풀빵닷컴^(3249·3250), kidok.com^(3251·3252), 뉴스미션^(3253·3254), e뉴스^(3255·3256), 다음^(3261·3262)</p>
<p>조정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뉴스8 프로그램 『“굶주린 아동 돕자더니”... ○○대책본부 정부지원금 부당사용』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3일자) • 뉴스1코리아 : 『국제NGO 단체 선교사, 역대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계속되는 시민단체 인사들의 잡음... 도덕성 논란 또 제기돼』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사회면) • 이슈타임 : 『○○대책본부 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 “세계 기아 아동 돕는다더니”』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정치·사회면) • 인터넷 뉴스신문고 : 『아동 도우라고 준 ○○대책본부 지원금, 엉뚱한 곳에?』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사회면) • 더팩트 : 『○○대책본부 파견 선교사, 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 풀빵닷컴 : 『○○대책 선교사 빈곤아동 지원금 부당 사용 정황』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커뮤니티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한국○○○○대책기구 ○○○지부 대표인 신청인이 정부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횡령 혐의 ○○대책 ○○○지부 남모 씨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3일자) • 뉴스1코리아 : 『‘횡령혐의’ ○○대책 ○○○지부 남모 씨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0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횡령 혐의 ○○대책 ○○○지부 남모 씨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5일자 사회면) • 이슈타임 : 『[정정보도] 횡령 혐의 ○○대책 ○○○지부 남모 씨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일자 정치·사회면) • 인터넷 뉴스신문고 : 『‘횡령 혐의 ○○대책 ○○○지부 남모 씨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4일자 사회면) • 더팩트 : 『[정정보도] ○○대책본부 파견선교사 정부지원금 부당사용,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일자 사회면) • 풀빵닷컴 : 『[정정보도] ○○대책본부 파견선교사 정부지원금 부당 사용,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4일자 커뮤니티면) 외 4개 매체

2015서울조정 3218	(정정청구) 대통령 경호실 對 내일신문
조정 대상	『군인사 문란 장관 위에 경호실장』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0일자 6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 경호실의 군사관리관 인사가 군 직제령 등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고, 경호실장이 군 인사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행 결과	『대통령 경호실 ‘군 인사 문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5일자 6면)

<p>2015서울조정 3219, 3220, 3228, 3232~3234, 3236~3238, 3257, 3258, 3260, 3265, 3266</p>	<p>(각 추후청구) 손○○ 외 1인 對 경향신문⁽³²¹⁹⁾, 인터넷 경향신문⁽³²²⁰⁾, 한국일보⁽³²²⁸⁾, 인터넷 한겨레⁽³²³²⁾, 뉴스1코리아⁽³²³³⁾, 뉴스토마토⁽³²³⁴⁾, 인터넷 PD저널⁽³²³⁶⁾, 인터넷 기자협회보⁽³²⁵⁷⁾, 오마이뉴스⁽³²⁶⁰⁾ 손○○ 외 2인 對 미디어스⁽³²⁶⁶⁾ 손○○ 對 아시아경제닷컴⁽³²³⁷⁾, 인터넷 미디어오늘^(3238, 3265), 부스앤뉴스⁽³²⁵⁸⁾</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YTN 간부들 ‘불법사찰’ 터지자 원○○과 집중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12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9일자 사회면) • 한국일보 : 『YTN 간부 3인, 원○○과 통화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9면) 외 1건 • 인터넷 한겨레 : 『YTN노조 “사측 불법사찰 터지자 원○○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YTN 노조, “YTN 주요간부 불법사찰 터지자 원○○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뉴스면) • 뉴스토마토 : 『YTN 노조, ‘불법사찰’ 관련 총리실 전 직원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IT/벤처면) • 인터넷 PD저널 : 『YTN노조, 파업 계속 이어 간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메인면) 외 6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모 방송사 간부인 신청인들이 노조에 대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뉴스토마토, 인터넷 PD저널,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기자협회보, 미디어스/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한국일보, 인터넷 미디어오늘/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인터넷 한겨레, 뉴스1코리아/사유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오마이뉴스/사유 : 중재합의)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불법사찰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14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27일자 사회면) • 한국일보 : 『“불법사찰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사회면) • 뉴스토마토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메인면) • 인터넷 PD저널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메인면) 외 6개 매체

2015서울조정 3221	(정정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인터넷 건설경제
조 정 대 상	『[취재 에필로그] 머나먼 정상화』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에 패심죄로 부실 벌점을 매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머나먼 정상화 보도’ 관련 철도시설공단 측 반론』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산업면)

2015서울조정 3222~3225	(각 추후·손배청구) 조○○ 對 일요신문 ^(3222·3223) , 인터넷 일요신문 ^(3224·3225)
조 정 대 상	『[단독보도]모 교회 목사 부인 충격 주장 조○○ ○○○교회 원로목사 사기혐의 피소 내막』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4년 6월 16일자 경제면, 인터넷 일요신문 6월 1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사기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조○○ ○○○○○교회 원로목사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0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3226·3227	(정정·추후청구) 한○○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올드스쿨 걸스데이 소진, “우겔 찍고 싶은 사람은 성시경 선배님!”』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애인인 유명가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서 미비)

2015서울조정 3229~3231	(각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디지털데일리 ⁽³²²⁹⁾ , 미디어스 ^(3230, 3231)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데일리 : 『MBC-유료방송 협상난항… 무한도전 무료 VOD 사라지나』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5일자 뉴스면) • 미디어스 (1) : 『MBC 이상호 기자, “해고무효”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9일자 미디어뉴스면) • 미디어스 (2) : 『이상호 기자 ‘해고무효’로 내다 본, 해직자 판결 미리보기』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MBC와 유료방송사간 SVOD 협상 관련, IPTV 업계가 MBC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법원이 이상호 기자 해고 무효 판결에서 이상호 기자가 MBC를 고발하는 트윗을 게시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디지털데일리/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미디어스/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데일리 : 『‘MBC-유료방송 협상난항… 무한도전 무료 VOD 사라지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7일자 뉴스면) • 미디어스 : 『‘이상호 기자 해고무효’ 관련 기사 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2일자 미디어뉴스면)
2015서울조정 3235	(정정청구) (주)○○기업 對 SBS-TV
조정 대상	8시 뉴스 프로그램 『○○대 출신업체에 광고권 특혜 줬다』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군부대의 특혜로 군사시설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옥외광고판의 광고권을 획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5년 8월 19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259	(손배청구) 주○○ 對 MBC-TV
조정 대상	PD수첩 프로그램 『데이트 폭력』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데이트 폭력 피해 사연을 보도하면서 실명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2015서울조정 3263·3264	(반론·손배청구) ○○○○○의료원 對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조 정 대 상	『보건의료노조 “○○의료원 정상화하려면 원장 퇴진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7일자 노동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료원의 노사분규와 관련 노동조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노동이슈면)

2015서울조정 3267·3268, 3296·3297	(각 정정·반론청구) 최○○ 對 한국일보 ^(3267·3268) , 인터넷 한국일보 ^(3296·3297)
조 정 대 상	(1) 『비리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7월 15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5일자 사회면) (2) 『‘자격시비’ ○○ 국립대 총장 제자논문 가로챈 의혹까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7월 16일자 28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5일자 사회면) (3) 『논문표절 의혹 총장 감싸는 교육부… “연구부정 엄단” 빈 말이었나』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7월 17일자 28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5일자 사회면) (4) 『총장 검증 손 놓은 교육부, 국립대 망친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7월 20일자 29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립대학 총장인 신청인이 동일 주제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등의 연구부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269·3270	(정정·손배청구) 류○○ 對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조 정 대 상	『76만 사회복지사 단체장 성희롱 파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0일자 사회복지면)
신청인 주장	모 협회 회장인 신청인이 여직원을 성희롱 했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271	(정정청구) ㈜문화방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젯밥’ 뉴스 MBC, 방통위원장 스튜디오에 앉히는 ‘꼴불견’』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0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MBC가 광고규제 완화를 위해 방통위원장을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젯밥’ 뉴스 MBC, 방통위원장 스튜디오에 앉히는 꼴불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일자 미디어뉴스면)
2015서울조정 3272~3275	(각 정정·손배청구) 송○○ 對 중앙일보 ^(3272·3273) , 온라인 중앙일보 ^(3274·3275)
조 정 대 상	『웃음거리 된 어린이집 ‘사생활 보호 CCTV’』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7월 30일자 12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실패한 ‘어린이집 CCTV 사생활보호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진행한 다른 시연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타)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CCTV 사생활보호 프로그램’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9월 28일자 2면)
2015서울조정 3276, 3277	(각 정정청구) 조달청 對 스포츠서울 ⁽³²⁷⁶⁾ , 인터넷 스포츠서울 ⁽³²⁷⁷⁾
조 정 대 상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제하의 기사 (스포츠서울 2015년 7월 16일자 2면, 인터넷 스포츠서울 7월 16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조달청의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조달청장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스포츠서울 2015년 8월 21일자 2면, 인터넷 스포츠서울 8월 20일자 스포츠면)

2015서울조정 3278	(정정청구) 주○○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포항 ○○대 총장 ‘새누리 ○○을 조직위원장 신청’... 잡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3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 총장인 신청인이 학내 분규 관련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총장직을 일신 영달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포항 ○○대 총장 ‘새누리 ○○을 조직위원장 신청’... 잡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기사 수정 (2015년 8월 24일자 지역면)
2015서울조정 3279	(정정청구) 박○○ 對 차의세계
조 정 대 상	『연해적전의 구증구포설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박○○의 반론을 논박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30면~36면)
신청인 주장	차문화 연구가인 신청인의 소송인 응송이 초의선사의 제다법을 계승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선가의 전통제다법을 부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280~3282	(정정·반론·손배청구) ○○○○○○○○○코리아(주) 對 KBS-1TV
조 정 대 상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외국 투자기업의 그늘』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 해고했고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양당사간 이의 신청/사유 : 신청인은 소송을 통해 진위여부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283~3286	(각 정정·손배청구) ○○○○○○○○대표회의 對 아시아타임즈 ^(3283·3284) ,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3285·3286)
조 정 대 상	『어른 다툼에 상처 입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아시아타임즈 2015년 7월 20일자 16면,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7월 20일자 수도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내 공부방을 사업권을 둘러싼 다툼때문에 예고 없이 폐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업권 분쟁으로 인한 공부방 폐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타임즈 2015년 8월 24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3287~3289	(정정·반론·손배청구) (주)○○○○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TV보조출연의 그늘①] “사라진 출연시간”... 일 끝길까 말도 못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메인면) (2) 『[TV보조출연의 그늘②] “빛 좋은 개살구”... 고용·산재보험서도 “사각지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방송 보조출연 기획사인 신청인 회사가 보조출연자에게 급여표를 제공하지 않고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TV보조출연 기획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3290~3292	(정정·반론·손배청구) 박○○ 對 e채널
조 정 대 상	용감한 기자들 프로그램 『별에서 온 귀족녀』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293	(손배청구) (주)○○ 對 몬스터짐
조 정 대 상	『멘데즈는 멕그레거에게 가장 완벽한 상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9일자 격투면)
신청인 주장	종합격투기 이벤트사인 신청인 회사가 원칙과 과정을 무시하고 격투기 대진을 결정하고 소속 선수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295	(정정청구) 조○○ 對 세계일보
조 정 대 상	『एं터리 인사행정에 ○○의료원 비리자 복직』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모 의료원 원직복귀가 주먹구구식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298	(정정청구) 포천시의회 對 인터넷 포천뉴스
조 정 대 상	『장자산업단지 비리의혹 조사특별위원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시의회면)
신청인 주장	포천시의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업체 선정 관련 비리를 확인하고 고발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포천시의회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시의회면)

2015서울조정 3299·3300	(정정·손배청구) 오 ○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영양군, 불법 오토캠핑장 단속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중인 오토캠핑장이 불법 시설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301	(정정청구) (주)○○○○○○○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野, 재계약 안돼 黨속 이전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소유 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청인의 재계약 거부로 당사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3일자 종합면)

2015서울조정 3302~3327	<p>(각 추후청구) 이○○ 외 2인 對 경인KBS-1TV⁽³³⁰²⁾, KBS미디어⁽³³⁰³⁾, SBS-TV⁽³³⁰⁴⁾, SBS 콘텐츠허브⁽³³⁰⁵⁾, MBN⁽³³⁰⁶⁾, 인터넷 MBN⁽³³⁰⁷⁾, YTN⁽³³⁰⁸⁾, 인터넷 YTN⁽³³⁰⁹⁾, TV조선⁽³³¹⁰⁾, 인터넷 TV조선⁽³³¹¹⁾, 연합뉴스⁽³³¹²⁾, 노컷뉴스⁽³³¹³⁾, 시사포커스신문⁽³³¹⁴⁾, 이슈타임⁽³³¹⁵⁾, 전국뉴스⁽³³¹⁶⁾, 코나스⁽³³¹⁷⁾, 푸드투데이⁽³³¹⁸⁾, 매경닷컴⁽³³¹⁹⁾, 아시아경제닷컴⁽³³²⁰⁾, 온라인 중앙일보⁽³³²¹⁾, 인터넷 경향신문⁽³³²²⁾, 인터넷 국민일보⁽³³²³⁾, 인터넷 매일일보⁽³³²⁴⁾, 인터넷 메트로⁽³³²⁵⁾, 인터넷 서울신문⁽³³²⁶⁾, 인터넷 신아일보⁽³³²⁷⁾</p>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도시락 납품한 사회적기업 대표 등 검거』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KBS 미디어 3월 4일자 사회면) •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두 얼굴의 사회적 기업』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6일자, SBS 콘텐츠허브 3월 4일자 사회면) • MBN : 뉴스8 프로그램 『“불량 도시락” 대량 유통한 사회적 기업』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인터넷 MBN 3월 4일자 사회면) • YTN : 뉴스10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도시락... 예비군 훈련장에』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인터넷 YTN 3월 4일자 사회면) • TV조선 : 뉴스7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불량 도시락 제조한 사회적 기업』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5일자, 인터넷 TV조선 3월 5일자 사회면) <p>외 16개 매체</p>

신청인 주장	사회적 기업 직원인 신청인들이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추후보도)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SBS-TV, SBS 콘텐츠허브, MBN, 인터넷 MBN, YTN, 인터넷 YTN, 매경닷컴/내용 : 추후보도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경인KBS-1TV, KBS 미디어, 연합뉴스, 노컷뉴스, 시사포커스신문, 이슈타임, 전국뉴스, 코나스, 푸드투데이, 아시아경제닷컴,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국민일보, 인터넷 매일일보, 인터넷 메트로,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신아일보/사유 : 추후보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8일자) • SBS-TV :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 수급 등 관련 추후 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6일자) • MBN : 전국네트워크뉴스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보조금 수급 등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8일자) • YTN : 뉴스10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보조금 수급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3일자) • TV조선 :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3일자) 외 16개 매체

2015서울조정 3328	(추후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YTN
조정 대상	뉴스10 프로그램 『바늘학대 의심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나서』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329	(정정청구) (사)○○○○협회 對 인터넷 한의신문
조정 대상	『○○협의 언론중재위 제소에 꼬리 내린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협회가 모 협회 임원진을 고소한 사건을 보도한 모 언론사가 기사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 보도내용의 잘못을 인정한 결과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기사삭제할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330	(정정청구) 송○○ 對 쉬핑데일리
조 정 대 상	『송회장 책임 안지고 경영권확보, 또 관리인 노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자 스페셜리포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모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 당시 금전채권 170억원을 선 순위 채무로 인정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 송○○ 회장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스페셜리포트면)
2015서울조정 3331~3334	(각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조선일보 ^(3331·3332) , 조선닷컴 ^(3333·3334)
조 정 대 상	『眞僞 불분명한 일방적 폭로 명석 깎아준 ‘국민방송 KBS’』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8월 3일자 2면, 조선닷컴 2015년 8월 3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KBS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장남 측 주장을 “특종 욕심에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9월 25일자 2면, 조선닷컴 9월 25일자 바로잡습니다면)
2015서울조정 3335, 3336	(각 정정청구) 김경협 對 한국일보 ⁽³³³⁵⁾ , 인터넷 한국일보 ⁽³³³⁶⁾
조 정 대 상	『비노세작 발언 김경협 당직 자격정지 징계 확정』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7월 10일자 6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당직 자격정지 징계로 내년 총선에 못 나올 공산이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337, 3338	(각 정정청구) 교육부 對 경향신문 ⁽³³³⁷⁾ , 인터넷 경향신문 ⁽³³³⁸⁾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향신문 : 『대통령에 보고한 ‘문·이과 통합’ 슬그머니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1면 및 5면, 인터넷 경향신문 7월 24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향신문 : (1) 『[길 잃은 교육과정 개정] ‘2015 개정’은 수능 개선책 찾다 나온 ‘돌발 개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교육입시면) (2) 『[길 잃은 교육과정 개정] 통합교육·학습 경감·현장 중심… “3가지 약속 다 안 지켰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교육입시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문·이과 통합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축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길 잃은 교육과정 개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8월 22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339~3342	(각 반론·손배청구) 문○○ 對 국민일보 ⁽³³³⁹⁻³³⁴⁰⁾ , 인터넷 국민일보 ⁽³³⁴¹⁻³³⁴²⁾
조정대상	『동네주민 사랑받던 길고양이 데려가면... 절도 혐의 유죄? 무죄?』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7월 10일자 13면, 인터넷 국민일보 7월 10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길고양이 구조에 대해 반대 입장인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8일자 13면) 인터넷 국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7월 10일자 13면 ‘동네주민 사랑받던 길고양이 데려가면... 절도 혐의 유죄? 무죄?’ 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8일자 시사면)

2015서울조정 3343	(정정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에이블뉴스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태 광주시 주도로 본격 감사 돌입』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1일자 오피니언면) 『○○○ 비리와 인권침해를 철저히 규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3일자 오피니언면) 『비대위, ○○○ 사태 왜곡 보도 강경 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0일자 사회면)

조 정 대 상	(4) 『○○○ 사태에 교사들도… “우리 자존감 없는 교사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5일자 전국넷면) (5) 『장애인거주시설인가? 장애인 사망시설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외 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후원금을 착복하고 거주 장애인을 학대하는 등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344~3347	(각 정정·손배청구) ○○○○○ 복지노동조합 對 메디칼타임즈 ^(3344·3345) , 메디파나뉴스 ^(3346·334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칼타임즈 : 『○○의료원 복수노조 탄생… 노사갈등 새국면 맞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병원·의대면) • 메디파나뉴스 : 『“○○의료원’ 갑작스런 노사 협약체결… 내막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종합병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측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칼타임즈 : 『○○의료원 복수노조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병원·의대면) • 메디파나뉴스 : 『○○의료원 복수노조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3348	(정정청구) 송○○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北청소년, 수학공부도 스파르타식… 성적 미달땀 ‘얼차려’ 받는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2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북한의 수학영재교육을 폄하하는 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수정)
이 행 결 과	『北청소년, 수학공부도 스파르타식… 성적 미달땀 ‘얼차려’ 받는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동아닷컴 2015년 8월 18일자 과학일반면)

2015서울조정 3349, 3350	(각 정정청구) 해군본부 對 시사저널 ⁽³³⁴⁹⁾ , 인터넷 시사저널 ⁽³³⁵⁰⁾
조정대상	『해군, 레이더 결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강행』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8월 4일자 14면~17면, 인터넷 시사저널 8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해군이 레이더 결함이 있는 해상작전헬기 수입을 강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해군 레이더 결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강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9월 23일자 46면, 인터넷 시사저널 9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351~3354	(각 반론·손배청구) ○○대학 對 노컷뉴스 ^(3351·3352) , 인터넷 한국일보 ^(3353·3354)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1) 『55명 중 39명에게 F학점 준 대학 교수 ‘유령학생’ 주장』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9일자 지역면) (2) 『○○ ○○대학 ‘유령학생’들 국가장학금 수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9일자 지역면) (3) 『유령학생 출석부 서둘러 폐기했다 교육부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0일자 지역면) 외 7건 • 인터넷 한국일보 : (1) 『○○ ○○대학 학점장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8일자 사회면) (2) 『○○ ○○대 학생 출석부 제멋대로 폐기』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0일자 사회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모 대학이 학생총원율을 높이기 위해 유명 학생을 입학시키고 허위 학점을 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노컷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 신청/사유 : 신청인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사실보도이므로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조정성립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 ○○대학』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일보 2015년 9월 3일자 수도권면)

<p>2015서울조정 3355~3376, 3381~3390, 3399~3410</p>	<p>(각 추후·손배청구) 염○○ 對 미디어스^(3355·3356, 3399·3400), 인터넷 미디어오늘^(3357·3358, 3407·3408), 인터넷 기자협회보^(3359·3360), 인터넷 PD저널^(3361·3362), 오마이뉴스^(3363·3364), 뉴스1코리아^(3365·3366), e머니투데이^(3367·3368), 폴리뉴스^(3369·3370), 프레시인^(3371·3372), 인터넷 BBS불교방송^(3373·3374), 인터넷 경향신문^(3375·3376), 노컷뉴스^(3381·3382), 뉴스앤뉴스^(3383·3384), 뉴스토마토^(3385·3386), 아시아경제닷컴^(3387·3388), 뉴시스^(3389·3390), 시사IN Live^(3401·3402), 인터넷 한겨레^(3403·3404), 뉴스타파^(3405·3406), 인터넷 한국일보^(3409·3410)</p>
<p>조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스 : 『YTN노조 “YTN 주요 간부들, 불법사찰에 연루”』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8일자 미디어뉴스면) 외 5건 ※2015서울조정3266사건에 병합 • 인터넷 미디어오늘 : 『YTN 주총서 사원주주들, 배석규 사장 퇴진 압박』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메인면) 외 3건 ※2015서울조정3238사건에 병합 • 인터넷 기자협회보 : 『YTN 간부-‘민간사찰’ 원○○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뉴스면) 외 4건 ※2015서울조정3257사건에 병합 • 인터넷 PD저널 : 『YTN간부 ‘불법사찰’ 원○○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뉴스면) 외 2건 ※2015서울조정3236사건에 병합 • 오마이뉴스 : 『민간인 사찰 주역과 YTN 간부들의 “수상한 통화내역”』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메인면) 외 1건 • 뉴스1코리아 : 『YTN 노조, “YTN 주요간부 불법사찰 터지자 원○○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메인면) 외 1건 • e머니투데이 : 『YTN간부들, 불법사찰 터지자 “사찰자” 원○○과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메인면) 외 13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모 방송사 간부인 신청인이 노조에 대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미디어스, 인터넷 기자협회보, 인터넷 PD저널, e머니투데이, 인터넷 경향신문, 뉴스앤뉴스, 뉴스토마토, 아시아경제닷컴, 뉴시스, 뉴스타파/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인터넷 미디어오늘,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폴리뉴스, 프레시인, 인터넷 BBS뉴스, 노컷뉴스, 시사IN Live/사유 : 추후보도) • 각 취하 (오마이뉴스, 인터넷 한겨레/사유 : 중재합의)
<p>이행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스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팀장 추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메인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메인면) • 인터넷 기자협회보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0일자 메인면) • 인터넷 PD저널 : 『“불법 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메인면) • 오마이뉴스 : 『“불법사찰 공모” YTN ○○팀장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1일자 메인면) • 뉴스1코리아 : 『“불법사찰에 연루” YTN ○○팀장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1일자 메인면) • e머니투데이 : 『“불법사찰에 연루” YTN ○○팀장 ‘혐의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3일자 사회면) 외 13개 매체

2015서울조정 3377~3380	(각 정정·손배청구) 권○○ 對 조선일보 ^(3377·3378) , 조선닷컴 ^(3379·3380)
조정대상	『[단독] 경매로 나온 유병언 一家 부동산, 다시 구원파 계열회사 품으로』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8월 14일자 사회면, 조선닷컴 8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텔런트 전모 씨의 남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391	(반론청구) 박○○ 對 MBN
조정대상	뉴스8 프로그램 『간부 공무원 승진 5분만에 번복 논란… 경찰에 고발』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3일자)
신청인 주장	모 소방본부 승진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된 소방서장급 승진자를 외압을 받고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2015서울조정 3392	(반론청구) 조○○ 對 조선닷컴
조정대상	『부패 척결 외치던 조○○ 前 청장 뇌물 사건에 충격받은 경찰』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조○○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일자 사회면)

<p>2015서울조정 3393~3396, 3447~3462</p>	<p>(각 반론·손배청구) 장○○ 對 채널A^(3393·3394), 인터넷 채널A^(3395·3396), 인터넷 MBN^(3447·3448), SBS 콘텐츠허브^(3449·3450), 인터넷 경향신문^(3451·3452), 인터넷 국민일보^(3453·3454), 연합뉴스^(3455·3456), 인터넷 일요신문^(3457·3458), 인터넷 한겨레^(3459·3460), 허핑턴포스트코리아^(3461·3462)</p>
<p>조정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시사인사이드 프로그램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네티즌 무더기 고소… 결과는?』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일자, 인터넷 채널A 6월 1일자 뉴스면) • 인터넷 MBN :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한 네티즌 대부분 불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고 노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비난한 네티즌 대부분 불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한 네티즌 대부분 ‘불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의 무리수… 비난 네티즌 대부분 불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형상의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리결과</p>	<p>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p>
<p>2015서울조정 3397·3398</p>	<p>(정정·손배청구) 이○○ 對 MBC-TV</p>
<p>조정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도난차 추격전 빛난 시민의식』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8일자) (2) 생방송오늘 프로그램 『무면허에 만취로 차량절도! 영화 같은 추격전』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일자)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의 차량 절도 범행 사실을 과장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리결과</p>	<p>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p>
<p>2015서울조정 3411</p>	<p>(정정청구) 화천군 對 뉴스타운</p>
<p>조정대상</p>	<p>『화천군수의 집요 - 간교한 빨갱이 짓』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오피니언면)</p>
<p>신청인 주장</p>	<p>화천군 베트남참전기념관 내 평화수호참전기념탑에 설치된 대형 조각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리결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p>

2015서울조정 3412, 3413	(각 정정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경인KBS-1TV ⁽³⁴¹²⁾ , KBS 미디어 ⁽³⁴¹³⁾
조정대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갈 길 먼 정상화... 이유는?』 제하의 보도 (경인KBS-1TV 2015년 7월 14일자, KBS 미디어 7월 14일자 경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에 대한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 부실급식과 인권유린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 장애인사회복지법인 보도’ 관련 고침』 제하의 기사 (KBS 미디어 2015년 9월 16일자 경인면)

2015서울조정 3414, 3415	(각 손해청구) 김○○ 對 JTBC ⁽³⁴¹⁴⁾ , 인터넷 JTBC ⁽³⁴¹⁵⁾
조정대상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유병언 1년 허상을 쫓았다?』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7월 26일자, 인터넷 JTBC 7월 2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분석하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 초상 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2015서울조정 3416, 3417, 3569	(각 정정청구) 유대운 對 조선일보 ⁽³⁴¹⁶⁾ , 조선닷컴 ⁽³⁴¹⁷⁾ , 인터넷 일요시사 ⁽³⁵⁶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의원들의 브레이크 없는 ‘수퍼甲 횡포’』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4면, 조선닷컴 8월 18일자 정치면) 인터넷 일요시사 : 『〈사설〉 안행위 국감, 유대운과 강신명』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6일자 시사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술을 마신 뒤 경찰지구대를 찾아가 지역구 내에서 발생한 바바리맨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소동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닷컴 : 『의원들의 브레이크 없는 ‘수퍼甲 횡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27일자 정치면) 인터넷 일요시사 : 『〈사설〉 안행위 국감, 유대운과 강신명』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삭제 (2015년 9월 21일자 시사칼럼면)

2015서울조정 3418, 3419	(각 정정청구) ○○○○대학교 對 한국일보 ⁽³⁴¹⁸⁾ , 인터넷 한국일보 ⁽³⁴¹⁹⁾
조 정 대 상	『現 장관 의원시절 보좌관을? ○○○대의 수상한 교수 임용』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18일자 28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현 교육부장관의 전 보좌관이 학력 및 경력 등이 부족함에도 교수로 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420~3432	(각 손해청구) 고○○ 외 2인 對 인터넷 TBS ⁽³⁴²⁰⁾ , 인터넷 YTN ⁽³⁴²¹⁾ , 인터넷 경향신문 ⁽³⁴²²⁾ , 세계닷컴 ⁽³⁴²⁴⁾ , 연합뉴스 ⁽³⁴²⁶⁾ , 온라인 중앙일보 ⁽³⁴²⁸⁾ , 쿠키뉴스 ⁽³⁴²⁹⁾ , KBS미디어 ⁽³⁴³⁰⁾ , 뉴스1코리아 ⁽³⁴³¹⁾ , SBS 콘텐츠허브 ⁽³⁴³²⁾ 고○○ 외 1인 對 내외뉴스통신 ⁽³⁴²³⁾ , 아시아투데이닷컴 ⁽³⁴²⁵⁾ , 인터넷 일간스포츠 ⁽³⁴²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TBS : 『50대 전 교수 여제자 상습 성추행해』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뉴스면) • 인터넷 YTN : 『찜질방·노래방에서 여제자 성추행한 교수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경향신문 :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50대 전 교수 입건』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내외뉴스통신 : 『대학교 50대 교수, 노래방서 여제자 허리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세계닷컴 :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대학교수, 수사받자 사표냈지만...』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아시아투데이닷컴 : 『여제자 상습 성추행 대학 교수 구속송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찜질방에서, 노래방에서...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50대 前 교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외 6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피해자인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행장소, 범행 내용 등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인터넷 TBS, 인터넷 YTN, 인터넷 경향신문, 내외뉴스통신, 세계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연합뉴스, 인터넷 일간스포츠, 온라인 중앙일보, 쿠키뉴스, KBS 미디어/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SBS 콘텐츠허브/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女제자 추행 대학 교수, 수사하자 사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28일자 경기면) • SBS 콘텐츠허브 :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50대 전직 교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3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433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참여정부 끌어들이는 MBC와 TV조선의 닳은 꼴 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4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성완중 리스트’와 ‘2012년 불법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MBC가 여당 편향적이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434~3437	(각 정정·손배청구) (주)○○○○○ ^(3434·3435) , ○○○○(주) ^(3436·3437) 對 대한뉴스통신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국가인증 위조에 국가기관 납품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KS 국가인증을 부정 발급받거나 인증번호를 부정 사용했으며, 국방부에 성능미달 제품을 납품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438~3440	(정정·반론·손배청구) (주)소셜뉴스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배우 김○○ “동료 대한 잡담 끌어 모아 기사화” 발끈,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연예·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연예인의 트위터 글을 당사자 동의 없이 기사화한 것에 대해 부도덕한 짓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키트리의 배우 김○○ 트윗 기사화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연예·스포츠면)

2015서울조정 3441	(반론청구) 송○○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대출 담보 차량 대포차로 처분한 일당 검거』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무등록 대부업자를 협박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쇼판 프로그램 『‘대포차 사기’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5일자, 인터넷 TV조선 9월 25일자 사건사고면)
2015서울조정 3442	(반론청구) 박○○ 對 SBS 스포츠
조 정 대 상	주간야구 프로그램 『보문산 호루라기』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야구장에서 고성과 욕설, 쓰레기통 투척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서 미비)
2015서울조정 3443·3444	(정정·손배청구) 박○○ 對 데일리메디
조 정 대 상	『국립중앙의료원 노사관리 강사 놓고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5일자 의원/병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의료원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달게 만든 당사자라는 노조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445·3446	(정정·손배청구) ○○구 자동차매매단지관리단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자동차매매단지 내홍 전모』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4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관리단이 공금으로 음주, 도박을 하고, LED 조명 교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과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일요초대석〉 ○○자동차매매단지 김○○ ○○단장』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2일자 인물면)

2015서울조정 3463, 3464	(각 손해청구) 박○○ 對 KBS-1TV ⁽³⁴⁶³⁾ , KBS미디어 ⁽³⁴⁶⁴⁾
조 정 대 상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5인방』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8월 25일자, KBS미디어 8월 25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신청인 관련 영상삭제,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 동의 후 지급)

2015서울조정 3465~3468	(각 정정·손해청구) 김○○ 對 SBS-TV ^(3465·3466) , SBS 콘텐츠허브 ^(3467·3468)
조 정 대 상	뉴스토리 프로그램 『빠들린 돈으로 황제의 삶… 초호화 결혼식 올리는 경제사범』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일자, SBS 콘텐츠허브 6월 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변호인 접견권을 악용해 특별 접견실에서 자유 시간을 보내는 등 편만한 수감생활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469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시사상조
조 정 대 상	『○○○○○, 경황이 없는 유족에 바가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일자 상 조뉴스면)
신청인 주장	상조회사인 신청인이 분양이 금지된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했고, 유족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5서울조정 3470·3471	(정정·손해청구) 임태희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코엑스를 흔드는 손』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2012년 모 상가 상인회로부터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고, 상인들의 재입점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간 이의 신청/사유 : 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내용 및 게재방법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472·3473, 3515·3516	(각 정정·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1) 『세계일보 논설위원의 ‘셀프’ 사장 임명?』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미디어면) (2)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계일보 사장으로 임명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미디어면) (3) 『세계일보 기자들 “통일교에서 사장 교체 통보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미디어면) (4) 『세계일보 주화파 vs 주전파의 대립?』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8일자 미디어면) (5) 『‘정윤희 문건’ 후폭풍, 세계일보 사장 교체 임박』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미디어면) (6) 『세계일보 ‘정윤희 특종’ 기자들 집단 사표 냈다 철회』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근거 없이 신임 세계일보 사장 임명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1~5번 기사/사유 : 기간 초과) 기각 (6번 기사/사유 : 사실보도)
2015서울조정 3474·3475	(정정·손배청구) 박○○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성매매업소서 학교예산 횡령한 전 이사장 복귀추진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사립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신청인이 진행하고 있는 해고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반대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파면된 사학재단 전 이사장 복귀 추진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6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3476	(정정청구) 대통령 경호실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군, 남북 긴장 풀리자마자… 별들의 진급 전쟁』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1일자 3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 경호실장이 국방부에 청와대 군사관리관의 유임을 요청하여 근무케 한 것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행 결과	『대통령 경호실 ‘군 인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일자 3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3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477·3478	(정정·반론청구) 이○○ 對 JTBC
조정 대상	(1) 뉴스룸 프로그램 『○대 고위 보직교수, 동료 여교수 성추행 의혹』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3일자) (2) 뉴스룸 프로그램 『○대 교수 성추행, 진상조사 착수… 의혹 대부분 인정』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4일자) (3) 뉴스룸 프로그램 『성추행 의혹 교수에 3개월 정직 처분… 감싸기 논란』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의 동료 여교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취하 (내용 : 반론보도)
이행 결과	『○대 보직교수 성추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479~3482	(각 정정·반론청구) 김○○ 對 한국일보 ^(3479·3480) , 인터넷 한국일보 ^(3481·3482)
조정 대상	『○○○협회 변칙 입법로비 의혹』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31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3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도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협회의 입법로비 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행 결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0월 26일자 2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31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483~3486	(각 정정청구) 김○○ 對 중앙일보 ⁽³⁴⁸³⁾ , 온라인 중앙일보 ⁽³⁴⁸⁴⁾ , 매경닷컴 ⁽³⁴⁸⁵⁾ , 뉴스1코리아 ⁽³⁴⁸⁶⁾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설경구, 악성 댓글 쓴 주부 고소 취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4일자 20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4일자 연예면) • 매경닷컴 : 『설경구, 아내 송윤아 비방한 악플러 30대 주부 고소 취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일자 스타투데이면) • 뉴스1코리아 : 『설경구 악플러 고수 취하 결정, 왜 일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명배우와 그의 가족에 대해 악성 댓글을 쓴 악플러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기사삭제) • 취하 (매경닷컴/사유 - 기사삭제) • 취하 (뉴스1코리아/사유 - 정정보도)
이행 결과	• 뉴스1코리아 : 『‘설경구 악플러 고소 취하 결정, 왜일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연예면)
2015서울조정 3487, 3488	(각 정정청구) 김○○ 對 경제풍월 ⁽³⁴⁸⁷⁾ , 인터넷 경제풍월 ⁽³⁴⁸⁸⁾
조정 대상	『[DMZ 지뢰도발] ‘전투복 입고 돌아 오라’』 제하의 기사 (경제풍월 2015년 9월 2자 3면, 인터넷 경제풍월 9월 2일자 국가비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DMZ 지뢰도발 사건에 관한 사전 ‘엠바고’ 요청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정정보도] 김광진 의원 DMZ 지뢰도발 엠바고 파기 관련』 제하의 기사 (경제풍월 9월 23일자 3면, 인터넷 경제풍월 2015년 9월 10일자 국가비전면)
2015서울조정 3489, 3490	(각 정정청구) ○○대학교 對 한국일보 ⁽³⁴⁸⁹⁾ , 인터넷 한국일보 ⁽³⁴⁹⁰⁾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日 독도도발에 맞설古지도가 썩어간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10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0일자 사회면) (2) 『“기증 청할 땐 언제고…”古지도 대모의 울분』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10일자 8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0일자 사회면) (3) 『○○박물관장 “○○대가 보복성 징계 절차”』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17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부설 박물관의 유물을 부실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제기를 한 박물관장을 보복 징계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 결과	『○○대 김○○ 박물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9월 25일자 수도권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23일자 수도권면)

2015서울조정 3491~3506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향신문 ^(3491·3492) , 미디어펜 ^(3493·3494) , e머니투데이 ^(3495·3496) , 시사포커스신문 ^(3497·3498) , 뉴스1코리아 ^(3499·3500) , 뉴시스 ^(3501·3502) , 아주뉴스 ^(3503·3504) , 유엔엔 ^(3505·3506)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향신문 : 『공금으로 일본 여행간 ○○대 박물관장… 직위 해제 조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미디어펜 : 『○○대, 공금횡령·직원 무단 동원 등 김○○ 박물관장 ‘직위 해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e머니투데이 : 『유물 팔아 수익원 ‘횡령’ ○○대 ○○박물관장 직위 해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시사포커스신문 : 『○○대, 공금횡령 ○○박물관장 김○○ 교수 직위 해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뉴스1코리아 : 『○○대, ‘횡령 혐의’ ○○박물관장 직위 해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모 대학 측의 일방적인 징계결정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원기사의 기사 제목 수정 및 신청인 주장 삽입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향신문 : 『○○대 ○○박물관장 직위 해제 부당 법정 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0일자 사회면) 미디어펜 : 『○○대 ○○박물관장 “직위 해제 부당…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6일자 사회면) e머니투데이 : 『○○대 前○○박물관장 “직위 해제 부당…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사회면) 시사포커스신문 : 『김○○ ○○박물관장, ○○대와 ‘부당 직위 해제’ 법적 분쟁』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6일자 사회면) 뉴스1코리아 : 『○○대 ○○박물관장 직위 해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사회면) 외 3건

2015서울조정 3507, 3508	(각 추후청구) ○○코퍼레이션 對 에너지경제 ⁽³⁵⁰⁷⁾ , 인터넷 에너지경제 ⁽³⁵⁰⁸⁾
조정 대상	(1) 『2억짜리를 7억에... 수상한 수의계약』 제하의 기사 (에너지경제 2015년 4월 23일자 1면, 인터넷 에너지경제 4월 23일자 에너지산업면) (2) 『국산화 했다더니 납품제품은 중국산?』 제하의 기사 (에너지경제 2015년 4월 23일자 3면, 인터넷 에너지경제 4월 23일자 에너지산업면) (3) 『국가 신기술인증 받은 제품이 사실은 중국산?』 제하의 기사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4년 12월 23일자 에너지산업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공기업과의 거래 시 가격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주)○○코퍼레이션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에너지경제 2015년 9월 16일자 1면, 인터넷 에너지경제 9월 16일자 에너지산업면)
2015서울조정 3509~3512, 3513, 3514, 3517, 3518	(각 정정·손배청구) ○○○○○코리아(유) 외 2인 對 JTBC ^(3509·3510) ○○○○○코리아(유) 對 인터넷 JTBC ^(3511·3512) (각 손배청구) 임○○ ^(3513, 3514) , 구○○ ^(3517,3518) 對 JTBC ^(3513, 3517) , 인터넷 JTBC ^(3514, 3518)
조정 대상	(1) 뉴스룸 프로그램 『그래도 1명 골라보세요... 후보 뽑는 여론조사도 ‘엉터리’』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31일자, 인터넷 JTBC 8월 31일자 사회면) (2) 뉴스룸 프로그램 『조사기관 ‘내용 공개 거부’』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인터넷 JTBC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론조사 회사인 신청인이 새누리당 양산시장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에서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뉴스룸 프로그램 『‘양산시장 여론조사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10월 23일자, 인터넷 JTBC 10월 20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19·3520	(정정·손배청구) 윤○○ 외 1인 對 SBS-TV
조정 대상	뉴스스토리 프로그램 『강제입원 5만 명 ‘가족이 날 가뒀다?’』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521, 3523	(각 반론청구) (사)○○○○선교회 외 1인 對 e뉴스 ⁽³⁵²¹⁾ , 교회와 신앙 ⁽³⁵²³⁾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e뉴스 : 『‘구원파’ ○○○○선교회 박○○ 목사 징역 9년 구형』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일자 교계면) 교회와 신앙 : 『청부 살해 시도 의혹 제기… 박○○ 관련 재판서』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이단&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 소속 목사가 구원파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성립 (교회와 신앙/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e뉴스 : 『○○○○선교회, ‘구원파’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일자 교계면) 교회와 신앙 : 『○○○○선교회 및 박○○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이단&이슈면)
2015서울조정 3522	(정정청구) ○○○○협회중앙회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정대상	『〈단독〉 ○○○○협회 200억 빌딩 편취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결과	『○○○○협회 200억 빌딩 편취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24·3525, 3667~367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법률정보신문 ^(3524·3525) , 연합뉴스 ^(3667·3668) , SBS 콘텐츠허브 ^(3669·3670) , 인터넷 국민일보 ^(3671·3672)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정보신문 : 『쇼핑몰 ‘위탁관리자’ 모집광고서 돈만 날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3일자 사회면) 연합뉴스 : 『주부들 상대 ‘온라인 아동복 쇼핑몰’ 위탁 사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6일자 뉴스면) SBS 콘텐츠허브 : 『주부들 상대 ‘온라인 아동복 쇼핑몰’ 위탁 사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사회면) 인터넷 국민일보 : 『간식비 벌려다가 인터넷 쇼핑몰 잘못 만나 수천만원 뜯긴 주부들 경찰에 도움 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부들을 상대로 계약금만 편취하는 온라인 쇼핑몰 위탁 사기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526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한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보
조 정 대 상	『의혹, 공금유용·방송개입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1면~3면)
신청인 주장	KBS가 이사장의 개인용무 해외출장에 공금을 집행했고, 이사장의 압력을 받고 이사장 출연 프로그램에 제작비를 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노보라는 특성상 사측의 주장을 게재하기 어려우며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527	(반론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스페셜 프로그램 『가족끼리 왜 이래』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상속만 받고 부모를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버지의 강동 통장’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SBS 콘텐츠허브 2015년 10월 19일자 다시보기면)
2015서울조정 3528~3530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과일칩쌀떡 청년의 황당 횡포』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과일칩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신청인이 가맹점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5서울조정 3531~3533, 3581~3586, 3591, 3592, 3685, 3710~3713, 3825</p>	<p>(각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경향신문^(3531~3533, 3581, 3583, 3585, 3712, 3713), 주간경향^(3582, 3584, 3586, 3685), 인터넷 주간경향^(3591, 3592, 3825), 경향신문^(3710, 3711)</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1) 『국정원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2일자 사회일반면) (2) 『○○○ 용역팀은 ‘국정원 댓글부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9일자 사회일반면) (3) 『○○○ ‘댓글부대’ 석연찮은 해명, 찢찢매는 권력기관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5일자 사회일반면) 외 5건 • 주간경향 : (1) 『국정원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32면~35면, 인터넷 주간경향 9월 1일자 사회면) (2) 『○○○ 용역팀은 ‘국정원 댓글 부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38면~39면, 인터넷 주간경향 9월 1일자 사회면) (3) 『○○○ ‘댓글부대’ 석연찮은 해명, 찢찢매는 권력기관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38면~39면, 인터넷 주간경향 9월 15일자 사회면) • 경향신문 : (1) 『‘댓글’ 의혹 용역팀 “국정원과 정보 협력”』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일자 1면~2면) (2) 『국정원의 ○○○ ‘댓글부대’ 개입 의혹 규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31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가 모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이 국가정보원 사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취하 (인터넷 주간경향⁽³⁸²⁵⁾/사유 : 자진취하)
<p>2015서울조정 3534, 3535</p>	<p>(각 반론청구) (사)○○○○○○운동연합 對 중앙일보⁽³⁵³⁴⁾, 인터넷 중앙일보⁽³⁵³⁵⁾</p>
<p>조 정 대 상</p>	<p>『암살 안옥윤의 조국과 2015년 대한민국』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9월 5일자 27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5일자 오피니언면)</p>
<p>신청인 주장</p>	<p>해방 후 김구 선생이 여의도 비행장을 통해 귀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p>
<p>이 행 결 과</p>	<p>『[바로잡습니다] 9월 5일자 ‘암살 안옥윤의 조국과 2015년 대한민국’ 제목의 ‘중앙시평’과 관련』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9월 24일자 3면)</p>

2015서울조정 3536·3537	(정정·손배청구) 장○○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출혈이 심한 시민을 구할 때 입은 피 묻은 제복 사진을 총 기사고로 숨진 의경 제복의 사진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3538, 3539	(각 손배청구) 염○○ 對 MBN ⁽³⁵³⁸⁾ , 인터넷 MBN ⁽³⁵³⁹⁾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범행동기 ‘오리무중’』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9월 9일자, 인터넷 MBN 9월 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살인사건 관련 보도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540, 3541	(각 정정청구) 조○○ 對 인터넷 스포츠조선 ⁽³⁵⁴⁰⁾ , 인터넷 한겨레 ⁽³⁵⁴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스포츠조선 : 『성추행 당한 여배우A “김○○ 아냐… 男배우B, 속옷 찢고 마구 만졌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3일자 연예면) 인터넷 한겨레 : 『과한 연기 한 남자 배우, 성추행일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영화촬영 중 연기를 빙자해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스포츠조선 : 『[반론보도] 영화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주장 사건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4일자 연예면)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42, 3568	(각 반론청구) 은평구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은평뉴타운서 아파트 분양허가 8번 좌절된 이유』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4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은평구가 모 건설사의 은평뉴타운 내 건축 허가를 보유한 이유가 구청장의 공약이나 민원 때문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2015서울조정 3543	(반론청구) 서○○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헌법소원을 남용하는 악성 청구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544·3545	(정정·손배청구) 최○○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연합회장, 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 지급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연합회장의 판공비가 1년에 약 4억원이라고 얘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546~3549, 3594·3595	(각 정정·반론청구) 유○○ 對 쿠키뉴스 ^(3546·3547) , 뷰스앤뉴스 ^(3548·3549) , 인터넷 일요신문 ^(3594·359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키뉴스 : 『부산대 이어 ○대서도 ‘일베 교수’ 논란… ‘정치 편향성’ vs ‘표현의 자유’』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3일자 뉴스면) • 뷰스앤뉴스 : 『‘일베 교수’ “盧, 부엉이 바위서 떨어져 IQ 69”』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교육면) • 인터넷 일요신문 : 『학점 볼모삼아 정치색 드러낸 교수님? 대학가 일베 교수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출제한 시험문제 지문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이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뷰스앤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쿠키뉴스/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인터넷 일요신문/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키뉴스 : 『‘일베 교수’와 맞서게 된 대학생들 기사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6일자 뉴스면) • 뷰스앤뉴스 : 『‘○○대 일베 교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52	(손배청구) 민○○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광주APT에서 초등 1년생 男, 14층에서 추락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자녀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자택을 알 수 있게 밝혀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553·3554	(정정·손배청구) 김○○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는 프로그램 『염산테러 당한 여자, 택시운전사는 왜?』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7일자)
신청인 주장	보령 염산테러 사건 배후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소운영자와의 인터뷰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명을 표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555	(반론청구) (주)○○○○○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소방관 장갑 살돈도 없다는데... 줄줄 새는 70억』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앙119구조본부에 다목적 제독차 3대를 과도한 가격에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8시뉴스 프로그램 『‘다목적 제독차 납품 국고손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12일자)

2015서울조정 3556	(정정청구) ○○○○○보험(주) 對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대형 보험사 4곳 2000억 사기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18면~2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당한 해외여행자보험 사기피해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해외 여행자 보험사기 관련』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1월 10일자 65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9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57~3564	(각 정정·손배청구) 진성준 對 중앙일보 ^(3557~3560) , 온라인 중앙일보 ^(3561~3564)
조 정 대 상	(1) 『국감위스트 군사기밀 흘리는 진성준』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9월 12일자 5면, 온라인 중앙일보 9월 12일자 정치면) (2) 『경찰청장에게 총쏘기 시연까지 시키는 국정감사』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9월 15일자 34면, 온라인 중앙일보 9월 1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565	(정정청구) 손○○ 對 인터넷 태권라인
조 정 대 상	『누가 태권도 단증 없이도 태권도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만들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일자 팀&현장탐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단증이 없어도 태권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제한 폐지를 주도했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단증없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6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3566, 3567	(각 정정청구) 조○○ 對 세계일보 ⁽³⁵⁶⁶⁾ , 세계닷컴 ⁽³⁵⁶⁷⁾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에 자리 보전 대가 역대 상납”』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5년 9월 10일자 1면, 세계닷컴 9월 10일자 정치면) (2) 『돈 선거·인사 파행… 보훈처 명령도 무시한 ‘막가파 회장님’』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5년 9월 10일자 3면, 세계닷컴 9월 10일자 정치면) (3) 『조○○ 해외출장 ‘부실투성이’』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5년 9월 11일자 1면, 세계닷컴 9월 11일자 정치면) (4) 『조회장, 이권회사 대표에 측근들 얹혀… 제2 BW사건 ‘시한폭탄’』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5년 9월 11일자 6면, 세계닷컴 9월 11일자 정치면) (5) 『“회장에 집중된 ‘막강 권한’ 분산… 전문가에 경영 맡겨야”』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5년 9월 14일자 6면, 세계닷컴 9월 1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단체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570~3573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디지털타임스 ^(3570·3571) , 인터넷 일요저널 ^(3572·357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타임스 : 『서초구청, ○○동 ○○시티 부지에 시정명령』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산업면) • 인터넷 일요저널 : 『○○동 ○○시티(옛 ○○터미널 부지), 낮에는 주차장, 밤에는 산업쓰레기 매립장』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정상적인 계약 없이 모 택지개발 부지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폐기물을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디지털타임스/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일요저널/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타임스 : 『‘서초구청, ○○동 ○○시티 부지에 시정명령’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5일자 산업면) • 인터넷 일요저널 : 『〈정정 및 반론〉 ‘○○동 ○○시티, 낮에는 주차장 밤에는 산업쓰레기 매립장’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74, 3575	(각 손해청구) 조○○ 對 iMBC ⁽³⁵⁷⁴⁾ , SBS 콘텐츠허브 ⁽³⁵⁷⁵⁾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BC : 『“영화에서 본 대로”, 고등학생 5만원 권 위조 지폐범 ‘덜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뉴스투데이면) • SBS 콘텐츠허브 : (1) 『“영화보고 따라해” 5만원 권 위조한 고교생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7일자 사회면) (2) 『“영화 보고 지폐 위조” 간 큰 고교생 ‘덜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위조지폐범 신고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범행 당시 CCTV 속 신청인의 초상과 점포 내부를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BC : 『“영화에서 본 대로”, 고등학생 5만원 권 위조 지폐범 ‘덜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초상 모자이크 처리 (2015년 10월 2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영화보고 따라해” 5만원 권 위조한 고교생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초상 모자이크 처리 (2015년 9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76, 3577	(각 정정청구)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對 MBN ⁽³⁵⁷⁶⁾ , 인터넷 MBN ⁽³⁵⁷⁷⁾
조정대상	뉴스8 프로그램 『○○○○ 재건축 조합원 투신 자살』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9월 16일자, 인터넷 MBN 9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자살한 이유가 조합의 시공사 선정 관련 비리 때문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 재건축 조합원 투신 자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10월 21일자, 인터넷 MBN 10월 2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78	(손배청구) 왕○○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정대상	『두 정거장 차인데 패션은 ‘극과 극’』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대학생들의 학교별 패션을 비교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수정, 부제소, 기타)
이행결과	『두 정거장 차인데 패션은 ‘극과 극’』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5년 10월 2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579, 3580	(각 정정청구) 하남시 對 아시아타임즈 ⁽³⁵⁷⁹⁾ ,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³⁵⁸⁰⁾
조정 대상	『하남시, 홍수관리구역 논밭 매각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아시아타임즈 2015년 8월 17일자 11면,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8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하남시가 홍수관리구역의 시유지를 특정인에게 매각하고 규정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행 결과	『‘하남시, 홍수관리구역 논밭 매각 특혜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타임즈 2015년 10월 2일자 11면,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10월 2일자 수도권면)
2015서울조정 3587~3590	(각 손해청구) 박○○ 對 MBN ⁽³⁵⁸⁷⁾ , 인터넷 MBN ⁽³⁵⁸⁸⁾ , 네이버 ⁽³⁵⁸⁹⁾ , 다음 ⁽³⁵⁹⁰⁾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뉴스8 프로그램 『5살 친아들 살해』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4일자) • 인터넷 MBN :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네이버 9월 15일자 사회면, 다음 9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MBN, 인터넷 MBN/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70만원, 부제소) • 각 조정성립 (네이버, 다음/내용 : 부제소, 기타)
2015서울조정 3593	(반론청구) 황○○ 외 1인 對 조선일보
조정 대상	『40대 여성, 참고인 조사 다음날 자살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강압수사로 참고인이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 결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10월 15일자 2면, 조선닷컴 10월 15일자 사고면)

2015서울조정 3596	(정정청구) 이○○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수업 내용 적으라”... ○○고 제보교사 ‘사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고등학교 부장교사인 신청인이 학교 내부 사안을 제보한 교사의 수업내용을 사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고 제보교사 사찰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교육면)

2015서울조정 3597	(정정청구) ○○○○○협동조합연합회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협동조합 이름 내건 다단계 사기꾼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2일자 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합회 회장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98·3599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교육부 ‘송 ○ ○○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 결정’』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모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 결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5일자 교육면)

2015서울조정 3600	(반론청구) ○○○○대학교 對 인터넷 위클리오늘
조 정 대 상	(1) 『경남 ○○○○대 사학비리 의혹 관련, 교내 일부 교수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0일자 사회면) (2) 『경남 ○○○○대, 개인정보 열람으로 인권침해 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의 사학비리를 제기한 교수들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경남 ○○○○대 사학비리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01~3616, 3779~3794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1TV^(3601·3602), MBC-TV^(3603·3604), YTN^(3605·3606), JTBC^(3607·3608), MBN^(3609·3610), 인터넷 경향신문^(3611·3612), 세계닷컴^(3613·3614), 뉴데일리^(3615·3616), 뉴시스^(3779·3780), 더팩트^(3781·3782), 동아닷컴^(3783·3784), e머니워크^(3785·3786), 인터넷 스포츠조선^(3787·3788), 아시아경제닷컴^(3789·3790), 아주뉴스^(3791·3792), 조선닷컴^(3793·379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결혼 안 해 준다” 초등생 잡고 두 시간 반 인질극』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내연녀 초등생 아들 상대 인질극 50대男 긴급체포』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 YTN : 뉴스만만 프로그램 『순천 아파트 인질극』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안 만나준다” 앙심 인질극』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 MBN : 뉴스BIG5 프로그램 『2시간 40여분 순천 아파트 인질극, 이유 들어 보니 ‘이럴 수가’』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순천 아파트 인질극, 9살 인질 풀어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사건·사고면) 외 10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신청인과 내연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KBS-1TV/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JTBC/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경향신문, 세계닷컴, 뉴데일리/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MBC-TV, MBN) • 각 취하 (뉴시스, 더팩트, 동아닷컴, e머니워크, 인터넷 스포츠조선, 아시아경제닷컴, 아주뉴스, 조선닷컴/사유 : 기사삭제) • 취하 (YTN/사유 : 중재합의)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뉴스7 프로그램 『법원, '9살 어린이 인질극' 남성 징역 2년 선고』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5일자) • JTBC : 아침& 프로그램 『9살 남아 인질극 남성에 징역 2년』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6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5일자 오피니언면) • 세계닷컴 :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뉴데일리 :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17~3666	<p>(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경향신문^(3617·3618), 노컷뉴스^(3619·3620), e머니투데이^(3621·3622), 인터넷 메트로^(3623·3624), 세계닷컴^(3625·3626), 인터넷 스포츠경향^(3627·3628), 아시아투데이닷컴^(3629·3630), 인터넷 일요신문^(3631·3632), 인터넷 뉴스신문교^(3633·3634), 조선닷컴^(3635·3636), 인터넷 헤럴드경제^(3637·3638), 연합뉴스^(3639·3640), 뉴시스^(3641·3642), 뉴스1코리아^(3643·3644), KBS미디어^(3645·3646), iMBC^(3647·3648), SBS 콘텐츠허브^(3649·3650), MBN^(3651·3652), 인터넷 MBN^(3653·3654), 현대HCN관악방송^(3655·3656), 네이버^(3657·3658), 다음^(3659·3660), 네이트^(3661·3662), 구글^(3663·3664), 줌^(3665·3666)</p>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대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을 벌인 서울대 졸업생』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대 명예 실추” 시비에 교직원-졸업생 주먹다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대 명예 실추시켰다” 성희롱 교직원 폭행한 졸업생』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메트로 : 『“○○대 명예 더럽혔다”... 졸업생, 성희롱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대 출신작가, “성희롱으로 학교 명예 더럽혔다”며 ○○대 직원과 주먹다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포츠경향 : 『○○대 졸업생이 ‘성희롱’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대 성희롱 교직원과 졸업생 주먹다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외 18개 매체
신청인 주장	<p>모 대학 교직원인 신청인이 학교 졸업생과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에서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다.</p>
처리 결과	<p>각 기각 (사유 :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인정)</p>

2015서울조정 3673	(정정청구) 박○○ 對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조 정 대 상	『박○○ 목사 무죄, ‘수백억 원’ 사기 의혹에도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사기 의혹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박○○ 목사 무죄, ‘수백억 원’ 사기 의혹은 무죄』 제하의 기사 중 기사 제목 및 신청인 관련 기사 수정 (2015년 9월 30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74, 3675	(각 정정청구) 변○○ 對 JTBC ⁽³⁶⁷⁴⁾ , 인터넷 JTBC ⁽³⁶⁷⁵⁾
조 정 대 상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유병언 1년 허상을 쫓았다?』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7월 6일자, 인터넷 JTBC 7월 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되었던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676	(정정청구) 장○○ 對 사건의내막
조 정 대 상	『성범죄 사건 속출… 대형마트 가기 무섭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컨슈머리포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피해자인 대형마트 성폭행 미수 사건 관련, 초기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는 마트 측의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아울렛 성폭행 미수 사건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3677, 3678	(각 정정청구) 유○○ 對 JTBC ⁽³⁶⁷⁷⁾ , 인터넷 JTBC ⁽³⁶⁷⁸⁾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값비싼 “히말라야 핑크소금”, 실상 알고보니…』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9월 21일자, 인터넷 JTBC 9월 2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히말라야 식용암염이 위생상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핑크소금’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5년 10월 20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3679·3680	(정정·손배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1) 『[기자의 눈] 철도 안전보단 유라시아열차 홍보가 우선?』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오피니언면) (2) 『승무원도 예매 취소 못하는 최신 코레일 특, 오류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1일자 사회면) (3) 『“철도공기업 CEO 평가” “흑자보다 안전”… 인명사고 발생 땀 해임 건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일자 사회면) (4) 『코레일, 최근 5년간 음주 직원 76명 적발… 솜방망이 처벌』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일자 사회면) (5) 『수당 줄테니 없애자… 코레일 자동승진 폐지의 불편한 진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안전문제 보다는 단기 경영흑자와 홍보에 치중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681	(정정청구) 한국광물자원공사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광물공사 주재원들, 골프·유흥비 25억… “많이 해먹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의 모 해외 주재원들이 회사 운영비로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광물공사 주재원들, 골프·유흥비 25억’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10월 16일자, 인터넷 JTBC 10월 1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82	(반론청구) 법무부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담장 위를 걷는 특권』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서울남부구치소가 특정 수용자에게 외부 반입 음식물 허용, 골프생방송 시청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열린TV 시청자세상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SBS 2015년 12월 2일자, SBS 콘텐츠허브 12월 1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2015서울조정 3683, 3684	(각 정정청구) ○○○○○선교회 對 마이씨네 ⁽³⁶⁸³⁾ , 아이크레뉴스 ⁽³⁶⁸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씨네 : 『영화 <치외법권> 속 교주 실제 모델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마이씨네면) 아이크레뉴스 : 『영화 <치외법권> 속 교주 실제 모델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의 총재가 여대생을 선별해 잠자리에 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씨네 : 『영화 <치외법권> 속 교주 실제 모델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10월 1일자 마이씨네면) 아이크레뉴스 : 『영화 <치외법권> 속 교주 실제 모델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10월 1일자 문화면)

2015서울조정 3686	(손배청구) ○○○○○협회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웨딩사업 투자’ 사기 친 단체 대표, 2심서 집유·석방』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장의 개인비리 관련 재판결과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협회명을 밝혀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웨딩사업 투자’ 사기 친 단체 대표, 2심서 집유·석방』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10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87·3688	(각 정정·손배청구) ○○유치원 對 인터넷 주간고양신문
조 정 대 상	『5세 여아, 흘린 음식 훔아먹고 성추행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유치원의 운전기사가 원아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알림)
이 행 결 과	『‘일산 Y유치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89·3690	(정정·손배청구) ○○○○○입주자대표회의 對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빛 좋은 개살구, ‘○○○하우스’ 실제 살아보니...』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9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테라스하우스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아파트단지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하우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바로잡습니다면)

2015서울조정 3691	(정정청구) ○○○○대학교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대, 편법 입학·제적으로 충원을 높였나』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총장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시설의 장애인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대, 편법 입학·제적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92~3695	(각 정정·손배청구) ○○○○개발(주) 對 한국일보 ^(3692·3693) , 인터넷 한국일보 ^(3694·3695)
조 정 대 상	(1) 『○○○○공고 후적지 ‘연립주택’ 꿈수분양 논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9월 15일자 26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14일자 사회면) (2) 『달성군, 남○○○○○ ‘꿈수’ 분양 팔짱』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9월 16일자 26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15일자 사회면) (3) 『○○○○공고 후적지 개발, 잇단 불법 물의』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9월 23일자 26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696	(손배청구) 이○○ 對 인사이트
조 정 대 상	『한 번 입으면 무조건 반하는 아름다운 ‘생활한복’ 사진 5장』 제하의 사진 (2015년 9월 29일자 라이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SNS에 게시한 생활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동의 없이 무단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서울조정 3697·3698	(정정·손배청구) ○○○○○○○○ (주) 외 1인 對 이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직원을 사지(死地)로 내 몬 ‘카지노 ○○○ 임○○ 대표』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2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국 구치소에 수감된 직원의 석방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직원 중국 구치소 구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3699	(정정청구) 의정부시 對 의정부뉴스
조 정 대 상	『의정부시 자매결연지 방문 관광 의혹 눈총』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2일자 행정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시가 베트남 하이증시와의 자매도시 조인식에 출입기자단을 배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700~3703	(각 정정·손배청구) (주)덴탈포커스 對 치의신보 ^(3700·3701) , 데일리덴탈 ^(3702·370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의신보 : (1) 『치과 재료사주기 운동 펼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5면) (2) 『현 집행부 성과내게 힘 실어줘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5면) 데일리덴탈 : (1) 『치과 재료사주기 운동 펼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5면) (2) 『현 집행부 성과내게 힘 실어줘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치의에 관련 단체의 기자재전시회(WeDEX) 조직위원회 등이 신청인 언론사에 대해 취재 거부를 결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704, 3705	(각 반론청구) ○○○○협동조합 對 KBS-1TV ⁽³⁷⁰⁴⁾ , KBS미디어 ⁽³⁷⁰⁵⁾
조 정 대 상	7시 종합뉴스 프로그램 『가입비 10억원... ‘그들만의 리그’ ○○○조합』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9월 14일자, KBS미디어 9월 14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신규 업체에 거액의 가입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는 예인 작업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뉴스광장 프로그램 『○○ 조합 부산지부 “불법 작업 신규업체 배선 거부”』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0월 31일자)

2015서울조정 3706, 3707	(각 정정청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對 머니투데이 ⁽³⁷⁰⁶⁾ , e머니투데이 ⁽³⁷⁰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니투데이 : 『국감 후폭풍에 ‘몸살’ 앓는 소진공』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5일자 15면) • e머니투데이 : 『‘모자논란’ 소진공, 국감 후폭풍에 휩싸여』 제하의 기사(2015년 9월 25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이사장에게 사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이사장이 디자인한 모자를 행사용품으로 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708, 3709	(각 정정청구) 이○○ 對 MBN ⁽³⁷⁰⁸⁾ , 인터넷 MBN ⁽³⁷⁰⁹⁾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죽은 동물과 대화 가능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10월 3일자, 인터넷 MBN 10월 3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인 신청인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액이 과도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714, 3715	(각 정정청구) 권은희 對 일요시사 ⁽³⁷¹⁴⁾ , 인터넷 일요시사 ⁽³⁷¹⁵⁾
조 정 대 상	『[긴급입수] 새정치 공천 살생부 공개』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0월 4일자 14~15면, 인터넷 일요시사 10월 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새정치 민주연합에 공천 살생부가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새정치 공천 살생부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1월 1일자 정치면, 인터넷 일요시사 10월 28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716	(정정청구) (사)○○○○○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현○○, 또 삼성 출신 ‘낙하산 인사’ 입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8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외곽조직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5서울조정 3717·3718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시사상조
조 정 대 상	『○○천사, ‘○○○○섬유’ ○○수의 홍보관 구입 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비자를 속여 고가에 수의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5서울조정 3719	(정정청구) 교육부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100억대 대입원서 접수시스템 수수료 경감 효과는 전혀 없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구축한 ‘대입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이 수험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입원서 접수시스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5년 10월 26일자 사회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2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20	(정정청구) (주)○○○○○ 對 e머니워크
조 정 대 상	『한강 자전거대여사업’ 편법·몰아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생활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자전거 대여사업권을 서울시로부터 수주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서울 한강 자전거대여사업 수주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생활문화면)
2015서울조정 3721~3723, 3736	(각 정정청구) ○○○○○○○○ 연합회 對 MBC-TV ⁽³⁷²¹⁾ , iMBC ⁽³⁷³⁶⁾ △△△△△△△△ 연합회 對 MBC-TV ⁽³⁷²²⁾ , iMBC ⁽³⁷²³⁾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비위생 급식?』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0월 6일자, iMBC 10월 6일자 다시보기면) (2) 생방송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사각 지대’ 놓인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발병』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0월 7일자, iMBC 10월 7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정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엄격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724~3727	(각 정정·손배청구) 흥○○ 對 매경닷컴 ^(3724·3725) , 네이버 ^(3726·3727)
조 정 대 상	『천사를 전사로 만드는 사회』 제하의 기사 (매경닷컴 2015년 9월 9일자 오피니언면, 네이버 9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신 소유 건물 임차인을 협박하고 영업방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천사를 전사로 만드는 사회”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매경닷컴 2015년 11월 13일자 오피니언면, 네이버 11월 13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3728, 3729	(각 정정청구) 국방부 외 1인 對 한겨레 ⁽³⁷²⁸⁾ , 인터넷 한겨레 ⁽³⁷²⁹⁾
조정대상	『전투기로 장난 하나… 공군 창설 이래 최대위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10월 3일자 19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3일자 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차기 전투기 선정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특정 전투기로 기종을 변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공군 창설 이래 최대 위기’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12월 26일자 21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25일자 군사면)

2015서울조정 3730~3733	(각 정정·손배청구) 강○○ 對 한국일보 ^(3730·3731) , 인터넷 한국일보 ^(3732·3733)
조정대상	『익산시장 판공비로 “경찰서장 등에게 격려금”』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0월 6일자 26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6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경찰서장 재직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익산시장 판공비로 “경찰서장 등에게 격려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1월 16일자 26면, 인터넷 한국일보 11월 16일자 지역면)

2015서울조정 3734, 3735	(각 손배청구) 유○○ 對 JTBC ⁽³⁷³⁴⁾ , 인터넷 JTBC ⁽³⁷³⁵⁾
조정대상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유병언 사후 1년, 허상 쫓았다』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7월 26일자, 인터넷 JTBC : 7월 2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분석하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기각 (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2015서울조정 3737~3740	(각 정정·반론청구) 인천삼산경찰서 對 경향신문 ^(3737·3738) , 인터넷 경향신문 ^(3739·3740)
조 정 대 상	『불법 스포츠 도박 현행범 잡았건만...』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9월 22일자 27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불법스포츠도박 현행범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훈방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현행범』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11월 6일자 27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41	(정정청구) 의정부시 對 의정부뉴스
조 정 대 상	『의정부시민 혈세로 신세계百 앞 광장 단장』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시가 세금을 들여 사유지를 단장해 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4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742·3743	(정정·손배청구) 양○○ 對 아시아엔
조 정 대 상	(1) 『교민 잇단 피살 마닐라 한인 사업가 “고위경관이 위해음모 가담” 필리핀 경찰청장에 신변보호 요청』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동북아면) (2) 『한국 대사관 및 검찰·사법부 현지 사정 너무 ‘깜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2일자 동북아면)
신청인 주장	필리핀에서 사업을 했던 신청인이 현지인을 사주해 다른 교민 사업가에게 누명을 씌우고 위해를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744, 3745	(각 정정청구) 은평구 對 한국경제 ⁽³⁷⁴⁴⁾ , 한경닷컴 ⁽³⁷⁴⁵⁾
조정대상	『서울시 땅 팔고 구청은 건축불허… 등 터지는 건설사』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5년 10월 12일자 33면, 한경닷컴 10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건설사가 은평구내 아파트 분양관련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은평구의 인허가권 남용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행결과	『은평구 인·허가권 남용 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5년 12월 2일자 33면, 한경닷컴 12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46~3749, 3756~3759, 3775~3778	(각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3746~3749) , 주식회사 문화방송 ^(3756~3759)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3775~3778) 對 동아일보 ^(3746·3747, 3756·3757, 3775·3776) , 동아닷컴 ^(3748·3749, 3758·3759, 3777·3778)
조정대상	(1) 『정부 무시하는 지상파… 재전송료 협의체도 외면』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8월 12일자 12면, 동아닷컴 8월 12일자 사회면) (2) 『진격의 지상파 방송』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9월 1일자 29면, 동아닷컴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가 구성한 케이블TV 재전송료 협의체에 불참한 이유가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750~3753	(각 정정·반론청구) 해양수산부 對 서울신문 ^(3750·3751) , 인터넷 서울신문 ^(3752·3753)
조정대상	『대한민국 국적 포기합니다- 중견선사 크루즈 허가 위해 1년여 피땀… 결국 홍콩행 왜』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5년 10월 9일자 2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내 한 해운사가 홍콩국적으로 크루즈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해양수산부의 허가 지연 등 행정처리 부실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해수부 크루즈 허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5년 12월 2일자 11면, 인터넷 서울신문 12월 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54, 3755	(각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서울경제 ⁽³⁷⁵⁴⁾ , 네이버 ⁽³⁷⁵⁵⁾
조 정 대 상	『폐간운동 부른 한 잡지의 범법 행위』 제하의 기사 (인터넷 서울경제 2015년 9월 8일자 정치·사회면, 네이버 9월 8일자 정치·사회면)
신청인 주장	남성잡지 맥시코리아의 9월호 표지사진이 여성 납치 및 유기를 묘사한 범죄 조장 행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폐간운동 부른 한 잡지의 범죄 연출 행위』 제하의 기사 중 제목 수정 (인터넷 서울경제 2015년 10월 16일자 정치·사회면, 네이버 10월 16일자 정치·사회면)
2015서울조정 3760, 3761	(각 반론청구) 박○○ 對 연합뉴스 ⁽³⁷⁶⁰⁾ , 연합뉴스TV ⁽³⁷⁶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경찰관과 시비 한번에... 부부의 꿈 풍비박산』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5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 출발 640 프로그램 『경찰관과 시비 한번에... 부부의 꿈 풍비박산』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음주단속 중 시민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경찰관과 시비 한번에... 부부의 꿈 풍비박산’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1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 출발 640 프로그램 『[반론보도] ○○경찰서 박모경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31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10월 3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62~376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 對 한국대학신문 ^(3762~3764) , 유앤앤 ^(3765~376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대학신문 : 『사이버대 전환·신규 설립 불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4면) • 유앤앤 : 『사이버대 전환·신규 설립 무산』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의 사이버대학 전환신청이 실패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대학신문 : 『○○○○○대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4면) • 유앤앤 : 『○○○○○대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768·3769, 3826·3827, 3849~3860	(각 정정·손배청구) 황○○ 對 인터넷 한겨레 ^(3768·3769) , 불교닷컴 ^(3826·3827) , 뉴스천지 ^(3849·3850) , 불교포커스 ^(3851·3852) , 불교플러스 ^(3853·3854) , 인터넷 금강신문 ^(3855·3856) , 인터넷 시사저널 ^(3857·3858) , 시사N Live ^(3859·3860)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겨레 : 『○○사 탕화 절도사건… ○○ 스님은 ‘저승사자’ 유출에 시치미 떼는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7일자 사회면) • 불교닷컴 : 『“매불 행위 이사장이 이사회소집하다니…”』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종합면) 외 5건 • 뉴스천지 : 『혜문스님 “절 집안 쉬쉬 그만하고… 탕화 제자리 돌려놔야”』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불교면) • 불교포커스 : 『흥국사 성조스님 “○○스님이 탕화 두 점 빼돌린 건 사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4일자 종합면) 외 3건 • 인터넷 금강신문 : 『민불 “○○대 표절 총장, 절도 이사장 사퇴” 촉구』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일자 뉴스면) 외 1건 • 불교플러스 : 『○○사 탕화 은닉 혐의… 문화재청은 등재여부를 공개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1일자 뉴스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대학 이사장인 신청인이 사찰 주지 재임 당시 발생한 흥국사 탕화 절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뉴스천지, 인터넷 금강신문/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한겨레,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불교플러스, 인터넷 시사저널, 시사N Live)

2015서울조정 3770	(정정청구) (주)○○○○○ 對 e머니위크
조정대상	『한강 자전거대여사업 편법·몰아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생활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자전거 대여사업권을 서울시로부터 수주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행결과	『[반론보도] 서울 한강 자전거대여사업 수주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생활문화면)

제 5 부

2015서울조정 3771·3772	(정정·반론청구) ○○고 학부모회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1) 『○○고 학부모들, 공익제보 교사에게 “학교 떠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영상뉴스면) (2) 『○○고 학부모들, 공익제보자 퇴진 요구 “침묵 시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1일자 영상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고교 학부모들이 학교 내부문제 제보 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침묵시위 동영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고 학부모들 공익제보자 퇴진 요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74·3775	(정정·손배청구) ○○○○○○○○○○조합법인 對 에스티브이
조 정 대 상	『[고발] ○○시립화장장, 유골함 10배 폭리 시 위탁판매 ○○○리 번영회』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4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춘천 모 화장장 위탁 운영과 관련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식당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고발] ○○시립화장장, 유골함 10배 폭리 시 위탁판매 ○○○리 번영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식당 모자이크 처리 및 캡션 수정 (2015년 10월 21일자 핫이슈면)

2015서울조정 3795~3798	(각 정정·손배청구) (주)조선방송 對 KBS-1TV^(3795·3796), KBS미디어^(3797·3798)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육설·막말·비속어, 방송에서 못 쓴다』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0월 7일자, KBS미디어 10월 7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TV조선 뉴스프로그램이 비속어와 인격 비하 표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육설·막말·비속어, 방송에서 못 쓴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2월 5일자, KBS미디어 12월 9일자 다시보기면)

2015서울조정 3799·3800	(정정·반론청구) ○○○○○주택조합 對 데일리안
조 정 대 상	『○○동 조합 ‘파산 신청’ ○○은행, 막무가내 집회로 신음』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택조합이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801	(정정청구) (주)○○프로덕션 對 뉴스1스타
조 정 대 상	『[단독] ‘굿바이 미스터 블랙’, SBS 이어 MBC도 편성 불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방송 편성이 불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단독] ‘굿바이 미스터 블랙’, SBS 이어 MBC도 편성 불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1코리아 2015년 10월 22일자 연예면)

2015서울조정 3802, 3803	(각 손배청구) 김○○ 對 KBS-1TV ⁽³⁸⁰²⁾ , KBS미디어 ⁽³⁸⁰³⁾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고속도로 공사 안전불감증 여전』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0월 5일자, KBS미디어 10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속도로 공사의 위험을 알리는 보도에서 현장근로자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804	(손배청구) ○○○○○○○○○(유) 외 1인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법원, 非 교과목 ‘공부법’ 가르쳐도 “학원 등록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학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청인 교육업체의 회사명과 대표자의 실명을 언급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법원, 非 교과목 ‘공부법’ 가르쳐도 “학원 등록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805	(정정청구) 김관진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김관진, 軍비선 통해 ‘한민구 동향’ 보고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군 비선을 통해 국방장관의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4일자 2면)
2015서울조정 3806~3809	(각 정정·반론청구) ○○○○○○ 對 한국일보 ^(3806·3807) , 인터넷 한국일보 ^(3808·3809)
조 정 대 상	『풀뿌리 소송으로 시민단체 바로잡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7일자 27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단체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1월 12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11월 1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810	(정정청구) 주철기 對 세계일보
조 정 대 상	『경질 된 주철기, 방산비리 연루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방산비리와 연루되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직에서 경질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2면)

2015서울조정 3811, 3812	(각 반론청구) 김○○ 對 JTBC ⁽³⁸¹¹⁾ , 인터넷 JTBC ⁽³⁸¹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공혈견” 충격영상 첫 공개』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6일자) • 인터넷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동물복지 사각지대” 공혈견 사육장… 충격 실태 보고』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 동물혈액은행이 사육하고 있는 공혈견의 복지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공혈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5년 11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813	(반론청구) 양○○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조갑제 “죄 없는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마녀사냥 헌법 정신에 위배”』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6일자 정치일반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를 주장한 것을 마녀사냥이라고 매도해 관련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3814	(정정청구) 교육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조간 1면, ‘국정화’ 빠지고 ‘교육부 광고’ 게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5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막기 위해 주요 신문 1면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음)

<p>2015서울조정 3815~3822</p>	<p>(각 정정청구) 유승희 對 동아일보⁽³⁸¹⁵⁾, 문화일보⁽³⁸¹⁶⁾, 세계일보⁽³⁸¹⁷⁾, 조선일보⁽³⁸¹⁸⁾, 한국일보⁽³⁸¹⁹⁾, 인터넷 한국일보⁽³⁸²⁰⁾, 연합뉴스⁽³⁸²¹⁾, 인터넷 YTN⁽³⁸²²⁾</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리더십 실종된 새정치聯의 민낯』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6면) • 문화일보 : 『野 또 ‘난장판’... 兪 “정봉주 특사 1호” 李 “트러블 메이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2일자 8면) • 세계일보 : 『또 욕설·막말·소란... 새정치 최고위는 ‘봉숭아 학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6면) • 조선일보 : 『野 최고위, 또 막말 싸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8면) • 한국일보 : 『野 지도부 ‘막장 드라마’ 시즌 3』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2일자 5면) 외 3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이용득 최고위원과 막말 공방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세계일보, 조선일보, 인터넷 YTN/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연합뉴스/사유 : 자진취하)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닷컴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막말 공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바로잡습니다면) • 인터넷 문화일보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막말 공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정치면) •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2면) •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1일자 5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막말 공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정치면) 외 2개 매체
<p>2015서울조정 3823·3824, 3957·3958</p>	<p>(정정·손배청구) 현경대 對 경향신문^(3823·3824), 인터넷 경향신문^(3957·3958)</p>
<p>조 정 대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 대통령 ‘7인회’ 현경대 씨 지난 총선 때 1000만원 받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10월 13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13일자 정치면) (2) 『총선 이틀 전 돈봉투 받은 현경대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라고 말해』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10월 13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13일자 정치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p>

2015서울조정 3828, 3829	(각 정정청구) 법무법인 ○○ 對 경향신문 ⁽³⁸²⁸⁾ , 인터넷 경향신문 ⁽³⁸²⁹⁾
조 정 대 상	『박 대통령 ‘7인회’ 현경대 씨 지난 총선 때 1000만원 받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10월 13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1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법인이 이와 관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830	(손배청구) 마○○ 對 현대홈쇼핑
조 정 대 상	상담받고 혜택받고 프로그램 광고 (2015년 10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여행상품 판매 영상에 휴양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3백만원 지급)

2015서울조정 3831	(정정청구) (주)○○○○○ 對 전자신문 인터넷
조 정 대 상	『IOT 기술로 산간 오지 ‘사방댐’ 수위 조절한다… 홍수·산사태도 IOT로 해결』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4일자 컴퓨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사방댐 수위조절 시스템을 타 회사가 개발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832·3833	(정정·반론청구) 학교법인 ○○○○ ○○○○○ ○○○○병원 對 라포르시안
조 정 대 상	『○○○○병원 노조 지부장 집단 괴롭힘 당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의 노조 지부장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병원 노조 지부장 집단 괴롭힘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4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834~3836	(각 정정청구) 강○○ 對 하키뉴스코리아 ⁽³⁸³⁴⁾ , 네이버 ⁽³⁸³⁵⁾ , 다음 ⁽³⁸³⁶⁾
조 정 대 상	『아이스하키 명문 ‘자주색 군단’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며』 제하의 기사 (하키 뉴스코리아 2015년 10월 7일자 칼럼면, 네이버·다음 10월 7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 아이스하키 팀 코치인 신청인이 기자의 팀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837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주간현대
조 정 대 상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 비리 백태』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초기 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시 대출을 남발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838·3839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 『‘댓글부대’로 의심 ○○○ 용역업체 국정원 간부 출신 ‘회장’ 영입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사회일반면) (2) 『○○○ 용역업체 국정원 출신 김○○ 회장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7일자 사회일반면) (3) 『○○○ ‘댓글부대’ 용역업체 사장 2013년부터 국정원과 특수 관계 과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4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모 기업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수주한 특정 사업에 신청인이 관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840	(추후청구) 전○○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스마트폰 액정 일부러 깨고 무상교체 수천만원 “꿀꺽”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고 스마트폰을 사들여 액정을 일부러 파손하고 무상교체 받은 후 되팔아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스마트폰 액정 일부러 깨고 무상 교체 수천만원 ‘꿀꺽’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841~3844	(각 정정·손배청구) 강남구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은 한다지만』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국내사진면) (2)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지워진 횡단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국내사진면) (3) 『정비되지 않는 강남역 횡단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국내 사진면) 외 58건
신청인 주장	강남역 인근 등 곳곳의 횡단보도가 지워진 사진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신청인 강남구에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지워진 횡단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845~3848	(각 정정·손배청구) 권○ 對 파이낸셜뉴스 ^(3845·3846)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847·3848)
조 정 대 상	『역대 최대 규모 선박왕 탈세 사건』 제하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015년 10월 8일자 사회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국세청 사이의 탈세 관련 소송이 국세청의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861·3862	(정정·손배청구) (주)○○○○○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 『유명한 광명동굴 코끼리 차 이 사람에게겐 ‘원수’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인천경기면) (2) 『코끼리 차 때문에 끝날 뻔 한 25년 공직생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인천경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광명동굴 코끼리 차의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863	(반론청구) ○○○○○○복지관 對 인터넷 법보신문사
조 정 대 상	(1) 『부천 ○○복지관 간부 “가임기 여성 다 잘라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일자 교계면) (2) 『자비사상 실현 복지관서 가임기 여성 자른다니』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2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관이 간부의 여성 차별적 발언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계약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반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864~3867, 3889~3898, 3899~3906, 3909~3912, 3976~3979	(각 정정·손배청구) ○○○엔터테인먼트 對 한겨레^(3864·3865, 3889·3890, 3909~3912), 인터넷 한겨레^(3866·3867, 3891~3898), 한겨레21^(3899~3902), 인터넷 한겨레21^(3903~3906), 씨네21^(3976·3977), 씨네21 뉴스서비스^(3978·397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1)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0일자 30면, 인터넷 한겨레 7월 29일자 사설·칼럼면) (2)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26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9일자 문화면) (3) 『TV 배경음악 저작권료 정산·분배부터 ‘오류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24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6일자 문화면) (4) 『“[한겨레 프리즘] ‘배경’ 취급받는 작곡가』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2일자 24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11일자 사설·칼럼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겨레 : 『우리 뭐든 시키는 대로 하는 무명의 작곡기계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0일자 문화면) • 한겨레21 : (1) 『이름없는 작곡기계였을 뿐』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75면, 인터넷 한겨레21 9월 9일자 레드기획면) (2) 『온전한 노동자, 음악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80면, 인터넷 한겨레21 9월 14일자 레드기획면) • 씨네21 : (1) 『눈을 바쳐 영전할 수 있는 세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문화면, 씨네21 뉴스서비스 8월 18일자 문화면) (2) 『장인들의 천국, 창작자들의 지옥』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문화면, 씨네21 뉴스서비스 9월 15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작곡가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열정페이로 일하게 하며 저작권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씨네21, 씨네21 뉴스서비스/사유 : 기사삭제)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11월 27일자 25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26일자 문화면)

2015서울조정 3868·3869	(정정·손배청구) 영화진흥위원회 對 뉴스1코리아
조정대상	『[기자의 눈] 영진위는 ‘정부’가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영화산업 현장에서 영화지원 공적 기구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반론보도]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문화면)

2015서울조정 3870	(정정청구) ㈜아이넷방송 對 문화투데이
조 정 대 상	(1) 『배덕광 의원, “아이넷, 외주제작사에 송출수수료 요구 부당행위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전체기사면) (2) 『김흥국, “아이넷과 가수들 갈등 해결 돼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7일자 전체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가수들에게 출연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외주 제작사에게 송출료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성인가요채널 아이넷방송』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4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3871, 3872	(각 정정청구) ○○○○○연대 對 국제뉴스 ⁽³⁸⁷¹⁾ , 인터넷 신아일보 ⁽³⁸⁷²⁾
조 정 대 상	• 국제뉴스 : 『[기획] 포천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속내 감춘 소모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1일자 전국/경기면) • 인터넷 신아일보 : 『포천 장자산단 열병합발전소 건립 “갈등”』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경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모 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 건립 반대가 구성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국제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인터넷 신아일보/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국제뉴스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포천 열병합발전소 건설갈등”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0일자 전국/경기면) • 인터넷 신아일보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포천 장자산단 열병합발전소 건립 ‘갈등’ ”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경기면)

2015서울조정 3873	(반론청구) (재)○○○청소년재단 對 MBN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정말 동물과 대화하나』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위촉한 애니멀커뮤니케이터들이 엉터리 사기꾼들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보도여서 조정신청의 실익이 없음)

2015서울조정 3874, 3875	(각 정정청구) (주)○○○○ 對 MBC-TV ⁽³⁸⁷⁴⁾ , iMBC ⁽³⁸⁷⁵⁾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프로그램 『VIP 체험단의 비밀』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9월 20일자, iMBC 9월 20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음파운동기가 소비자 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결정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876, 3877	(각 정정청구) (재)○○○○원 對 한겨레 ⁽³⁸⁷⁶⁾ , 인터넷 한겨레 ⁽³⁸⁷⁷⁾
조 정 대 상	『전경련, 산하기관 앞세워 ‘야당 낙선운동’ 나서나』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10월 27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2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전경련을 대신해 반시장적 야당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도모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878·3879	(정정·손배청구) ○○○○○○유통지원센터 對 조세일보
조 정 대 상	『빈병 보증금 인상은 환경부 관피아 배불리기』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빈병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신청인 지원센터의 운영자금이 대폭 늘어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기타)

2015서울조정 3880·3881	(정정·반론청구) (사)○○○○○협회 對 트레블데일리
조 정 대 상	『남○○ 선거전략 문제 많다… 비판 쇄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 소속 직원들이 협회 회장 선거 운동에 개입하여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882	(정정청구) 장○○ 對 이투데이
조 정 대 상	『SK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증권금융면)
신청인 주장	SK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3883~3886	(각 정정·손배청구) 김무성 對 한겨레 ^(3883·3884) , 인터넷 한겨레 ^(3885·3886)
조 정 대 상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8월 1일자 1면~4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선친이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887·3888	(정정·손배청구) (주)○○○○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1) 『○○○ 인수한 ○○산삼, 직원에 다단계식 영업 강요 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경제면) (2) 『공정위·경찰, ○○산삼 불법다단계 영업 논란 내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경제면) (3) 『급여 반 깎고 주식 준다… 코 안풀고 상장사 인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경제면) (4) 『삼성·롯데 무단도용, 카페 점장 값 5500만원 선불… 상식 밖의 ○○산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불법 다단계식 영업을 하고 직원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07·3908	(정정·손배청구) 김○○ 對 비전코리아뉴스
조 정 대 상	『생활비 벌려던 주부들 올린 ‘온라인 아동복 쇼핑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부들을 상대로 계약금만 편취하는 온라인 쇼핑물 위탁 사기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913	(정정청구) (주)○○컴퓨터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컴퓨터 ‘불량품’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컴퓨터의 불량률이 높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914~3917	(각 정정·손배청구) 김한표 對 시사저널 ^(3914·3915) , 인터넷 시사저널 ^(3916·3917)
조 정 대 상	『정·관계 브로커 ‘황○○ 리스트’ 터진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0월 12일자 12면, 인터넷 시사저널 10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정·관계 브로커로 의심받고 있는 황모 씨를 배후에서 지원해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황○○ 리스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1월 30일자 17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27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918·3919	(정정·손배청구) (사) ○○○○○○○○○협회 對 오에스이엔
조 정 대 상	『‘○○○○’ 근데 누구세요? 졸속 행사에 주민 마찰』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6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주최한 ○○국제영화제의 스타로드 행사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920·3921	(정정·손배청구) 배○○ 외 1인 對 불교닷컴
조 정 대 상	『불교경전사이트 ‘○○’ 폐쇄…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불교뉴스면)
신청인 주장	불교신도인 신청인들이 소속사찰 주지를 비난한 스님을 감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922·3923	(정정·손배청구) 박○○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종합뉴스 프로그램 『가수 정○○에 앙심… ‘허위 고소’ 재판』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모 가수의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했던 신청인과 가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해 편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24~3927, 3940~3943	(각 정정·반론청구) ○○염전 ^(3924~3927) , ○○○○조합 ^(3940~3943) 對 SBS-TV ^(3924·3925, 3940·3941) , SBS 콘텐츠허브 ^(3926·3927, 3942·3943)
조 정 대 상	SBS스페셜 프로그램 『소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천일염 논란』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9월 13일자, SBS 콘텐츠허브 9월 13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천일염이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염전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천일염 논란’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5년 11월 23일자 다시보기면 및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

2015서울조정 3928, 3929	(각 손해청구) 이○○ 외 1인 對 매일경제 ⁽³⁹²⁸⁾ , 매경닷컴 ⁽³⁹²⁹⁾
조정대상	『가을 추억 만들어봐요』 제하의 사진 (매일경제 2015년 11월 7일자 19면, 매경닷컴 11월 7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공원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930·3931	(정정·반론청구) ○○고등학교 對 에듀인뉴스
조정대상	(1) 『학생부 비리 <1> 서울 A고등학교, 학생부 수년간 ‘임의 조작’』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뉴스면) (2) 『학생부 비리 <2> 서울교육청, 학생부 조작 알고도 ‘봐주기·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뉴스면) (3) 『<학생부비리>서울교육청 “봉사활동 지침위반 조치할 것”』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5일자 뉴스면) (4) 『학생부 비리 <3> 전국고교 3년간 멋대로 고쳤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5일자 뉴스면) (5) 『학생부 조작, 대학입시 근간 흔들 사건이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고등학교가 학생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행결과	『서울 A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조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8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932	(손배청구) 김○○ 對 JTBC
조정대상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엄마찾아 일만키로의 여정』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4일자)
신청인 주장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과정을 다룬 프로그램에서 탈북자인 신청인의 초상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33	(반론청구) 국가보훈처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현실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1면) (2) 『2대·3대 후손으로 갈수록 더 가난… 교육 수준도 열악』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4면) (3) 『팔순에야 받게 된 유공자 연금… 고생한 세월 서럽기만』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5면) (4) 『빠대있는 명가도 풍비박산… 아래기로 배 채우며 버텼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5서울조정 3934~3937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뉴스타파^(3934·3935), SBS-TV^(3936·393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타파 : 『경찰 팔 꺾지 않았다… 6년 만에 무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뉴스면) • SBS-TV : 궁금한 이야기Y 프로그램 『한 번의 사건, 세 번의 기소, 누가 경찰관의 팔을 비틀었나?』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4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음주단속 중 시민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38·3939	(정정·손배청구) 박○○○ 對 SBS-TV
조 정 대 상	(1) 8뉴스 프로그램 『“나쁜 손님”, 골목상인들 울린다』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8일자, 뉴스토리 프로그램 9월 8일자) (2) 이슈인사이드 프로그램 『“고객은 왕” 멍드는 감정 노동자』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음식점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는 내용을 SNS에 올린 신청인을 블랙컨슈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3시뉴스 브리핑 프로그램 『‘선릉역 짬뽕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4일자, 뉴스토리 프로그램 12월 12일자, SBS 콘텐츠허브 12월 12일자 시청자게시판면)

2015서울조정 3944	(정정청구) 윤후덕 對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3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딸이 대기업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945, 3946	(각 정정청구) 문화재청 對 MBN ⁽³⁹⁴⁵⁾ , 인터넷 MBN ⁽³⁹⁴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뉴스8 프로그램 『문화재청의 거짓말 “보호 후 공사”』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3일자) • 인터넷 MBN : 『문화재청의 거짓말 “보호조치 후 공사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문화재청이 고분 발견 지역에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건설 공사가 진행 되도록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굿모닝 MBN 프로그램 『문화재청 “미사지구 유적, 전방후원분 아냐… 조사 후 공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4일자, 인터넷 MBN 12월 14일자 문화면)
2015서울조정 3947	(반론청구) 김 ○ 對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 증금증권, 주가 조작 혐의 수사 중』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68면~69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증권 임원 재직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끌어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증금 전 임원 주가 조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2월 9일자 경제면, 인터넷 시사저널 12월 9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3948·3949	(정정·손배청구) 금○○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이완구 전 총리가 매우 억울한 이유!』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1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이완구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법정에서 신청인이 허위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50	(반론청구) 최○○ 對 조세일보
조 정 대 상	『가짜 백수오 사건과 식약처 인사의 명암』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헬스면)
신청인 주장	식약처 내부 승진 관련 기사에서 신청인이 가짜 백수오 사건 당시 승진자에 비해 일처리를 무능하게 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가짜 백수오 사건과 식약처 인사의 명암』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헬스면)
2015서울조정 3951, 3952	(각 정정청구) 임○○ 對 YTN ⁽³⁹⁵¹⁾ , 인터넷 YTN ⁽³⁹⁵²⁾
조 정 대 상	뉴스만만 프로그램 『전직 교수, 경찰, 가수도 마약... ‘비트코인’ 이용하기도』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11월 9일자, 인터넷 YTN 11월 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전직 강사 마약투약 적발 건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학원 내부를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953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거제르포]⑥기자수첩 ‘목요일 오후 4시의 포커판’... ○○○○ 노조 단체 사무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 집행위원들이 노조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포커판을 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거제르포]⑥기자수첩 ‘목요일 오후 4시의 포커판’... ○○○○ 노조 단체 사무실』 제하에서 ‘노조 단체’ 부분을 ‘노동 단체’로 수정하고 신청인 관련 내용 일부 기사 수정 (2015년 12월 3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3954	(정정청구) ○○증권 (주) 對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증권 오너 집안 사람” 자처 자산운용 前 직원 수십억 불법 커미션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5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불법 커미션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청인 회사의 전 직원이 사주 집안 사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955	(정정청구) ○○○○○회 ○○○시 지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퇴직공무원 단체 민간 위탁 참여 ‘빈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모 지자체의 콜 밴 민간위탁 사업에 지원한 것에 대해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회 ○○○지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3956	(정정청구) 보건복지부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 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정정보도가 게재되어야 한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959·9360	(정정·손배청구) 정○○ 對 아시아엔
조 정 대 상	『[단독] ‘○○○○○○항공 부기장 취업’ 미끼 한국유학생 수십명에 역대 사기 ‘의혹’… 필리핀 당국 교민 용의자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동북아면)
신청인 주장	필리핀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유학생들에게 항공사에 조종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액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961~3964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시사저널 ^(3961·3962) , 인터넷 시사저널 ^(3963·3964)
조 정 대 상	『박○○ ○○○ 회장, 3억 주고 위증 교사』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1월 17일자 54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배임혐의로 피소된 신청인이 고소인에게 금품을 주고 위증교사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박○○ ○○○ 회장 위증 교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2월 22일자 13면, 인터넷 시사저널 12월 2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965	(정정청구) (사)○○○○○협회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車보험 축내는 韓方... 같은 사고, 진료비는 5배』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정책금융면)
신청인 주장	한의 의료기관에 교통사고 관련 환자진료기준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자동차사고 보험 한방 진료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정책금융면)
2015서울조정 3966·3967	(정정·손배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프라임경제
조 정 대 상	『신안군, 유기질비료 지원... 일부 농협 부정행위 ‘골머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농가에 특정 유기질 비료를 구매하도록 강요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타)

2015서울조정 3968·3969	(정정·손배청구) ○○○○총연합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日 여학생 13% 원조교제” 유엔 보고관 발언에 日 ‘발끈’』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월드뉴스면)
신청인 주장	일본 여학생 13%가 원조교제를 한다는 기사에서 의사가 진료현장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것 같은 삽화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이미 정정보도가 게재되어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
2015서울조정 3970~3973, 3991~3994	(각 정정·반론청구) 김○○ 對 동아닷컴 ^(3970~3973) , 동아일보 ^(3991~3994)
조 정 대 상	(1) 『소말리아 해적 물리친 영웅의 몰락』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0월 21일자 14면, 동아닷컴 10월 21일자 사회면) (2) 『“[사설] 장병 급식비 빼돌려 진급 로비하는게 軍 관행인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0월 22일자 39면, 동아닷컴 10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부대 부대장 시절 장병들의 급식비를 빼돌려 장성진급을 위한 로비용 선물을 구입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2월 22일자 14면, 동아닷컴 12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974	(정정청구) (주)○○○○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어린이 역사책을 둘러싼 ‘비방광고’와 ‘저작권 침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7일자 사느이야기면)
신청인 주장	타 출판사와 법적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 신청인 회사가 잘못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기사삭제,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논란의 어린이 역사책,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반론 내용 추가하여 기사 수정 (2015년 12월 23일자 사느이야기면)

2015서울조정 3975	(반론청구) 이○○ 외 1인 對 에스티브이
조 정 대 상	『도교육청, 교육 지원청 지시 모두 묵살하고 특정한 몇몇 고등학부모회 대표 행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모 지자체 참여예산 시민위원과 학부모회장단협의회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80	(정정청구) 의정부지방검찰청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검찰 간부 구내식당에 갑질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경기북부면) (2) 『의정부지검 이상한 구내식당 업체 선정… 특혜 의혹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9일자 경기북부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 방식을 바꾼 이유가 기존 업체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81·3982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1) 『[M+연예 사(思)] 김○○의 ‘SNS 오버’가 위태위태하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연예면) (2) 『[단독] ‘명예훼손 혐의’ 김○○ 측 법률대리인, 항소심 재개신청 후 ‘사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청인의 변호사가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83, 4022, 4026, 4029	(각 반론청구) 양○○ 對 노컷뉴스 ⁽³⁹⁸³⁾ , 뉴스1코리아 ⁽⁴⁰²²⁾ , 뷰스앤뉴스 ⁽⁴⁰²⁶⁾ , e머니투데이 ⁽⁴⁰²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단독] 의사협회도 박원순 손 들어줬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박원순 아들 병역논란 끝?... 의혹 “MRI 6건 모두 동일 인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사회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앤뉴스 : 『대한영상의학회 “박원순 아들 영상은 모두 동일 인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박원순 아들 병역논란 끝?... 의협 “MRI 6건 모두 동일 인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척추 MRI 사진의 감정결과로 인해 신청인이 제기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노컷뉴스, 뉴스1코리아, e머니투데이) • 취하 (뉴스앤뉴스/사유 : 반론보도)
이행결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앤뉴스 2015년 12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984	(정정청구) 한○○ 對 파이낸셜뉴스
조정대상	『역대 최대 규모 선박왕 탈세 사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26면)
신청인 주장	변호사인 신청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신청인과 하지도 않은 인터뷰 내용을 허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985~3991, 3997~3999, 4002~4004, 4023~4037, 4039~4044, 4047~4049, 4051·4052, 4065~4067, 4086·4087, 4157~4164	<p>(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이뉴스투데이^(3985~3987), 비마이너^(3988~3990, 4035~4037), 뉴스1코리아^(3997~3999, 4002~4004), 아시아뉴스통신^(4032~4034), 에이블뉴스^(4039~4041), 웰페어뉴스^(4042~4044), 인터넷 경기도정신문^(4047~4049), e-시사통신^(4065~4067)</p> <p>(정정·반론청구) 온라인 중앙일보^(4051,4052)</p> <p>(정정·손배청구) 엔디엔뉴스^(4086·4087), 뉴시스^(4157·4158), 돌직구뉴스^(4159·4160), 웰페어뉴스^(4161·4162), 온라인 중앙일보^(4163·4164)</p>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뉴스투데이 : 『이○○ 부지사, “○○○ 사태 조속한 해결 앞장” 약속』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전국면) • 비마이너 : (1) 『경기도 국감에서 “○○○,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2) 『시설 인권침해로 거주인들 결국 ‘바깥으로’... “복지부가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8일자 인원면) (3) 『복지부 “○○○ 이사회 무효” 결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인원면) • 뉴스1코리아 : (1) 『경기도, 인권침해 등 물의 ‘○○○’ 정상화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전국면) (2) 『경기도의회, 성추행 논란 ‘○○○’ 파헤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전국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뉴스통신 : 『이○○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 “○○○ 사태 조속한 해결 앞장” 약속』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사회면) • 에이블뉴스 : 『경기도, 사회적 물의 ○○○ 정상화 앞장』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전국면) 외 9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비마이너/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 각 취하 (이뉴스투데이, 에이블뉴스, 웰페어뉴스, 인터넷 경기도정신문, 온라인 중앙일보, e-시사통신, 엔디엔뉴스, 뉴시스, 돌직구뉴스, 웰페어뉴스/사유 : 반론보도)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4163·4164)/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뉴스투데이 : 『○○○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6일자 전국면) • 비마이너 : 『○○○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7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전국면) • 아시아뉴스통신 : 『○○○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사회면) • 에이블뉴스 : 『○○○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뉴스면) 외 9개 매체

2015서울조정 3995, 3996	(각 정정청구) 조○○ 對 KBS-1TV ⁽³⁹⁹⁵⁾ , KBS미디어 ⁽³⁹⁹⁶⁾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조○○ 향균회장 소환… 이○○ 연루 조사』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1월 13일자, KBS미디어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권력형 비리의 핵심이었던 이용호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4000, 4001	(각 손해청구) 최○○ 對 경향신문 ⁽⁴⁰⁰⁰⁾ , 인터넷 경향신문 ⁽⁴⁰⁰¹⁾
조 정 대 상	『[‘국정화 찬성 여론’ 조작의혹] 인쇄소 측 “자정까지 교육부 보내야… 오전에 급한 주문받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11월 19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1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서 신청인과 비보도를 조건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05~4008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일요시사 ^(4005·4006) , 인터넷 일요시사 ^(4007·4008)
조정대상	『VIP 이름 나오자 비리 정황 덮었나』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1월 1일자 1면~3면, 인터넷 일요시사 11월 2일자 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권력의 비호 아래 철도 납품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주)○○○○○ 납품 비리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2월 3일자 3면, 인터넷 일요시사 12월 6일자 사고면)

2015서울조정 4009·4010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
조정대상	(1) 『○○구청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이XX”... 행정감사서 난동』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면) (2) 『“육설난동” ○○구 공무원, 3년 만에 7급→5급 초고속 승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2일자 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공무원인 신청인이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육설 등의 난동을 부렸고, 3년만에 두 계급 승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 보도이므로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4011~4013	(각 반론청구) 김 ○ 對 인터넷 시사저널 ⁽⁴⁰¹¹⁾ , 스포츠조선 ⁽⁴⁰¹²⁾ , 인터넷 스포츠조선 ⁽⁴⁰¹³⁾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사저널 : 『○○○ 증금 증권, 주가 조작 혐의 수사 중』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68면~69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11일자 경제면) 스포츠조선 : 『○○○ 증금 전 임원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18면, 인터넷 스포츠조선 11월 1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증권회사 임원 재직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사저널 : 『‘○○○ 증금 전 임원 주가 조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경제면, 인터넷 시사저널 12월 9일자 경제면) 스포츠조선 : 『[○○○ 증금 전 임원 주가조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라이프&경제면, 인터넷 스포츠조선 12월 2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4014	(정정청구) ○○○○○고등학교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교학사 교과서… 교실에선 짐짝 취급’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수업시간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박근혜 등에 얽은 교학사 교과서… 교실에선 짐짝 취급』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7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015~4021	(각 추후청구) ○○○○○○요양센터 對 JTBC ⁽⁴⁰¹⁵⁾ , KBS-1TV ⁽⁴⁰¹⁶⁾ , MBC-TV ⁽⁴⁰¹⁷⁾ , SBS-TV ⁽⁴⁰¹⁸⁾ , 오마이뉴스 ⁽⁴⁰¹⁹⁾ , 프레시안 ⁽⁴⁰²⁰⁾ , 쿠키뉴스 ⁽⁴⁰²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멀쩡하던 다리, 절단 수술까지… 노인 잡는 요양 시설』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일자) • KBS-1TV :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실태점검 노인요양원』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0일자) • MBC-TV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수포라고 하더니 다리절단까지?』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7일자)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아픈 노인 방치·폭행… 못 믿을 요양병원·시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7일자) • 오마이뉴스 : 『1년 기다려 들어간 요양원… 아버지 다리가 잘렸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6일자 사회면) • 프레시안 : 『요양원 모신 아버지, 화상 입고 다리 절단』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4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수포라고 했는데… 멀쩡한 오른쪽 다리 절단하라니』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센터의 과실로 입소 노인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프로그램 『서울 한 구립 요양센터 대표, 과실치상 무혐의 처분』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1일자) • KBS-1TV :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월 20일 방송된 <실태점검 노인요양원> 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3일자) • MBC-TV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수포라고 하더니 다리절단까지?!”(2/27 방송) 내용 중 노인의 다리 절단은 요양원측의 과실 없음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0일자)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콘텐츠허브 : 『[추후보도문] ‘아픈 노인 방치 못 믿을 요양시설’ 과실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7일자) • 오마이뉴스 : 『요양원 화상치료 관련 기사, 검찰서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프레시안 : 『요양원 화상 환자 관련 보도, 요양원 측 과실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추후보도] 다리 절단 원인은 요양원 과실 아니다, 검찰 조사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

2015서울조정 4023	(정정청구) (주)○○○ 對 푸드투데이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물류 또 파업… 신선먹거리 차질 오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3일자 종합면) (2) 『화물연대 음성진천 ○○○분회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4일자 포토면) (3) 『○○○ 물류 파업 장기화 조짐… 해법 안보여』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종합면) (4) 『바른 먹거리 ○○○ 최악의 파업 사태… 폭력 등 파국 치달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식품면) (5) 『“○○○, 허위사실 유포로 화물연대 음해 폭도로 매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2일자 종합면) 외 1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24, 4025, 4084, 4085, 4094~4097, 4119~4124, 4184, 4185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중앙Sunday⁽⁴⁰²⁴⁾, 인터넷 중앙Sunday⁽⁴⁰²⁵⁾, 중앙일보⁽⁴⁰⁸⁴⁾, 온라인 중앙일보⁽⁴⁰⁸⁵⁾, 조선일보⁽⁴⁰⁹⁴⁾, 조선닷컴⁽⁴⁰⁹⁵⁾, 한겨레21⁽⁴⁰⁹⁶⁾, 인터넷 한겨레21⁽⁴⁰⁹⁷⁾, 문화일보^(4119, 4121, 4123), 인터넷 문화일보^(4120, 4122, 4124), 경향신문⁽⁴¹⁸⁴⁾, 인터넷 경향신문⁽⁴¹⁸⁵⁾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Sunday : 『일본보다 전투기 싸게 사고 기술 이전 바란 게 무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8일자 3면, 인터넷 중앙Sunday 10월 18일자 사회면) • 중앙일보 : 『방사청, 2년 전엔 “기술이전 안 되면 이행보증금 몰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6면, 온라인 중앙일보 10월 29일자 정치면) • 조선일보 : 『방사청, KF-X 논의 때 美 측에 “기술이전 가능 꾸며 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6면, 조선닷컴 11월 19일자 사회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21 : 『18조원짜리 ‘보라매’ 결국 추락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30면~33면, 인터넷 한겨레21 11월 16일자 사회면) 외 1건 • 문화일보 : (1) 『핵심기술 다 빠져 KF-X ‘좌초위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4일자 1면, 인터넷 문화일보 11월 24일자 정치면) (2) 『KF-X 기술 300여 항목 중 100여개에 ‘이전 단서조항’』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8일자 12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8일자 정치면) (3) 『美, 무기기술 이전 통제… 日에도 ‘핵심’ 안 넘겨』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8일자 12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8일자 정치면) 외 2건 • 경향신문 : 『방사청, 2억짜리 소해함 장비 기술 240억 ‘바가지 구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면서 기술이전과 관련해 거짓 발표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조정성립 (조선일보, 조선닷컴,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내용: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중앙Sunday, 인터넷 중앙Sunday/사유 : 정정보도) • 각 취하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Sunday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6일자 2면)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15일자 오피니언면) • 조선일보 : 『[알려드립니다] 방사청, KF-X 기술이전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2일자 6면, 조선닷컴 1월 22일자 사회면) • 한겨레21 : 『방위사업청 KF-X 사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5일자 이슈추적면, 인터넷 한겨레 1월 18일자 사회면) • 문화일보 : 『‘KF-X 기술이전’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2면, 인터넷 문화일보 2월 19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4027	(정정청구) 주호영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은○○ 정관계 인맥과 로비… ‘3가지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3일자 최신투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로비를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 당시 도움을 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은○○ 로비 의혹 관련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9일자 최신투스면)

2015서울조정 4028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시사상조
조 정 대 상	『○○○○○, 존속능력 중대한 의문 제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7일자 최신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부실 기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4030·4031	(정정·손배청구) 안○○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포항 J요양병원, 환자방치로 위독 상황 몰고 가』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국제뉴스TV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응급환자를 장시간 방치하여 위독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4038	(손배청구) 김○○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동대표의 돈잔치』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아파트 동대표의 횡포에 관한 보도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2015서울조정 4045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동조합 산하 기관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8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046	(정정청구) ㈜○○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재테크의 여왕]우후죽순 P2P 대출, 유사수신 투자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8일자 경제·금융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기사 수정 (2015년 12월 10일자 경제·금융면)

2015서울조정 4050	(정정청구) 권○○ 對 YTN
조 정 대 상	(1) 뉴스출발 프로그램 『“입 맞춰”... 전 기무부대 준장 성추행 조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18일자) (2) 오늘이슈 프로그램 『전 기무부대 준장, 직원 성추행 혐의 조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회식 자리에서 동성 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4053·4054, 4148, 4207·4208	(정정·손배청구, 정정청구) 박○○ ^(4053·4054, 4148) 對 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사)○○○○선교회 외 1인 ^(4207·4208)
조 정 대 상	(1) 『박○○ 무죄 선고 재판부, 전관예우 논란 이어 재판 편의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5일자 문화면) (2) 『검찰은 유죄 법원은 무죄... 주식사기 혐의 박○○ 선고 공판 전관예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문화면) (3) 『거액 변호사 선임비용을 신도들 현금으로?』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주식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청인이 1심 재판부로부터 재판일정 관련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57~4064	(각 정정·손배청구) 전국○○○○노동조합 對 시사메디in
조 정 대 상	(1) 『○○○○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 벗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메디면) (2) 『인권위 “○○○○병원 따돌림? 조사대상 아니다” 각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메디면) (3) 『○○○○병원에 20억 요구한 공갈범과 보건의료노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메디면) (4) 『개인 분풀이에 휘말린 보건의료노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메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비판하고 있는 모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사건 제보자에게 이용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4068	(반론청구) 윤○○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홍대 터주대감 ‘○○’은 어떻게 쫓겨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사는이야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임차인을 아무런 이유없이 쫓아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사는이야기면)

2015서울조정 4069, 4070	(각 정정청구) 광○○ 對 동아일보 ⁽⁴⁰⁶⁹⁾ , 동아닷컴 ⁽⁴⁰⁷⁰⁾
조 정 대 상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1월 11일자 12면, 동아닷컴 11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박○○ 서울시향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신청인의 주장을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6년 1월 7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071	(손배청구) 오○○ 외 2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위대한 조강지처 프로그램 65회차 (2015년 9월 11일자) 외 12회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방송 드라마에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4072~4075	(각, 정정·반론청구)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 ○○○○병원 對 인터넷 경향신문 ^(4072·4073) , 인터넷 주간경향 ^(4074·407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노조탄압·돈벌이 경영 논란 휩싸인 ○○○○병원 바티칸 교황 앞에 선 노조, ‘○○교구 감사’요구 나선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주간경향 : 『노조탄압·돈벌이 경영 논란 휩싸인 ○○○○병원』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직원들에게 실적을 강요하는 등 돈벌이 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병원 돈벌이 경영의혹 등 관련 반론보도입니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2016년 2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주간경향 1월 30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076~4079	(각 정정·손배청구) (주)씨비에스아이 對 뉴스천지 ^(4076·4077) , 뉴스쉐어 ^(4078·407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천지 : (1) 『○○○가 집단폭행?... 노컷뉴스의 도 넘은 편파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1일자 사회면) (2) 『CBS노컷뉴스, ‘○○○폭행’ 기사 반론보도 합의... 사실상 오보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7일자 사회면) • 뉴스쉐어 : 『CBS, ○○○ 향한 거짓비방 어디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보도한 ○○○ 신도들의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뉴스천지/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취재가 있었으므로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조정성립 (뉴스쉐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노컷뉴스 ○○○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쉐어 2015년 12월 23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4080, 4081	(각 정정청구) (사)○○○○연구소 對 문화일보 ⁽⁴⁰⁸⁰⁾ , 인터넷 문화일보 ⁽⁴⁰⁸¹⁾
조정대상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10월 6일자 1면, 인터넷 문화일보 10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설립한 단체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박정희 기념도서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서울시, 박정희 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12월 23일자 2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082, 4083	(각 정정청구) 최○○ 對 MBC-TV ⁽⁴⁰⁸²⁾ , iMBC ⁽⁴⁰⁸³⁾
조정대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불량급식 제공』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0월 6일자, iMBC 10월 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장염의 원인이 비위생적인 급식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신청 내용이 추후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겠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4088, 4089	(각 반론청구) ○○○○○고등학교 외 1인 對 한국일보 ⁽⁴⁰⁸⁸⁾ , 인터넷 한국일보 ⁽⁴⁰⁸⁹⁾
조정대상	『공익제보 교사가 파면 안되자... 청소·급식만 시킨 학교』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2월 8일자 29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내부비리 고발 교사를 보복징계했고, 이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를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90·4091	(정정·손배청구) (주)○○○○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이번에는 ○○○○○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고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92·4093	(정정·손배청구) 양○○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Y 프로그램 『노원구 살인사건, 군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가리키는 것은』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약혼녀를 살해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98	(정정청구) 국방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애국군인이 되어라, 치료비는 니가 내고』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8일자 21면)
신청인 주장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에 대한 국방부의 의료지원체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99	(정정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정치 떠났다던 최연혜 사장, 출마설 슬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일자 사회면) (2) 『갈대같은 최연혜 사장, 철도민영화 찬성? 반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사회면) (3) 『코레일 안전불감증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4100	(정정청구) 한국도로공사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한국도로공사, 서해대교 케이블 관리업체 없이 장기간 방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경제정책면)
신청인 주장	한국도로공사가 서해대교의 케이블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한국도로공사, 서해대교 케이블 관리업체 없이 장기간 방치’]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8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4101~4104, 4105, 4106, 4143~4147, 4165, 4172, 4173	(각 정정청구) 김○○ ^(4101,4102) , 김△△ ^(4103,4104) 對 조선일보 ^(4101,4103,4105, 4145,4165,4172) , 조선닷컴 ^(4102,4104,4106,4143,4146,4173) , 인터넷 주간조선 ⁽⁴¹⁴⁴⁾ , 주간조선 ⁽⁴¹⁴⁷⁾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4105,4106)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4143, 4144)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4145~4147) 이○○ 외 33인 ⁽⁴¹⁶⁵⁾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4172,417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질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5일자 3면, 인터넷 조선일보 12월 5일자 사회면) 주간조선 : 『접견 전문 변호사? 여변들이 화났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4일자 34면~39면, 인터넷 주간조선 12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들을 법률 자문 대신 웃음을 파는 접견녀라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4107	(손배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Y 프로그램 『양화대교 할아버지』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노숙인 의료지원 관계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5서울조정 4108	(정정청구) 구 ○○은행 ○○○ 퇴직자모임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옛 ○○은행 정년퇴임 직원 “재취업 보장하라” 어깃장에 사측 백기』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정책·금융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모임 회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요구와 관련해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4109~4112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마사회 對 시사뉴스 ^(4109·4110) , 인터넷 시사뉴스 ^(4111·4112)
조 정 대 상	『한국마사회를 둘러싼 추문과 의혹』 제하의 기사 (시사뉴스 2015년 12월 14일자 12면~13면, 인터넷 시사뉴스 12월 14일자 헤드라인면)
신청인 주장	한국마사회가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고, 정윤희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4113~4118, 4209·4210	(각 정정·손배청구) ○○○엔터테인먼트 對 XSFM ^(4113·4114) , 발뉴스 ^(4115·4116) ,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 ^(4117·4118) , 인터넷 내일신문 ^(4209·421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SFM : 『146b. 지옥의 배경음악』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1일자 그것은 알기 싫다면) • 발뉴스 : 『화려한 TV 배경음악 뒤편 작곡가들의 ‘열정 페이』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민동기의 뉴스박스면) •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 :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의 작곡노예 이야기』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 인터넷 내일신문 : 『방송음악 작곡가들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30일자 기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작곡가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착취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XSFM, 발뉴스,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사유 : 자진취하) • 취하(인터넷 내일신문/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4125~4133	(각 정정·손배청구) 장○○ 對 인터넷 MBN ^(4125·4126) , 동아닷컴 ^(4127·4128) , 오마이뉴스 ^(4129·4130) , MBN ^(4131·4132)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뉴스8 프로그램 『선생 싸움에 학생은 뒷전... 4개월째 네 탓 공방』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5일자, 인터넷 MBN 12월 15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중학교 女교감이 여교사들 상습폭행? 집단 탄원서 제출』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5일자 사회면) • 오마이뉴스 : 『“교감이 자꾸 때려요” 경기 H중 교사 34명 실명탄원』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4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MBN, 인터넷 MBN/내용 : PR·후속보도, 기사삭제) • 각 기각결정 (동아닷컴, 오마이뉴스/사유 : 공인적인 보도인데다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
이행결과	미이행

2015서울조정 4133	(정정청구) ○○○○○○○○ 코리아 유한회사 對 인터넷 시사주간
조정대상	『○○○ 화장품, 미 화장품인 줄 알았더니... 한국서 제조』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한국에서 제조된化妆품을 미국 직수입 化妆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4134, 4135	(각 정정청구) ○○○○대학교 對 동아일보 ⁽⁴¹³⁴⁾ , 동아닷컴 ⁽⁴¹³⁵⁾
조정대상	『“○○○○대 직원 채용비리”... 교수평의회 “당사자 사퇴해야”』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9월 23일자 18면, 동아닷컴 9월 23일자 광주/전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직원채용 비리를 저질렀고 회계부정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5년 12월 28일자 광주/전남면)

2015서울조정 4136~4138	(반론·추후·손배청구) 조○○ 외 3인 對 오마이뉴스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가니>… 그 끝나지 않은 악몽, ○○○』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5일자 인천경기면) (2) 『“하루 빨리 나가고 싶다” 외친 장애인시설, 어쩔건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6일자 인천경기면) (3) 『광주 ○○○, 제2의 형제복지원 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5일자 인천경기면) (4) 『절차 강조하던 ○○○, 특별회계감사 거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1일자 인천경기면) (5) 『○○○ 문제 호락호락하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7일자 인천경기면) (6) 『○○○ 사태에 교사들도… “우린 자존감 없는 교사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4일자 인천경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재직 중 횡령 공금유용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반론·추후청구/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취하 (손배청구/사유 : 자진취하)
이행 결과	『○○○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인천경기면)
2015서울조정 4139, 4140	(각 반론청구) 한국자유총연맹 對 일요서울 ⁽⁴¹³⁹⁾ , 인터넷 일요서울 ⁽⁴¹⁴⁰⁾
조정 대상	『행자부와 전면전 선포한 허준영 자총 회장』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5년 12월 14일자 1면, 인터넷 일요서울 12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맹 회장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법인카드를 규정 외로 사용하는 등 조직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결과	『‘○○○○총연맹 허준영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6년 1월 25일자 정치면, 인터넷 일요서울 1월 25일자 정치종합면)

2015서울조정 4141·4142	(정정·손배청구) 김광진 對 뉴스타운
조정대상	『중북의 최후 발악 조짐이 안 좋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1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11, 14,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중북 좌파의 폭력시위를 선동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149~4156, 4191~4198	(각 추후·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에이블뉴스 ^(4149·4150, 4197·4198) , 지뉴스데일리 ^(4151·4152) , 더코리아프레스 ^(4153·4154) , 한강타임즈 ^(4155·4156) , 장애인뉴스 ^(4191·4192) ,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4193·4194) , 인터넷 길림신문해외판 ^(4195·4196)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블뉴스 : 『의혹 투성이 ○○○, 검찰 수사 지지부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2일자 사회면) 외 3건 • 지뉴스데일리 : 『○○○ 성추행 피해 여성 절규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4일자 행정면) • 더코리아프레스 : 『○○○ 성추행 피해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엉엉엉!”』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뉴스면) • 한강타임즈 : 『○○○ 성추행 피해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엉엉엉!”』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뉴스면) • 장애인뉴스 : 『거주 시설인가, 사망 시설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뉴스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재직 중 후원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에이블뉴스/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지뉴스데일리, 한강타임즈,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인터넷 길림신문 해외판/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 각 취하 (더코리아프레스, 장애인뉴스/사유 : 기사삭제)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블뉴스 : 『○○○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사회면) • 지뉴스데일리 : 『○○○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한강타임즈 : 『○○○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 『○○○ 장애인 인권 침해 사안,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4일자 사회복지면)

2015서울조정 4166~4169	(각 정정·손배청구) 정○○ ^(4166·4167) , (주)○○○ ^(4168·4169)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정 대상	『[단독]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 고객 유인·알선 파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하였으며, 신청인 회사의 줄기세포 화장품이 피부에 유해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170·4171	(정정·손배청구) 김○○ 對 푸른한국닷컴
조정 대상	『○○대 축구부 감독의 제왕적 행태 결국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기로에』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3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반찬을 남긴 선수들에게 벌금을 걷고 논문대필을 사주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174~4177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신아일보 ^(4174·4175) , 인터넷 신아일보 ^(4176·4177)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원 유명사찰서 10년 동안 전기도둑행위?』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5년 12월 1일자 전국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12월 1일자 전국네트워크면) (2) 『철원 ○○○사 “전기도둑” 의혹, 사실로 드러났다』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5년 12월 2일자 전국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12월 2일자 전국네트워크면) (3) 『불교명예에 먹칠한 사찰의 전기 도둑』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5년 12월 7일자 전국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12월 7일자 전국네트워크면) (4) 『철원 ○○○사 신도들 “주지스님 사찰 떠나야”』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5년 12월 1일자 사설면, 인터넷 신아일보 12월 1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지로 재임 중인 사찰의 전기절도 사건이 신청인의 지시로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 결과	『철원 ○○○사 주지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6년 1월 14일자 강원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1월 14일자 전국네트워크면)

2015서울조정 4178~418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조○○ 對 매일일보 ^(4178~4180) , 국제뉴스 ^(4181~418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일보 : 『○○그룹 세무조사, 조○○ 부산○○ 겨냥』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전국면) • 국제뉴스 : 『국세청, ○○그룹 세무조사 조○○ 부산○○ 회장 겨냥 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186	(반론청구) 양○○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청인이 감정 요청한 X레이 사진 3장이 동일인의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187	(정정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지금도... “내 귀에 도청장치 있다” 호소하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마인드컨트롤 전파 피해자들을 망상장애자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4188·4189	(반론·손배청구) ○○철강(주)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장기 불황 철강업계 중국산 짝퉁까지 유통』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국산 철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4190	(정정청구) 국방부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입대할 때만 “국가의 아들” 치료는 각자?』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에 대한 국방부의 의료지원 체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입대할 때만 ‘국가의 아들’ 치료는 각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6년 2월 4일자)
2015서울조정 4199~4202	(각 정정·손배청구) ○○○○○회 對 유교신문 ^(4199·4200) , 인터넷 유교신문 ^(4201·4202)
조 정 대 상	『(사)○○○○○회총본부로 명칭 변경 문화부 허가』 제하의 기사 (유교신문 2015년 10월 29일자 뉴스면, 인터넷 유교신문 10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명칭을 변경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203·4024	(정정·손배청구) 전국○○○○노동조합 ○○○○은행지부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재취업 보장하라” 옛 ○○은행 정년 퇴임 직원의 어깃장』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정책금융면)
신청인 주장	정년을 맞은 모 은행 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요구와 관련해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 • 취하 (손배청구/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4205·4206	(정정·손배청구) (주)○○○○대리운전 외 1인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카카오의 O2O 전략, ‘종사자’에 집중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 진출에 대해 반대하는 신청인들과 카카오와의 갈등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4211·4212, 4222·4223	(각 정정·반론청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對 MBC-TV ^(4211·4212) , iMBC ^(4222·4223)
조정대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국과수는 틀리지 않는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0월 4일자, iMBC 10월 4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제보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엉터리 감정을 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2월 21일자, iMBC 2월 21일자 알립니다면)

2015서울조정 4217	(정정청구) (주)○○○○ 對 KBS-2TV
조정대상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유리섬유의 위험』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텐트에 사용되는 유리섬유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우리집 가계비 다이어트- 에너지 절약 살림법』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15일자)

2015서울조정 4218, 4219	(각 정정청구) 권은희 對 TV조선 ⁽⁴²¹⁸⁾ , 인터넷 TV조선 ⁽⁴²¹⁹⁾
조정대상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野 권은희, 천정배 신당행?』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5년 12월 24일자, 인터넷 TV조선 12월 24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불거진 신청인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권은희 의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월 26일자, 인터넷 TV조선 1월 26일자 다시보기면)

2015서울조정 4220	(정정청구) ○○○○○장로회 ○○○노회 對 e뉴조
조 정 대 상	『○○○ 교회 교인 치리하는 ○○○노회, “공정 재판” 가능할까』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5일자 교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회가 재판국에 모 교회 교인 관련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로회 ○○○노회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5일자 교회면)

2015서울조정 4221	(정정청구) 원○○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표절 논문’ ○○대 총장, 교수·학생·교직원 무더기 징계 조짐』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 홍보실장인 신청인이 대학 구성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총장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표절 논문’ ○○대 총장, 교수·학생·교직원 무더기 징계 조짐』 제하 중 ‘무더기’ 표현 삭제 및 기사 중 신청인 실명을 익명으로 처리 (2016년 1월 1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224, 4225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동아일보 ⁽⁴²²⁴⁾ , 동아닷컴 ⁽⁴²²⁵⁾
조 정 대 상	『前서울시향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문 이유가 뭔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1월 12일자 39면, 동아닷컴 11월 12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 시민인권 보호관이 전 서울시향 대표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前서울시향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문 이유 뭔가』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4일자 2면, 동아닷컴 1월 30일자 오피니언면)

지역중재부

〈부산〉

2015부산조정 9	(정정청구) ○○○○ 산부인과의원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귀신이 곡할’ 영아 결핵 감염… 부산 보건 당국 ‘비상’』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 10면)
신청인 주장	모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결핵 발병 8개월 이상 전부터 균을 배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귀신이 곡할’ 영아 결핵 감염… 부산 보건 당국 ‘비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부산일보 2015년 3월 3일자 사회면)

2015부산조정 10, 11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케어 對 K신문 ⁽¹⁰⁾ , 인터넷 국제신문 ⁽¹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신문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뉴스면) • 인터넷 국제신문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국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독점 수입 판매하는 렌즈에 문제가 있어 외국에서 피해보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부산조정 12·13	(정정·손배청구) 조○○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대한항공 여승무원 미소 ‘소름’, “교수 제안에 거짓 진술”』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대한항공 승무원인 신청인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부산조정 14~25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부산일보 ^(14·15) , 인터넷 부산일보 ^(16·17) , 국제신문 ^(18·19) , 인터넷 국제신문 ^(20·21) , KNN ^(22·23) , iKNN ^(24·2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 : 『상인 폭행 갈취한 조직폭력배 구속』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10면, 인터넷 부산일보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 국제신문 : 『“빵에서 담배 나왔다” 영세상인 돈 뜯은 조폭』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 8면, 인터넷 국제신문 2015년 2월 3일 사회면 초기화면) • KNN : 주요뉴스 프로그램 『영세업주 폭행·갈취 조폭무더기 검거』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3일자, iKNN 2월 3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부산조정 26, 27	(각 손배청구) 이○○ 對 KNN ⁽²⁶⁾ , iKNN ⁽²⁷⁾
조 정 대 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유력 우승마의 부진, 승부조작 논란으로』 제하의 보도 (KNN 2015년 3월 30일자, iKNN 3월 30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신청인 주장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부산조정 28, 29	(각 손배청구) 김○○ 對 KNN ⁽²⁸⁾ , iKNN ⁽²⁹⁾
조 정 대 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외국인 폭력조직화, “위험...”』 제하의 보도 (KNN 2015년 2월 12일자, iKNN 2월 12일자 뉴스아이 섹션)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식당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집단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식당의 상호를 노출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200만원)

2015부산조정 30	(반론청구) 최○○ 對 부산KBS-1TV
조정대상	(1) 뉴스9 프로그램 『‘○○ 수습역대 땅투기’… 공무원 연루 의혹』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0일자) (2) 뉴스9 프로그램 『전 군수 부동산 투기 연루』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전 ○○군수인 신청인이 ○○군청 공무원들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결과	뉴스9 프로그램 『최○○ 前 군수, “땅 투기 의혹 전혀 관여 안해”』 제하의 보도 (부산KBS-1TV 2015년 6월 26일자)

2015부산조정 31	(정정청구) 울산광역시 對 노컷뉴스
조정대상	(1) 『메르스 감염 의심자 숫자 조작, 울산시 대사기극』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9일자 지역면 초기화면) (2) 『울산시 메르스 감염의심자 숫자 조작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9일자 지역면 초기화면) (3) 『울산 시민연대 “메르스 감염의심자 숫자 조작 의혹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초기화면) (4) 『메르스 현황 숫자 집계 부실에도 울산시장은 해외출장 중』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초기화면) (5) 『메르스 감염의심자 숫자 조작, 울산시대 사기극』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울산시 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감염의심자 숫자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부산조정 32, 33	(각 반론청구) 노○○ 對 부산KBS-1TV ⁽³²⁾ , KBS미디어 ⁽³³⁾
조정대상	뉴스9 프로그램 『사립학교 도 넘는 도덕적 해이』 제하의 보도 (부산KBS-1TV 2015년 7월 15일자, KBS미디어 7월 15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입과 관련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불이행

2015부산조정 34·35	(정정·손배청구) ○○대학교 치과병원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대 치과병원, 법인화 무색 부실 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의 경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부산조정 36~41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부산일보 ^(36·37) , 인터넷 부산일보 ^(38·39) ,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40·4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 : 『‘문지마 폐원’ 기장군청 민주노총, 주민감사 청구』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8면) • 인터넷 부산일보 : 『‘문지마 폐원’ 기장군청 민주노총, 주민 감사 청구』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1일자 사회면) •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 7시 뉴스 프로그램 『○○ 민간 어린이집 문지마 폐원』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9일)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위장폐업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부산일보 : 『부산지노위 “○○ 어린이집 위장폐원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1일자 10면) •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 7시 뉴스 프로그램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21일)

2015부산조정 42·43	(정정·손배청구) 최○○ 외 3인 對 크리스찬타임
조 정 대 상	『하기수련회 참석 일부 장로들 골프 치다가 들통나』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2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교회 장로인 신청인들이 교회수련회비로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하기수련회 참석 일부 장로들 골프치다 들통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1면)

2015부산조정 44, 46	(정정, 손해청구) ○○○○○중앙회 부산지역본부 외 1인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갑질 ○○○○○ 부산지역본부 긴급감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앙회 부산지역본부가 일선 지점들에 대해 표적검사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부산조정 45, 47	(정정, 손해청구) 황○○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 부산본부 간부, 만취상태에서 감사하다 행패』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앙회 부산지역본부 직원인 신청인이 일선 지점들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만취상태에서 ○○ 직원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부산조정 46	(손배청구) 이○○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1) 『부산 ○○○○○ 대출조사 ‘갑질’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사회일반) (2) 『‘갑질’ ○○○○○ 부산지역본부 긴급감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3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3) 『‘갑질’ ○○○○○부산지역본부 긴급감사』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3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4) 『○○○○○ 부산본부, ‘규정따른 대출이다’ 설명해도 무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4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5) 『‘갑질의혹’ ○○○○○중앙회 부산본부, 직원 보복징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신청인 주장	○○○○○ 중앙회 부산지역본부가 일선 ○○○○○에 대해 ‘갑질횡포’를 한다고 허위보도 하면서 본부장인 신청인의 실명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부산조정 48·49	(정정·손배청구) 유○○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찰의혹으로 내홍』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신청인이 시설관리용역업체 선정 심사 방법을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바꿔 선정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찰의혹’으로 내홍』 제하의 기사에 “이에 대해 C 씨는 업체심사방법을 ‘최저입찰제’에서 ‘심사제’로 바꾸는 과정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문장 삽입 (2015년 10월 21일자 지역 섹션)
2015부산조정 50·51	(정정·손배청구) 금○○ 對 한국디지털뉴스
조 정 대 상	『이완구 전총리가 매우 억울한 이유』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1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이완구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고 성완중 회장의 수행 비서였던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법정에서 신청인이 허위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2015부산조정 52~5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학교복음병원지부 對 한국기독교신문^(52~54), 인터넷 한국기독교신문^(55~57)
조 정 대 상	『법인○○학원, ○○대 복음병원 약국장 보직해임, 새 약국장 선임 단행』 제하의 기사 (한국기독교신문 2015년 11월 21일자 사회면 뉴스초점란, 인터넷 한국기독교신문 2015년 11월 18일 뉴스섹션 뉴스초점면)
신청인 주장	○○대 복음병원노조가 사측의 인사단행과 관련하여 파업을 예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문)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법인○○학원, ○○대 복음병원 약국장 보직해임, 새 약국장 선임 단행”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기독교신문 2016년 1월 1일자 7면)

2015부산조정 58~61	(각 정정·반론청구)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對 부산일보 ^(58·59) , 인터넷 부산일보 ^(60·61)
조 정 대 상	『○○○ 뉴타운 좌초 위기』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5년 11월 18일자 1면, 인터넷 부산일보 11월 18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 뉴타운 10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될 공산이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조합 측 입장』 제하의 기사 (인터넷 부산일보 2016년 1월 28일자 경제해양면)

2015부산조정 62~6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주)○○○건설 對 부산일보 ^(62~64) , 인터넷 부산일보 ^(65~67)
조 정 대 상	『특허공법이 아니라 특허공법이었나』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5년 11월 30일자 1면, 인터넷 부산일보 11월 30일자 홈페이지 경제해양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국제산업물류도시 발파공사 현장에서 에어테크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자진취하)

2015부산조정 68	(정정청구) ○○○자산운용주식회사 對 부산MBC-TV
조 정 대 상	뉴스투데이 부산 프로그램 『수정·백양터널 행정 엉터리』 제하의 보도 (부산 MBC-TV 2015년 12월 1일)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외국계 자본이고, 부산 유료터널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뉴스투데이 부산 프로그램 『○○○ 인프라펀드의 정정보도 요청』 제하의 보도 (부산MBC-TV 2016년 1월 8일자)

2015부산조정 69~72	(각 정정·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WBC 복지TV
조 정 대 상	『경기도청과 광주시청은 ○○○의 불법이사회의 개최에 대해 엄중히 처벌과 이 사진에 대한 선임무효를 확인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9일자 뉴스/보도 자료 성명·논평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부산조정 73~7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외 4인 對 울산조은뉴스
조 정 대 상	(1) 『공동주택 동대표회장이 뭐길래! 입주민들 뺐났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2) 『○○○○ 입주민들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실력행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5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임대아파트 동대표회장인 신청인이 공금을 번칙 지출하고 CCTV를 불법 열람하는 등 직위를 남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공동대표 동대표회장이 뭐길래! 입주민들 뺐났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6일 사회면)

〈대구〉

2015대구조정 1	(정정청구) 성주경찰서 對 경북매일
조 정 대 상	『성주췌 편파수사 여부 밝혀질까』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성주경찰서가 폭행치상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묵살하는 등 편파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1일자 사회면)

2015대구조정 15~18	(각 정정·손배청구) ○○축산업협동조합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1) 『○○축협 청보리 사업 보조금, 조합장 친구에게 몰아준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3일자 사회면) (2) 『○○축협, 조사료(소 사료용 볏짚) 장비지원도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3) 『눈먼 돈 국고보조금 방치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장 친구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구조정 19·20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경북도민일보
조 정 대 상	『대구교육청, 홍보물 업체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홍보물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특혜를 입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구교육청, 홍보물 업체 특혜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지역뉴스/대구면)

2015대구조정 25·26	(정정·손배청구) 조○○ 對 인터넷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대한항공 박○○ 사무장, 여승무원 검찰 조사 받던 날 환한 미소에 ‘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대한항공 승무원인 신청인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대구조정 27	(추후청구) 조○○ 對 타임뉴스
조 정 대 상	『오산시 A어린이집 아동학대, 성추행 의혹 휩싸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오산시 A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6일자 오산면)
2015대구조정 28	(정정청구) 윤○○ 對 경북장애인뉴스
조 정 대 상	『○○○○○체육회 회장 윤○○ 국회의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체육회장 재직 시 횡령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대구조정 29·30	(정정·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對 서라벌신문
조 정 대 상	『노조원동의로 기업별 노조를 만들었는데 법원 “위원장 결재를 안받았으니 무효”』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시스템스코리아(주)의 공작에 의한 친기업노조 설립을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것으로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구조정 31·32	(정정·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인터넷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수도권 마트 돌며 식파라치 사기극... 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 밖에서 가져와 매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 사기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대구조정 33~35	(정정·손배청구 ^(33·34) , 정정청구 ⁽³⁵⁾) 박○○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영남일보·○○○○건설, “한겨레 정○○ 기자에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5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영남일보 발행인이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다는 찌라시를 언론 등에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영남일보·○○○○건설, 배○○ 회장 악의적으로 보도한 한겨레 정○○ 기자에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인터넷 영남일보 2015년 6월 22일자 초기화면)

2015대구조정 36~38	(정정·손배청구 ^(36·37) , 정정청구 ⁽³⁸⁾) ○○○○연대 외 1인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취재 협박 ‘이상한’ 시민단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0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시민단체인 신청인이 군의회 의원들의 비리를 파악하려는 기자의 취재활동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취재 방해, 협박 의도 없었다고 알려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10면)

2015대구조정 39·40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UGN 경북뉴스
조 정 대 상	(1) 『○○○○촌 수탁업체 특감결과 비공개 고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8일자 영주봉화 인터넷뉴스면) (2) 『남은기간 좀 빼먹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6일자 영주봉화 인터넷뉴스면) (3) 『겨울에도 푸르지 못하다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영주봉화 인터넷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강동회사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자진취하)

2015대구조정 41·42	(정정·손배청구) 최○○ 對 올인코리아
조 정 대 상	『국정원은 반역적 외부인을 들이지 말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1일자 올인코리아 메인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북한에 우호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국정원은 반역적 외부인을 들이지 말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쟁점면)

2015대구조정 43~46	(각 추후청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對 영남일보 ⁽⁴³⁾ , 매일신문 ⁽⁴⁴⁾ , 대구MBC-TV ⁽⁴⁵⁾ , TBC-TV ⁽⁴⁶⁾
조 정 대 상	(1) 『4살짜리 딸 손등, 허벅지 등 상처 복구서 어린이집 학대 신고』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5년 2월 14일자 6면) (2) 『바늘로 아이 찔렸다』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5년 2월 13일자 3면)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바늘로 아이 찔렸다』 제하의 보도 (대구MBC-TV 2015년 2월 13일자) (4) 뉴스8 프로그램 『바늘 학대 어린이집 수사』 제하의 보도 (TBC-TV 2015년 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일보, 매일신문 : 『바늘학대 의혹사건 무혐의』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5년 8월 18일 8면, 매일신문 8월 18일자 6면) • 대구MBC-TV : MBC 뉴스데스크 『바늘학대 의혹사건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4일자) • TBC-TV : 뉴스8 프로그램 『바늘학대 의혹사건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7일자)
----------------	--

2015대구조정 47	(정정청구) ○○군 공무원직장협의회 對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밥값』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회식비 등으로 편법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군 업무 추진비 편법 집행’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1일자 10면)

2015대구조정 48~51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내외일보
조 정 대 상	<p>(1) 『○○촌, ○○문화수련원위·수탁 협약 불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일자 10면)</p> <p>(2) 『영주시, ‘○○촌’·‘○○○○문화수련원’ 골머리 사업수행 관련, 사회적 물의 빚어… 협약서 의거 협약 해지 요구』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3일자 10면)</p>
신청인 주장	경북 영주의 ○○촌과 ○○문화수련원 운영을 위탁받은 신청인 회사가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이며, 영주시로부터 협약 해지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48, 50) (내용 : 정정보도) • 취하^(49, 51)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영주 ○○촌 ○○문화수련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사회면)

2015대구조정 52~5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박○○ 對 경북매일 ^(52~54) , 인터넷 경북매일 ^(55~57)
조 정 대 상	『보형물 후유증 병원 배짱에 이중고』 제하의 기사 (경북매일 2015년 8월 25일자 4면, 인터넷 경북매일 8월 25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의사인 신청인이 시행한 음경확대수술로 인한 의료분쟁과 관련, 환자의 거짓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2015대구조정 58~61	(정정·반론청구) ○○군 농민회 외 3명 對 영남일보 ^(58·59) , 인터넷 영남일보 ^(60·61)
조 정 대 상	『○○군 농민회, 농활 대학생 집회 동원 논란』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5년 8월 10일자 10면, 인터넷 영남일보 8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폐기물매립장 반대집회에 농촌봉사활동 대학생들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알림)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군 농민회, 농활 대학생 집회 동원 논란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5년 10월 13일자 12면, 인터넷 영남일보 10월 13일자 사회면)
2015대구조정 62	(정정청구) 전국○○○○노동조합 對 대구MBC-TV
조 정 대 상	8시 저녁종합뉴스 『대구 지하철 쪼개기 위탁으로 시민혈세 낭비』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대구지하철공사에서 청소미화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착복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대구조정 63~66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한길뉴스 ^(63·64) , 인터넷 한길뉴스 ^(65·66)
조 정 대 상	『희대 사기범 조희팔 은닉자금 삼○○ 유입, ○○컨설팅 지역 정, 관계 정치자금 혹은 뇌물로 뿌렸을 가능성 거론』 제하의 기사 (한길뉴스 2015년 10월 22일자 1~2면, 인터넷 한길뉴스 10월 18일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다단계 사기 주범인 조희팔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구조정 67~71	(정정·반론·손배청구 ^(67~69) , 정정·반론청구 ^(70·71)) 성주군 對 대구광역일보
조 정 대 상	『성주군공무원 손에 놀아난 군수·군의회』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성주군 내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 운영과 관련 각종 특혜와 비리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구조정 72·73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경북자치신문
조 정 대 상	『김천 M중학교 전 행정실장 기자회견- 11월 5일 오전 11시 사학비리발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7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법인 재단이사가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김천 M중학교 전 행정실장 기자회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북자치신문 2015년 11월 27일자 1면, 인터넷 경북자치신문 11월 26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2015대구조정 74~77	(정정·손배청구) 안○○ 對 대경일보 ^(74·75) , 인터넷 대경일보 ^(76·77)
조 정 대 상	『요양병원, 부실한 환자관리 비난 폭주』 제하의 기사 (대경일보 2015년 11월 20일자 종합면, 인터넷 대경일보 11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응급환자를 장시간 방치하여 위독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대구조정 78	(정정청구) 문○○ 對 인터넷 울진신문
조 정 대 상	『○○협 전임 집행부 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울진군 공무원인 신청인이 울진군 ○○○○○협의회 전 집행부의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협의회, 전임 집행부 고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초기화면)
2015대구조정 79·80	(정정·손배청구) 최○○ 對 경북매일
조 정 대 상	『○○시 평생학습원 노래강사 자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시 평생학습원 노래교실 강사인 신청인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수강생들로 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PR보도)
이 행 결 과	『노래로 행복 전하는 최○○씨 “인기짱이라 전해라~”』 제하의 기사 (경북매일 2016년 1월 15일자 6면)

〈광주〉

2015광주조정 1~4	(각 정정·반론청구) 김○○ 對 광남일보 ^(1·2) , 인터넷 광남일보 ^(3·4)
조정대상	『가전매장 등 문연 채 ‘히터 평평’』 제하의 기사 (광남일보 2015년 1월 8일 10면, 인터넷 광남일보 1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대형 난방기를 켜둔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결과	『[정정, 반론보도] 가전매장 등 문연 채 ‘히터 평평’』 제하의 기사 (광남일보 2015년 1월 26일자 10면, 인터넷 광남일보 1월 26일자 사회면)

2015광주조정 5·6, 9~14, 39·40, 54~61	(각 정정·손배청구) 맹○○ 對 파인뉴스 ^(5·6, 39·40, 58·59) , 뉴스투데이한국 ^(54·55) , 남도타임즈 ^(56·57) , 화순투데이 ^(60·61)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파인뉴스파인뉴스 ^(9~11) , 뉴스투데이한국 ^(12~14)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인뉴스 : (1) 『악성민원인 덕분(?)에 20억 투자 지연』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 사회면) (2) 『화순군 관내 고발, 공판 등 묶음소식』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2일 사회면) 외 2건 뉴스투데이한국 : (1) 『○○○○○ 前간부사원 A씨 “해고무효소송” 다음달 26일 선고』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3일자 사람사는세상면) (2) 『○○○○○유통(주) 투자유치 결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5일 전국뉴스면) 화순투데이 : 『○○ ○○○○○○○(주) 41억여 원 투자유치 성공』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3일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식약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 때문에 모 기업이 20억원 투자를 약속한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각하 (파인뉴스^(5·6, 9~11, 39·40)/사유 : 출석요구서 송달 불가능) 조정성립 (뉴스투데이한국^(12~14)/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각 기각 (뉴스투데이한국^(54~61), 남도타임즈, 파인뉴스^(58·59), 화순투데이/사유 : 당사자 부적격, 개별적 연관성 부정)

2015광주조정 7·8	(정정·반론청구) (주)○○○○○○코리아 對 KBC-TV
조 정 대 상	저녁뉴스 및 8시 뉴스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조정 신청하자 “간판 내려라”』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외식업체인 신청인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조사한 결과 현행법 위반과 부당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저녁뉴스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맹점이 먼저 요구』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일자)

2015광주조정 15~34	(각 정정·반론청구) ○○○○○○시장상인회 對 광주일보^(15·16, 19·20, 23·24, 27·28, 31·32), 인터넷 광주일보^(17·18, 21·22, 25·26, 29·30, 33·34)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점 할머니들 푸돈 뜯는 시장상인들의 ‘甲’질』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19일 6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19일자 사회면) (2) 『동구청 “노점상 자릿세 못건게 하겠다”』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 20일자 제7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20일자 사회면) (3) 『관리비 부당징수 ‘○○○○○○’와 새벽시장 운영·관리 협약 파기하라』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 21일자 6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21일자 사회면) (4) 『○○○시장 무료주차권 위조 의혹』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 24일자 6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24일자 사회면) (5) 『○○○시장종합상가 불법 원룸 증개축… 수십년째 임대 물의』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 25일자 6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시장 노점상들로부터 자릿세를 뜯고 물건을 건어차는 등의 행패를 부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기사)
이 행 결 과	『○○○시장,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으로 남광주○○○○○○○, ‘디자인 점포대학’ 개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대대적 탈바꿈 시도』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6월 4일자 7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5일 사회면)

2015광주조정 35~38	(각 정정·반론청구) 조○○ 對 광주일보 ^(35·36) , 인터넷 광주일보 ^(37·38)
조정대상	『예산 퍼준 당국…개인용도 시설 혈세 지원』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 26일자 6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28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불법 개조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후속기사)
이행결과	『○○○시장,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으로 ○○○○○○시장 상인회, ‘디자인 점포 대학’ 개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대대적 탈바꿈 시도』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6월 5일자 7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5일 사회면)
2015광주조정 41~52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서○○ 對 뉴스호남 ^(41~43) , 전남인터넷신문 ^(44~46) , 호남매일 ^(47~49) , 프라임경제 ^(50~52)
조정대상	『서○○이 죽어야 윤 시장이 산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칼럼면 등)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자격과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뉴스호남/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전남인터넷신문, 호남매일, 프라임경제/내용 : 중재합의)
이행결과	『(서○○이 죽어야 윤 시장이 산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뉴스호남 2015년 3월 8일자 칼럼면)
2015광주조정 53	(정정청구) 강○○ 對 전남기독교신문
조정대상	『목포 ○○○○○교회 내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9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원로목사인 신청인이 담임목사를 몰아내려 하는 등 교회 일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결과	『〈목포 ○○○○○교회 내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7면)

제 5 부

2015광주조정 62~65	(정정·반론청구) 백○○ 對 KBC-TV ^(62·63) , 인터넷 KBC ^(64·65)
조 정 대 상	저녁뉴스 프로그램 『사우나 업주 “플래카드 걸지 않았다” 주장… 경찰 조사』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3월 27일자, 인터넷 KBC 3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사우나를 운영하던 신청인이 사우나 폐업 직전에 회원권과 할인쿠폰을 남발한 후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사우나 업주 “플래카드 걸지 않았다” 주장…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인터넷 KBC 2015년 3월 27일자 뉴스면)

2015광주조정 66, 67	(각 정정청구) 김○○ 對 광주매일신문 ⁽⁶⁶⁾ ,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⁶⁷⁾
조 정 대 상	『풍암 호수에 울려 퍼진 사랑의 멜로디』 제하의 기사 (광주매일신문 2015년 3월 9일자 7면,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3월 8일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에서 주최한 음악회를 타 회사에서 주최한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풍암 호수 ‘사랑의 멜로디’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광주매일신문 2015년 3월 31일자 7면,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3월 31일자 사회면)

2015광주조정 68~71	(각 정정청구) 오○○ 對 전남일보 ⁽⁶⁸⁾ , 광주MBC-TV ⁽⁶⁹⁾ , 광주KBS-1TV ⁽⁷⁰⁾ , 연합뉴스 ⁽⁷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일보 : 『○○○재단 이사장-직원 갈등』 제하의 기사(2015년 1월 6일자 4면) 외 1건 • 광주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 기념재단 직원들 이사장 사퇴 촉구』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3일자) 외 2건 • 광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이사장 사퇴하라, ○○○기념재단 갈등 격화』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5일자) • 연합뉴스 : 『이사장 고사, 계약직 해고… ○○○ 기념재단 20주년 흔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8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기념재단 이사장인 신청인이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고, 독단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전남일보, 광주MBC-TV, 연합뉴스/사유 : 중재합의) • 조정성립 (광주KBS-1TV/내용 : 유감표명, 부제소)

2015광주조정 72~75	(각 정정·반론청구) ○○축산영농조합법인 對 전남매일 ^(72·73) , 인터넷 전남매일 ^(74·75)
조 정 대 상	『국가지원 축산영농조합 변칙 운영심각』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5년 4월 15일자 5면, 인터넷 전남매일 4월 15일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국가지원 축사를 조합원이 아닌 개인업자에게 매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5년 5월 8일자 5면, 인터넷 전남매일 5월 22일자 경제면)

2015광주조정 76	(정정청구) ○○대학교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욕망의 노예 총장님, 비리백화점 ○○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1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대학교 총장이 직위를 이용해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1) 『〈반론 보도문〉 ‘○○대 비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1일자 사회면) (2) 『고소고발로 얼룩진 ○○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1일자 지방자치면)

2015광주조정 77~80	(각 정정·반론청구) 정○○ 對 광주MBC ^(77·78) , 인터넷 광주MBC ^(79·80)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투자금 돌려달라며 이웃 살해하려는 50대』 제하의 보도 (광주MBC 2015년 5월 2일자, 인터넷 광주MBC 4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흥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이웃 주민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투자금 반환요구하며 이웃 살해 시도’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광주MBC 2015년 5월 16일자, 인터넷 광주MBC 5월 16일자 사회면)

2015광주조정 81, 82	(각 반론청구) ○○○○방송(주) 對 시민의소리 ⁽⁸¹⁾ , 인터넷 시민의소리 ⁽⁸²⁾
조 정 대 상	『○○○○○ 협찬금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시민의소리 2015년 5월 11일자 10면, 인터넷 시민의소리 5월 7일자 <미디어를 싸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협찬금의 일부를 신청인 방송사의 대표와 보도국장이 착복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문] ○○○○○, 협찬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민의소리 2015년 5월 15일자 언론계뉴스면)
2015광주조정 83~86	(각 정정·반론청구) 조○○ 對 광주일보 ^(83·84) , 인터넷 광주일보 ^(85·86)
조 정 대 상	『정동영의 추락과 천정배의 부활』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5월 8일자 2면, 인터넷 광주일보 5월 8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4·29 재·보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5년 전 광주 서구청장 재보선에서 ‘무리한 공천’을 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민주당, 안이한 공천으로 패배’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6월 12일자 2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12일자 정치면)
2015광주조정 87~90	(각 정정·반론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광주일보 ^(87·88) , 인터넷 광주일보 ^(89·90)
조 정 대 상	『광주시, 송정역사 증축 건의키로』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4월 30일자 2면, 인터넷 광주일보 4월 3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호남선 KTX 광주송정역의 설계과정에서 이사장의 지시로 역사 규모 등을 축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철도시설공단이 광주송정역사 규모 축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6월 19일자 2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19일자 정치면)

2015광주조정 91, 92	(각 반론청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對 시민의소리
조 정 대 상	『초등 수준도 못되는 광산구의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회가 본회의 의결 내용과 다르게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광산구의회 회의록, 문제없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6면)

2015광주조정 93~96	(각 정정·반론청구) ○○시 리통장단협의회 對 전남타임스 ^(93·94) , 인터넷 전남타임스 ^(95·96)
조 정 대 상	『○○시 일부 이장들 파렴치 행각 ‘경악’』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 일부 회원이 마을 주민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2015광주조정 97~100, 101~104, 111~114, 167, 168	(각 정정·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전남도민일보 ^(97·98, 101·102) ,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99·100, 103·104) (각 정정청구) 전남도민일보 ^(111, 113, 167) ,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112, 114, 168)
조 정 대 상	(1) 『○○○○○○센터 연구원, 기술 팔아 금품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7월 2일자 1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7월 2일자 종합뉴스면) (2) 『中유기질비료 국내산 ‘둔갑’ 최고 5배 폭리… ‘농민우롱’』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7월 6일자 1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7월 6일자 종합뉴스면) (3) 『정부지원 ○○○○○센터, ‘임대사업장’ 둔갑… 불만고조』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7월 13일자 1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7월 13일자 사회면) (4) 『금품거래 사적연구 발뺌 물의』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7월 29일자 1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7월 29일자 사회면) (5) 『‘병원균 득실’ 이용객 건강 위협 심각… ‘충격’』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9월 22일자 1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센터 연구원으로부터 미생물 광합성세균 배양기술을 몰래 사들였다가 수익성이 떨어지자 연구원을 협박해 돈을 돌려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전남도민일보^(97·98, 101·102), 인터넷 전남도민일보^(99·100, 103·104)/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 각 조정성립 (전남도민일보^(111, 113), 인터넷 전남도민일보^(112, 114)/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전남도민일보⁽¹⁶⁷⁾, 인터넷 전남도민일보⁽¹⁶⁸⁾/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타의 E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8월 17일자 2면) (2) 『바로잡습니다 “○○ ○○○센타 E사, 공장등록요건 갖춰”』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10월 20일자 2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10월 20일 전남곡성면) (3)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10월 28일자 2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10월 28일자 전남곡성면)

2015광주조정 105~108	(각 정정·반론청구) ○○○○파트재건축조합 對 KBC-TV ^(105·106) , 인터넷 KBC-TV ^(107·108)
조 정 대 상	8뉴스 프로그램 『‘새집은 언제나’ 재건축조합 비리로 얼룩』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8월 3일자, 인터넷 KBC-TV 8월 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건축 조합이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의 주택 소유권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KBC 저녁뉴스 프로그램 『목포 재건축조합 관련 보도』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8월 25일자, 인터넷 KBC-TV 8월 25일자 뉴스검색면)

2015광주조정 109·110	(반론·손배청구) 손○○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연구소 직원, 사채·성범죄·취업 알선료 수수... 불법 ‘종합세트’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단독면) (2) 『○○○ ○○연구소 직원, 장애인 가정 풍비박산(?)... 집 강제경매신청』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3일자 단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금리 사채놀이를 하고,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광주조정 115~118	(각 정정·반론청구) ○○○ ○○사 對 해남신문 ^(115·116) , 인터넷 해남신문 ^(117·118)
조정대상	『포교활동인가 ‘뺏다방’인가』 제하의 기사 (해남신문 2015년 5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해남신문 5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찰의 포교 방식이 ‘뺏다방’과 유사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결과	『○○ ○○사, ‘뺏다방 포교활동’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해남신문 2015년 9월 30일자 행정면)
2015광주조정 119~130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동○○아파트입주자 외 1인 對 전남일보 ^(119~121, 125~127) , 인터넷 전남일보 ^(122~124, 128~130)
조정대상	『아파트 도색공사 공개입찰 폭행사건 비화』 제하의 기사 (전남일보 2015년 8월 27일자 4면, 인터넷 전남일보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외관 도색공사 관련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아파트 도색 공사 공개입찰 폭행사건 비화’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전남일보 2015년 8월 27일자 4면, 인터넷 전남일보 8월 27일자 사회면)
2015광주조정 131~162	(각 정정·반론청구) ○○시장상인회 對 KBC-TV ^(131·132) , 인터넷 KBC-TV ^(133·134) , 시민의소리 ^(135·136, 139·140, 143·144, 147·148, 151·152, 155·156, 159·160) , 인터넷 시민의소리 ^(137·138, 141·142, 145·146, 149·150, 153·154, 157·158, 161·162)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C-TV : 8시 저녁 뉴스 프로그램 및 아침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시장 상인회 관련』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9일자 및 8월 20일자, 인터넷 KBC-TV 8월 19일자 및 8월 20일자 뉴스면) • 시민의 소리 : 『○○시장상인회 사업비 횡령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7일자 7면, 인터넷 시민의소리 8월 12일자 사회면) 외 6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상인회가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KBC-TV, 인터넷 KBC-TV/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시민의소리, 인터넷 시민의소리/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시장, 지원금 횡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1일자, 인터넷 KBC 10월 21일자 뉴스거러면) • 시민의소리 : 『‘○○시장 상인회 비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3면, 인터넷 시민의소리 11월 12일자 사회면)

2015광주조정 163~166	(각 정정·반론청구) 김○○ 對 KBC-TV ^(163·164) , 인터넷 KBC-TV ^(165·166)
조 정 대 상	<p>(1) 시사터치 따라부따 프로그램 『광주 ○○ ○○단 예술감독 인사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7월 14일자, 인터넷 KBC-TV 7월 14일자 다시보기면)</p> <p>(2) 시사터치 따라부따 프로그램 『경력위조! 허위이력! 김○○ 예술 감독, 즉각 해임하라! 해임하라! 해임하라!』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9월 14일자, 인터넷 KBC-TV 9월 14일자 다시보기면)</p>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교방송과 교통방송의 국악프로그램 진행 경력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시사터치 따라부따 프로그램 『‘○○○○단 예술감독 허위이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11월 2일자)

2015광주조정 169, 170	(각 반론청구) ○○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對 광양신문 ⁽¹⁶⁹⁾ , 광양뉴스 ⁽¹⁷⁰⁾
조 정 대 상	『단지 내 예초기 작업에 8살 남아 부상』 제하의 기사 (광양신문 9월 30일자 11면, 인터넷 광양신문 9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단지 내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아동 부상에 대해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예초기 작업에 아이 부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광양신문 2015년 11월 2일자 2면, 광양뉴스 10월 30일자 지역이슈면)

2015광주조정 171·172, 174~176	(정정·반론·손배청구) 이윤석 對 주간노령 ^(174~176) , 인터넷 주간노령 ^(171·172)
조 정 대 상	『긴급속보, 임○○ 씨 “무안기업도시 무산, 이윤석 의원 책임 커”』 제하의 기사 (주간노령 2015년 11월 11일자 1·6면, 인터넷 주간노령 11월 3일자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무안기업도시를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무안기업도시 무산은 이윤석 의원 책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노령 2015년 12월 7일 1면, 인터넷 주간노령 11월 25일자 무안면)

2015광주조정 177·178	(정정·손배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프라임경제
조 정 대 상	『○○군, 유기질비료 지원… 일부 농협 부정행위 ‘골머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5일자 지역/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군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특정제품을 강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농협 유기질비료’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경제면)

2015광주조정 179, 180	(각 추후청구) 장○○ 對 KBC-TV ⁽¹⁷⁹⁾ , 인터넷 KBC-TV ⁽¹⁸⁰⁾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특화시장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KBC-TV 2013년 12월 13일자, 인터넷 KBC-TV 12월 13일자 8시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 상가 불법 분양과 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p>2015광주조정 181~214</p>	<p>(각 정정·반론청구) 조○○ 對 전남일보^(181·182), 인터넷 전남일보^(183·184), 연합뉴스^(197·198), 한국일보^(205·206), 인터넷 한국일보^(207·20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광남일보^(185~187, 199~201), 인터넷 광남일보^(188~190, 202~204), 무등일보^(199~201), 인터넷 무등일보^(202~204), 영암신문^(209~211), 인터넷 영암신문^(212~214)</p>
<p>조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일보 : 『영암군, 악취 물의 승마장 경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11면, 인터넷 전남일보 6월 23일자 영암군면) • 광남일보 : (1) 『학교 부지서 승마장 불법영업 ‘빈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제1면, 인터넷 광남일보 6월 22일 시/군면) (2) 『영암군 승마장 특혜의혹 해소시켜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19면, 인터넷 광남일보 6월 22일 시/군면) 외 2건 • 무등일보 : 『학교부지 임대받은 승마장서 말 사육 ‘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제11면, 인터넷 무등일보 6월 23일자 뉴스센터면) • 연합뉴스 : 『“학교부지에 승마장”... 전남개발공사·영암군 묵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전체기사면) 외 4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운영하는 승마연습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전남일보, 인터넷 전남일보/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광남일보, 인터넷 광남일보, 무등일보, 인터넷 무등일보/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영암뉴스, 인터넷 영암뉴스/사유 : 중재합의)
<p>이행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10면, 인터넷 전남일보 1월 19일자 영암군면) • 광남일보 : 『영암군 상호읍 D승마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2면, 인터넷 광남일보 1월 14일자 사회면) • 무등일보 : 『학교부지 임대받은 승마장서 말 사육 ‘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11면, 인터넷 무등일보 6월 23일자 뉴스센터면) • 연합뉴스 : 『영암 D 승마장 “책임 보험 가입”』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일자 전남면)

〈대전〉

2015대전조정 1	(정정청구) 조○○ 對 충청투데이
조정대상	『조○○ ○○시의원, 공무원 비하발언 못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9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공무원 비하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조○○ ○○시의원 ‘공무원 비하 발언’ 못매 기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17면)

2015대전조정 2~5	(각 정정·손배청구) 송○○ 對 대전시티저널 ^(2·3) , 브레이크뉴스 대전총청 ^(4·5)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티저널 : 『주고받고 배달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 공무원, 업자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브레이크뉴스 대전총청 : 『대전경찰, 인허가 관련 청탁 뇌물수수 기자·고위 공무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임야 개발 및 폐기물처리장 용도변경과 관련 항응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대전시티저널/내용 : 추후보도 - 동의 후 보도) 취하 (브레이크뉴스 대전총청/사유 : 자진취하)
이행결과	『“주고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대전시티저널 2015년 1월 30일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6~9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주간당진시대 ^(6·7) , 인터넷 주간당진시대 ^(8·9)
조정대상	『○○네 어린이집 부당해고 논란』 제하의 기사 (주간당진시대 2015년 7월 21일자 교육면, 인터넷 주간당진시대 7월 18일자 홈페이지 교육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조리사를 부당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이행결과	『“○○○ 어린이집 부당해고 논란” 권고사직으로 종결』 제하의 기사 (주간당진시대 2015년 2월 2일자 9면, 인터넷 주간당진시대 2월 2일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14	(정정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충남일보
조 정 대 상	『○○○○농협, 역대 리베이트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주유소 신축공사 수주업체 선정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농협 역대 리베이트 의혹 제기』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6일자 6면)
2015대전조정 15~26	(각 정정·반론청구) 백○○ 對 디트news24 ^(15·16) , 인터넷 대전일보 ^(17~20) , 대전 시티저널 ^(21·22) , 인터넷 굿모닝충청 ^(23·24) , 인터넷 금강일보 ^(25·2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트news24 : 『초등학교 4학년생 식칼 들고 등교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홈페이지 뉴스면) • 인터넷 대전일보 : 『초등생 식칼 들고 등교 강제전학 요구에 고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1일자 홈페이지 뉴스면) • 대전시티저널 : 『인성교육 우수 학교에서 학생이 식칼 들고 등교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홈페이지 교육면) • 인터넷 굿모닝충청 : 『대전 초등학교 교실 흥기소동』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교육면) • 인터넷 금강일보 : 『초등생이 교실서 ‘식칼소동’』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생인 신청인이 다수의 학생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등교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대전조정 27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타던 어린이 추락 안전요원 규정 안지켰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충북 보은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 관련 놀이기구가 신청인 회사가 설치 운영하는 놀이기구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하강레포츠 하던 어린이 추락 안전요원 규정 안 지켰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28	(정정청구) (주)○○○플러스 對 금강일보
조정대상	(1) 『지원조례 없이 혈세로 위탁업체 좋은 일만 ○○ ‘○○콜’ 운영비 여객운수법 위반 제기』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31일자 12면) (2) 『이름만 ○○콜, 실상은 말썽콜』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4일자 12면) (3) 『○○ ○○콜 장비 불량납품 여부 가린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7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시 콜택시 요금결제서비스 및 GPS위성콜서비스 위탁운영사업자인 신청인 회사가 불량 통신장비를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결과	『‘○○ ○○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9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29·30, 72·73	(정정·손배청구) 전○○ 對 충남일보 ^(29·30) (반론·손배청구) 굿모닝논산 ^(72·73)
조정대상	• 충남일보 : 『완장 조합 감사 이대로 둘 수 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10면) • 굿모닝논산 : 『윤○○, 강○○ 조합장 선처 여론 비등』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농협 조합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 충남일보 : 『기자수첩란』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1일자 6면) • 굿모닝논산 : 『윤○○, 강○○ 조합장 선처여론 비등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0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31~34, 40	(각 정정·손배청구) (사)한국○○협회 ○○지부 외 1인 對 대전투데이 ^(31·32) , 인터넷 대전투데이 ^(33·34) (정정청구) 아시아뉴스통신(대전) ⁽⁴⁰⁾
조정대상	• 대전투데이 : (1) 『○○시 문화단체 비밀장부가 있다』 제하의 기사 (4월 16일 15면, 인터넷 대전투데이 2015년 4월 15일 오피니언 칼럼면) (2) 『○○시 호수공원 행사 허용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2일자 7면, 인터넷 대전투데이 4월 21일자 종합뉴스 충남면) • 아시아뉴스통신(대전) : 『충남 ○○시 호수공원 행사 구두 허용 약속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2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비밀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보도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대전투데이, 인터넷 대전투데이/내용 : 반론보도) • 취하 (아시아뉴스통신(대전)/사유 : 정정보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투데이 : 『‘○○시 문화예술단체 비밀장부 있다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7일자 7면, 인터넷 대전투데이 5월 27일자 원보도지면) • 아시아뉴스통신(대전) : 『‘충남 ○○시 호수공원 행사 구두 허용 약속 특혜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35~37	(반론청구) 주○○ 對 대전일보 ⁽³⁵⁾ (각 정정청구) 충청투데이 ⁽³⁶⁾ , TJB-TV ⁽³⁷⁾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 『○○시의회 콜택시 예산 삭감 주장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지역면) • 충청투데이 : 『○○ 콜택시 콜비용 유료화 요구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17면) • TJB-TV : 8시뉴스 프로그램 『시의회가 ‘환경파괴’ 주도』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자연경관지구 토지 소유 업체의 청탁을 받고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전조정 38·39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정 대상	『○○의용소방대가 대장인 신청인의 사조직처럼 운영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0일자 충남면)
신청인 주장	모 소방대가 신청인의 사조직처럼 운영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전조정 41	(반론청구) ○○건설 주식회사 對 인터넷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치고 빠지는 ‘암체 건설社’ 특실』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홈페이지 건설/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세종시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동구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공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42·43	(정정·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천안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유통기한 지난 상품 몰래 놓고 신고하는 식파라치 사기극』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사회-정치소식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 밖에서 가져와 매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 사기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식파라치 사기극’ 사기 아닌 정당한 공익신고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44, 45	(각 정정청구) 김○○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시의원에 고소당한 여성단체 회원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3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여성단체 회원 3명에 대한 검찰 처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대전조정 46·47	(정정·손배청구) ○○대학교 병원 對 뉴스1 대전충남
조 정 대 상	『메르스 환자 거쳐간 대전지역 2개 병원 휴원 조치는 ‘사실무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일자 대전충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메르스 환자 처리 관련 휴원조치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전문] 박○○ ○○대병원 의료원장』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6일자 원보도 지면)
2015대전조정 48, 49	(각 정정청구) 대전광역시 동구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동구 인쇄거리 재생사업… 눈감은 동구청』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구청이 인쇄거리 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동구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공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50	(정정청구) 이○○ 對 청양신문
조 정 대 상	『일부 선거후보 자격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8일자 5면)
신청인 주장	○○문화원 부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신청인이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일부 선거후보 자격논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8일자 5면)

2015대전조정 51	(정정청구) 유○○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시간 남는다 오페라 관람 ○○연 방만 운영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연구원장인 신청인이 연구원을 방만하게 운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전조정 52	(반론청구) (주)○○○ 對 아시아뉴스통신(대전)
조 정 대 상	『○○대, “미화원 부당대우에 이어 체불임금 갈등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신청인 주장	○○대 환경미화 용역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미화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 “미화원 부당대우에 이어 체불임금 갈등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53~56	(각 정정·손배청구) ○○○○자치위원회 對 CNN25 ^(53·54) , 충남뉴스 ^(55·56)
조 정 대 상	『현장고발 탁상행정의 극치… 금산군 ○○면 ○○○ ○○마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뉴스종합면)
신청인 주장	금산군 ○○○ ○○마을의 신청인 위원회가 전횡을 일삼으며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마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57	(반론청구) ○○종합사회복지관 對 우리들뉴스
조 정 대 상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및 보복해고 부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 홈페이지 경기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관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복지사를 보복성으로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부천 ○○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및 보복해고 부당”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5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58~61	(각 정정·손배청구) (주)○○건설 對 세종매일 ^(58·59) , 인터넷 세종매일 ^(60·61)
조 정 대 상	『건설사 승승장구 근로자 피눈물』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5년 8월 18일 1·2면, 인터넷 세종매일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건설사가 근로자 노임을 고의로 체불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건설사 승승장구 ‘피눈물’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세종매일 2015년 9월 18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62	(반론청구) 공주시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오시덕 공주시장, 1년 평가 ‘낙제점’』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5일자 14면)
신청인 주장	민선6기 공주시장의 1년 시정평가가 무원칙한 인사, 전략부재 등으로 낙제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오시덕 공주시장, 1년 평가 낙제점’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63	(정정청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對 세종매일
조 정 대 상	『최고진 교육감 전문성 무시한 측근 채용』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4일자 종합 1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 교육청이 전문성을 무시한 채 교육감 측근을 장학관으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최고진 교육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장학관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64·65	(추후·손배청구) 이○○ 對 세종매일
조 정 대 상	(1) 『세종교육청 ○○○○과 L장학사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1면) (2) 『세종교육청 L장학사 “잘 봐주겠다.” 금품요구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5일자 1면) (3) 『세종교육청 L장학사 협박 무서워 자살기도 충격 고백』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인 신청인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세종시 교육청의 ○○○○과 L장학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66	(정정청구) (재)한국○○○○연구원 對 인터넷 금이성
조 정 대 상	(1) 『고교평준화 시기조절이 필요하다(1)』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6일자 뉴스 사설면) (2) 『고교평준화 시기조절이 필요하다(2)』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0일자 뉴스 사설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 교육청의 고교평준화 타당성 검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신청인 연구원이 교육관련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세종시 ‘고교평준화’ 시기조절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원보도지면)

<p>2015대전조정 67~69</p>	<p>(각 정정청구) ○○종합복지센터 對 인터넷 세종매일^(67, 68), 세종in뉴스⁽⁶⁹⁾</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세종매일 : (1)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잇단 ‘잡음’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6일자 사회면)』 (2) 『세종시청 위탁사업자에게 갑의 횡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3일자 세종시면) • 세종in뉴스 : 『내 칼은 너무 커 한번 뽑으면 세종시장 한 둘은 목 날라가』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3일자 정치/행정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복지센터 산하 시설 직원들이 사직한 이유가 센터장의 언어폭력과 종교 차별 등의 인권침해행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인터넷 세종매일⁽⁶⁷⁾/사유 : 자진취하) • 취하 (인터넷 세종매일⁽⁶⁸⁾/사유 : 반론보도) • 조정성립 (세종in뉴스⁽⁶⁹⁾/내용 : 반론보도)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세종매일⁽⁶⁸⁾ : 『‘내 칼은 너무 커 한번 뽑으면 세종시장 한 둘은 목 날라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원보도지면) • 세종in뉴스⁽⁶⁹⁾ : 『‘내 칼은 너무 커 한번 뽑으면 세종시장 한 둘은 목 날라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원보도지면)

<p>2015대전조정 70, 71</p>	<p>(각 반론청구)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對 중도일보⁽⁷⁰⁾, 인터넷 중도일보⁽⁷¹⁾</p>
<p>조 정 대 상</p>	<p>『천안 ○○○○ 재개발조합 비리 의혹, 전조합장, 일부 임원 檢 고소... 용역업체 선정, 선지급 협의』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5년 10월 23일자 14면, 인터넷 중도일보 10월 23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조합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p>
<p>이 행 결 과</p>	<p>『천안 ○○·○○ 재개발조합 “적법절차 따랐다” 이의제기』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5년 11월 20일자 원보도지면)</p>

2015대전조정 74	(정정청구) 천안시의회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천안시의회장 ‘브리핑실 폐쇄 조례안’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천안시의회 의장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폐쇄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2일자 14면)

2015대전조정 75	(정정청구)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對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천안 브리핑실 폐쇄 조례안 부결』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7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가 천안시청 브리핑실 폐쇄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5일자 14면)

2015대전조정 76~79	(각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파인피플뉴스
조 정 대 상	『비리로 얼룩진 ○○○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 마련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 박수현 의원 국정감사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4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80	(정정청구) 천안시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 민간개발업자와 ‘야합’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6일자 사회면) (2) 『○○공원 심사규정 유출의혹 ‘실망+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사회면) (3) 『천안 ○○공원, 야합 등 각종 의혹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2일자 사회면) (4) 『천안 5000억 ○○공원, 의혹 어디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4일자 사회면) (5) 『천안시 공직자간 청렴불감증 심화』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천안시가 ○○공원 민간개발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심사기준을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천안시 ○○공원 민간개발업자 선정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7일자 7면)

2015대전조정 81~84	(각 추후·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뉴스스토리^(81·82), 뉴스코어^(83·8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스토리 : 『의혹 투성이 ○○○, 검찰수사 지지부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정치면) • 뉴스코어 : 『의혹투성이 ○○○, 검찰수사 지지부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방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재직 중 후원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뉴스스토리/사유 : 추후보도) • 취하 (뉴스코어/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스토리 : 『<추후보도문>○○○ 의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4일자 원보도지면) • 뉴스코어 : 『○○○, 횡령 의혹과 인권침해 검찰 무혐의 판결』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원보도지면)

〈경기〉

2015경기조정 1·2	(정정·손배청구) ○○○○요양병원 외 1인 對 뉴스셀
조 정 대 상	『에이즈, 그리고 건강할 권리』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간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적절한 치료로 에이즈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원보도 하단)

2015경기조정 3, 5, 161	(각 정정청구) 수원시 對 인터넷 수원일보
조 정 대 상	(1) 『수원시 청렴도 순위 ‘수직하락’… 지난해 1등급→올해 26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4일자 정치면) (2) 『수원시 도서관 가구구입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7일자 사회면) (3) 『수원시 청렴인사 기본계획 발표… 시민·공무원 ‘가우똥’』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사회면) (4) 『‘부동산 대박’ 현실로… “염태영 땅 시세차익 무려 40억원”』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수원시 청렴도가 수원시장 비리 혐의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급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2015경기조정3, 2015경기조정5/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2015경기조정161/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1) 『“수원시 청렴도 순위 ‘수직하락’… 지난해 1등급→올해 26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원보도면) (2) 『수원시 청렴인사 기본계획 발표… 시민·공무원 ‘가우똥’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11~14, 218~221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경인일보 ^(11·12) , 인터넷 경인일보 ^(13·14) (각 추후·손배청구) 경인일보 ^(218·219) , 인터넷 경인일보 ^(220·221)
조 정 대 상	『경기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원횡령』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5년 1월 19일자 22면, 인터넷 경인일보 1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경기재향군인회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경인일보^(11·12), 인터넷 경인일보^(13·14))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경인일보^(218·219), 인터넷 경인일보^(220·221) /내용 : 추후 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만족 할 수 없다고 주장)
2015경기조정 18·19	(정정·손배청구) 강원도 ○○의료원 對 뉴스퀵
조 정 대 상	『보건의료노조, ○○의료원 조속한 정상화 위한 연쇄 면담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의료원 원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원 조속한 정상화 위한 연쇄 면담 추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20	(정정청구) 수원시도서관사업소 對 인터넷 수원일보
조 정 대 상	『수원시 도서관 가구구입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수원시 도서관 가구구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수원시 도서관 가구구입 수의계약 특혜의혹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27, 39	(각 손해청구) 박○○ 對 인터넷 경인일보 ⁽²⁷⁾ , 인터넷 OBS경인TV ⁽³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인일보 (1) 『박○○ “유대균 도와야 할 것 같아 스스로 짐 꾸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2) 『유대균 수행 박○○씨 첫 공판 ‘혐의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인터넷 OBS경인TV : (1) 『유대균 첫 재판… “일부 혐의 부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2) 『유대균 “일부 범죄 사실 세부 조항 달라” 혐의 부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대균의 도피를 돕다 체포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손해배상 200만원, 부제소)
이행결과	『유대균 “일부 범죄 사실 세부 조항 달라” 혐의 부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인일보, 인터넷 OBS경인TV 2015년 5월 21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28·29	(정정·손배청구) ○○중학교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정대상	『용인의 학폭예방 우수교 집단폭행 학교는 ‘애들 일이라’ 손뼉버렸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가 학내 집단폭행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취하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이행결과	『「용인의 학폭예방 우수교 집단폭행 학교는 ‘애들 일이라’ 손뼉버렸다」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30	(정정청구) 박○○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정대상	『[조합장선거] ○○농협, 작년 상반기 흑자 30억… 새얼굴 잇단 도전장』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차기 조합장 선거의 사전포석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31, 32	(각 정정청구) 유○○ 對 인터넷 기호일보 ⁽³¹⁾ , NIB 뉴스 ⁽³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호일보 : 『몰래 시설물 늘리던 어린이집 달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사회면) • NIB 뉴스 : 『어린이집 독단 운영,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한 후 급식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인터넷 기호일보/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조정성립 (NIB 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호일보 : 『‘몰래 시설물 늘리던 어린이집 달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원보도면) • NIB 뉴스 : 『어린이집 독단 운영, 반발 확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뉴스면)

2015경기조정 33	(정정청구) 원○○ 외 2인 對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여주 ○○○○ 경비실서 50대 경비원 목매 숨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 부친이 자살한 이유가 신병 비관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여주 ○○○○ 경비원 병가 거절에 의한 스트레스가 의심되는 유서 발견]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알림면)

2015경기조정 34	(정정청구) 이○○ 對 경인매일
조 정 대 상	『가평군, 공유수면 사용허가 특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가평군이 신청인에게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한 것이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가평군, 공유수면 사용허가 특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원보도지면)

2015경기조정 35·36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공금횡령 비리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19면)
신청인 주장	○○구 생활체육회 회장인 신청인이 사무국장의 공금횡령 비리와 관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구 생활체육회 공금횡령 비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3일자 2면)
2015경기조정 37, 38	(각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아시아뉴스통신 ⁽³⁷⁾ , 여성종합뉴스 ⁽³⁸⁾
조 정 대 상	『충북교육발전소, “보은 하강놀이기구 사고는 예고된 인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충북 보은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 관련 놀이기구가 신청인 회사가 설치 운영하는 놀이기구인 것 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기사수정』 제하의 기사의 “○○○”을 “하강놀이기구”로 변경 (2015년 3월 9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40, 41	(각 정정청구) 인천연수경찰서 對 인천일보 ⁽⁴⁰⁾ , 인터넷 인천일보 ⁽⁴¹⁾
조 정 대 상	(1) 『[불량 쇠고기 파동] 업체 봐주나...警 수사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2월 12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2월 12일 사회면) (2) 『[불량쇠고기 파동]警 “○○○ 대표 소환할것” 수사 급선회』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2월 13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2월 13일자 사회면) (3) 『[불량 쇠고기 파동] ○○○ 대표 소환...유통사실은 못밝혀』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2월 16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2월 16일자 사회면) (4) 『연수경찰서의 어설픈 불량쇠고기 수사』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2월 17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2월 17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인천연수경찰서가 불량 쇠고기 유통 사건관련, 음식점 단속을 늦추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량 쇠고기 경찰수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3월 23일자 2면, 인터넷 인천일보 3월 23일자 <바로잡습니다>면)

2015경기조정 42~44	(정정·반론·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인터넷 경기리포트
조 정 대 상	『오산시민들, ○○대학 돌려 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집중취재면)
신청인 주장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을 오산시민이 설립했고, 이사장이 전횡을 일삼는 등 ○○대학 내에 부패가 만연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오산시민들, ○○대학 돌려 달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3일자 <바로잡습니다>면)
2015경기조정 45, 46	(각 정정청구) 박○○ 외 1인 對 수도권일보 ⁽⁴⁵⁾ , 인터넷 수도권일보 ⁽⁴⁶⁾
조 정 대 상	『인천 시의장에 행패, ○구의원 ‘비난 빗발’』 제하의 기사 (수도권일보 2015년 3월 9일자 1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3월 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행사장에서 시의회 의장의 먹살을 잡는 등 추태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 시의장에 행패, ○구의원 ‘비난 빗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수도권일보 2015년 4월 7일자 2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4월 7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47	(손배청구) 추○○ 對 인터넷 OBS경인TV
조 정 대 상	(1)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씨, 오늘 첫 재판』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뉴스면) (2) 『유병언 측근 전양자씨 첫 재판… “혐의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뉴스면) (3) 『檢, 유대균·전양자 징역형… 박○○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양자씨의 검찰출두 건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48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OBS경인TV
조 정 대 상	『檢, 유대균·전양자 징역형... 박○○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양자씨의 검찰출두 건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49·50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갑질하는 ○○시의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5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공기업 업무감사에서 남편의 보직 발령을 요구하는 등 직위를 남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갑질하는 ○○시의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오피니언면)

2015경기조정 51	(정정청구) 인천광역시청 對 인천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유정복 시장, 조카·처남 3명 ‘상습’ 채용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7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 조카를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52~55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홀딩스 對 경기일보 ^(52·53) , 인터넷 경기일보 ^(54·55)
조 정 대 상	『○○홀딩스 ‘사기분양 의혹’ 정조준』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5년 3월 13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3월 13일자 경기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사기분양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및 보도약속)

2015경기조정 56, 57	(각 손해청구) 김○○ 對 겐툰
조 정 대 상	『왜, ○○위는 추문에 휩싸이는 것일까』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게임 뉴스면)
신청인 주장	○○○○○위원회의 계약직 여성노조 대의원인 신청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성희롱 사건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문제 제기가 사측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경기조정 58, 59	(각 추후청구) 조○○ 對 오산인터넷뉴스 ⁽⁵⁸⁾ , 인터넷 물향기신문 ⁽⁵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산인터넷뉴스 : 『○동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의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사건사고면) 외 3건 인터넷 물향기신문 : 『보육시범도시 오산, 어린이집 ‘아동 성기 학대’ 주장 나와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뉴스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내사 종결되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산인터넷뉴스 : 『“○동 소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원보도면) 인터넷 물향기신문 : 『“○동 소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60~63	(각 정정청구) 윤○○ 對 인터넷 경인일보 ⁽⁶⁰⁾ , e수원뉴스 ⁽⁶¹⁾ ,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 ⁽⁶²⁾ , 인터넷 장애인생활신문 ⁽⁶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인일보 : 『송사 휘말린 의원들 “나 떨고있니”』 제하의 기사 외 2건 (2011년 11월 9일자) e수원뉴스 : 『장병완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7일자)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 : 『국감, 민주당 장병완의원, 윤○○회장 옥매트 750장 어디로 갔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8일자) 인터넷 장애인생활신문 : 『○○○○○체육회 윤○○ 회장, 사무총장 직위해제 철회』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6일자 외 5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체육회장 재직 시 횡령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5경기조정 64~6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태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외 2인 對 여성 종합뉴스
조 정 대 상	『국가교육국민 감시단, ○○○ 산하 ‘○○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성명서 발표’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학교학부모비대위가 전교조의 사주를 받아 광주시청 시장실을 불법 점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국가교육국민 감시단, ○○○ 산하 ‘○○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성명서 발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8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70, 71	(각 정정청구) 인천항만공사 對 인천일보 ⁽⁷⁰⁾ , 인터넷 인천일보 ⁽⁷¹⁾
조 정 대 상	『지역사회 “신항, 5월 조속개장” 촉구』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3월 27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3월 2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인천항만공사가 2015년 예산서에 신항 관련 임대료 수입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경기조정 72	(정정청구) 남양주시 ○○연합회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남양주 체육시설 헐값 임대 논란 시는 방관했을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합회가 시 체육시설을 헐값에 임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남양주 체육시설 헐값 임대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7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73	(정정청구) ○○환경건설 주식회사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특정업체 유착·공사실적 부풀리기 ○구 아파트 입주자회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아파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입주자대표 회의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특정업체 유착·공사실적 부풀리기 ○구 아파트 입주자회 의혹 투성이”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4일자 2면)

2015경기조정 74·75	(정정·손배청구) 문○○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내홍에 1년 공석... ○○새마을금고, 11일 이사장 선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6일자 인천면)
신청인 주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이 전 이사장의 불법대출과 배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배청구/내용 : 손해배상 20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내홍에 1년 공석... ○○새마을금고, 11일 이사장 선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인천면)

2015경기조정 76·77	(정정·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인천 간부 세무공무원,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수수』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근무하던 업체에서 공금횡령으로 해고되었고, 공무원 뇌물 제공 및 접대 관련 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78	(정정청구) 이○○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시 위탁사업 그들만의 리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인천시 보건복지국장과 유착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6일자 2면)

2015경기조정 79	(정정청구) 안산시 외 1인 對 경인종합일보
조 정 대 상	『안산시정 홍보물 선관위 경고』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7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안산시장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구두경고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안산시정 홍보물 선관위 경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9일자 1면)

2015경기조정 80, 81, 153~156	(각 반론청구) 인천남부경찰서 對 인천일보 ⁽⁸⁰⁾ , 인터넷 인천일보 ⁽⁸¹⁾ (각 정정·반론청구) 경기일보 ^(153·154) , 인터넷 경기일보 ^(155·15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일보 : 『과도한 친절 전보조치... 警 민원응대 이중 잣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7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4월 27일자 사회면) 경기일보 : 『경찰 빛나간 동료애?... 개인정보 불법조치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10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천남부경찰서가 과도한 호의로 민원인을 응대한 경찰관을 전보 조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취하 (인천일보, 인터넷 인천일보/사유 : 반론보도) 각 취하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3일자 2면, 인터넷 인천일보 5월 13일자 게시판면) 경기일보 : 『“경찰 빛나간 동료애?... 개인정보 불법조치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1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기일보 11월 11일자 뉴스면)

2015경기조정 82	(정정청구) ○○산업 주식회사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OBS 뉴스M 프로그램 『○○ ○○동 터미널 부지 개발 먹튀 논란』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인천 터미널 부지 개발로 신청인 업체가 거둔 이익에 비해 기부채납액이 적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유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OBS 뉴스M 프로그램 『○○ ○○동 터미널 부지 개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4일자)

2015경기조정 83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용인신문
조 정 대 상	『도시계획 조례 재상정... 사상 초유 욕설·고성·막말 본회의』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용인시 의원간 몸싸움을 보도하면서 방청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보도,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도시계획 조례 재상정... 사상초유 욕설·고성·막말 본회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정치면)

2015경기조정 84	(정정청구) ○○○○마을회 對 우리일보
조 정 대 상	『농어촌(公) 공유수면 운영권 놓고 주민간 갈등』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5일자 14면)
신청인 주장	○○○○마을회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포천 산정호수 공유수면 임대운영권 계약이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농어촌公 공유수면 운영권 놓고 주민 간 갈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5일자 사회2면)

2015경기조정 85, 244·245	(정정청구) 이연주 對 경인투데이뉴스 ⁽⁸⁵⁾ (정정·손배청구) 중부미디어 ^(244·245)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인투데이뉴스 : 『새정권소속 이연주국회의원, 지역주민 및 시의원들에게 막말 논란으로 말썽』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8일자 지역뉴스면) 중부미디어 : 『광명시 A 국회의원 약자에 대한 갑질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료 국회의원과 광명시 의원들에게 무지렁이 등의 막말을 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성립 (경인투데이뉴스/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취하 (중부미디어/사유 : 기사삭제)
이행결과	『“이연주 의원 막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투데이뉴스 2015년 6월 19일자 사건/사고면)

2015경기조정 86·87	(정정·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미디어 하남
조정대상	『하남시 마트 5곳 식파라치, 포상노린 의심사건 발생(부제 : 유통기한 지난 상품 고의로 놓고 신고)』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 밖에서 가져와 매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 사기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하남시 마트 5곳 ‘식파라치’ 포상노린 의심사건 발생”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8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88·89	(정정·손배청구) 홍○○ 對 중부투데이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명시 학교행정 지역경제, 지역서점 살리기 여행』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0일자 지역뉴스면) 『광명시 일부 학교들 유령서점 감싸, 페이퍼 컴퍼니 활개쳐』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0일자 지역뉴스면)
신청인 주장	각급 학교에 도서를 납품하는 신청인 운영 서점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취하 (손배청구/사유 : 자진취하)
이행결과	『“페이퍼 컴퍼니 ○○교재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6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90·91, 95·96, 126·127	(각 정정·손배청구) 광명시 對 광명투데이신문^(90·91, 126·127), 현대일보^(95·9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투데이신문 : (1) 『(속보)가학폐광산 안전사고 조직적 은폐 의혹 속속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사회면) (2) 『광명시는 현재 신(新) 공안정국시대 “비아냥”』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9일자 사회면) • 현대일보 : 『자격미달 업체 선정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종합면)
신 청 인 주 장	광명시가 광명동굴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투데이신문 (1) 『‘가학폐광산(광명동굴) 안전사고 조직적 은폐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0일자 초기화면) (2) 『광명시는 현재 신공안정국시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5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 현대일보 : 『광명 ‘○○○○’ 운영권 위탁 외지업체 “사업수행실적 미흡 자격 미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8일자 1면)

2015경기조정 92·93	(정정·손배청구) 이○○ 對 미디어광명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학폐광산, 여성 안내원 안전사고 8가지 의혹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8일자 사회면) (2) 『광명시, 가학폐광산(광명동굴) 사고 ‘이상한’ 해명 자료 내놔』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9일자 사회면) (3) 『가학폐광산(광명동굴) 여성 안내원 사고 침묵하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사회면)
신 청 인 주 장	신청인이 안전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여직원을 동굴 내 통제구역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러한 행동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가학폐광산, 여성 안내원 안전사고 8가지 의혹 밝혀야’ 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뉴스면)

2015경기조정 94	(반론청구) 사단법인 한국○○○○네트워크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최○○ ○○○○연합회 회장, 업무상 배임 정황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기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영세가맹점 IC카드 단말기 전환 사업 선정위원회에 차량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최○○ ○○○○연합회 회장, 업무상 배임 정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0일자 사회일반면)
2015경기조정 97, 98	(각 정정청구) (사)○○○○관리협회 對 경인일보 ⁽⁹⁷⁾ , 인터넷 경인일보 ⁽⁹⁸⁾
조 정 대 상	『공항 내 조류퇴치 사격, 협회 수익대 수익사업』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5년 4월 3일자 23면, 인터넷 경인일보 4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인천공사와 조류퇴치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고도 조류퇴치 참가자들에게 협찬금을 받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공항 내 조류퇴치 사격 협회 수익대 수익사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5년 7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인일보 7월 28일자 알리면)
2015경기조정 99·100	(정정·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단독)전·현직 경남경찰청장 등 4명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1일자 아시아뉴스통신 단독면) (2) 『(단독2보)경남경찰청 ‘화약류수출허가 부정발급 등’ 해명 ‘글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8일자 사회일반면) (3) 『군수품 탄창 밀수출과 경남서 수출한 최루탄은 유사 수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사회일반면) (4) 『(단독5보)경찰, 김해 D화공 최루탄 수사 마무리 임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최루탄 생산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경찰 고위간부들의 비호 아래 허가량을 초과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찰, 김해 D화공 최루탄 수사 마무리 임박’ 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1일자 경남지역면)

2015경기조정 101	(정정청구) 세종특별자치시 對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이춘희 세종시장 언론사 줄 세우기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0일자 지역 종합/세종·대전·충남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가 일방적으로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분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경기조정 102, 103	(각 정정청구) (사)○○○○시민단체 ○○ 對 인터넷 수도권일보 ⁽¹⁰²⁾ , 인터넷 전국매일 ⁽¹⁰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수도권일보 : 『테마동물원 ‘○○’ 동물학대 누명 벗어』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뉴스면) 인터넷 전국매일 : 『테마동물원 ‘○○’ 동물학대 ○○ 주장 허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테마동물원 ○○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수도권일보 : 『테마동물원 ‘○○’ 동물학대 누명 벗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초기화면) 인터넷 전국매일 : 『‘테마동물원 ○○ 동물학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5일 메트로면)

2015경기조정 104	(정정청구) 장○○ 對 우리들뉴스
조 정 대 상	『아산시 ○○○○어린이집 원장 막말 SNS 파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일자 충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서류 위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05	(반론청구) 주식회사 ○○○○○테크 외 1인 對 OBS경인TV
조정대상	OBS 뉴스M 프로그램 『[집중] 7천억 ○○공원 민자사업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시 ○○근린공원조성사업 시행자인 신청인들과 이전 공동사업자간 법적 분쟁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OBS 뉴스M 프로그램 『“○○공원 민자사업 특혜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20일자)

2015경기조정 106, 117, 183	(각 반론청구) ○○종합사회복지관 對 우리들뉴스 ⁽¹⁰⁶⁾ , 깊게 보는 개미뉴스 ^(117, 183)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들뉴스 : 『○○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및 보복해고 부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자 경기도면) • 깊게 보는 개미뉴스 : (1) 『총애를 받던 직원 갑자기 해고된 이유』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9일자 개미소식면) (2) 『○○종합사회복지관 사태에 부쳐①,②』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개미소식면) (3) 『복지관의 이방인(Ⅰ)-가벼운 농담의 진실 : 끝없는 평행선, 복지관의 이방인(Ⅱ)-무모한 선동꾼 : 그의 문제의식이 문제였을까?』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6일자 심층취재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관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복지사를 보복성으로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우리들뉴스⁽¹⁰⁶⁾/사유 : 기타) • 취하 (깊게 보는 개미뉴스⁽¹¹⁷⁾/사유 : 기사수정) • 조정성립 (깊게 보는 개미뉴스⁽¹⁸³⁾/사유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사회복지관 총애를 받던 직원, 갑자기 해고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깊게 보는 개미뉴스 2015년 9월 9일자 초기화면) • 『“복지관의 이방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깊게 보는 개미뉴스 2015년 1월 8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07·108	(정정·손배청구) 한○○ 對 시민방송국Y
조 정 대 상	(1) 『○○시 홍보대사 한○○씨 선정 적절한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6일자 뉴스면) (2) 『말 많던 한○○씨 ○○시 홍보대사 사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5일자 뉴스면) (3) 『제목: H 전 ○○시 홍보대사, 사퇴 기자회견도 거짓말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자 뉴스면) (4) 『○○시 홍보대사 논란… 사퇴가 능사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작가이자 전 ○○시 홍보대사인 신청인이 신천지 신도이며 수상한 이력의 소유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홍보대사 신천지 신도 및 각종 이력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4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09, 110	(각 정정청구) 장○○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7년간 무차별 고소, 고발 “상처뿐인 재산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보상 등 개인적 욕심을 채기려고 수년간 반복된 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111·112	(정정·반론청구) 사단법인 대한○○회 對 인터넷 수도권일보
조 정 대 상	『각종 이권으로 얼룩진 ‘○○회관 재건축’』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대한○○회 회장이 ○○회관 재건축 관련 업무대행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독단적인 업무 처리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회관 재건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0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13, 114	(각 추후청구) 이○○ 외 2인 對 인터넷 경기일보 ⁽¹¹³⁾ , 인터넷 인천일보 ⁽¹¹⁴⁾
조 정 대 상	『예비군들 올린 ‘못 믿을 사회적 기업’』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5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사회적 기업 직원인 신청인들이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사회적 기업 대표 이모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기일보 2015년 8월 16일자 사회면, 인터넷 인천일보 8월 24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115	(정정청구)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 ○○○○병원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노조위원장 병가 인정 못해... ○○○○병원-노조 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과 노동조합 사이의 문제를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병원, 노사 갈등 심화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116	(손배청구) 노○○ 對 경기도민일보
조 정 대 상	『해외출장 특정여행사 밀어주기』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자인 신청인이 동두천시의 해외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여행사의 점주라고 잘못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경기조정 118, 119	(각 정정청구) 인천남동경찰서 對 기호일보 ⁽¹¹⁸⁾ , 인터넷 기호일보 ⁽¹¹⁹⁾
조 정 대 상	『무전취식자 몰고 공무집행방해죄?』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8월 6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8월 6일자 19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절도 피해 신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9월 9일자 2면, 인터넷 기호일보 9월 9일자 알림면)
2015경기조정 120·121	(반론·손배청구) 장○○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 대부분 불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형상의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 대부분 불기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알림 게시판면)
2015경기조정 122, 123	(각 손배청구) 고○○ 외 2인 對 인터넷 경인일보 ⁽¹²²⁾ , 뉴시스 경기남부 ⁽¹²³⁾
조 정 대 상	『‘몸쓸 손’ 女제자들 올린 교수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2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피해자인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행 장소, 범행 내용 등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인터넷 경인일보/사유 : 후속보도) • 취하 (뉴시스 경기남부/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찜질방서 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입건』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인일보 2015년 9월 4일자 전국 경기남부면)

2015경기조정 124·125	(정정·손배청구) 김○○ 對 광명매일신문
조 정 대 상	『김모 시의원 불법 행위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경제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현직 ○○시의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고 테니스장 용도를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경기조정 128·129	(정정·손배청구) 박○○ 對 데일리메일
조 정 대 상	『박○○ 부대변인, 장애인단체장 향해 “년 죽어야 해, 다리(하나 더) 없어져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인 신청인이 장애인단체장을 향해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박○○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장애인 비하발언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뉴스면)
2015경기조정 130·131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대학교, 김○○ ○○박물관장 일부 비위 사실 드러나 직위해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대 측의 일방적인 징계결정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 ○○박물관장, “학교 측의 직위해제는 부당…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132·133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용인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용인 ○○주민, 업체, 시에 제출한 해명서도 허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주장에 대해 용인시에 제출한 해명서 내용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134	(정정청구) 주식회사 ○○○산업 對 남동사람들
조 정 대 상	『○○대공원 ○○○○ 캠핑장』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시가 민간 업자인 신청인 회사에게 공원시설인 야영장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잘못된 법률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일부 내용만 제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2015경기조정 135·136, 137·138	(각 정정·손배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對 연수신문 ^(135·136) ,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137·138)
조 정 대 상	『반대여론 무시 막무가내 아파트공사』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5년 9월 16일자 7면,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9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아파트 배관 설비 교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동 H아파트, 반대여론 무시 막무가내 아파트공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5년 10월 21일자 7면,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9월 16일 사회면)
2015경기조정 139·140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여행사 외 1인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항공권 싸게 드려요』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0일자 사회면) (2) 『‘가이드 때문에 망친 휴가’... ○○투어 이용에 ‘불만족’』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3)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대행... 경찰 수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개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을 보도하면서 구매대행자가 신청인 여행사 직원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300만원)
이 행 결 과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 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대행’ 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41	(정정청구) ○○범시민연대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발전소 건립 지연으로 115억 손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5일자 01B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반대로 ○○, △△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5년 10월 23일자 3B면, 인터넷 중부일보 10월 23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42~144, 177~182, 184~217, 222~226, 231·232, 237~24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인터넷 경기일보 ^(142~144) , 인터넷 경양일보 ^(177~179) , 인터넷 동부교차로저널 ^(180~182) , 뉴시스 ^(186~188) , 경기IN ^(189~191) , 경기중앙신문 ^(192~194) , 경인투데이뉴스 ^(195~197) , 미디어와이 ^(198~200) , 인터넷 인천일보 ^(201~203) , 인터넷 경기일보 ^(206~208) , 인터넷 투데이광주하남 ^(215~217) ,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224~226) , 인산저널 ^(239~241) , 인터넷 투데이광주하남 ^(215~217) ,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224~226) , 인산저널 ^(239~241) (정정·반론청구) e머니투데이 ^(184·185) (각 반론·손배청구) 인터넷 인천일보 ^(204·205) , 한국장애인뉴스 ^(209·210) (각 정정·손배청구) 광주투데이 ^(211·212) , 뉴스투데이24 ^(213·214) , 인터넷 경인매일 ^(222·223) , 인터넷 기호일보 ^(231·232) , 뉴스타워 ^(237·238) ,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 ^(242·24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기일보 : (1) 『[국감] 박수현 의원, ○○○ 설립허가 취소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정치일반면) (2) 『장애인 인권 유린·비리 얼룩… ○○○ 허가취소 마땅』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기일보 2015년 10월 6일자 정치일반면) 인터넷 경양일보 : (1) 『비리로 얼룩진 ‘○○○’ 설립허가 취소 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정치면) (2) 『경기도의회 행감, ○○○ 이사장 증인 신청』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정치면) 인터넷 동부교차로저널 : (1) 『[광주] 비리 복마전 ○○○ ‘유사비리 차단’』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정치면) (2) 『[광주] KBS, "○○○ 정상화 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정치면) 외 22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인터넷 경기일보^(142·143·144)/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경양일보, 뉴시스/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삭제) • 각 취하 (인터넷 동부교차로저널, 경기중앙신문, 경인투데이뉴스, 인터넷 경기일보^(206~208), 인터넷 경인매일,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뉴스타워, 안산저널,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 각 취하 (미디어와이, 인터넷 인천일보, 인터넷 투데이광주하남/사유 : 반론보도) • 각 취하 (e머니투데이, 경기IN, 한국장애인뉴스^(209·210), 광주투데이, 뉴스투데이24, 인터넷기호일보/사유 : 자진취하) • 취하 (뉴스투데이24/사유 : 정정보도) • 취하 (인터넷 기호일보/사유 : 기사삭제)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기일보 : 『[국감]박수현 의원, ○○○ 설립허가 취소해야』 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경양일보 : 『○○○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6일자 뉴스면) • 인터넷 동부교차로저널 : 『○○○ 보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정치면) • 뉴시스 : 『○○○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4일자 경기남부면) • 경기중앙신문 : 『‘○○○’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4일자 초기화면) 외 11개 매체
<p>2015경기조정 145, 146</p>	<p>(각 손해청구) 박○○ 對 OBS경인TV⁽¹⁴⁵⁾, 인터넷 OBS경인TV⁽¹⁴⁶⁾</p>
<p>조 정 대 상</p>	<p>OBS 뉴스M 프로그램 『인천경찰청, ‘살인사건 대응’ 미흡... 경찰 5명 주의·경고』 제하의 보도 (OBS경인TV 2015년 10월 12일자, 인터넷 OBS 뉴스M 10월 12일자 인천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세입자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오피스텔의 동과 호수 등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p>

2015경기조정 147·148, 170, 227, 228	(정정·반론청구) 부천시 對 부천매일 ^(147·148) (각 정정청구) 부천매일 ⁽¹⁷⁰⁾ , 콩나물신문 ⁽²²⁷⁾ , 인터넷 콩나물신문 ⁽²²⁸⁾
조정대상	『영상단지 개발 사업자 공모 ‘法적 중차대한 절차 하자’ 제기』 제하의 기사 (부천매일 2015년 9월 24일자 사회면, 콩나물신문 신문 11월 25일 1면, 인터넷 콩나물신문 11월 25일 정치행정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부천시의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부천매일^(147·148)/사유 : 반론보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부천매일⁽¹⁷⁰⁾/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조정성립 (콩나물신문⁽²²⁷⁾/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인터넷 콩나물신문⁽²²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매일 : (1) 『[반론문] ‘영상단지 개발, 법적 하자있는 행정행위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초기화면) (2) 『‘오정동 군부대 이전한다더니 고강동에 군사시설 추가 입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초기화면) • 콩나물신문 : 『“뒷걸음질 치는 부천시 체육진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3일자 1면, 인터넷 콩나물신문 2015년 1월 7일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49~152	(각 정정·손배청구) 함○○ 對 반월신문 ^(149·150) , 인터넷 반월신문 ^(151·152)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회 A연합회 B회장, 여성 사무국장... 성추행 사건 논란』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5년 10월 7일자 1면, 인터넷 반월신문 10월 7일자 사회면) • 『○○○생활체육회 A연합회 B회장 성추행 이어 여직원 폭행진단 4주... 연 130% 고리대금업 병행』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5년 10월 14일자 1면, 인터넷 반월신문 10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성 사무국장을 성추행하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157~160	(각 정정·손배청구) 현○○ 對 인천일보^(157·158), 인터넷 인천일보^(159·16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리 있었어도 ‘우리가 남이가’... ○○시 체육회 고위간부 반칙?』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9월 1일자 16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1일자 뉴스면) • 『이번엔 ○○시 체육회 고위간부 동문 ‘구설’』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9월 2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2일자 뉴스면) • 『선거운동 돕고 ‘콩고물 기대했나’』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9월 2일자 16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2일자 뉴스면) • 『(사설) “○○시 체육회의 인사청탁 잡음”』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9월 3일자 11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3일자 뉴스면) • 『가맹단체 갈등 해결방식 ‘원칙보다 학연’』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9월 3일자 16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3일자 뉴스면) 외 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시 체육회 사무처장 재직 당시 산하 기관에 측근을 계약직에 채용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비리 있었어도 ‘우리가 남이가’... 체육회 고위간부 반칙?” 등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11월 16일자 스포츠면, 인터넷 인천일보 11월 20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62	(정정청구) ○○○○○○○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對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못믿겠다! 입주민대표” 하자보수 업체 선정 방식 돌연 변경』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5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 절차없이 하자보수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못믿겠다! 입주민대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163, 164	(각 반론청구) 인천지방경찰청 對 기호일보 ⁽¹⁶³⁾ , 인터넷 기호일보 ⁽¹⁶⁴⁾
조 정 대 상	『그때 그때 달라요? 경찰 수사잣대 ‘도마위’… SNS 유포 ‘명예훼손’ 사건 두고 상반된 모습 논란』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9월 29일자 19면, 인터넷 기호일보 9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천지방경찰청이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건마다 잣대를 달리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그때 그때 달라요? 경찰 수사잣대 ‘도마 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11월 20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11월 20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165, 166	(각 정정청구) 김학용 對 안성신문 ⁽¹⁶⁵⁾ , 인터넷 안성신문 ⁽¹⁶⁶⁾
조 정 대 상	『국회의원에 충성 외친 공도읍, 이장 임명도 충성』 제하의 기사 (안성신문 2015년 11월 11일자 1면, 인터넷 안성신문 11월 1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안성시 공도읍 이장에 측근 인사가 임명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회의원에 충성 외친 공도읍, 이장 임명도 충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안성신문 2015년 11월 25일자 1면, 인터넷 안성신문 11월 20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67, 168	(각 정정청구) 안성경찰서 對 경기일보 ⁽¹⁶⁷⁾ , 인터넷 경기일보 ⁽¹⁶⁸⁾
조 정 대 상	『절도 신고했더니… “고소장 제출하라” 손 놓은 경찰』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5년 11월 3일자 6면, 인터넷 경기일보 11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안성경찰서가 공사 장비 불법 운행과 철근 도난 등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알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5년 11월 16일자 10면, 인터넷 경기일보 11월 16일자 사람들면)

2015경기조정 169	(반론청구) 엽태영 對 인터넷 수원일보
조 정 대 상	『‘부동산 대박’ 현실로... 엽태영 땅 시세차익 무려 40억원』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시장 직분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171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부천신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참여예산 ‘흔들’ 교육특위 L씨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4일자 사회면)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보고 안 된 ‘묻지마 예산’ 논란 커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1일자 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 참여예산 시민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재직하는 업체의 물품을 관내 학교에서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172~175	(각 정정·손배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 對 인천일보 ⁽¹⁷²⁻¹⁷³⁾ , 인터넷 인천일보 ⁽¹⁷⁴⁻¹⁷⁵⁾
조 정 대 상	『제발 저런 인천공항공사... 낮 뜨거운 추락』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10월 6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10월 6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터키 이스탄불 신공항 사업에 실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12월 14일자 2면)

2015경기조정 176	(반론청구) 오○○ 對 인터넷 태권도신문
조 정 대 상	『최○○ ‘씩은 내 난다’며 국기원에 내용증명』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2일자 국내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돈을 받고 월단을 시키는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오 처장, 9가지 의혹 전혀 사실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5일자 국내이슈면)

2015경기조정 229·230	(정정·손배청구) 오○○ 對 TK TIMES
조 정 대 상	『[사설] 세상은 돌고 돈다. 태권도를 향한 외침』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6일자 태권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군대를 불명예 전역한 전력이 있고, ○○원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사설] 세상은 돌고 돈다. 태권도를 향한 외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4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233~236, 255·256	(추후·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웰빙코리아뉴스 ⁽²³³⁻²³⁴⁾ , 경찰투데이 ⁽²⁵⁵⁻²⁵⁶⁾ (추후·손배청구) 조○○ 외 4인 對 미디어리포트 ⁽²³⁵⁻²³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빙코리아뉴스 : 『의혹 투성이 ○○○, 검찰수사 지지부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경기면) • 미디어리포트 : (1) 『○○○, 장애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간절한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5일 광주뉴스면) (2) 『광주시 ○○○, 특별회계감사 거부』 제하의 기사 (미디어리포트 2015년 2월 2일자 광주뉴스면) • 경찰투데이 : 『경기 광주 ○○○, 후원금 착복 등 횡령혐의로 사무국장, 임직원 등 12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자 경찰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재직 중 횡령 공금유용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신청인 당사자 부적격)

2015경기조정 246~249, 250~253	(각 정정·손배청구) 김○○ ^(246~249) , 민○○ ^(250~253) 對 인천일보 ^(246·247, 250·251) , 인터넷 인천일보 ^(248·249, 252·253)
조 정 대 상	『○○중 이번엔 몽둥이 체벌 체육부 담당교사가 부원 폭행』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11월 10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11월 1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 축구담당 체육교사인 신청인이 학부모에게 명절선물을 강요하고, 이유 없이 대회 출전을 금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각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 (각 손배청구/사유 : 기사수정 약속)
이 행 결 과	『○○중 체육교사 명절선물 요구 및 축구부 학생 폭행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1월 18일자 사회면, 인터넷 인천일보 1월 18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254	(정정청구) 강화군 對 강화섬소식
조 정 대 상	『군수 일정에 ‘반쪽 행사’로 전락한 강화군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컷말 무성』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13면)
신청인 주장	강화군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개최시간이 변경된 것이 군수 일정 때문이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수 일정에 ‘반쪽 행사’로 전락한 강화군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컷말 무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오피니언면)
2015경기조정 257~259	(정정·반론·손배청구) 한○○ 對 인터넷 시사인천
조 정 대 상	『현 집권 여당 텃밭 새정치 민주연합 존재감 미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4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후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나, 정치적 행보가 거의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강원〉

2015강원조정 1~8, 10~15	(각 정정·손배청구) 강원도 ○○의료원 對 뉴시스 강원 ^(1·2, 14·15) , 뉴스1 강원 ^(3·4, 10~13) , 강원일보 ^(5·6) , 인터넷 강원일보 ^(7·8)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강원 : (1) 『‘속초고성양양시민단체 ○○의료원, 도지사가 책임져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0일자 사회면) (2) 『‘○○의료원 사태 일파만파… 함○○ 지부장 단식농성’』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6일자 강원면) • 뉴스1 강원 : 『‘○○의료원장 퇴진문제 놓고 노사 갈등 여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강원면) • 강원일보 : 『‘일방적 규정 개정 중단’』 제하의 기사 (강원일보 2015년 2월 5일자 사회면) • 인터넷 강원일보 : 『‘일방적 규정 개정 중단 보건의료노조 농성 돌입’』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의료원 원장이 임직원 회의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뉴시스 강원/사유 : 반론보도) • 조정성립 (뉴스1 강원/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강원일보, 인터넷 강원일보/사유 : 후속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강원 : 『‘○○의료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전국 강원면) • 뉴스1 강원 : 『‘[○○의료원 사퇴 압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8일자 강원면) • 강원일보 : 『‘의료원 흑자, 일시적 현상 아닌 지속 여부가 관건’』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오피니언면, 인터넷 강원일보 3월 13일자 사실면)
2015강원조정 16~19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원주신문 ^(16·17) , 인터넷원주신문 ^(18·19)
조정대상	『○○체육관 일부 운동기구, 심하게 훼손된 제품 비치 ‘말똥’』 제하의 기사 (원주신문 2015년 3월 23일자 사회일반면, 인터넷 원주신문 3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원주시 ○○체육관에 중고 운동기구를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강원조정 20~23	(각 정정청구) ○○○○○생산자협회영농조합법인 對 강원도민일보 ⁽²⁰⁾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²¹⁾ , 강원일보 ⁽²²⁾ , 인터넷 강원일보 ⁽²³⁾
조 정 대 상	『봄 향기 가득한 개두름 맛보세요』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5년 4월 22일자 13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4월 22일자 강릉면, 강원일보 4월 22일자 22면, 인터넷 강원일보 4월 22일자 강원면)
신청인 주장	강릉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개두름이 전부 산림청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임에도, 특정 마을에서 생산되는 개두름만 산림청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민일보 : 『‘강릉 개두름’ 농가 효자상품』 제하의 기사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2015년 4월 24일자 지역면) 강원일보 : 『[강릉]강릉 개두름 봄나물 시장 평정』 제하의 기사 (인터넷 강원일보 2015년 5월 1일자 22면)
2015강원조정 24	(정정청구) ○○케이블카(주) 對 MBC 강원영동-TV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케이블카 요금 인상 반발』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케이블카가 갑작스럽게 요금을 인상했고,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도 인색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강원조정 25, 26	(각 반론청구) ○○○어린이집 對 G1 강원민방-TV
조 정 대 상	G1뉴스820 프로그램 『어린이집 불신여전... “신뢰회복이 급선무”』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의 교사가 원아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G1뉴스820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6일자)

2015강원조정 27, 28	(각 정정청구) ○○초등학교 對 강원도민일보 ⁽²⁷⁾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²⁸⁾
조 정 대 상	『지나친 공포감이 휴업사태 불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유언비에에 근거하여 메르스 관련 휴업을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강원조정 29, 37, 40·41	(각 정정청구 ^(29, 37) , 정정·손배청구 ^(40·41)) 양구군 對 G1 강원민방-TV
조 정 대 상	뉴스820 프로그램 『차 없는 거리가 화재 무방비』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양구군이 2008년 조성한 차 없는 거리가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820 프로그램 『“양구 차 없는 도로 보도” 관련 추가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30일자 뉴스면)
2015강원조정 30~33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강원도민일보 ^(30·31)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32·33)
조 정 대 상	『고교 교사가 여학생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5년 9월 2일자 사회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9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교 교사인 신청인이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고교 교사 여학생 성추행 의혹” 관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5년 9월 26일자 3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9월 26일자 사회면)

2015강원조정 34	(정정청구) 유승희 對 강원일보
조 정 대 상	『野 최고위 ‘막말·욕설’ 9일만에 또 충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득 최고위원과 막말 공방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6면)
2015강원조정 35, 36, 42	(각 정정청구) 신○○ 對 강원일보 ⁽³⁵⁾ , 인터넷 강원일보 ^(36, 42)
조 정 대 상	『말 안듣는다며 꼬집고 화장실 못가게 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7일자 사회면, 인터넷 강원일보 10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유치원 원감인 신청인이 원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5강원조정 38·39	(반론·손배청구) ○○○예수교회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 자식도 빼앗아 가고 폭행까지… 경찰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강원면)
신청인 주장	○○○ 신도들이 신도인 딸을 찾기 위해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부모를 집단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신도 집단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강원영동면)

〈충북〉

2015충북조정 1~4	(각 정정·손배청구) (유)○○가스충전소 외 1인 對 동양일보 ^(1·2) , 인터넷 동양일보 ^(3·4)
조 정 대 상	『영동군의원 운영 가스충전소 ‘가짜가스’ 적발』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5년 1월 6일자 3면, 인터넷 동양일보 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영동군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부친이 운영하는 가스충전소가 직원의 실수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충북조정 9, 10	(각 반론청구) 김○○ 對 충청매일 ⁽⁹⁾ , 인터넷 충청매일 ⁽¹⁰⁾
조 정 대 상	『성범죄 전력 불편한 시선 외면』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5년 1월 15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매일 1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인 신청인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1월 15일자 사회면 ‘성범죄 전력 불편한 시선 외면’ 보도에 대해 ○○시립무용단 김○○ 예술감독이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5년 2월 11일자 2면, 인터넷 충청매일 2월 10일자 사회면)

2015충북조정 11·12	(반론·손배청구) 청주○○외과의원 對 뉴스1코리아 세종충북
조 정 대 상	『청주 한 외과병원서 의료사고… “마취 후 의식 없어”』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충북·세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원이 의료사고를 일으킨 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청주 한 외과병원서 의료사고… “마취 후 의식 없어”』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충북·세종면)

2015충북조정 13, 14	(각 정정청구) 이○○ 對 충청리뷰 ⁽¹³⁾ , 충북인뉴스 ⁽¹⁴⁾
조 정 대 상	『최대 피해자는 농민, 파국 막는 건 대화 뿐』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5년 1월 30일자 사회면, 충북인뉴스 1월 27일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농협 조합장인 신청인이 “농협이 해산돼도 농민들에게 크게 불편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노사 간 소통, 대화가 정답입니다』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5년 3월 6일자 10면, 충북인뉴스 3월 5일자 사회교육면)

2015충북조정 15, 16, 31	(각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세종데일리 ⁽¹⁵⁾ , 인터넷 충청일보 ⁽¹⁶⁾ ,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 ⁽³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데일리 : 『‘○○○’ 아무곳에나 설치가능?』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뉴스면) • 인터넷 충청일보 : 『놀이공원에서 하강스포츠시설 타던 어린이 추락해 사망』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일자 충북면) •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 : hcn뉴스 프로그램 『‘○○○’ 아무곳에나 설치가능?』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충북 보은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 관련 놀이기구가 신청인 회사가 설치 운영하는 놀이기구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세종데일리,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사유 : 기사삭제) • 취하 (인터넷 충청일보/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놀이공원에서 하강스포츠시설 타던 어린이 추락해 사망』 제하의 기사 (인터넷 충청일보 2015년 3월 5일자 보은면)

2015충북조정 17~26, 42~49	(각 정정·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학원 對 청주KBS-1TV ^(17·18) , KBS미디어 ^(19·20, 45·46) , 뉴스1코리아 세종충북 ^(21·22) , 아시아뉴스통신(충북) ^(23·24) , 제천사랑뉴스 ^(25·26) , 타임뉴스 ^(48·49) (정정·반론·손배청구) 청주KBS-1TV ^(42·43·44) (정정청구) 아시아뉴스통신(충북) ⁽⁴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KBS-1TV : 시사플러스 프로그램 『제천시 ○○학원 의혹 - 내 돈을 찾아주세요』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1일자) • KBS미디어 : 시사플러스 프로그램 『제천시 ○○학원 의혹』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1일자) • 뉴스1코리아 세종충북 : 『국가인권위, 제천 모 사회복지법인 소속 특수학교·복지 시설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전국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뉴스통신(충북) : 『장애인 급여 모연한 행방 “내 돈을 찾아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사회일반면) 제천사랑뉴스 : 『사회복지법인 ○○학원, 장애우 근로급여 어디에?』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이 기부금 횡령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정불성립결정 (청주KBS-1TV, KBS미디어, 뉴스1코리아 세종충북) 각 조정성립 (아시아뉴스통신(충북)^(23·24), 제천사랑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조정성립 (아시아뉴스통신(충북)⁽⁴⁷⁾/내용 : 기사수정, 조건부보도, 부제소) 조정성립 (타임뉴스/내용 : 조건부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뉴스통신(충북)^(23·24) : 『“사회복지법인 ○○학원”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사회일반면) 제천사랑뉴스 : 『사회복지법인 ○○학원’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6일자 사회면) 아시아뉴스통신(충북)⁽⁴⁷⁾ :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매관매직 흔적지우기… 폭행제보자 색출 혈안』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6일자 사회일반면) 타임뉴스 : 불이행
2015충북조정 27~30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중원신문 ^(27·28) , 인터넷 중원신문 ^(29·30)
조정대상	『충주시 공무원은 ‘갑’… ‘을’인 업체는 멍든다!』 제하의 기사 (중원신문 2015년 3월 16일자 1면, 인터넷 중원신문 3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충주시 공무원인 신청인이 시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와 유착하고 향응을 받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충주시 공무원은 ‘갑’… ‘을’인 업체는 멍든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원신문 2015년 4월 13일자 1면, 인터넷 중원신문 4월 13일자 사회면)
2015충북조정 32~3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정○ 외 2인 對 충북일보 ^(32~34) , 인터넷 충북일보 ^(35~37)
조정대상	『새 단장 첫 전시회에 대다수 작품 재탕, ○○○○○○○미술관 2015 기획전 가보니 ‘그들만의 리그’』 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2015년 3월 23일자 3면, 인터넷 충북일보 3월 23일자 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미술관 2015 기획전에 타 전시회에 전시했던 작품들을 전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2015년 4월 9일자 3면, 인터넷 충북일보 4월 8일자 공연·전시면)

2015충북조정 38~41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수련원 對 충청리뷰 ^(38·39) , 충북인뉴스 ^(40·4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리뷰 : (1) 『전직 교장·교육감 측근 영입해 영업활동』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0일 7면) (2) 『중·고생 수련활동 입찰 담합 정황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0일 5면) 외 2건 • 충북인뉴스 : (1) 『중·고생 수련활동 입찰 담합 정황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사회교육면) (2) 『학교장 영향력 줄이고 학부모 선택권 높여야』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사회교육면) (3) 『전직 교장·교육감 측근 영입해 영업 활동』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수련원이 리베이트 제공, 입찰 담합, 접대 등을 통해 초중고생 수련 활동을 독식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충북조정 50	(정정청구) 청주○○○ ○○○○○ 입주자대표회의 對 CJB-TV
조 정 대 상	CJB 7시 뉴스 프로그램 『허가 받은 경로당... 2년째 출입금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로당을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노인들의 경로당 출입을 방해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충북조정 51~54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중부매일 ^(51·52) , 인터넷 중부매일 ^(53·54)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임 ○○시립무용단 안무자 ‘불법 의혹’』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5년 5월 8일자 3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7일자 사회면) (2) 『단원에 ‘작품비 명목’ 금품수수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5년 5월 12일자 3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12일자 사회면) (3) 『시립무용단 잘못된 관행 뿌리 뽑아야』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5년 5월 13일자 3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13일자 사회면) (4) 『감독의 작품비 수수는 ‘검직금지 위반’』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5년 5월 15일자 3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15일자 사회면) (5) 『사전 내정설, 허술한 인사검증 도마위』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5년 5월 19일자 3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시립무용단장인 신청인이 상임안무자 시절 무용대학 재학생과 단원들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총복조정 55	(정정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인터넷 중부매일
조정대상	(1) 『주차요금에 발목 잡힌 ‘국가철도의 중심’』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2일자 정치종합면) (2) 『주차요금에 발목 잡힌 ‘국가철도의 중심’』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3일자 사설면) (3) 『고객편의 뒷전인 철도공단의 제멋대로식 주차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취재수첩면)
신청인 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윤추구에 혈안이 돼 오송역 주차장 요금을 과다 책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결과	『[주차요금에 발목 잡힌 국가철도의 중심] 기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사회종합면)

2015총복조정 56	(반론청구) 공주시 對 충청매일
조정대상	『오시덕 공주시장 1년 성적표 ‘낙제점’』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0일자 9면)
신청인 주장	민선6기 공주시장의 1년 시정평가가 무원칙한 인사, 전략부재 등으로 낙제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총복조정 57·58	(정정·손배청구) 김○○ 對 충청리뷰
조정대상	『경찰, 불법주차에 수감... 공권력 과잉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19면)
신청인 주장	경찰공무원인 신청인이 공권력을 과잉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9일자 20면)

2015총복조정 59	(정정청구) (주)○○○투어 對 인터넷 총청일보
조 정 대 상	『여름 바캉스철 고객님은 호갱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1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여행사가 고객 민원에 무성의하게 대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총복조정 60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총복일보
조 정 대 상	『신비주의 (주)○○○○○ 재정압박』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5일자 기업·과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총복조정 61·62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교과부 “분규는 평가지표 아냐”… ○○대 거짓말 ‘탄로’』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전국면) (2) 『부실대학평가 당연… ‘공룡’ ○○대 예산 ‘민망’』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4일자 전국면) (3) 『“구성원 탓” 낙제점 받은 ○○대, 또 책임전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2014년도 ○○대학교 적립금이 전년 대비 34억원 순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대학교 적립금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전국면)
2015총복조정 63·64	(정정·손배청구) ○○○○○○○총연합회 외 1인 對 인터넷 총청매일
조 정 대 상	『CCTV 반대, 정치적 아동학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합회 회장이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5충북조정 65~67	(각 정정청구) 김○○ 對 충북일보 ⁽⁶⁵⁾ , 인터넷 충북일보 ⁽⁶⁶⁾ , 뉴시스 ⁽⁶⁷⁾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일보 : 『김○○ 전 총장과 공판시간 비슷… 시간변경 요청할 것』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0일자 3면, 인터넷 충북일보 11월 9일자 일반사회면) 뉴시스 : 『배임 등 혐의 김○○ 전 ○○대 총장 19일 첫 공판』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일반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학교 총장 재직시 교비를 법정 전입금으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7일자 2면, 인터넷 충북일보 11월 26일자 사회일반면) 뉴시스 : 『‘○○대 교비전용, 초중고에 지급’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일반 사회면)
2015충북조정 68·69	(정정·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제천뉴스저널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비 언론 대책 필요-공갈·협박·사기… 피해 ‘도(度)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3일자 뉴스 일반면) 『일간지 VS 인터넷언론-그 역설적 반비례』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5일자 뉴스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인터넷 신문기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건축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충북조정 70, 71	(각 정정청구) ○○군의회 외 1인 對 충북일보 ⁽⁷⁰⁾ , 인터넷 충북일보 ⁽⁷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회관 신축 국비 ‘허공에』 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2015년 10월 29일자 4면, 인터넷 충북일보 10월 28일 지역면) 『박○○, 입지 흔들리나』 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2015년 11월 9일자 6면, 인터넷 충북일보 11월 8일 정치면) 『○○군 성급한 행보 ‘입방야』 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2015년 11월 18일자 4면, 인터넷 충북일보 11월 1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군의회가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전북〉

2015전북조정 1·2	(정정·손배청구) 송○○ 對 익산 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익산시청 출입기자, 박경철 시장에게 칼 꽃아 기자 본분 망각』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시사타치면)
신청인 주장	기자인 신청인이 익산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인터뷰 녹음내용을 검찰에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사과보도, 기사삭제)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약속)
이 행 결 과	『익산 출입기자 관련 사과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초기화면)

2015전북조정 5~10, 17·18, 61~64, 71·7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내외일보 ^(5·6) , 인터넷 새만금일보 ^(7·8) , 전라매일 ^(9·10) , 인터넷 전주일보 ^(17·18) , 전주매일 ^(71·72) (각 추후청구) 전라매일 ⁽⁶¹⁾ , 인터넷 전주일보 ⁽⁶²⁾ , 인터넷 새만금일보 ⁽⁶³⁾ , 인터넷 내외일보 ⁽⁶⁴⁾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가든 운영 민간인, 수년 묵은 외상값 시비로 폭력과 전화고발로 가든 일부 철거』 제하의 기사 (인터넷 내외일보 2014년 11월 11일자 뉴스면) (2) 『고창 공무원, 역대보조금 편법수령 강력 수사촉구. 주민, 70대 모친 등 타인 명의로 대규모 수려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인터넷 내외일보 2014년 12월 8일자 뉴스면) (3) 『고창 보조금 편법수령 공무원, 대량의 토지 임대 의혹』 제하의 기사 (인터넷 내외일보 2015년 12월 27일자 뉴스면) 외 7개 매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식당 외상값 관련 시비로 폭행을 행사하고, 순수 농민에게 가야 할 보조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내외일보⁽⁵⁾, 인터넷 새만금일보⁽⁷⁾, 전라매일⁽⁹⁾, 인터넷 전주일보⁽¹⁷⁾, 전주매일⁽⁷¹⁾/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내외일보⁽⁶⁾, 인터넷 새만금일보⁽⁸⁾, 전라매일⁽¹⁰⁾, 인터넷 전주일보⁽¹⁸⁾, 전주매일⁽⁷²⁾/사유 : 보도약속) • 각 조정성립 (전라매일⁽⁶¹⁾, 인터넷 전주일보⁽⁶²⁾, 인터넷 새만금일보⁽⁶³⁾, 인터넷 내외일보⁽⁶⁴⁾/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내외일보 : 『전북 익산 고창군 공무원 K모씨』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지방색션면) • 인터넷 새만금일보 : 『고창 공무원 역대 보조금'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7일자 사회종합색션면) • 전라매일 : 『고창 공무원 '미질 비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3면) 외 2개 매체

2015전북조정 11, 14~16	(각 정정청구) ○○시니어클럽 對 새전북신문 ⁽¹¹⁾ , 인터넷 새전북신문 ⁽¹⁴⁾ , 네이버 ⁽¹⁵⁾ , 다음 ⁽¹⁶⁾
조 정 대 상	『○○시니어클럽 ‘봐주기의혹’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5년 2월 28일자 8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2월 28일자 지역면, 네이버 2월 22일자 뉴스면, 다음 2월 22일자 뉴스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미흡하고 감독관청의 감사를 받지 않은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새전북신문, 인터넷 새전북신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시니어클럽’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5년 3월 16일자 2면)

2015전북조정 13	(정정청구) 김○○ 對 전주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전복권 『불청객겨울황사... 건강관리비상』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주천변에서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피신청인 사과, 기사삭제, 부제소)

2015전북조정 19·20	(정정·손배청구) ○○고등학교 외 1인 對 전주KBS-1TV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9 프로그램 『‘반쪽’ 역학조사... 학생건강위협』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5일자) • 시사전복 맞수맞짱 프로그램 『학교급식 안전불감증 여전』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 집단설사 발생 관련 식중독 의심 신고를 취소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PR·후속보도, 피신청인 사과)

2015전북조정 21~24	(각 정정·손배청구) 유성엽 對 새전북신문 ^(21·22) , 인터넷 새전북신문 ^(23·24)
조 정 대 상	『새정치 전북도당 정체성 논란』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5년 3월 12일자 3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3월 1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인 신청인이 국민모임 신당의 주축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전북조정 25~28	(정정·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전라일보 ^(25·26) , 인터넷 전라일보 ^(27·28)
조 정 대 상	『선거개입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해야』 제하의 기사 (전라일보 2015년 3월 24일자 9면, 인터넷 전라일보 3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군 ○○○○본부장인 신청인이 군수선거에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신청인 2가 현재 ○○○○본부 사무국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 선거개입 민간단체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전라일보 2015년 4월 21일자 9면)
2015전북조정 29·30	(정정·손배청구) 김○○ 對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감 안한다고 공언하더니...』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4일자 7면) (2) 『도교육청, 장학사 균등한 업무 배치 필요』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7면) (3) 『석연찮은 장학사 인사, 바로잡자』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11면) (4) 『교감안한다고 공언하더니』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교육청 장학사인 신청인이 교감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일부 장학사가 교감임용에 탈락된 것이 신청인과 관계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전북조정 31~34, 46~51	(각 정정·손배청구) 익산시 對 전북일보 ^(31·32, 47·48, 50·51) , 인터넷 전북일보 ^(33·34) (각 정정청구) 전북일보 ^(46, 49)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등 노인복지회관 건립 논란』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4월 6일자 8면, 인터넷 전북일보 4월 5일자 사회면) (2) 『정작 익산 특산품은 ‘뒷전’』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5월 13일자 8면) (3) 『익산으로 U턴 않겠다 파문 중국진출 13개 업체, 계약금까지도 포기』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5월 19일자 8면) (4) 『백제문화 세계유산 등재 ‘전북 소외’』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5월 21일자 1면) (5) 『익산시 수십억 손해배상 우려』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5월 27일자 8면)
신청인 주장	익산시의 약속 불이행으로 중국에서 익산으로 복귀하려던 주얼리 기업들이 공장 부지 계약을 포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15전북조정31~34/내용 : PR·후속보도 - 동의 후 보도) •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전북조정46, 2015전북조정47·48)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15전북조정49/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 조정성립 (2015전북조정50/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 취하 (2015전북조정51/사유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익산시가... (생략)』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4월 27일자 8면) (2) 『익산시 황등 도서관 관련 항의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전북일보 2015년 4월 27일자 뉴스면) (3) 『익산 관광 마스터플랜 구축』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7월 8일자 8면) (4) 『익산 하수슬러지 시설 재검토』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11월 23일자 8면)
2015전북조정 35·36	(정정·손배청구) 이○○ 對 열린순창
조정대상	『선거개입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일자 22면)
신청인 주장	일간지 기자인 신청인의 기사에 대해 피신청인 신문에 기사형 광고로 게재한 반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하 (사유 : 의견 광고)

2015전북조정 37·38, 39·40	(각 정정·손배청구) (주)○○건설 對 전북일보 ^(37·38) , 인터넷 전북일보 ^(39·40)
조 정 대 상	(1)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상가 분양 의도적 낙찰가 올리기 의혹』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4월 2일자 1면, 인터넷 전북일보 4월 1일자 사회면) (2) 『전북혁신도시 ○○○○○○ ○○○ ○○○○○ 아파트 상가, 이번엔 덤핑분양 의혹』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4월 3일자 6면, 인터넷 전북일보 4월 2일자 사회면) (3) 『○○건설 상가 분양 의혹 철저한 수사 마땅』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4월 3일자 6면, 인터넷 전북일보 4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상가 입찰에 개입하여 의도적으로 낙찰가를 올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전북조정 41·42	(정정·손배청구) 김○○ 對 전북매일신문
조 정 대 상	『○○군 노인요양원 ‘시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군 노인요양원의 운영을 맡은 이후 기존 원장을 나가라고 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PR·후속보도, 사과(문)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5전북조정 43·44	(정정·손배청구) 변○○ 외 1인 對 익산제일뉴스
조 정 대 상	『익산 S고 여교사 “자살하고 싶다” 인권침해 ‘파장’』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고교 교장, 교감인 신청인들이 원로교사를 차별대우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익산 S고 여교사’ 관련 교장 교감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초기화면 상단)

2015전북조정 45	(정정청구) ○○면사무소 對 새전복신문
조 정 대 상	『닭 폐기물 대량 불법 매립파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면사무소가 닭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민원에 대해 능장 대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2일자 2면)

2015전북조정 52	(정정청구) 한국○○○○(주)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부안지역 새 갈등요소 부상』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5일자 7면)
신청인 주장	한국○○○○이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2면)

2015전북조정 53, 54	(각 정정청구) 부안경찰서 對 전북중앙신문 ⁽⁵³⁾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⁵⁴⁾
조 정 대 상	『군청 겨냥 무리한 단속? 부안경찰 위상 크게 추락』 제하의 기사 (전북중앙신문 2015년 6월 8일자 9면,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6월 8일자 뉴스-지역면)
신청인 주장	부안경찰서가 부안군청을 겨냥해 주정차 단속 등 무리한 단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문)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부안경찰서 무리한 단속?’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전북중앙일보 2015년 6월 29일자 지역면, 인터넷 전북중앙일보 6월 30일자 초기화면 팝업)

2015전북조정 55·56	(정정·손배청구) 전○○ 對 인터넷 전주매일
조 정 대 상	(1)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취소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5일자 뉴스면) (2) 『○○ ○○문화관광형 ○○시장 운영 관련 신·구 상인회 간 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 ○○시장 문화관광형 사업단의 단장인 신청인이 점포 임대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 취하 (손배청구/사유 : 기사삭제)
2015전북조정 57·58	(정정·손배청구) (주)○○○○○○○ 對 전주일보
조 정 대 상	(1) 『새만금공사에 쓰겠다면 반출한 토사 ‘채취한 곳은 있는데 받은 곳은 없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1면) (2) 『줄포 토석채취허가 내용 ‘공개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1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 외 지역으로 토석을 무단 반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전북조정 59·60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시스 전북
조 정 대 상	『부안서장 막말 논란 관련, 방법대 대원들에게 보내진 문자』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1일자 전북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경찰 협력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부안군 자율방범대를 해체해 버리겠다는 등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PR·후속보도,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결정 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일자 지역면 부안섹션면)

2015전북조정 65~70	(각 정정·손배청구) 이상직 對 전주매일 ^(65·66) , 인터넷 전주매일 ^(67·68) , 국제뉴스(전북) ^(69·70)
조 정 대 상	『신청인이 벌금 전액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전주매일 2015년 9월 25일자 3면, 인터넷 전주매일 9월 25일자 전국/전북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지역구가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 지역이 될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전북총선 기획시리즈 3] 전주 완산을 선거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전북면)
2015전북조정 73·74	(정정·손배청구) 의료법인○○의료재단 對 전주매일
조 정 대 상	『전주 ○○요양병원 발암폐기물 방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발암폐기물을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전북조정 75, 76	(각 정정청구) 유○○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군산시 “악성민원 더 이상 못 참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호남 제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민원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전북조정 77·78	(정정·손배청구) 강○○ 對 남원포유
조 정 대 상	『K 도의원, 만인의총 국가관리 미결정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포토뉴스 및 사설면)
신청인 주장	전북도의원인 신청인이 ‘만인의 총’의 국가관리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만인의 총 국가관리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2일자 초기화면)

〈경남〉

2015경남조정 1~4	(각 정정·손배청구) ○○시 태권도협회 외 1인 對 뉴스경남 ^(1·2) , 인터넷 뉴스경남 ^(3·4)
조 정 대 상	『○○시 태권도협회장 선거 규정 무시됐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8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2012년 협회장 선출 당시 가맹단체 규정을 어기고 만장일치 박수로 협회장을 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7	(손배청구) 방종근 對 인터넷 한남일보
조 정 대 상	『창원시 대원 3구역 주민들이 뿔났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창원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직위를 이용해 창원 의창구 대원 3구역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8·9, 13~16, 19, 20	(정정·손배청구) 김○○ 對 MBC경남(진주, 창원) ^(8·9) (각 추후청구) 경남도민일보 ⁽¹³⁾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¹⁴⁾ , 한남일보 ⁽¹⁵⁾ , 인터넷 한남일보 ⁽¹⁶⁾ , 경남신문 ⁽¹⁹⁾ , 인터넷 경남신문 ⁽²⁰⁾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젓은 오작동... 혈세낭비』 제하의 보도 (MBC경남 2014년 10월 29일자) (2) 뉴스데스크 『선정과정 의혹수사』 제하의 보도 (MBC경남 2014년 10월 30일자) (3) 뉴스데스크 『보조금 주고 나면 '그만'』 제하의 보도 (MBC경남 2015년 10월 31일자) (4) 뉴스데스크 『전면교체... 검찰수사 촉구』 제하의 보도 (MBC경남 2015년 11월 6일자) 외 6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시 개인택시 지부장인 신청인이 도심광역 교통정보시스템단말기 선정 및 구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불성립결정 (MBC경남(진주, 창원)) • 각 취하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한남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도민일보 :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장 유티스 도입 횡령 의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7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4월 17일자 법원·검찰·경찰면) 한남일보 : 『○○개인택시지부 김 모 지부장, 무혐의 처분 받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5일자 2면) 경남신문 : 『○○개인택시지부장, 무혐의 처분 받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4일자 5면, 인터넷 경남신문 4월 24일자 사회면)
----------------	--

2015경남조정 10	(정정청구) 경상남도 외 1인 對 MBC경남(진주, 창원)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교육장들 흥지사 성토』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홍준표 경남 지사가 남해군 순방 과정에서 “모든 교육자들이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11·12	(정정·손배청구) (사)경남○○장애인복지회 ○○시지부 외 1인 對 창원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경남 프로그램 『장애인 분양권 부당이득 ‘기승’』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경남○○장애인복지회 ○○시지회 지부장이 장애인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득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5경남조정 17, 18	(각 손배청구) 김○○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7〉, 〈뉴스9〉, 〈뉴스라인〉 프로그램 『김해서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7명 수배,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20여 명 중경상』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식당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집단난투극을 보도하면서 식당 상호를 무단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2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한려투데이
조 정 대 상	『“어촌계 돈은 내 주머니”… 전 어촌계장 공금 횡령 확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5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어촌계장이던 신청인이 어촌계 인근의 포장마차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통영 전 어촌계장 K씨, “30만 원 받은 사실 없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원 조정대상기사 하단)

2015경남조정 22	(정정청구) 대한○○○○○협회 對 인터넷 뉴스경남
조 정 대 상	(1) 『대한○○○○○협회 위탁 교육비 불만 ‘증폭’』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9일자 종합면) (2) 『대한○○○○○협 ‘교육 위탁 특혜 논란’ 해법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주택관리사 교육 및 교육비 징수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한○○○○○협회 교육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5일자 원 조정대상기사 하단면)

2015경남조정 23	(반론청구) 박○○ 외 9인 對 인터넷 김해뉴스
조 정 대 상	(1) 『결론은 먹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금바다만평면) (2) 『내홍 시달리던 김해○○회 임원진 총사퇴… 갈등 증폭』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김해○○회 임원들인 신청인들이 김해○○회 내홍사태에 대한 사과 없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경남조정 24~27	(각 정정청구) 하동군 ○○면 對 하동군민신문 ⁽²⁴⁾ ,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²⁵⁾ , 한남일보 ⁽²⁶⁾ , 인터넷 한남일보 ⁽²⁷⁾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동군민신문 :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정 의혹제기 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5일자 1면,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2015년 7월 14일자 경제사회면) 한남일보 : 『하동군 ○○면사무소 주차장조성사업 부정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경제사회면, 인터넷 한남일보 2015년 7월 13일자 하동면)
신청인 주장	하동군 ○○면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입찰한 특정 업체의 견적서 금액을 조작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 적법하게 진행됐다” 주장』 제하의 기사 (하동군민신문 2015년 8월 24일자 2면,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8월 24일자 초기화면, 한남일보 8월 19일 2면, 인터넷 한남일보 8월 19일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원 조정대상기사 하단)

2015경남조정 28, 29	(각 정정청구) 김○○ 對 한려투데이 ⁽²⁸⁾ , 인터넷 한려투데이 ⁽²⁹⁾
조정대상	『오후 10시 30분 청년 모친은 왜 통곡했나?』 제하의 기사 (한려투데이 2015년 8월 14일자 2면, 인터넷 한려투데이 8월 1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독단적으로 어촌계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30~37	(각 정정·손배청구) 남해군 對 남해시대 ^(30-31, 34-35) , 남해타임즈(인터넷 남해시대) ^(32-33, 36-37)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성한 뒷말만 남긴 ‘비키니 앤 탭’』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5년 8월 11일자 3면, 남해타임즈 2015년 8월 12일 사회면) 『무산된 ‘비키니 앤 탭’ 후폭풍 거세』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5년 8월 18일자 3면, 남해타임즈 2015년 8월 18일 사회면) 『‘비키니 앤 탭’ 무산 후폭풍 본지와 남해군의 갈등으로 비화』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5년 8월 25일자 5면, 남해타임즈 2015년 8월 25일 자치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남해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비키니 앤 탭” 행사의 취소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38	(정정청구) 유대운 對 인터넷 경남일보
조 정 대 상	『[이○의 역학이야기] 꼴볼견 국정감사』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 격발시범을 보이려고 한 것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판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사실적 주장이 아님)
2015경남조정 39, 40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경남매일 ⁽³⁹⁾ , 인터넷 경남매일 ⁽⁴⁰⁾
조 정 대 상	『29억 산 땅 42억 줬다 부풀려』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5년 9월 10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토지 보상가를 높게 받기 위해 토지 매입가를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정보,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해 병동산단 토지보상 놓고 ‘논란’』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매일 2015년 10월 8일자 사회면)
2015경남조정 41~44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한려투데이 ^(41·42) , 인터넷 한려투데이 ^(43·44)
조 정 대 상	(1) 『본지 사진 무단 게재는 범죄행위』 제하의 기사 (한려투데이 2015년 8월 28일 2면, 인터넷 한려투데이 9월 1일자 오피니언면) (2) 『일부 인터넷언론 본지 사진 무단게재 물의』 제하의 기사 (한려투데이 2015년 8월 28일 3면, 인터넷 한려투데이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언론사 소속 기자였던 신청인이 취재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회사 소유 사진을 타 언론사에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45~48	(각 정정·손배청구) 유○○ 對 한려투데이 ^(45·46) , 인터넷 한려투데이 ^(47·48)
조 정 대 상	(1) 『본지 사진 무단 게재는 범죄행위』 제하의 기사 (한려투데이 2015년 8월 28일 2면, 인터넷 한려투데이 9월 1일 오피니언 초기화면) (2) 『일부 인터넷언론 본지 사진 무단 게재 물의』 제하의 기사 (한려투데이 2015년 8월 28일 3면, 인터넷 한려투데이 9월 1일자 사회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 신청인이 타 언론사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49, 50	(각 정정청구) 창원시 對 경남도민일보 ⁽⁴⁹⁾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⁵⁰⁾
조 정 대 상	『창원 시내버스 태극기 달기 들쭉날쭉』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5년 9월 18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9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창원시가 시내버스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태극기 부착위치를 통일 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경남조정 51	(반론청구) 채○○ 對 굿데이뉴스
조 정 대 상	『‘카메라 훔쳤다’던 전직 기자, 결국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오피니언 기자수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분쟁 중인 한려투데이에서 해고된 모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 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카메라 절취 고의성 없으나 무단 사용해 파손』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홈페이지 원 조정대상기사 하단면)

2015경남조정 52	(반론청구) 한려투데이 주식회사 외 1인 對 블랙먼데이
조 정 대 상	(1) 『[김○○ 칼럼] 통영 ‘유력 주간지’의 낮 부끄러운 醜態』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0일자 오피니언면) (2) 『‘한려투데이’ 논란… ‘해고 기자’의 반격』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2일자 이슈면) (3) 『김○○ 기자, ‘한려투데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1일자 이슈면) (4) 『카메라 훔쳤다는 전직 K기자, 결국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경제/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과 분쟁 중인 한려투데이에서 해고된 모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 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5경남조정 53~5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주)○○테크 對 경남도민신문 ^(53~55)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56~58)
조 정 대 상	『진주시 내동면지역 텃밭가꾸기 사업 박차』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5년 10월 20일자 5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0월 19일자 진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진주시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에 민원을 제기했고, 진주시로부터 내동면 산업단지 조성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진주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5년 1월 11일자 2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월 11일 진주면)

2015경남조정 59~62	(각 정정·손배청구) ○○새마을금고 외 1인 對 경남도민신문 ^(59·60)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61·62)
조 정 대 상	(1) 『직원 수당 횡령 논란 ‘사분오열’』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5년 11월 10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1월 9일자 뉴스종합면) (2) 『치매진단 사실 은폐 의혹… B금고 거래회원 기만』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5년 11월 13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1월 12일자 사회면) (3) 『진주 B새마을금고 불법행위 제보자 상경 시위』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5년 11월 20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1월 19일 정치면) (4) 『사망자 명의로 담보대출 실행지시 있었다』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5년 12월 2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2월 1일자 사회면) (5) 『“응답하라”… 새마을금고 감사 시스템은 먹통』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5년 12월 4일자 15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2월 3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횡령, 불법 대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제주〉

2015제주조정 2, 3	(각 손해청구) 이○○ 對 한라일보 ⁽²⁾ , 인터넷 한라일보 ⁽³⁾
조정대상	『막나가는 정책자문위원… 도의회 위상 추락』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5년 10월 15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10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인 신청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동의 없이 사적 내용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제주조정 4·5	(정정·손배청구) 고○○ 對 아주뉴스
조정대상	『○○○○○공사 간부 경찰조사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지방면)
신청인 주장	○○○○○공사 ○○○○부장인 신청인이 동북풍력발전단지 사업과 관련 브로커와 공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불이행

2015제주조정 8, 9	(각 정정청구) 제주동부경찰서 對 제주매일 ⁽⁸⁾ , 인터넷 제주매일 ⁽⁹⁾
조정대상	『공방협이 ‘철창시민’ 알고보니 ‘불법구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9일자 종합1면)
신청인 주장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구대가 도민을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불법 구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행결과	『제주동부경찰서 ‘불법 구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제주매일 2015년 3월 6일자 1면, 인터넷 제주매일 3월 6일자 정치행정면)

2015제주조정 10·11	(정정·손배청구) 오○○ 對 미디어제주
조 정 대 상	『신변비관 20대 男 옥상에서 뛰어내려… 끝내 숨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들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신변비관 20대 男 옥상에서 뛰어내려… 끝내 숨져” 관련 사과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사회면)
2015제주조정 12·13	(정정·손배청구) 손○○ 對 제주의소리
조 정 대 상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 ‘1번 가방’서 뭐가 나왔나?』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구원파 신도에게 유병언의 도피용 가방을 보관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제주조정 14·15	(정정·손배청구) 백○○ 외 1인 對 제주불교신문
조 정 대 상	『○○○사 빗장 풀고 관음기도도량으로 거듭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6일자 2면)
신청인 주장	마라도 ○○○사의 임시폐쇄가 신청인들간 마찰에서 비롯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제주조정 16	(손배청구) 허○○ 對 제주KBS-1TV
조 정 대 상	9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해당 업주가 숙박고객을 성폭행』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12일자)
신청인 주장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고객을 성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제주조정 17·18	(정정·손배청구) 제주특별자치도 對 제주KBS-1TV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입지선정 내부협의로도 없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일자) (2) 뉴스9 프로그램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후보지의 선정(가정)’』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내부검토를 부실하게 하고, 평가점수를 자의적으로 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 측은 손해배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측은 진실한 보도로 수용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

2015제주조정 19~22	(각 정정·손배청구) (사)제주○○○○회 외 1인 對 한라일보 ^(19·20) , 인터넷 한라일보 ^(21·22)
조 정 대 상	『‘택시표시등’ 놓고 ○○○○○회 내용』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5년 7월 16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라일보 2015년 7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제주○○○○회가 택시표시등을 둘러싸고 내용에 헐싸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택시표시등’ 놓고 ○○○○○회 내용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5년 8월 7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라일보 8월 7일자 사회면)

2015제주조정 23·24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관 외 1인 對 JIBS-TV
조 정 대 상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복지관 운영비리 의혹 잇따라』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비를 유용하여 양봉업을 하고, 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PR·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JIBS 저녁뉴스 프로그램 『‘복지관 운영비리 의혹’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8일자)

2015제주조정 25	(정정청구) 강○○ 외 1인 對 제주MBC-TV
조 정 대 상	저녁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위험한 방파제』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방파제에서 추락한 것이 신청인들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저녁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방파제 안전펜스 관리 소홀 공무원 입건』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4일자)
2015제주조정 26~29	(각 정정·손배청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외 1인 對 제주KBS-1TV ^(26·27) , KBS미디어 ^(28·29)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해양수산연구원 감사결과 사전로비?』 제하의 보도 (제주 KBS-1TV 2015년 7월 21일자, KBS미디어 7월 21일자 뉴스투데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관련 기자 질문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
2015제주조정 30·31	(정정·손배청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對 제주KBS-1TV
조 정 대 상	앵커의 현장 프로그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파트 건설, 왜?』 제하의 보도 외 3건 (2015년 9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센터가 공동주택용지 매각과 관련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제주조정 32·33, 34	(정정·손배청구) (사)한국○○○협회 對 제주신문 ^(32·33) (정정청구) 인터넷 제주신문 ⁽³⁴⁾
조 정 대 상	『○○○ 도내 신문 발행부수 등 발표 ‘허위’』 제하의 기사 (제주신문 2015년 11월 30일자 메인면, 인터넷 제주신문 11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공표한 2014년도 제주지역 일간지 발행부수가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